

#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김승경

공동연구원 최정원 강지명

N

Y

P

T

#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최정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강지명(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선임연구원)
- ▶ 연구보조원 : 선애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 발 간 사 ■ ■ ■

1987년 청소년육성법을 시작으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지금까지 다양한 청소년 관련 법안들이 제정돼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다 체계적인 청소년정책 사업 실현을 위해 1993년부터 매 5년 주기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국가 차원에서 수립돼 왔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을 위한 법안과 국가사업들이 끊임없이 제정 및 시행돼 왔지만 정작 우리의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감은 너무나도 낮습니다. 정책과 현실의 괴리감을 방증하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감이 존재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청소년의 지위와 역할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각이 시대 변화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청소년의 동반자적 사회 지위와 주체적 참여 역할이 언명된 지 18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누리는 사회적 위상과 역할은 여전히 종속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집단으로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기성세대가 정해 준 원칙과 질서에 순응하도록 종용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지만 정작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온전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역설적인 현실의 지속이 청소년들의 불행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가 다룬 청소년 차별 실태는 동반자적 사회 지위는 물론 삶의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즉 사회적 약자라는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한 실증적 조명이자 문제제기입니다.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종용받는 청소년이기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차별 문제를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의 입장에서 확인하고 차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의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청소년 대상 FGI,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전반적인 차별 실태를 조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진을 비롯하여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청소년, 학계, 정책담당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청소년들의 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청소년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이 모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 국 문 초 록

사회구성원들이 개인, 그리고 소수자 집단이나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적인 경험 또는 이중적 정체성을 잘 파악하고, 나아가 다양한 집단과 계층을 잘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차별에 대한 인식과 이들의 차별 경험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 대다수가 모든 사람은 개인적 특성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크게 동조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생에 비해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는 의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자들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자들보다 더 잦은 빈도로 차별을 범하고 있었다. 셋째, 청소년들을 차별한 주요 가해자 집단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성적으로 인한 차별의 경우 학교 선생님,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과 같은 학교 관계자였고 나이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의 경우 가족/친척이 주 가해자로 확인되어 청소년들의 차별 피해 경험과 관련해 가족/친척이 다른 집단보다 부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당해본 피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경험을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정작 본인이 차별을 당할 당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피해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다섯째, 조사결과는 차별을 한 번이라도 당해본 청소년들이 다시 누군가를 차별하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함을 보여주었으며, 외면당한 차별의 피해자는 결국 새로운 차별을 야기하는 가해자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차별을 당했을 때 학교 관계자들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별, 그리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심각해지는 경쟁적 사회분위기에 따른 학력과 학벌, 그리고 성적에 따른 차별 등 우리나라의 현실과 청소년이라는 시기를 모두 고려해보아야 하며,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뿌리 깊은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청소년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로 이어지는 만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차별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차별에 대한 시정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인권전담기구 및 청소년 인권옹호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차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가해자 처벌 이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회복적 정의를 도입하여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또 다른 차별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차별, 인권



### 1. 연구목적

- 사회구성원들이 개인, 그리고 소수자 집단이나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의한 경험 또는 이중적 정체성을 잘 파악하고 다양한 집단과 계층을 잘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인식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왜곡을 철저히 비판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기 수행된 본원의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 가해 및 피해경험을 일부 조사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차별 가해 및 피해경험이 있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청소년들이 무엇을 차별이라고 생각하는지, 차별이 왜 발생하며 차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등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알아보아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인이 모여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차별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차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차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들이 어떤 차별 경험을 하고, 자신의 차별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차별의 원인을 살펴보고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함.
- 단,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기간이 제한적임을 감안하여 학교라는 제도권 내에 속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차별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음.

## 2. 연구방법

### ○ 문헌연구

차별의 개념, 차별 관련 법·제도 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차별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였음.

### ○ 전문가 자문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설문 문항 개발 및 분석, 질적 연구 수행 및 분석, 연구결과 분석 및 정책 제언 도출을 위해 학계·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 ○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차별에 대한 인식, 차별 가·피해 및 목격 경험,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 실태, 차별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 청소년 차별 실태 관련 FGI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이 갖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나 그들이 경험한 차별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는 있으나, 설문조사에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음. 심층면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차별 실태조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일상생활(가정이나 쉼터/ 학교/ 일터(아르바이트) 등) 영역에서의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들이 차별에 대해 갖는 생각,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 및 차별 개선방안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음.

### ○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학계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차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음.

### ○ 콜로키움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 정보격차와 문화’라는 주제의 콜로키움에서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문제’라는 주제의 콜로키움에서는 청소년 차별에 관한 법제도의 실태를 진단하고 차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음.

## 3. 주요 결과

### 1) 법제도적 현황

- 청소년기본법을 포함한 청소년 관련 법과 제도에는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선언하고 있으나,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실질적인 구체책이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청소년은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되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교육적, 복지적 개입의 측면에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구체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민법상의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이 행사될 뿐임. 법률상에 친권자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청소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법률은 규정되지 않고 있음.
- 또한 학교 내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은 교사의 지시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강제하는 장치로 작용되고 있음. 즉, 교칙 위반 시 교사의 지시에 복종하고 순종을 강제하게 되는데, 무조건적인 순종의 강요가 아니라 교사의 지시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나 학생이 다른 대안을 선택할 기회를 가졌는지 등의 여부를 고려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2)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결과

- 청소년들 대다수가 모든 사람은 개인적 특성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아

야 한다는 생각에 크게 동조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에 비해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는 의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이 누군가를 차별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차별 사례별로 상이한데 외모 및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의 경우 놀림/조롱이, 장애에 따른 차별의 경우 집단 따돌림과 놀림/조롱이 사용됨. 이러한 특성은 가해자의 교육과정, 성적, 가정형편에 따라 차별 방식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은 장애를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할 때 인간적 무시나 모욕을, 중학생은 기회박탈과 따돌림, 고등학생은 놀림/조롱 등에서 기대빈도를 상회하였고 가정형편이 좋은 가해자는 인간적 무시나 모욕에서, 중간인 가해자는 집단 따돌림과 회피에서, 그리고 하인 가해자는 놀림/조롱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함.
- 차별 사례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발견된 경향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자들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자들보다 더 잦은 빈도로 차별을 범하고 있었다는 점임. 또한 자신들의 가해 행위에 대한 생각과 관련해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나머지 3명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가정형편이 좋거나 반대로 나쁜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 반면 중간인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강했고, 고등학생 가해자가 초·중학생 가해자에 비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음.
- 차별 사례별 피해 경험 역시 청소년들의 학업성적, 가정형편, 교육과정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졌는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비해 중간 이하인 학생은 성적으로 인한 차별 피해에 더 노출돼 있었고 가정형편이 중간 이하인 학생도 상인 학생에 비해 성적으로 인한 차별 피해에 더 노출돼 있었음.
- 차별 사례에 따라 청소년들을 차별한 주요 가해자 집단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성적으로 인한 차별의 경우 제1가해자는 학교 선생님,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과 같은 학교 관계자였고 가족/친척이 그 뒤를 이었음. 반면, 나이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의 경우 가족/친척이 제1가해자로, 친구/선·후배가 제2가해자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차별 피해 경험과 관련해 가족/친척이 다른 집단들보다 부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피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차별 방식은 기회박탈과 인간적 무시/모욕이었으며, 성적에 따른 차별의 경우 학업성적이 중간 이상인 학생들은 주로 기회박탈을 통해, 학업성적

이 하인 학생들은 인간적 무시/모욕을 통해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음. 피해자의 교육과정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놀림/조롱을 통해, 중학생은 인간적 무시/모욕을 통해, 그리고 고등학생은 기회박탈을 통해 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음. 성별에 따른 차별의 경우 초등학생은 놀림/조롱을 통해, 중학생은 기회박탈을 통해, 그리고 고등학생은 인간적 무시/모욕을 통해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기대치보다 높았으며 이는 남녀 피해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당해본 피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경험을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정작 본인이 차별을 당할 당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본 피해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8명은 인내, 무반응, 회피 등 소극적 방식으로 당시 상황을 방치하였으며 특히 학업성적이 낮거나 상급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피해자일수록 피해 당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청소년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는 경향을 보였음. 이는 피해 청소년 대다수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에 공개하여 집단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방증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집단이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 조사결과엔 차별을 한 번이라도 당해본 청소년들이 다시 누군가를 차별하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함을 보여주었으며, 외면당한 차별의 피해자는 결국 새로운 차별을 야기하는 가해자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차별을 당했을 때 학교 관계자들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3) 청소년 차별 실태 FGI 결과

-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차별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며, 청소년 스스로가 차별상황에 적용되어 있어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 차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차별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 청소년들은 가정에서는 출생순위나 성별, 학업성적 등에 따른 차별 등을 경험하였고, 학교에서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외모와 성격, 놀이로 구분되거나 가정환경, 가족구성, 장애 여부, 성적, 학년 등에 의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는

교사-학생 간 위계 관계에서 오는 차별, 학교규정 미준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 학생의견 전달 어려움, 성적에 따른 편애, 기회제한, 편의제공 등의 차별을 경험하였음.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로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함에 있어 잡다한 일이나 과도한 업무를 하게 되는 것, 시급차별,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변경, 외모차별 등을 경험하였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유해업소 출입에 있어 규제를 받는 것, 학교 유형에 따른 차별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은 차별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고 동기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 차별은 부당하고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차별은 인간의 본능이나 자연현상처럼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 등을 보였음.
- 청소년들은 차별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4) 전문가 의견조사

-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청소년이라는 시기를 모두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별, 그리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심각해지는 경쟁적 사회분위기에 따른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 그리고 성적에 따른 차별 등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규제하기에 어려운 뿌리 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전문가들은 청소년 차별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사회문화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개선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교육기관, 일반시민단체, 개인 등 어느 한 곳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안에서 동시다발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청소년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까지 이어지므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함.

- 차별이 청소년이라는 대상과 영역 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차별의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서,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수준에서 의식교육이 필요하며, 차별에 대한 정의와 인식이 부족하여 차별의 행위 자체를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이 필요함.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연구추진체계 .....	7
3. 연구내용 .....	7
4. 연구방법 .....	8
II. 청소년 차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3
1. 차별의 개념 .....	15
1) 차별의 정의 .....	15
2) 차별 관련 이론 .....	17
3) 차별을 보는 관점 .....	24
2. 청소년과 차별 .....	27
III. 청소년 차별 관련 법, 제도 현황 .....	33
1. 법률에서의 청소년 차별현황 .....	36
1) 개관 .....	36
2)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 차별 .....	40
3)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 차별 .....	43
4)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 차별 .....	44
5) 학생이라는 신분에 의한 청소년 차별 .....	45
6)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청소년 차별 .....	47
2. 청소년 차별 관련 제도 .....	50
1)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인권전화 1331 .....	50
2)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	51
3)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전문 인권보호관 제도 .....	51

<b>IV.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b> .....	<b>53</b>
1.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개요 .....	55
1) 사전조사 .....	55
2) 표본설계 .....	55
3) 본조사 .....	62
2.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결과 .....	64
1) 차별에 대한 인식 .....	64
2) 차별 가해 경험 .....	68
3) 차별 피해 경험 .....	92
4) 차별 목격 경험 .....	124
5) 차별에 대한 개선방안 .....	133
3. 소결 .....	140
<b>V. 청소년 차별 실태 심층면접</b> .....	<b>147</b>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	149
1) 연구참여자 선정 .....	149
2) 자료수집 방법 .....	150
2. 연구 결과 .....	151
1) 청소년이 생각하는 차별 .....	151
2) 청소년들의 차별 피해 경험 및 가해 경험 .....	160
3) 차별에 대한 인식 .....	188
4) 차별 개선방안 .....	199
5) 인터뷰를 마치며 .....	211
3. 소결 .....	212

VI. 전문가 의견조사 .....	213
1. 의견조사 방법 및 내용 .....	215
2. 의견조사 결과 .....	216
1) 청소년 차별 경험에 대한 인식 .....	216
2) 청소년 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 .....	218
3)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의견 .....	219
3. 소결 .....	230
VII. 정책제언 .....	233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	235
1) 법률상의 제한점 .....	235
2) 제도상의 제한점 .....	236
2. 정책제언 .....	237
1) 법률 관련 개선방안 .....	237
2) 정책 관련 개선방안 .....	241
참고문헌 .....	247
부    록 .....	259
1. 조사안내문 및 동의서(초등학생용, 보호자용, 중고등학생용) .....	262
2. 설문지(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	274
3. FGI 참여 동의서(청소년용) .....	304

## 표 목차

〈표 III-1〉	각국의 소년사법제도 속에서의 형사책임연령 .....	49
〈표 IV-1〉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 수 분포 - 초등학교, 중학교 .....	56
〈표 IV-2〉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 수 분포 - 고등학교 .....	56
〈표 IV-3〉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분포 - 초등학교, 중학교 .....	57
〈표 IV-4〉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분포 - 고등학교 .....	58
〈표 IV-5〉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	59
〈표 IV-6〉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 학교 수와 학생 수 .....	60
〈표 IV-7〉	조사 개요 .....	62
〈표 IV-8〉	설문조사 영역 및 내용 .....	64
〈표 IV-9〉	차별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감수성(사안별 평균점수) ....	67
〈표 IV-10〉	학교급×장애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교차 분석 .....	69
〈표 IV-11〉	가정형편×장애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교차 분석 .....	70
〈표 IV-12〉	학업성적×장애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교차 분석 .....	70
〈표 IV-13〉	학교급×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교차 분석 .....	71
〈표 IV-14〉	가정형편×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교차 분석 .....	72
〈표 IV-15〉	학업성적×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교차 분석 .....	72
〈표 IV-16〉	학교급×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교차 분석 .....	73
〈표 IV-17〉	가정형편×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교차 분석 .....	74
〈표 IV-18〉	학업성적×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교차 분석 .....	74
〈표 IV-19〉	가정형편×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대상자 교차 분석 .....	77
〈표 IV-20〉	가정형편×외모에 따른 차별 대상자 교차 분석 .....	78
〈표 IV-21〉	학교급×장애에 따른 차별 방법 교차 분석 .....	80
〈표 IV-22〉	가정형편×장애에 따른 차별 방법 교차 분석 .....	80
〈표 IV-23〉	학교급×외모에 따른 차별 방법 교차 분석 .....	81
〈표 IV-24〉	가정형편×외모에 따른 차별 방법 교차 분석 .....	82

〈표 IV-25〉 학업성적×장애에 따른 차별 가해 빈도 교차 분석 .....	84
〈표 IV-26〉 학교급×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 빈도 교차 분석 .....	85
〈표 IV-27〉 가정형편×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빈도 교차 분석 .....	85
〈표 IV-28〉 학교급×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빈도 교차 분석 .....	86
〈표 IV-29〉 가정형편×차별에 대한 생각 교차 분석 .....	88
〈표 IV-30〉 학교급×차별에 대한 생각 교차 분석 .....	89
〈표 IV-31〉 학업성적×차별 당시 느낀 감정 교차 분석 .....	90
〈표 IV-32〉 가정형편×차별 당시 느낀 감정 교차 분석 .....	91
〈표 IV-33〉 학교급×차별 당시 느낀 감정 교차 분석 .....	92
〈표 IV-34〉 학업성적×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교차 분석 .....	94
〈표 IV-35〉 가정형편×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교차 분석 .....	94
〈표 IV-36〉 학교급×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교차 분석 .....	95
〈표 IV-37〉 학업성적×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교차 분석 .....	96
〈표 IV-38〉 가정형편×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교차 분석 .....	96
〈표 IV-39〉 학교급×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교차 분석 .....	97
〈표 IV-40〉 학업성적(여)×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교차 분석 .....	98
〈표 IV-41〉 가정형편(여)×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교차 분석 .....	98
〈표 IV-42〉 학교급×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교차 분석 .....	99
〈표 IV-43〉 성별×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교차 분석 .....	100
〈표 IV-44〉 학업성적×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자 교차 분석 .....	103
〈표 IV-45〉 학교급×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자 교차 분석 .....	104
〈표 IV-46〉 학교급×나이에 따른 차별 가해자 교차 분석 .....	104
〈표 IV-47〉 성별×성별에 따른 차별 가해자 교차 분석 .....	105
〈표 IV-48〉 학업성적×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방식 교차 분석 .....	108
〈표 IV-49〉 학교급×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방식 교차 분석 .....	108

〈표 IV-50〉 가정형편×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방식 교차 분석 .....	109
〈표 IV-51〉 학교급×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방식 교차 분석 .....	110
〈표 IV-52〉 학교급(남)×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방식 교차 분석 .....	111
〈표 IV-53〉 학교급(여)×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방식 교차 분석 .....	111
〈표 IV-54〉 가정형편×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빈도 교차 분석 .....	113
〈표 IV-55〉 학업성적×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빈도 교차 분석 .....	114
〈표 IV-56〉 가정형편×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빈도 교차 분석 .....	114
〈표 IV-57〉 학교급×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빈도 교차 분석 .....	115
〈표 IV-58〉 가정형편(여)×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빈도 교차 분석 .....	116
〈표 IV-59〉 학교급(여)×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빈도 교차 분석 .....	117
〈표 IV-60〉 학업성적×차별 경험 당시 피해자의 대응 교차 분석 .....	119
〈표 IV-61〉 학교급×차별 경험 당시 피해자의 대응 교차 분석 .....	120
〈표 IV-62〉 학업성적×친구/선후배 차별 피해 목격 당시 목격자의 대응 방식 교차분석 .....	127
〈표 IV-63〉 가정형편×친구/선후배 차별 피해 목격 당시 목격자의 대응 방식 교차분석 .....	128
〈표 IV-64〉 학교급×친구/선후배 차별 피해 목격 당시 목격자의 대응 방식 교차분석 .....	128
〈표 IV-65〉 학업성적×차별 개선 방안의 교차분석 .....	134
〈표 IV-66〉 가정형편×차별 개선 방안의 교차분석 .....	135
〈표 IV-67〉 학교급×차별 개선 방안의 교차분석 .....	136
〈표 IV-68〉 학업성적×차별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하는 집단의 교차분석 .....	137
〈표 IV-69〉 가정형편×차별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하는 집단의 교차분석 .....	138

〈표 IV-70〉 학교급×차별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하는 집단의 교차분석 .....	139
〈표 IV-71〉 차별 피해 경험×차별 가해 경험 교차 분석 .....	145
〈표 V-1〉 참여대상자 현황 .....	149
〈표 V-2〉 심층면접 질문 영역 .....	151
〈표 VI-1〉 전문가 의견조사 질문 영역 .....	215
〈표 VI-2〉 청소년의 차별 경험에 대한 인식 .....	217
〈표 VI-3〉 청소년의 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 .....	218
〈표 VI-4〉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력(중복응답) .....	230
〈표 VI-5〉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집단 (중복응답) .....	230

#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	7
【그림 Ⅳ-1】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우리 사회 차별 문제의 심각성 (유형별 평균점수) .....	66
【그림 Ⅳ-2】 청소년들의 차별 가해 경험 비율(유형별) .....	68
【그림 Ⅳ-3】 차별 유형별 주요 가해 대상 .....	76
【그림 Ⅳ-4】 차별 유형별 가해 방법 .....	79
【그림 Ⅳ-5】 차별 유형별 가해 빈도 .....	83
【그림 Ⅳ-6】 차별 행동에 대한 가해자의 생각 .....	87
【그림 Ⅳ-7】 차별 당시 가해자의 감정 .....	88
【그림 Ⅳ-8】 청소년의 차별 피해 경험 실태 .....	93
【그림 Ⅳ-9】 차별 유형별 가해자 집단 .....	102
【그림 Ⅳ-10】 차별 유형별 피해 방식 .....	107
【그림 Ⅳ-11】 차별 유형별 피해 빈도 .....	112
【그림 Ⅳ-12】 차별 경험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 .....	118
【그림 Ⅳ-13】 차별 경험 당시 피해자의 대응 .....	118
【그림 Ⅳ-14】 차별을 받았을 때 주변에 도움을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험 .....	121
【그림 Ⅳ-15】 차별 피해에 대한 의논 및 도움 요청 대상 (중복응답 허용) .....	121
【그림 Ⅳ-16】 피해 도움 요청 대상의 반응 .....	123
【그림 Ⅳ-17】 차별 목격 경험 .....	124
【그림 Ⅳ-18】 목격한 차별 피해자 .....	124
【그림 Ⅳ-19】 친구나 선후배를 차별한 가해자 집단(1, 2순위 통합) .....	125
【그림 Ⅳ-20】 친구나 선후배가 차별을 받은 이유(1, 2순위 통합) .....	125

【그림 IV-21】 친구나 선후배의 차별 피해에 대한 목격자의 생각 .....	126
【그림 IV-22】 친구나 선후배의 차별 피해 목격 당시 목격자의 반응 .....	126
【그림 IV-23】 목격한 차별을 주변에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험 .....	130
【그림 IV-24】 목격한 차별에 대한 의논 및 도움 요청 대상(중복응답 허용) ..	130
【그림 IV-25】 목격한 차별에 대한 의논 및 도움 요청 대상의 반응 .....	132
【그림 IV-26】 차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133
【그림 IV-27】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집단 .....	137



# 제 I 장



#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 제 I 장

##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얼마 전 국내 포털사이트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이슈가 된 바 있다. ‘휴거’는 임대아파트 브랜드인 ‘휴○○○’와 ‘거지’의 합성어인 일명 ‘휴○○○ 거지’의 줄임말로,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말이다(국민일보, 2016.3.15). 최근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자신의 자녀가 단지 내 임대아파트에 사는 자녀들과 섞이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공동체 시설이나 어린이집, 학교 입학 등에 차별을 두길 요구하고, 출입문이나 통로를 구분하거나 임대아파트 주민 의견을 미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아동·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집의 평수나 차종, 심지어 어깨에 남은 예방주사 자국만으로도 편 가르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친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이러한 구분을 차별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사회 내에서 이미 차별의 가해자로, 그리고 차별의 피해자로 자리 잡게 될 수 있다.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헌법 제2장 제11조)고 규정한 우리나라의 헌법과도 다르지 않다. 현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평등을 당연한 것처럼 교육받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연령, 인종, 장애, 성별, 지역 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고 있으며, 자신과는 다른 혹은 자신보다 열등한 특성에 대한 차별, 무시, 혐오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차별(差別)’이란 둘 또는 여럿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하는 것으로, 둘 이상의 대상에 특정 기준에 따라 우월을 따져 구별하는 행위를 말한다(다음백과사전, 2016). 즉, 여러 대상들에 대해 어떤 기준을 두고 그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우월한지, 열등한지를 가리는 것을 말한다. 차별적인 생각이나 전통, 정책 및 법률 등은 많은 나라에서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 차별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행동적으로 나타난 양태라고 볼 수 있다. 고정관념이란 대상범주집단에 대하여 그 집단 성원들의 공통적이라고 사회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는 인식을 말하며, 편견은 상대방이 특정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평가하여 지니고 있는 태도이며 대체로 부정적인 특성을 지닌다(한규석, 2009). 이러한 편견에 근거하여 대상이 우월한지 열등한지에 따라 다르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편견은 인식의 차원에서 머물고 있지 않고 그에 근거하여 대상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행위를 보이게 한다는 데서 사회적 심각성을 지닌다(한규석, 2009).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 다수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을 구분 짓고, 그들을 나와는 다른 남으로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사람은 서로 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자연스럽게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대우하는 차별은 보통 고정관념이나 편견, 사회제도 등으로 인해 나타나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예로, 2000년대 초반 한 연예인을 비하하는 뇌가 없는 벌레라는 의미의 ‘무뇌충’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후, 2002년에는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집에 수록될 정도로 이 용어가 유행하였고 그 이후로도 사회적 약자 또는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여 비하하는 용어로 벌레를 의미하는 ‘충(蟲)’의 낙인을 찍어 차별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을 넘어 혐오를 표현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 일상화되기에 이르렀다<sup>1)</sup>. 이러한 무분별한

1) 이러한 용어는 의과대학이나 법학대학 출신이 아니면서 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의사, 변호사가 되는 학생들을 구별하고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기존의 의대, 법대(사법고시) 출신들이 출신성분에 따라 전문대학원 출신을 구분하기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의전충(의학전문대학원 벌레)으로, 2009년에는 첫 입학생을 받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지칭하여 로퀴벌레(로스쿨 바퀴벌레), 법퀴(법학전문대학원 바퀴벌레) 등으로 지칭하였다. 2013년에는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의 일부 이용자들이 지역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을 ‘지균충’ 혹은 ‘기균충’이라 비하하여 논란이 된

차별적 혐오표현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 역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고 주변에서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구분하고 비하하는 것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경제불황과 청년실업의 현실과 더불어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청소년들은 수능성적, 대학입시 결과를 개인의 모든 '능력'으로 확장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실패는 곧 나의 '패배'로 이어졌다.

청소년기의 성적과 능력의 문제는 부모의 경제력과 연결되어 있고, 이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사회계급론'과도 맞닿아 있다. 극심한 빈부격차를 정당화하는 주요 이데올로기는 능력에 따른 차별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보는 능력주의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개천 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좋은 학벌, 높은 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부모의 경제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다. 결국 능력에 따른 서열은 경제력에 따른 서열에 의해 결정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사소한 차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며 그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성장해나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차별적인 태도를 주입해나가고 있어 어려서부터 '인맥을 고려하여' 친구를 사귀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들과 놀아야 하며,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친구'는 피해야 할 대상으로 배우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이러한 비인간적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하고, 자신을 차별하는 사회에 맞서고 문제를 제기할 겨를도 없이 실패로 인해 받은 수모를 보상받기 위해 나보다 열등한 사람을 비하하고 멸시하며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압박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차별은 경제적 재분배의 원리와 맞물려 청소년들에게 차별적인 인식과 고정관념을 주입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무시, 멸시, 혐오 등의 차별행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게 하는 차별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차별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특정한 특성에 의해 나와 타인을 '분리'시키고 '격리'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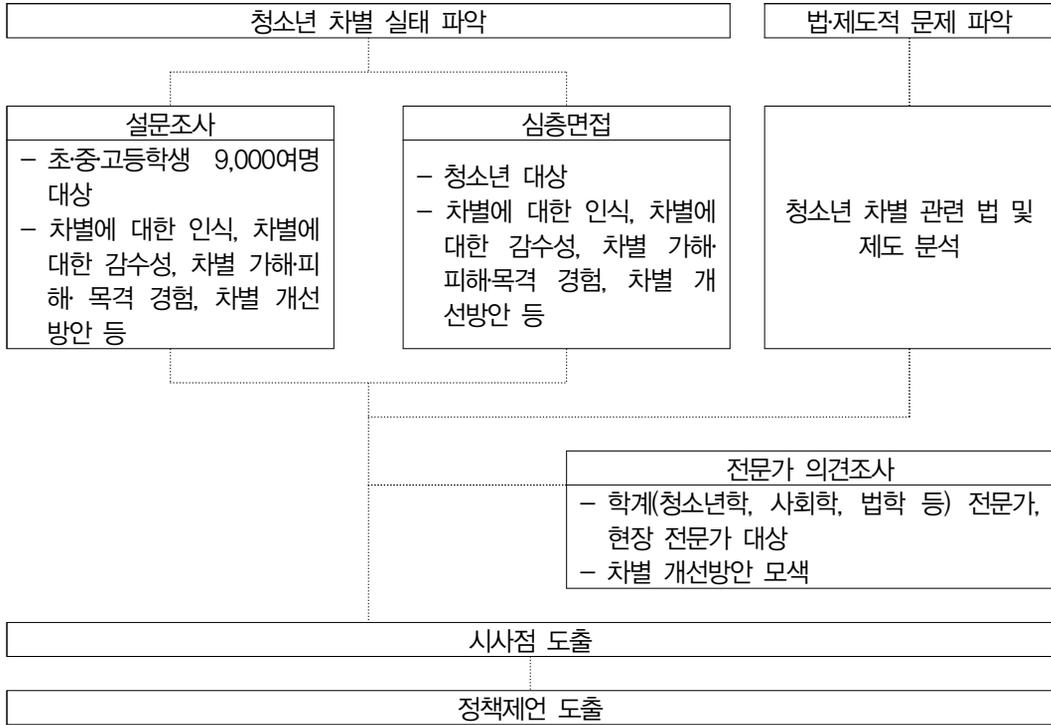
바 있다. 최근에는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제대로 훈육하고 돌보지 않아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엄마들을 '맘충'으로 폄하하여 문제가 되었으며, 지나치게 길게 설명하는 사람을 '설명충', 모든 사안에 대해 진지한 사람을 '진지충', 모든 일상을 일일이 SNS 게시물로 올리는 '페북충' 등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폄하하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다(한국일보, 2015.8.20.)

사회구성원들이 개인, 그리고 소수자 집단이나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의한 경험 또는 이중적 정체성을 잘 파악하고 다양한 집단과 계층을 잘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인식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왜곡을 철저히 비판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원의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아동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을 일부 조사하고 있지만, 단순히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차별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통해 차별 실태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무엇을 차별이라고 생각하는지, 차별이 왜 발생하며 차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알아보아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인이 모여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차별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차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차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들이 어떤 차별 경험을 하고, 자신의 차별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차별의 원인을 살펴보고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이러한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추진체계



【 그림 1-1 】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차별실태 조사

청소년 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를 하였다.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약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차별에 대한 인식, 차별에 대한 감수성, 차별 가해·피해·목적 경험, 차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 2)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인문계 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층면접에서는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해 가지는 인식이 어떠한지, 양적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일상생활(가정이나 쉼터/ 학교/ 일터(아르바이트) 등) 영역에서의 차별 가해 및 피해, 목격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차별 경험으로 인한 감정이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 사회의 차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 3) 청소년 차별 관련 법, 제도 분석

청소년들이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영역과 관련된 법,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 4) 청소년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청소년 차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 제도적 분석 및 심층면접 조사, 학계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차별 실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모색해보고 콜로키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청소년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4.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차별의 개념, 차별 관련 법·제도 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차별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였다.

## 2) 전문가 자문

연구방향을 설정에 따른 설문 문항 개발 및 분석, 질적 연구 수행 및 분석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고, 향후 연구결과 분석 및 정책 제언 도출을 위해 학계·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였다.

횟수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비고
2	연구방향 및 연구내용 설정을 위한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계 전문가</li> <li>○ 현장 전문가</li> </ul>	
3	설문문항 개발 및 분석을 위한 자문		
3	질적 연구 수행 및 분석을 위한 자문		
4	연구결과 도출 및 정책 제언을 위한 자문		

## 3)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차별에 대한 인식, 차별 가·피해 및 목격 경험,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박수미, 정기선, 김혜숙과 박건(2004)과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와 김윤나(2014), 오선영(2016)의 내용을 참고로 연구자가 문항을 구성하였다.

조사항목 초안 개발 후 단어에 대한 이해도와 조사문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14일 초등학생 4명(4~6학년), 중학생 4명(1~3학년), 고등학생 4명(1~2학년)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사표의 문항 내용 및 어휘를 수정·보완하였다.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전국 초(4~6학년), 중(1~3학년), 고(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표집틀	2015년 교육통계연보	
표본 수	초, 중, 고등학생 각 3,000명(총 9,000명)	
표집방법	변형비례, 층화다단계집락표집	
조사시기	2016년 4~7월	

#### 4) 질적 연구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이 갖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나 그들이 경험한 차별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는 있으나, 설문조사에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심층면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차별 실태조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일상생활(가정이나 쉼터/ 학교/ 일터(아르바이트) 등) 영역에서의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들이 차별에 대해 가지는 생각,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 및 차별 개선방안 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 ○ 심층면담(면접)

주요 요소	내 용	비 고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 추천	
면담참여자 수	청소년 30명 내외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인문계고, 특성화고, 대안고에 재학 중인 1~3학년 학생	
면담방식(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반구조화된 집단 면담(5~7명)	
면담 시간 및 횟수	각 집단별 2시간 내외, 1~2회 진행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참여동의서 작성 후 기록 및 녹취	
면담자	연구진	

#### 5)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학계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차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요소	내 용	비 고
조사대상 전문가	학계 전문가(청소년학, 사회학, 법학 등 관련 분야), 현장 전문가	
선정방법	관련 기관 추천 등	
조사내용	차별 개선방안 모색	
조사방법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조사시기	2016년 10월 중	

## 6) 기타 연구방법

### ○ 콜로키움

차수	주요내용	참석자	개최시기	비 고
1차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 정보격차와 문화	연구진 및 희망자	8월	
2차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연구진 및 희망자	11월	

### ○ 정책협의회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비 고
1차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한 논의	보건복지부	2월	
2차	청소년 차별 개선방안 및 차별 관련 향후 과제 논의	여성가족부	12월	



## 제 II 장

---

# 청소년 차별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차별의 개념
2. 청소년과 차별



## 제 II 장

# 청소년 차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 차별의 개념

#### 1) 차별의 정의

차별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보통 차별은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성별, 성적 취향, 인종, 생김새, 국적, 나이, 출신, 사상 등의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다음백과사전, 2016)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의 특성이 아닌 개인이 속한 집단의 자격에 기반하여 어떤 집단 혹은 범주에 속한 구성원들을 향해 행해지는 차별적이거나 부당한 대우를 차별 경험으로 본다(Levin & Levin, 1982). 이러한 차별은 차별의 피해자들이 가진 잠재적인 능력이나 실생활에서의 활동영역과는 전혀 무관하며 의도적인 낙인이나 열등성 부여라는 기제를 통해 차별을 제도적으로 관행화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배화옥, 김성희, 2004:63).

보통 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차별은 처음부터 차별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특정인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차별을 규정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차별대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내가 행한 말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가 더 중요하다(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 2016). 이에 비해 간접차별이란 겉으로는 공정하게 보이는 특정 규정이나 정책일지라도 인권법상 명시된 근거에 따라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정인을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하게 대우하는 등 사람들이 실제로 차별대우 받게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 2016).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차별금지사유에 따른 ‘괴롭힘’도 차별에 포함될 수 있는데, 괴롭힘은 단순히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괴롭힘의 당사자, 즉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하여 행해진다는 점에서 차별로 이해될 수 있다(이준일, 2012:183). 우리나라의 인권위법에서는 직접차별만 차별로 보고 간접차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다(이준일, 2012:182).

차별과 관련된 개념으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는데, 고정관념은 특정 범주의 집단에 대하여 그 집단 성원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사회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는 인식(한규석, 2013:485), 즉 특정 집단이나 특정 범주에 속해 있다고 생각되는 구성원은 그 집단이나 범주와 관련된 모든 특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신념을 말한다. 이에 비해 편견은 특정 집단 혹은 특정 범주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태도로,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에 대해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대체로 부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한규석, 2013:485). 보통 특정 대상에 대한 인지적인 요인인 고정관념과 감정적인 요인인 편견이 특정 집단이나 범주의 사람들을 향해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그로 인한 차별은 부모가 특정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 이외에도 아동이 부모의 태도나 가치관을 동일시해가는 과정이나 대중매체 등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별의 근원이 되는 편견이 형성되는 기제는 크게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사회갈등적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한규석, 2013:487-498). 첫째, 인지적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잘 알지 못할 때 고정관념을 통해 그 사람이나 집단의 특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이나 집단과 아무런 갈등이나 악의가 없이도 편견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정서적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생활 내에서 겪는 좌절을 안전하게 배출하려고 하거나 상대집단과의 경쟁에서 상대를 비하하고 자신의 집단을 우위에 뒀으로써 우월감을 맛보기 위한 정서적 이유에서 편견이 발생한다고 본다. 권위주의적 성격이론에서는 개인이 좌절에 의해 촉발되는 공격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표적을 찾게 되고, 그 대상으로 힘없는 소수집단을 목표로 삼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자기보다 강한 힘을 가진 대상에게는 무조건적 순종을 하며, 자기보다 약하거나 열등한 대상에게는 적개심과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낸다고 본다. 사회정체감 이론에서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범주가 제공하는 집단정체감이 다른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거나 이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집단정체감을 고양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즉, 비교대상이 되는 상대집단을 무시하고 차별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우월감을 느낌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 갈등적 측면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집단 간 경쟁이 이루어질 때 서로 간에 적개심이 생기고 상대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특성에 초점을 둔다. 경쟁 상황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통해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사람에 비해 자신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이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상대에 대한 편견이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별로 차별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할 때 자기 삶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유능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Crosby, 1984; 한규석, 2013:513 재인용). 반대로 편견의 피해자들은 편견이나 차별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차별의 근거가 되는 요인들로는 인종, 성별, 연령, 신체적 특징과 같이 그 특성을 변화시킬 수 없는 고유한 인구요인이 있고 소유물, 지위, 경제상황, 학력 등과 같이 변화가 가능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있다(배화옥, 김성희, 2004:63). 보통 고유한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중첩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이중차별’(오혜경, 김정애, 2000; 배화옥, 김성희, 2004:63 재인용)이라고 한다. 차별의 근거가 되는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다중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중차별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변화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온 학력이나 경제상황,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조차 세습화되고 대물림되는 현실은 차별이 개인에게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2) 차별 관련 이론<sup>2)</sup>

차별(差別)이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16). 차별과 유사하게 구별, 대조 역시 둘 이상의 대상을 구분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구분의 의도에서 전자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구별과 대조는 대상의 같고 다름을 수평적으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지만 있지만, 차별은 대상 간의 수직적 위계질서, 즉 서열을 구분 짓고 그에 따른 층차를 두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열등한 집단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우등한 집단의 사람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권리와 기회가 거부 또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러한 차별 상태가 오래 지속할수록 두 집단 사이의 물리적 격차와 심리적 괴리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즉, 차별은 집단 사이의 불평등을 생산하고 이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원래는 존재하지 않던 집단 간의 우열을 인위적으로 규정하고 열등 집단에 대한 차등

2) 본 항은 최정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본 절에서는 참고문헌의 전체적인 요약 및 소개 등 직접인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참고문헌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았음.

대우를 강제함으로써 이들의 열등함을 현실화시키는 차별의 기제는 Merton(1948)의 자기 충족 예언, Thomas와 Thoma(1928)의 토마스 정리, Paris(1997)의 킥벨 효과와 다르지 않다. 차별이라는 행위에 있어 집단 사이의 실제 우열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열에 대한 사람들의 자의적 해석과 믿음이며 열등하다고 분류된 집단의 성원들은 실제 개인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지녔다고 해도 소속 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차별 대우 때문에 열등한 존재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일탈적인 속성을 지닌 행위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이 일탈과 일탈자를 만들어낸다는 Becker(1973)의 낙인이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차별은 우열에 대한 사람들의 자의적 판단과 해석에서 출발하지만, 그 결과는 실질적이고 치명적이다. 대표적인 인종차별정책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가 이를 잘 보여준다. 1948년 국민당의 집권과 함께 법제화된 아파르트헤이트는 1994년 만델라 대통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46년 동안 유색 인종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와 기회를 제한 및 박탈하였다. 유색 인종의 투표권 박탈은 물론 유색 인종에게 제공된 교육, 의료 혜택, 거주지, 공공 서비스의 질은 백인보다 떨어졌으며 특히 흑인에 대한 처우가 가장 열악했다. 아파르트헤이트가 폐지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흑인의 생활수준은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찾기 어렵지 않다(Bhorat, Naidoo & Westhuizen, 2006; Gradin, 2013; Klasen, 2000). 한 예로 Gradin(2013:187-189)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흑인의 1인당 평균 소득 및 지출은 백인의 1/8 수준으로 아파르트헤이트가 폐지되기 직전인 1993년의 1/10 수준과 비교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빈곤 문제 역시 뚜렷한 인종 격차를 보여주었다. 2008년 기초 생계비용을 기준으로 흑인 가구의 빈곤율은 백인 가구에 비해 적게는 11배(상한 빈곤선 기준), 많게는 38배(하한 빈곤선 기준) 높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흑백 인종 간의 빈곤 격차가 심각하다고 알려진 미국이나 브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인종 외에도 성별, 나이, 언어, 국적, 종교 등과 같은 속성들이 차별에 악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유유상종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사람은 차별 의도와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자신과 유사한 인구, 사회, 문화적 속성(예를 들어 가치관, 인종,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나이 등)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선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McPherson & Smith-Lovin, 1987; McPherson, Smith-Lovin & Cook, 2001; Smith, McPherson & Smith-Lovin, 2014). 유유상종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좀처럼 변하지 않은 원칙인 셈이다. 사람들이 유유상종하려는 이유는 자신과 유사한 대상과 교제함으로써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발생하는 위험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호혜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수자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사회적 지지나 자원 획득이 어려운 경우 유유상종은 동병상련의 혜택을 창출하는 순기능을 수행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Friedman, Kane & Cornfield, 1998).

그러나 유유상종이 긍정적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유유상종은 집단 내부의 결속에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집단 사이의 분리를 심화시켜 전체의 통합을 어렵게 한다. 1954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재판을 계기로 미국의 공교육기관에서 인종에 따른 분리 교육이 사라진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여전히 학생들 사이의 사회적 교류는 인종에 따라 분리돼 있으며 이는 협력적 상호 작용의 가치와 역량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미 교육 당국의 교육 철학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Moody, 2001). 뿐만 아니라, 동종 네트워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물리적 자원과 기회의 폭을 제한하여 오히려 개인의 성공적인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Ibarra, 1995; Thomas & Gabarro, 1999).

차별은 집단 사이의 역학 관계가 수평적 분리를 넘어 서로에 대한 공격적 배타성으로 변질하면서 구현되는 행태이다. 집단을 구분하던 물리적 차이는 더는 ‘다름’으로 인식되지 않고 시비와 우열의 평가 대상이 된다. 이처럼 유유상종하려는 사람들의 습성이 집단 사이의 단순 분리를 넘어 차별이라는 부정적 행태로 이어지는 원인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설명-사회 정체성 이론, 체제 정당화 이론, 사회 지배 이론-이 존재한다. 먼저, 사회 정체성 이론(Tajfel, 1979, 1982; Turner, 1975)은 차별의 동기를 사람들의 돋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에서 찾는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차별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는 것이 정체성 이론의 요지이다. 그런데 Cooley(1922)의 거울 자아 이론이나 Mead(1962, 1982)의 자아 연구에서 제기돼왔듯이 개인의 자아 개념은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친구, 가족 등과 같이 개인이 속한 내부 집단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자아가 사회적 자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라고 부르는 자아의 실상이 주변 사람들이 대상화된 나에 대해 취하는 태도와 그러한 태도에 대한 나의 대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Mead, 1913:375).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부각하고자 하는 본능에 충실한 개인에게 내부 집단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것은 곧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를 위해 사람들이 개인 또는 집단 수준에서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외부 집단에 대한 차별이다. 사람들은 외부 집단에 대한 의도적 폄하를 통해 내부 집단의 자부심을 부각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긍정적 자아상을 확인한다(Rubin & Hewstone, 1998:45-47). 따라서 차별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반대급부, 즉 내부 집단의 자부심은 상승하고,

자부심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집단일수록 외부 집단을 차별하려는 동기가 커진다(Abrams & Hogg, 1988:320-322).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허황한 위기의식에 빠진 히틀러의 나치독일이 아리아인 우월주의를 내세워 6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는 차별이 내부 집단의 자부심 회복을 위해 악용된 극단적 사례이다(Bauer, 2001:48).

그러나 현실의 차별은 사회 정체성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언제나 내부와 외부 집단에 대한 이분법적 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 집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언제나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지만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적대적 태도만을 보여준다는 주장은 차별의 기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Jost, Banaji & Nosek, 2004:883-887). 뿐만 아니라 정체성 이론은 차별의 동인을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심리 문제로 환원시키고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Sidanius, Pratto, Laar, & Levin, 2004:848-857). 사회 정체성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Rubin & Hewstone, 2004:827-833)이 제기됨에 따라 학계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들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 성과가 바로 체제 정당화 이론과 사회 지배 이론이다. 두 이론 모두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대안 이론으로 정체성 이론이 소개된 지 20년 만이다. 체제 정당화 이론(Jost & Banaji, 1994)은 정체성 이론처럼 사람들이 자신은 물론 자신이 속한 내부 집단의 위상을 돋보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체제 정당화 이론은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들이 경쟁 상대에 있는 외부 집단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내부 집단뿐만 아니라 사회 체제 전반에 대해서도 높은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은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현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람들은 변화에 따른 만약의 위험부담을 모면하고 현상(現狀)의 안정과 질서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Jost, Banaji & Nosek, 2004:889-891). 이는 일찍이 Lerner(1980)가 제창한 '정의로운 세상 가설'과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고 이러한 갈망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 동기로 작용한다. 문제는 이러한 정의에 대한 갈망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현실 속의 불의 및 부당함을 두둔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는 정의롭다는 환상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현실 속의 부당함을 합리화하고 그러한 부당함이 불의가 아닌 사필귀정이었음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인지적 모순을 범하는 이유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일으키는 좌절감을 모면하기 위함이다. 이상에서 멀어지는 부당한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실망감과 무력감으로 고통받기보다 현상(現狀)의 당위성을 인정함으로써 자기 위안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Lerner 1977:2-3). 따라서 사람들이

세상의 공정함을 믿는 것은 세상이 실제로 공정해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부조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최면이자 자구책인 셈이다.

비록 체제 정당성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허위일지라도 체제 정당성에 대한 믿음은 집단 사이의 반목과 대립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체제 정당화 이론이 정체성 이론과 달리 외부 집단에 대한 내부 집단의 우호적 태도가 가능하다고 보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체제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 사회 전역에 확산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열위에 있는 집단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열등함을 인정하고 자신들보다 우위에 있는 외부 집단에 대해 존경과 선망과 같은 우호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는 Della Fave(1980, 1986)가 제창한 자기 평가 이론과 다르지 않다. 자기 평가 이론의 핵심은 형평의 원칙이 대중으로부터 인정받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가 곧 개인 또는 집단 사이의 상이한 역량과 사회적 기여도를 반영한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다(Della Fave, 1986:478-480). 즉, 개인과 집단에 대한 평가는 해당 인물과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지배력(예, 재산, 권력 등)을 기준으로 내려지며 누군가가 자신보다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자신보다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더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낮은 지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함을 인정하고 현상(現狀)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외부 집단에 대해 존경과 선망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기 평가의 체화(體化)가 불평등한 사회의 위계를 정당화시키고 존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체제 정당화 이론에서 볼 때 차별은 역설적이게도 공정한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커질수록 외면당하거나 합리화되는 사회 현상이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서구의 다른 자본주의 사회보다 심각한 계층 불평등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정작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 계급은 형평의 미덕을 앞세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평등의 가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처럼 사회, 경제적 약자인 하층 계급에게 도덕적 낙인을 찍어 자신들로부터 사회적 거리감을 두려고 한다(Lane, 1959).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미국 사회의 기조는 가난과 복지에 도덕적 굴레를 씌워 복지에 의존하는 특정 인종 및 성별 집단을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1996년 클린턴 정부에 의해 전면적인 사회 복지 개혁(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이 이루어지면서 전국의 복지 수혜 가정 비율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정작 복지 수혜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DeParle, 2004). 그리고 대선 시기만 되면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해묵은 ‘복지 남용자(welfare queen)’ 담론을 쟁점으로 부각해 가난과 복지를

싫어하는 백인 노동자 계급의 표심에 호소한다(Gilman, 2014).

여성 성폭행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이차적 피해자화 역시 체제 정당화 동기가 일으키는 모순된 차별 사례이다. 성폭행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지만 정작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경찰 및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우는 적다. 그 이유는 사회가 피해 여성을 준(準) 가해자로 몰아가는 강간 신화 때문이다(Burt, 1980; Lonsway & Fitzgerald, 1994). 강간 신화는 성폭행의 원인이 과립치한 남성 가해자 때문이 아닌 피해 여성의 불량한 처신으로 인해 유발됐다는 잘못된 믿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강간 신화가 여성에게 가하는 차별과 문제점들이 논의돼 왔다(Ardovini-Brooker & Caringella-Macdonald, 2002; Burt, 1980; Moor, 2010; Suarez & Gadalla, 2010). 논의의 핵심은 강간 신화에 대한 사람들의 암묵적 동의가 사태의 책임을 여성에게 부당하게 전가함으로써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할 가해자가 동정을, 반대로 동정의 대상이 돼야 할 피해자가 손가락질을 받는 모순적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다. 성폭행으로 이미 상처를 입은 여성 피해자들은 사회적 차별로 또 한 번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된다.

차별에 대한 마지막 이론은 사회 지배 이론이다. Sidanius와 Pratto(1999)에 의해 주창된 지배 이론의 기본 전제는 집단에 기반을 둔 위계가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라는 것이다. 즉,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 사이의 위계를 인위적으로 구분, 유지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 성향이라는 말이다. 이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긍정적 위상을 부각하고 싶어 한다는 사회 정체성 이론의 주장과 유사하지만, 지배 이론은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들의 서열 혹은 지배 지향적 속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인종주의, 자민족중심주의, 계급주의, 성차별주의로 명명되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은 차별과 억압의 대상만 다를 뿐 모두 집단 사이의 불평등한 위계를 구축하려는 사람들의 습성에서 발현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지배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차별과 억압은 특수한 사회 현상이라기보다 형태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다수의 사람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보편적 현상인 셈이다.

억압과 차별의 주체는 개인과 제도 모두가 될 수 있지만 사회 집단 사이의 불평등한 위계질서를 구조화시키는 데 더 크게 이바지하는 것은 제도적 차별과 억압이다(Sidanius et al., 2004:851). 학교, 종교, 결혼, 금융과 같은 사회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직과 성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 제도를 통한 차별과 억압은 개인을 통한 차별과 억압보다 더 안정되고 체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차원의 차별과 억압이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회 이념이다(Sidanius et al., 2004:868-870). 집단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용인하고 더 나아가 위계에 따른 차별 대우를 정당화하는 사회 이념은 제도 차원의 차별과 억압이 존속하는 데 필요한 윤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체제 정당화 이론에서 설명하는 차별 기제와 매우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이 사람들로 하여금 차별을 외면하거나 정당한 처우로 몰아가려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듯이 차별과 불평등을 용인하는 사회 이념, 즉 능력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현실에서 집단 사이의 불평등과 차별이 어떤 형태와 규모로 구현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능력주의로 대변되는 시장 정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소득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문제의식이 덜하며 (Choi, 2013), 능력주의에 대한 대중의 믿음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불평등한 자본주의 체제를 존속할 수 있게 하는 이념적 근간이라는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Alwin, Gornev & Khakhulina, 1995; Kluegel, Csepeli, Kolosi, Orkeny & Nemenyi, 1995; Kluegel & Miyano, 1995; Lane, 1986).

그러나 사회의 모든 이념이 집단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정당화하는, 즉 지배 집단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에는 지배층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이념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지배 집단의 이념이 사회 전체의 지배 이념으로 통용된 적은 드물다(Abercrombie & Turner, 1978). 따라서 사회 지배 이론에서는 집단 사이의 불평등한 위계와 그에 따른 차별 대우를 개선하려는 평등 지향적 사회 이념과 이를 실천하는 사회 제도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여성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에 저항하는 여성주의,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투쟁하는 인권 단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국선번호인제도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평등 지향적 사회 이념 및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도가 높아질수록 기존의 위계와 그에 따른 차별은 당위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사회 지배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억압과 차별의 구현 수준은 위계 지향적 이념과 위계 지양적 이념 사이의 제로섬 역학 관계, 즉 평형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Sidanius et al., 2004:851). 두 이념 사이의 평형력이 어떤 지점에서 균형을 이루는가에 따라 차별과 억압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 정체성 이론, 체제 정당화 이론, 사회 지배 이론 등 세 가지 이론을 통해 차별의 기제를 살펴보았다.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인 차별을 근절하려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여전히 존속하는 이유는 세 이론의 주장처럼 자신과 내부 집단의 우수성을 남들에게 돋보이고 싶은 동기, 현 사회 체제의 정당성을 믿고 싶어 하는 바람,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선호하는 위계 지향적 본능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유유상종을 통해

형성되는 사람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경계, 즉 내부 집단과 외부 집단의 구분 역시 의도치 않게 차별을 부추기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 3) 차별을 보는 관점

차별은 평등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차별은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개인들 간의 특성 또는 집단 간 특성의 차이를 인정하는데 실패하는 것이다(민무숙, 이수연, 박영도, 이준일, 2004:19). 이러한 불평등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사회병리현상을 불러오며 통합을 저해하는데, 특히 뒤처지는 사람 자신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조영달, 2012:53).

과거 위계적이고 고정적인 사회적 위치에 따라 상이한 권력을 분배하던 전통사회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자본주의가 도래하고 개인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면서 군주로부터 권력을 획득하려는 정치적 요구가 평등의 개념을 촉진하게 되었다(민무숙 외, 2004:19). 즉, 과거에는 특정한 귀속적 요인들로 인해 사회적 위치나 권력이 분배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특정 귀속적 요인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입장을 버리는, 평등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평등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다(황옥경, 2011:318). 기본적으로, 인간이 신 앞에 평등하다는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평등과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본질적인 평등의 개념이 존재하지만, 개인이 지니고 있는 상대주의적 관점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속성을 강조하는 본체론적인 평등으로 평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민무숙 외, 2004:21).

이에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모두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관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등은 모든 사람이 성별, 피부색, 정치적 신념 등에 상관없이 개인적 자질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는 대우의 평등 또는 대우의 일관성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초기 관점인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모두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엄격한 평등이론은 모든 사람이 성별, 가정배경, 피부색, 정치적 신념 등에 상관없이 개인적 자질이나 능력에 따라 대우받아야 하며,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해 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그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부족하게 보이거나 대수롭지 않게 볼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조순경, 김선옥, 정경아, 정형옥, 한승희, 2002:7). 엄격한 평등이론은 공공연한 차별행위를 금지시키는 데 많은 공헌을 했지만,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고, 동일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본질적으로 무엇을 같게, 또는 다르게 대우해야 할 차이인지, 그리고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조순경 외, 2002:7).

이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결과의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결과에서의 평등을 강조하는 관점이 나타났으나, 앞서 논의했던 대우의 평등이 개인의 출발점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결과의 평등은 차별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나 차별적 요소에 대한 검토 없이 동등한 결과를 획득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기회에서의 평등을 강조하는 관점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기회의 평등은 개인에게 출발점을 동등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회구조적으로 이미 출발점이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진정하게 동일한 출발점에 놓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회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민무숙 외, 2004:24).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형태의 선천적인 차이를 인정하긴 하지만 인종, 성별, 연령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평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다(민무숙 외, 2004:19). 즉, 차별에 대한 인식은 평등에 대한 관점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 문제, 나아가 개인에 대한 인정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Honneth는 개인이 긍정적인 자기실현을 해나가는 과정에는 필수적으로 타인의 인정이 필요한데, 한 개인이 사회로부터 차별이나 무시로 인해 정당하게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위를 거부당하게 될 경우, 무시를 당한 사람은 자신을 긍정할 수 없게 되고, 불평등한 대우의 결과로 개인의 정당한 사회적 관계가 파괴되고 훼손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정투쟁을 전개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김원식, 2013:241 재인용). 우리 사회에도 성별이나 종교, 출신지역, 인종, 경제적 수준, 문화적 특성 등에 따른 무시와 오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시와 구조적 오인은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방해하고 사회부정의를 재생산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김원식, 2013:241).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무시와 차별, 그리고 오인이 지속되어 정의롭고 윤리적인 사회가 되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하게 될 것이다.

한 개인은 자신의 욕구나 욕망에 대하여 적절한 보살핌을 받고 또 대인관계에서 스스로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느끼면서 자기 확신을 얻게 되는 사랑의 축과 모든 개인이 평등한 권리를 지닌 존재로 인정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자기 존중의 의식을 얻게 되는 존중의 축, 그리고 개인의 독특한 특성과 능력이 사회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음으로써 나타나는 존경의 축 등 세 가지 축을 통해 인간의 건강한 자아가 형성된다(Honneth, 1995:118-129). Honneth는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간주하였으며, 도구적 이성을 앞세워 모든 것을 목적과 수단 또는 이해타산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리거나, 인간들 간의 관계를 사물들 간의 관계로 환원시키는 물화현상이 사회적 병리현상의 근저에 존재한다고 보는데, 감정과 이성이 교차하는 인간관계,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을 배려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무가치하고 피해야 할 것들로 바라보는 물화현상을 극복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인정관계의 형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Honneth, 2008:52-63; 이문수, 2012:32 재인용). 결국, Honneth의 이론은 정의의 관점에서 타자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이러한 타자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면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문수, 2012:40). 이후 Fraser는 사회적 제도나 정책을 구현함에 있어 모든 개인을 서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상호작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참여의 동등성’ 원칙을 제시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Honneth가 주장한 인정 이외에 재분배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Fraser, 2003:34-36; 이문수, 2012:34 재인용).

중요한 것은 Honneth나 Fraser 모두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차별과 무시, 멸시와 오인으로 인한 몰인정, 그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고통, 제도적 불평등 등과 관련된 인정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분배 및 재분배와 관련된 정책들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차별에 대한 관점이나 이에 대한 대응도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평등에 대한 원칙을 인지하고, 이 시대와 상황에 가장 적절한 평등의 원칙을 모색해가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 간의 합의의 과정을 거쳐 발전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민무숙 외, 2004:25-26).

## 2. 청소년과 차별

우리 사회와 같이 유교적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 자체에는 긍정적이지만, 집단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권력에 복종하고 상급자의 명령에 따를 것을 강조하다 보니 개인의 요구나 권리는 억제되는 경향을 가지는 등 조화를 강조하고 위계를 존중해왔다(김동춘, 한홍구, 조효제, 2006:30-31). 유교적 규범과 가족주의로 인한 권위주의는 긍정적으로는 조화와 위계에 대한 강조와 존중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면으로는 남성에 대한 우월성 강조와 여성비하의 관행과 같은 성차별, 어른이 아이를 무시하는 태도와 같은 연령차별 등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산물로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특성이나 개성, 개인이 가진 의견과는 상관없이 성별이나 연령, 위계 등에 따라 권위에 복종할 것을 강조해온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 문화는 우리의 인식과 관행 속에서 개인에 대한 존중이나 평등에 대한 가치보다 차별이라는 태도가 자라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왔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높은 교육열로 인해 발생된 학력에 대한 차별과 경제상황에 대한 차별, 장애 및 외모 등 신체적 특징에 대한 차별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문화가족이나 이주노동자, 중도입국자 등에 대한 인종차별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범위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주의, 인종주의, 가부장제, 비장애인 중심주의, 이성애 주의 등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권력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이 사회에서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표현은 당위적인 진리가 아닌 추구해야 할 희망적 가치가 되고 있다(김동춘 외, 2006:167-168). 현대사회로 오면서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과 노력이 있었고 과거에 비해 분명히 많은 사람에게 인권이 부여되었지만 성별, 외모, 학벌, 연령, 지역주의 등 다양한 범주의 권력구조 내에서 여전히 차별은 존속되고 있고,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들 역시 그들이 갖는 생물학적, 사회적 특징으로 인해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으로 차별적 환경에 놓여있다(송인한, 권세원, 정은혜, 2011:202).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 외모에서의 차별, 경제적 환경에서의 차별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차별에 대한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송인한 외, 2011), 주관적 안녕감(최현주, 박선영, 2015)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아동 무차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5조는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청소년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 대해 보이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차별 개선은 UN아동권리협약 및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아동청소년보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이자 개선이 시급한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그 중 차별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권고하였으며, 특히 차별의 법률적 정의에 성적지향 및 국적에 기반한 차별금지가 명시적으로 포함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 다문화 또는 이주노동자 가정, 탈북자 가정, 난민가정 출신 아동 및 장애 아동과 미혼모(청소년 미혼모 포함) 들에 대한 차별이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식제고 및 대중교육 캠페인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아동 간의 격차 예방을 위해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배정을 평가하고, 사회적 약자 우대조치를 필요로 하는 빈곤 혹은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략적 예산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부, 국회 및 민간단체가 노력해 왔으나 차별금지 대상 중 성적지향, 즉 동성애자 여부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08년 17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어 2010년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타당성, 실효성을 검토해왔으나, 차별금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추진을 중단하였다. 이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발의를 해왔으나, 성적지향 등의 내용을 반대하는 여론이나 일부 단체의 저항으로 인해 입법이 철회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및 유엔아동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권고안이기도 하지만,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며, 사회 각 단체 및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지적한 바 있지만, 차별은 단지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다. 취약계층과 소수집단과 같이 소위 ‘낙인이 찍힌 집단’의 구성원들은 광범위한 맥락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차별로부터 기인한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은 개인의 심리적인 안녕을 위협한다(Schmitt, Branscombe, Postmes & Garcia, 2014:1). 특히 최근 가정의 소득이나 주거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만이 아닌 문화적 기회나 교육 기회, 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이들의 의식에까지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차별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인종 및 문화 차별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차별, 성적지향이나 연령차별 등이 이슈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차별연구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 장애인 차별,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 노동시장 내에서의 비정규직 차별 등의 주제가 인권이나 정신건강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 가정에 대한 차별의 주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차별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편인데, 2011년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서울시 아동인권실태조사’ 등이 청소년 인권 문제의 일부로 차별을 다루고 있으며, 그 외에는 자살이나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차별을 다루고 있는 몇몇 연구들(예, 정영순, 전종설, 2010 ; 송인한 외, 2011; 최현주, 박선영, 2015 등)이 수행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장 흔히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은 교육이다. 교육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제4조 제1항)고 하는 교육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은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고, 그리고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이 ‘천부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아동의 평등 및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즉, 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식과 기술, 그리고 다른 능력, 인간의 존엄성, 자부심과 자신감을 진전시킴으로써 형식적인 취학을 넘어 광범위한 인생의 경험 및 개인적, 집단적으로 아동의 개성과 재능,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에서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유하도록 하는 학습과정을 아우르는 것(김지혜, 2014:22)으로, 한 국가의 모든 성원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교육에서는 ‘기회균등과 능력주의’라는 이념이 이념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지배해왔고, 표면적으로는 공교육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청소년들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공교육만으로는 평등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의 균등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으며, 많은 교육사회학적 연구를 통해 교육이 현재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김경준 외, 2014:30). 즉, 교육 자체가 가지는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학력이나 학벌이 인격수양과 학문 함양이라는 전인적 기능보다는 사회지위의 상승 또는 사회경제적 기득권 고수를 위한 도구적 기능에 치중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이정규, 2003:166).

기성세대들이 교육적 성취라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신분상승이나 경제적 성취를 이뤄낸 것과는 달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부의 대물림 현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교육에 대한 접근기회는 물론 직업선택 및 향후 경제적 소득이 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조영달, 2012:59). 이렇게 부모의 직업, 학력, 지역, 빈부와 같은 사회계층의 격차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로 작용하여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부와 빈곤의 대물림은 사회적 이동성을 떨어뜨려 개인의 노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는 점차 낮아지고 사회적 열패감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김원식, 2013:231).

양극화 현상과 같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불평등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과 배제, 무시를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차별 중 하나는 학업성적에 의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상벌을 줄 수는 있지만 성적이 낮다고 모욕감을 주거나 낙인을 찍는 등의 행위로 한 개인에게 열등적인 자아상을 심어주는 것은 개인의 정신적, 교육적 발전을 저해하는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가정형편, 신체조건, 가족형태 등과 같은 개인적, 환경적 특성으로 차별받아서 안 되지만, 이러한 특성에 따라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성차별과 학업성적, 외모나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가족유형,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같은 다른 조건들이 결합하면서 차별의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 학업성적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경우에 차별받는 학생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이거나 한부모가정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차별 피해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이외에도 개인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활동의 기회를 제한받거나 배제되는 것 역시

차별행위라고 볼 수 있다(김지혜, 2014:35-36). 또한 미혼모나 성소수자와 같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경우 더욱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데, 특히 미혼모 청소년의 경우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학교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김지혜, 2014:28). 미혼모 청소년의 경우 휴학이나 자퇴 권고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학교를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경우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순혜 등, 2007:157-158). 성소수자 청소년 역시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학교를 떠나기도 하며, 학교에 그 사실이 알려진 경우 징계를 받게 되는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병철, 김지혜, 2006: 89-90). 물론 이러한 차별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차별을 극복하고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을 넘어서 개인이 가진 사회적 배경이 사회적 열패감이나 좌절감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에 직면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우울하고 암담한 일일 것이다.

더구나 공교육은 국민의 평등한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교육 환경적 요인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공교육 밖으로 벗어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부정적이고, 그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차별은 더욱 심할 수 있을 것이다(김지혜, 2014:30). 과거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이라고 하면 대체로 학교부적응 또는 학교에서의 퇴출·퇴학 등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일컫었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서는 이들이 학교를 벗어난 것일 뿐 배움을 그만둔 것은 아니라는 긍정적 시각이 확산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 안 다닌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고, 공부 대신 기술을 배우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서정아, 권해수, 정찬석, 2006:91-117).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로부터 학교 밖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와 같은 사회적 책임 차원의 관심을 받기보다 단순히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곳에, 있으면 안 되는 시간’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일탈 청소년’으로 낙인찍히며, 여러 가지 기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김지혜, 2014:26)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교‘부적응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학교라는 틀 내에서 적응하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이라는 구조가 가진 문제를 돌아보기보다는 개인이 가진 문제로 규정해버리는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들을 학교가 얼마나 포용력 있게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청소년을 위한 기회를 얼마나 차별 없이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기회 역시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고 스스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학업성적, 성별, 지역, 외모 등과 같은 다양한 틀과 잣대로 인해 자신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한다. 가정과 사회 환경으로부터 경험한 열악함과 태생적 문화자본의 한계,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획기적인 투자나 사회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보다 높은 위계로의 진입이 어려운 ‘성취의 악순환’에 함몰된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생활여건과 상황이 각자 다르고 학문에 대한 열의나 집중과 같은 선천적·후천적 환경이 다른 상황을 볼 때 이들의 경쟁은 이미 공정성이 떨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이정규, 2003:160).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문화 속에서,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청소년들은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이라는 잣대로 피해자가 되곤 하지만, 동시에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 짓는 또 다른 편견이나 차별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따돌리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즉, ‘나와는 다른’ 생각이나 속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동시에 이로 인해 촉발되는 공격성향을 기성 권위 대신 나와는 또 다른 또는 나보다 힘없는 약자나 열등한 사람에게 분출하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로 편견을 활용하는데, 상대집단을 멸시하고 차별함으로써 스스로를 우월하게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도 한다(Fein & Spencer, 1997; 한규석, 2013:495 재인용).

청소년 차별과 관련하여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모두 포함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기간이 제한적임을 감안하여 학교라는 제도권 내에 속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차별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하겠다.

## 제 Ⅲ 장

---

# 청소년 차별 관련 법, 제도 현황

1. 법률에서의 청소년 차별현황
2. 청소년 차별 관련 제도



## 제 III 장 청소년 차별 관련 법, 제도 현황

청소년 차별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차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도는 물론, 보다 작게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도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차별은 인권과 관련한 법률이나 제도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으며, 청소년 차별과 관련한 내용은 차별과 관련된 일부 법률 및 제도 중에서도 매우 일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법무부에서 성별, 장애, 인종 등의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차별금지 대상에 동성애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에 밀려 국회에서 논의조차하지 못한 채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이후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발의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입법이 철회된 상태이다.

차별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그리고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그리고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 중 청소년에게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법률을 살펴보고, 청소년이 차별을 당했을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법률에서의 청소년 차별현황<sup>3)</sup>

### 1) 개관

#### (1) 차별 기준의 정당성

‘차별(差別)’이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이고 ‘차이(差異)’는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를 뜻한다.<sup>4)</sup> 즉, 청소년 차별이란 청소년과 성인과의 다름에서 기인하는 차이를 인정하거나 그것에 의한 대우가 아니라, 다른 ‘등급이나 수준’ 등을 설정하여 구별하여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차별은 구별하는 작위적 기준을 설정하여 다르게 대우하는 것으로, 다름에 기인한 차이에 따른 대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법제도상의 청소년 차별 연구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청소년을 구별하는 작위적 기준은 무엇인가?’이다.

‘차별’과 관련한 법제도적 검토의 출발점은 권리, 권한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 검토가 ‘권한 있는 자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면, 청소년 차별에 관한 법제도 연구도 ‘청소년 권리의 범위와 청소년의 권리 침해 및 권리 제한’에 관련된 것이다. 청소년의 권리를 헌법과는 ‘다른 기준’으로 부여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권리부여나 권리행사제한은 정당한지 등에 관해서 검토하게 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상의 차별이 주된 연구대상이 된다. 즉, 그 차별 기준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등을 분석하고 그 차별기준이 정당한지가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상위법인 헌법상 보장된 권한의 범위와 하위법령에 의해서 제한되는 청소년의 권한 제한에 관해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권리, 권한, 기본권, 인권, 자연권’ 등의 용어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 (2) 인권, 기본권, 권리

일반적으로 인간답게,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권리를 뜻하는 말로 인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인권은 생래적이고 자연적인 권리를 포함한 도덕적 권리까지도 포괄한

3) 본 절은 강지명 박사(공동연구원)가 집필하였음.

4)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6583200>에서 2016년 10월 1일 인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모든 기본권은 인권이지만, 인권이 곧 기본권은 아니다. 기본권은 헌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따라서 본 청소년 차별연구에서 말하는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을 뜻하며 이는 인권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 하위법령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규정이 청소년의 권리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된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권리’즉, 권한부여 자체가 차별적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차별연구는 청소년에 대한 기본권보장의 유무와 정도, 기본권 제한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헌법상의 권리가 하위법령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正当한 제한인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로는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근로기준법, 교육법,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 (3) 청소년의 연령범위와 학생신분, 군인신분

청소년 관련 법률은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범위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만 18세 미만자가 아동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만 9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의 자가 청소년으로, 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동일하다)은 만 19세 미만자의 자가 아동청소년으로,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자가 소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청소년 관련 법률 중 연령이 아니라 신분에 의해 법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있는데, 대표적인 신분규정이 교육법에 의한 학생신분이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학생에 해당하고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sup>6)</sup>

특수한 사례로, 학생과 군인신분이 중첩되는 경우도 있는데,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이 이에 해당한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5조(병적)에서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고등학생이면서도 군인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 동 학교 학생은 일반교과교육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을 받게 되고 그 외의 교육내용인 군사교육과 전문항공교육에 대해서는 군의 교육을 받게 된다. 항공과학고등학교

5) 권영성 (2010). 헌법학원론. 법문사. p.287.

6) 연령의 측면에서는 학생신분의 상한연령 및 하한연령과 청소년과의 관계는 큰 의미가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생연령의 하한은 만 5세이고 상한연령은 각급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있다. 조기입학한 경우를 포함하여 학생에 해당하는 하한연령은 만 5세가 된다. 상한연령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교사는 중등교사자격을 가진 군인이다. 병적에 편입되기 때문에 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은 군형법 제1조 제3항에는 군형법의 적용대상인<sup>2</sup>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형사사건처리절차상의 특례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기회가 박탈된다. 법률상 군인신분인 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비행행위나 범행을 저지를 경우,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우리나라 소년사법이 마련한 제도의 밖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차별에 관한 법제도 연구는 연령과 신분을 기준으로 하는 차별을 모두 검토해야 하며, 청소년의 권리의 부여와 권리행사의 제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을 미성년자에 국한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기본법의 하한연령에 해당하는 만 9세 이상의 청소년 중 미성년자를 청소년 차별 법제도 연구대상으로 한정한다. 또한 미성년자 중에는 학생신분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학생과 비학생 청소년으로 나누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4) 청소년의 권리주체성

연령적으로 미성년자이면서 신분적으로 학생인 자의 권리주체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따르고자 한다. 성인에 이르지 못한 학생의 권리주체성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의 기본권이 강조된 헌재결정<sup>7</sup>, 헌법상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도 보장된다는 현재의 결정<sup>8</sup> 등 다양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청소년은 권리의 주체성은 이미 인정받았다. 그러나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 '미성년이라는 연령과 학생이라는 신분'이 주는 권리제한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재판소도 18세 미만자의 22시 이후 야간 노래방 출입제한과 같은 경우는 행복추구권 행사의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하고 있다.<sup>9</sup> 이것은 청소년의 권리주체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국친사상에 의한 교육적 복지적 개입에 대해서는 기본권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헌법상의 기본권과 국친사상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이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도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7) 헌재결 (1993.5.13). 92헌마80, 판례집5-1, 365-385.

8) 헌재결 (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 병합, 판례집12-1 456.

9) 헌재결 (1996.2.29). 94헌마13 판례집8-1 126.

기본권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의 교육적·복지적 개입 측면에 따른 기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헌법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기본권의 행사 및 기본권 침해 시 법률에 의한 구제수단에서 성인과 같은 정도의 기본권 주체로서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은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구제가 아니라 민법상의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이 행사되며, 이러한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의 행사는 민법상 친권 관련 규정을 통해서 행사된다.

역사적으로 유교적 전통사상에 의해 형성된 부모와 스승에 대한 복종 및 순종이라는 문화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맥락에 의해서 절대적 복종을 의미한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나 불 법한 복종의 문화가 아버지와 스승과의 관계에 적용된다. 이러한 문화는 법률적으로 친권자에 대한 ‘복종’이라는 단어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가 삭제되었다가를 반복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sup>10)</sup>

자녀 또는 제자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는 문화 현상은 국친사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책을 마련하고, 기본권 침해의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국가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교육적·복지적 개입을 청소년에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인식조차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10세가 넘으면 소년원 송치처분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면서도, 국가는 기본권 제한에 관해서는 살펴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시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보호처분의 내용이 형사제재의 하나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책임연령이라는 기준으로는 형사미성년자, 형사책임무능력자의 기준연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보호처분이 소년의 비행행위에 대한 교육·복지적 개입이라는 생각에 경도된 나머지, 보호처분이 반사회성을 전제로 한 국가의 기본권 침해행위라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학생’이라는 신분을 통한 청소년 차별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아버지와 교사에 대한 복종과 순종이 미덕인 전통사상과 법제도적 배경 하에서 학생에게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떠오르지조차 않는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인간이라는

10) 민법 제 909조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제정 당시에는 “부의 친권에 복종한다.”(1958)라고 규정되었다가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라고 개정되면서(1977) ‘복종’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다.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라고 다시 개정되었다(1990).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로 개정되면서(2005) ‘복종’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으로 삭제되었다.

꼬리표는 헌법상 기본권 향유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퇴색하게 한다. 그러나 헌법의 기본권과 대표적인 국제인권조약인 ‘1959년 유엔아동권리선언’이나 ‘1989년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학교현장에서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경우, 권리향유의 주체가 아니라 청소년(아동)을 권리행사의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이 적용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991년 9월 25일 서명한 이후 11월 20일에 비준하여 협약상의 아동권리를 실천하기 위한 입법화와 관계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비학생 및 성인에 비해서 학생 청소년이 차별적으로 권리침해를 받게 되는 양상은 예견되어 왔으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2007년 12월 14일 신설되었다. ‘1959년 유엔아동권리선언’이나 ‘1989년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학교현장에 적용될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넣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구제절차를 거칠지에 대해서는 실천 가능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 2)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 차별

### (1) 청소년기본법상의 기본이념

청소년기본법 제1조에서는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제2조 기본이념에서 기본권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이라는 부분과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이라는 부분이 그것이다.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침해는 법률의 수준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한편,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이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의, 청소년을 차별하는 ‘다른 원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는 국가주의와 사회주의적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구별과 배제의 사회문화원리이다.

후자에 대해서 지그문트 바우만은 구별과 배제를 작동원리로 하는 사회시스템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쓰레기가 되는 삶들<sup>11)</sup>이라는 비극적인 표현을 하였다. 그만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별되는 자’는 낙인이 찍히고 사회시스템에서 배제되기 쉽다는 뜻이다.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구별기준으로 삼으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 불건전한 시민’이 발생한다. 즉, 이런 기준을 세우고 나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미달인 청소년을 상정하게 된다.

‘국가주의와 사회주의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기본권 제한의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위 청소년기본법 제2조의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중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민주시민’은 동 조의 목적을 의미하고, ‘자랄 수 있도록’은 교육적·복지적 국가개입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청소년기본법 제2조는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주의와 사회주의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상당히 충격적인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경적인 이념이 국가주의와 사회주의이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배경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는 많은 문제를 낳았고 복지국가가 많은 유럽지역에서 개인의 ‘자본’에 대한 복지적 개입, 즉 국가적 개입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제한의 근거로 사회주의를 가미하였다.

사회주의란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늘의 자유세계에 있어서는 민주사회주의적 용법이 거의 일반화됨으로써 공산주의와는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된다. 최근 사회주의란 말은 다음 다섯 가지의 각기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sup>12)</sup>

- 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자유·평등·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사상과 운동을 뜻하는 경우(고전적 사회주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 ②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만을 가리켜 뜻하는 경우
- ③ 사회주의의 목적만을 가리키는 경우(자본주의보다 한층 훌륭한 사회를 뜻하는 경우)
- ④ 공산주의의 첫째 단계 또는 보다 낮은 단계를 뜻하는 경우(공산주의자 특유의 반논리적 용법)
- ⑤ 민주사회주의적 용법(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완성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 및 운동 또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형태를 뜻하는 경우)

11) 지그문트 바우만(제)/정일준(역) (2008). 쓰레기가 되는 삶들. 서울: 새물결.

12)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6407&cid=40942&categoryId=314330>에서 2016년 10월 2일 인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을 전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소년기본법은 민주사회주의적 의미를 배경에 두고 있다고 언뜻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육적 복지적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국가와 사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고, 동조는 규정 해석상 ‘국가와 사회’의 목적을 위해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은 국가의 교육·복지적 개입을 통한 사회유지를 위해 제정한 것이 아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대한민국의 전통윤리와 사회윤리, 도덕, 질서 등이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청소년 개인적 차원에서 선언되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법이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법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소속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람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소속감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특히 ‘국가공동체 의식에 대한 자질 양산’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것과 분명하게 다른 이념이다.

## (2)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친사상(국가후견주의)에 의한 기본권침해나 권리행사방해를 막는 역할을 하는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각종 청소년교육활동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선언적 조항으로 실질적인 기본적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책, 대비책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청소년 차별의 가장 큰 맥락은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나 권리행사 방해 시 구제책이나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제2항에서는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구제책이나 대비책은 없다. 제3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의사표현 및 결정의 자유’나 제 4항의 보호받을 권리를 통한 건전한 성장권의 명시와는 달리, 제5항은 청소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밝히지 않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전반에 걸친 내용과 청소년에 대한 국가후견주의(국친사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정 내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개입하는 일에 대해 순종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해석된다.

### (3) 청소년의 자치권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권리행사의 제한 시 구체책이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침해되었을 때의 구체책이나 대비책이 없는 것은 없는 권리나 마찬가지이다. 성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될 경우에는 구체책이나 대비책을 마련하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 차별의 현황이다.

## 3)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 차별

### (1)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동 법률은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업주와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동법을 통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업주가 제한을 받는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게임을 들 수 있다. 16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동의를 있어야 하며, 심야시간대(오전 0시~오전 6시)에는 게임제공업체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특정 시간대에 업주에게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데, 시간기준인 오전 0시~6시는 한국의 시간이다. 외국에서 접속하는 한국청소년은 낮이라도 한국 시간이 심야시간대에 해당하면 게임을 제공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청소년은 외국에서 자유롭게 게임을 할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

## (2) 청소년 의사결정의 존중하는 규정과 통제하는 규정

대부분의 청소년보호법의 규정들이 청소년의 기본권제한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도모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청소년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규정도 있다. 인터넷게임 중독, 약물중독 등 피해청소년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청소년보호법상 마련되어 있다.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보호법상의 규정은 업주의 제한을 통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성인 업주의 기본권침해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의 기본권침해의 측면이 논의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규제의 측면이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논의이다. 그래서 미디어의 문제는 국가공권력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미디어 간에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시각도 등장하였다.<sup>13)</sup>

또한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규제가 역사적으로 ‘새로운 현상의 출현과 규제강화’라는 쳇바퀴를 돌고 있는 현상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소년의 판단능력을 신뢰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결정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시되기도 한다.<sup>14)</sup>

## 4)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 차별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역차별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여러 시설에서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제19조의 교육적 선도를 실시할 때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청소년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13) 師岡 康子 (モロオカ ヤスコ), “テレビ規制と青少年保護を考える 「放送と青少年に関する委員会」の見解によせて”, 法学セミナー, 日本評論社 2001. 3.

14) 右崎 正博 (ウサキ マサヒコ), 青少年保護条例の過去・現在・未来 (特集 青少年保護と表現の自由 青少年法案とその周辺) 東京都条例改正を中心に, 法律時報76卷9号, 日本評論社 2004. 8.

최근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31조에 신설된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같은 제1호 보호처분인 ‘보호자’ 위탁의 수준에 준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소년법상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감호’라는 용어는 제8호 및 제9호, 제10호의 소년원 송치에서 이해되는 것과는 다른 ‘감호’이다. 시설구금을 통한 ‘보살핌, 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소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 5) 학생이라는 신분에 의한 청소년 차별

### (1) 학교에서의 ‘권리주체성’ 인정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주체성이 인정되고 있지 않음은 친권자 및 스승에 대한 ‘복종 및 순종’문화와도 직결된다. 국가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교육적 개입을 한다는 사상은 우리문화와 결부되어 학생에게 ‘복종 및 순종’을 묵시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2007년 12월 14일 신설하였다. 그러나 헌법의 기본권과 대표적인 국제인권조약인 ‘1959년 유엔아동권리선언’이나 ‘1989년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학교현장에서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경우, 권리향유의 주체가 아니라 청소년(아동)을 권리행사의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이 적용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하고 인류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협약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교도소’의 ‘수형자’만큼이나 권리행사의 주체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권리의 주체성 자체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자유’에 있어서는 교도소 수형자만큼도 선택의 폭이 없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원의 인건비가 전부 국가예산으로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특정 종교의 강요가 묵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학교로의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 교칙위반으로 인한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적 처분으로 이루어진 징계가 가능하다. 대부분 교복, 실내화, 색조화장 등의 학교공동체소속이라는 표지의

훼손과 학생신분이라는 지위비행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교사지시 불이행’은 기존의 교칙위반과는 다른 맥락의 기준이다. 이것은 친권자에 대한 복종을 명시적으로 삭제하는 법률개정과는 반대되는 명시적 규범화의 맥락으로 청소년에게 복종과 순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정당한’ 교사지시에 따른 불이행이겠지만 정당한 교사지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일방이 하며 구제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학생이라는 신분은 본인이 납득할만한 정당한 지시를 받았는지와 관련 없이 복종 및 순종을 강제하는 장치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불이행 시 벌점을 부과하고 선도위원회나 자치법정을 통한 징계(교육적 처분)를 받고 있다. 교사지시불이행에 따른 벌점부과와 징계 시스템은 교사의 지시가 정당했는지에 관한 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의 판단 기준은 ‘특정 행위의 지시’에 대한 복종 및 순종의 여부가 아니라, 다른 대안을 선택할 기회가 학생에게 주어졌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가 생각하는 최선이 학생에게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음이 고려하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2) 학생자치권

청소년기본법에도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5조는 교육의 자주성을 담고 있는데, 특히 제2항에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참여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학생의 학교운영참여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학교운영참여권과 학생자치권은 동일한 권리가 아니지만 교육기본법에서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하다.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서 보장되는 사적자치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 중 하나로 보장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인 자치의 원칙에 의한 학생자치권이 문제된다. 학생도 학교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는 사적자치권리가 있다.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죄와 형벌의 종류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하게 되어 있으며, 법률은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통과된다.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법률을 통과시키게 된다. 사형부터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 자격정지, 자격상실, 벌금형 등등 개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국가의 개입은 반드시 국민의 손을 대신하는 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에 대해서는 자치권한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선도조치나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조치들은 학생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

다. 더욱이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성인의 손으로 만들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성인이 집행하고 학생들은 집행의 대상이 될 뿐이다. 단순한 규범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교육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헌법은 물론이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현재 학생 신분에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 6)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청소년 차별

### (1) 형사책임연령산정에서의 차별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제재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책임연령(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형사제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소년범죄가 저연령화·홍포화됨에 따라 형사책임연령의 하한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sup>15)</sup> 최근에는 일명 '용인캣맘 사망사건'으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인하문제가 재차 제기되었다. 대부분 '형사책임 하한연령 韓·日 14세...영국은 10세'<sup>16)</sup>와 같이 외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과 비교하면서 연령인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사책임연령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논의방법은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된다.<sup>17)</sup> 그러나 이러한 단순 숫자 비교는 심각한 논리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형사책임연령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18)</sup> 세계 각국의 형사책임연령을 살펴보면 7세부터 18세 미만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sup>19)</sup>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형사책임연령

15) 중앙일보 (2012.1.3). 2011년 11월 11일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에는 형사책임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학교폭력대책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7044398>에서 2016년 10월 5일 인출.

16) 매일신문 (2015.10.23).

[http://www.imaa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9216&yy=2015](http://www.imaa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9216&yy=2015)에서 2016년 10월 5일 인출.

17) 장영민 (2004).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진수 (편),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개선방안 [II](pp.132-226).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호노 (2010).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법조 59(12), 41-76; 이덕인 (2012).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23(0), 5-40; 정재준 (2012).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문제를 위한 제언. 형사법연구, 24(1), 25-61; 박찬걸 (2013).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22, 191-222; 김두상, 박상식 (2016). 형사처벌 대상자의 연령인하와 치유사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4(2), 1-20. 등

18) 이에 대해서는 강지명 (2004). 비행소년에 대한 소년사법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103-107; 김성돈, 강지명 (2012).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은 우리나라에서는 ‘형벌’ 부과가 가능한 연령을 의미한다. 하지만 각국의 형사책임연령은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입장에서는 보호처분도 반사회성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법적 개입이므로 한국의 형사책임연령은 10세가 된다.

다른 나라의 시각에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형사제재의 일환이고 이것은 형사책임연령 계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보호처분은 소년의 비행에 대한 교육·복지적 개입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벌이 아니면 형사책임연령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서는 보안처분도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안처분의 부과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법률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법률 수준의 절차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다. 최근 소년분류심사원의 미결구금자에 대한 국선보조인의 선임, 진술거부권 관련 규정의 신설을 통해서 소년보호사건처리절차가 교육·복지적 국가개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보호처분의 내용을 보면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보안처분뿐만 아니라 시설구금처분(소년원송치)도 가능하다. 성인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로 인정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를 형사제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육·복지적 개입에 대한 청소년 차별의 문제가 심각함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소년사법 적용 하한연령의 경우 그리스, 아일랜드가 8세와 7세로 매우 낮아 보이지만 교육적 처분만 가능하고, 시설구금은 소년원이라 할지라도 13세 내지 15세가 넘어야 가능하다.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형사책임하한연령이 8세이지만 형사소송법상 12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통해서 8세 규정은 사문화되었고, 실질적인 형사책임연령은 12세인 상태이다.<sup>20)</sup> 대부분 소년사법의 보호처분을 형사제재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의 하한연령이 7, 8세로 낮게 보고된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시설구금가능연령은 15세 전후부터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볼 때 ‘형사책임연령<sup>21)</sup>이 우리나라가 낮다’라는 주장은,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 Law Reform Commission. (2000). Report on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hong kong. pp.15~28; Scottish Law Commission. (2001). Discussion paper on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Discussion Paper 115), pp.49-51; Junger-Tas, J., & S. H. Decker. (Ed.) (2006). International handbook of juvenile justice, New York, Dordrecht: Springer-Verlag; Penal Reform International. (2013).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Justice for Children Briefing No. 4). London: Penal Reform International.

20) Criminal Procedure (Scotland) Act, Sections 41 and 41A(1)-(2), (Legislation.gov.uk)

21) Junger-Tas, J., & S. H. Decker (eds.) (2006). 연령 참조.

표 III-1 각국의 소년사법제도 속에서의 형사책임연령

국가	소년사법적용하한연령	형벌적용가능연령
대한민국	10(시설 구금하한 10세)	14/19
오스트리아	14	18/21
벨기에	16/18	16/18
일본	하한 없음(구금하한 12세)	14/20
덴마크	15	15/18
영국 <sup>22)</sup>	10/12/15 <sup>23)</sup>	18
독일	14	18/21
그리스	8 <sup>24)</sup> /13	18/21
아일랜드	7/15	18
스웨덴	15	15/18
스위스	7/15	15/18

‘/’는 유동적인 소년사법 적용의 범위를 뜻한다.

(2)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차별

성인 성매매피해자는 의사에 반하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시설에서도 수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는 그러한 권리가 법률상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비자발적 성매매피해청소년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보호와 지원이라는 미명하에서 오히려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sup>25)</sup> 자발적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부과도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지만, 비자발적 성매매청소년도 대상청소년으로 분류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교육·복지적 개입이라는 미명하의 인권침해가 분명하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기저에는 국가의 교육·복지적 개입이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부족이 깔려 있다. 보호처분이 형벌에 비해서는 교육적이고 복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성인에 대해서도 보안처분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안처분은 헌법상 기본권침해의 국가공권력발휘행위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을 기본권침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은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22) 잉글랜드 웨일즈 지방.

23) 15세 소년구금 가능연령(우리나라의 소년원에 해당).

24) 8세에서 13세까지는 교육처분만 가능하다.

25) 강지명 (2013).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담론, 7(2), p.168.

## 2. 청소년 차별 관련 제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차별과 관련하여 청소년 관련 법률 내에는 구제책이나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서 인권옹호를 위한 구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차별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자를 위한 인권상담전화를 운영 중이고, 서울, 광주, 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인권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차별관련 구제제도로는 서울시의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 및 어린이청소년 전문 인권보호관 제도가 있으며, 경기도, 서울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생인권 옹호관 제도가 있다.

### 1)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인권전화 1331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자를 위한 인권상담전화 1331을 운영하여 진정방법 등의 권리구제방안을 안내하고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유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화상담 외에 인권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하는 것도 가능한데, 요일별로 수화상담, 노무상담, 북한인권상담 등 특화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sup>26)</sup>.

그러나 주요 상담분야가 장애인인권, 노동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 이주인권, 성희롱, 다수인 보호시설, 군인권 등으로 청소년 전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며,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인권상담전화의 존재를 잘 알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차별문제를 국가기관에 문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도 인권전담기구를 운영하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17개 자치시도 중 서울, 광주, 충남 등 3개 지역에서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전담기구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성차별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이 성차별에 국한되어 있거나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폭력 피해상담과 겹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2016) <http://www.humanrights.go.kr>를 참고로 작성

## 2)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인권옹호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1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44조 1항에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이 외에도 서울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학생옹호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성적 등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체벌·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등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생인권문제에 대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 학부모, 선생님, 인권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상담과 구제신청에 따라 인권침해의 사실 여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우선 피해 학생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sup>27)</sup>.

그러나 이러한 제도 역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장 먼저 제도를 도입한 경기도조차 권역별로 3명의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하는 등 인권옹호관의 수가 매우 적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 학교밖 청소년의 이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 3)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전문 인권보호관 제도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2년에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발표하고, 2014년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청소년 인권강화 3년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서는 특히

27) 경기도교육청 경기학생인권의광장 홈페이지(2016). <https://edup.goe.go.kr>를 근거로 작성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리를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며, 노동인권 침해 시 구제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보호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조건 규정을 정리한 '청소년 노동권리수첩'을 제작하여 청소년과 사업주에게 배포하고, 여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휴일·휴게시간), 임금(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등 각종수당, 퇴직금, 임금체불 해결방안 등), 부당해고 해결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4개 노동복지센터(서대문, 구로, 성동, 노원)에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를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노동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며 노동인권 침해 시 구제방법 및 절차에 대한 상담 및 안내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였다(서울특별시, 2014:7).

그리고 기존의 시민인권보호관 3명 중 1명을 어린이청소년 전문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서울시 시정의 수행과정에서 관련되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인권침해 사항을 다루도록 하였다(서울특별시, 2014:11).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제도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따라 그 정책 대상이 어린이(0세~만12세)와 청소년(만12세 이상~만19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9~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일부를 정책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특히 노동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후기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차별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전문 시민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서울시의 소속행정기관 및 출연기관, 자치구, 서울시 위탁기관 등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어린이청소년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일상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 제 IV 장

---

#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1.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개요
2.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결과
3. 소결



## 제 IV 장

#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 1.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개요

청소년 차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설문조사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차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청소년의 차별 가·피해 및 목격 경험, 청소년이 생각하는 차별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사전조사

본 조사에 앞서 조사표 및 조사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FGI에는 초등학교 4명(4학년 2명, 5학년 1명, 6학년 1명/ 남녀 각 2명), 중학생 4명(1학년 2명, 3학년 2명/ 남녀 각 2명), 고등학교 4명(1학년 2명, 2학년 2명/ 남녀 각 2명)이 참여하였다.

#### 2) 표본설계<sup>28)</sup>

##### (1) 모집단 분석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당시의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28)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는 조사진행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본원에서 통합적으로 수행관리하는 조사임. 올해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에는 청소년의 사회인식 및 사회참여 실태조사, 청소년 진로 체험활동 실태조사,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청소년활동 참여실태조사, 청소년 차별실태 조사,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등 총 7개 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조사 중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 청소년활동 참여실태조사, 청소년 차별실태조사, 청소년 역량측정 조사 등 4개 조사는 동일한 표본설계의 방식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표본설계 관련 내용은 본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의 표본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가 집필하였음.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16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표 IV-1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 수 분포 - 초등학교, 중학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68,960	75,688	78,537	76,575	85,997	99,237
경기	111,646	120,900	124,124	120,138	134,725	151,815
인천	23,926	25,500	26,968	25,942	29,551	33,123
강원	12,347	13,249	13,691	14,124	15,872	17,700
충북	13,101	14,254	14,545	14,656	16,869	18,661
충남	19,628	20,968	21,176	20,826	23,641	25,991
대전	13,665	14,963	15,474	15,234	17,093	19,402
경북	19,911	21,103	22,160	22,129	25,596	29,227
경남	28,368	30,670	31,592	31,267	35,964	40,632
부산	23,588	25,808	27,453	27,130	31,546	35,662
대구	20,184	21,817	23,663	23,023	26,886	30,605
울산	10,037	10,730	11,305	10,903	13,021	14,837
전북	15,687	16,852	17,628	18,179	20,654	23,204
전남	14,369	15,742	16,432	16,818	19,368	22,017
광주	13,988	15,458	16,688	16,122	18,697	21,370
제주	5,990	6,229	6,640	6,470	7,333	8,128
합계	415,395	449,931	468,076	459,536	522,813	591,611

표 IV-2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 수 분포 - 고등학교

구분	고등학교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64,164	67,478	72,003	14,211	13,148	13,712	18,885	18,310	18,139	2,157	2,191	2,181
경기	118,967	118,930	120,442	3,839	4,111	4,137	20,378	20,562	21,821	2,597	2,543	2,636
인천	21,725	22,175	23,461	1,989	1,747	1,828	7,646	7,565	7,680	761	782	638

구분	고등학교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강원	14,012	14,405	14,596	157	157	141	3,393	3,516	3,535	214	190	155
충북	11,025	11,300	11,770	1,550	1,589	1,543	5,332	5,469	5,466	247	232	166
충남	17,632	17,236	17,382	2,221	2,221	1,873	6,114	6,203	6,189	447	341	289
대전	11,972	12,468	12,714	2,891	2,857	2,776	3,611	3,727	3,787	434	437	488
경북	19,905	19,307	20,493	2,576	2,627	2,645	7,115	7,051	7,214	233	219	139
경남	30,131	30,512	31,140	2,770	2,747	2,839	5,720	5,859	6,079	562	535	363
부산	21,346	22,383	23,956	3,510	3,596	3,739	9,151	8,893	8,891	1,210	1,239	1,080
대구	18,278	18,533	19,829	5,586	5,723	5,956	6,689	6,446	6,747	328	311	246
울산	10,437	10,688	11,480	1,049	937	979	3,064	3,293	3,242	262	248	182
전북	16,677	17,121	17,346	997	959	908	5,443	5,534	5,554	219	216	174
전남	13,496	13,600	13,723	2,224	2,251	2,318	6,433	6,445	6,791	213	203	131
광주	15,157	15,503	15,995	1,138	1,105	1,050	4,262	4,379	4,771	94	94	12
제주	5,022	4,949	5,091	229	226	222	2,247	2,187	2,281	143	134	106
합계	409,946	416,588	431,421	46,937	46,001	46,666	115,483	115,439	118,187	10,121	9,915	8,986

표 IV-3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분포 - 초등학교, 중학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598	598	598	384	384	384
경기	1,215	1,212	1,218	613	613	612
인천	241	241	242	134	132	132
강원	330	328	343	162	162	162
충북	262	262	258	128	128	128
충남	427	432	434	205	205	205
대전	147	148	148	88	88	88
경북	399	410	415	287	286	287
경남	477	484	488	272	272	272
부산	306	306	306	171	171	170
대구	220	220	220	124	124	123
울산	120	120	119	62	62	61
전북	384	389	390	209	209	208
전남	411	411	416	246	250	252
광주	153	153	153	89	88	88
제주	112	112	114	45	44	44
합계	5,802	5,826	5,862	3,219	3,218	3,216

표 IV-4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분포 - 고등학교

구분	고등학교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4	184	184	43	43	43	81	81	81	10	10	10
경기	352	344	338	13	13	13	82	82	82	13	13	13
인천	79	79	79	8	7	7	31	31	31	5	5	5
강원	86	86	86	1	1	1	28	27	27	2	2	2
충북	46	46	45	6	6	6	29	29	29	2	2	2
충남	76	72	70	10	10	9	39	39	39	4	3	3
대전	37	37	37	8	8	8	14	14	14	3	3	3
경북	119	117	117	11	11	11	60	60	60	3	3	3
경남	137	136	136	10	10	10	40	40	40	4	4	4
부산	81	80	80	14	14	14	42	42	43	7	7	7
대구	50	50	50	17	17	17	22	22	22	3	3	3
울산	36	35	35	4	4	4	13	13	12	2	2	2
전북	92	91	91	3	3	3	36	36	36	2	2	2
전남	80	80	82	8	8	8	53	53	53	2	2	2
광주	46	46	46	4	4	4	16	16	16	1	1	1
제주	17	17	17	1	1	1	10	10	10	2	2	2
합계	1,518	1,500	1,493	161	160	159	596	595	595	65	64	64

전체 조사대상 학생 수는 4,683,052명으로 이중 초등학생은 1,333,402명(28.5%), 중학생은 1,573,960명(33.6%), 그리고 고등학생은 1,775,690명(37.9%)을 차지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다음의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유형 1(일반고): 일반고 중 일반, 종합고등학교
- 유형 2(자율고):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 유형 3(특성화고): 가사, 공업, 농림업, 상업, 수산, 실업, 해양고등학교, 특성화고(대안교육), 특수목적고 중 예술, 체육고등학교
- 유형 4(특수목적고): 과학, 국제, 외국어고등학교

(2) 표본설계

① 표본크기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표 표본크기는 9,000명(초등학생 3,000명, 중학생 3,000명, 고등학생 3,000명)으로 결정되었다. 모비율의 추정에서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약  $\pm 1.0\%P$ 이다. 층화집락추출의 경우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 IV-5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 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4	415,395	1,333,402 (28.5%)	3,000 (33.3%)	3,000 (33.2%)		
		5	449,931					
		6	468,076					
중학교		1	459,536	1,573,960 (33.6%)	3,000 (33.3%)	3,042 (33.6%)		
		2	522,813					
		3	591,611					
고등학교	유형 1 (일반고)	1	409,946	1,257,955 (26.9%)	2,125 (23.6%)	1,860 (20.6%)		
		2	416,588					
		3	431,421					
	유형 2 (자율고)	1	46,937	139,604 (3.0%)	236 (2.6%)	465 (5.1%)		
		2	46,001					
		3	46,666					
	유형 3 (특성화고)	1	115,483	349,109 (7.5%)	590 (6.6%)	546 (6.0%)		
		2	115,439					
		3	118,187					
	유형 4 (특수목적고)	1	10,121	29,022 (0.6%)	49 (0.5%)	132 (1.5%)		
		2	9,915					
		3	8,986					
합계			4,683,052 (100.0%)	9,000 (100.0%)	9,045 (100.0%)			

## ② 표본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은 2015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하였다.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광역시도(16개),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 학교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6개)
- 학년 (3개)

단, 고등학교의 경우 유형 2(자율고)와 유형 3(특성화고)은 광역시도별로 층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항이어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층화하였고, 유형 4(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았다.

## ③ 표본배분

표본을 지역구분과 학년에 따라 단순비례배분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거나 큰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거나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이는 방식의 변형비례배분 표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해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변형비례배분 방식으로 학교 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였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43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 수를 할당하되 조사될 예상 학생 수가 초등학교 3,000명, 중학교 3,000명, 고등학교 3,000명을 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변형비례배분 방식에 의해 추출된 예상 표본 학교 수와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표 IV-6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 학교 수와 학생 수**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4(8)	21(7)	6(2)	3(1)	6(2)	6(2)	480	546	186	93	156	132
경기	39(13)	30(10)	12(4)	3(1)	3(1)		780	780	372	93	78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 학교	특수 목적고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 학교	특수 목적고
인천	9(3)	6(2)	3(1)				180	156	93			
강원	6(2)	3(1)	3(1)	3(1)	3(1)		120	78	93	93	78	
충북	6(2)	3(1)	3(1)									
충남	6(2)	6(2)	3(1)									
대전	6(2)	3(1)	3(1)									
경북	6(2)	6(2)	3(1)	3(1)	6(2)		120	156	93	93	156	
경남	9(3)	9(3)	3(1)									
부산	9(3)	6(2)	3(1)									
대구	6(2)	6(2)	3(1)									
울산	3(1)	3(1)	3(1)	3(1)	3(1)		60	78	93	93	78	
전북	6(2)	6(2)	3(1)									
전남	6(2)	3(1)	3(1)									
광주	6(2)	3(1)	3(1)									
제주	3(1)	3(1)	3(1)				60	78	93			
합계	150(50)	117(39)	60(20)	15(5)	21(7)	6(2)	3,000	3,042	1,860	465	546	132

\*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 수임

\* 학교 수 총계: 369(123)개, 학생 수 총계: 9,045명

#### ④ 표본추출

각 학교급 및 지역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본배분 결과에 따라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59개 층 내에서 조사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 수가 2개 이상, 중·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 수가 3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하였으며,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학생들을 전수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대체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였고, 지역별·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하였다.

### ⑤ 성별 사후층화

본 조사는 학교 및 학급을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였다.

## 3) 본조사

### (1) 조사대상 및 방법

차별 실태조사는 2016년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두 달간 진행되었다. 앞서 소개한 표본 설계 및 추출 방법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한 결과 본 실태조사에는 전국 382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10,45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표 IV-5>에 나와 있듯이 382개 학교 중 초, 중, 고등학교는 각각 153개, 115개, 114개이며 10,450명의 학생 중 초등학생은 3,786명, 중학생은 3,365명, 고등학생은 3,299명이다. 조사에 앞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해당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조사회사는 해당 학교에 연락을 취해 조사 참여의향을 확인하였다. 참여에 응한 학교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표본 학급의 학생들을 전수 조사하였다. 교사에 의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담임교사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조사원이 모든 조사과정을 관장했으며 응답에 대한 추후 검증이 어려운 관계로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응답누락이나 논리오류 등의 문제를 확인하도록 요청하였다.

표 IV-7 조사 개요

구분	조사 학교 수	조사 학생 수
초등학교	153	3,786
중학교	115	3,365
고등학교	114	3,299
합	382	10,450
조사시기	2016년 5월 말부터 7월 말 사이	

## (2) 조사내용

설문지는 크게 다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차별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문제의식, 가치관, 그리고 감수성을 측정하는 영역으로 청소년들이 어떤 차별 문제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차별에 대해 어떤 윤리적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차별 피해자에 대해 어떤 감수성을 보이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연구진은 박수미 외(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였다. 차별에 대한 가치관 측정을 위해 연구진은 오선영(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인권상황인식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7개 문항을 새롭게 개발하였고 차별 감수성은 오선영(2016)의 인권감수성 척도 5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청소년들의 차별 피해 경험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김경준 외(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및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 내용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학업성적, 거주유형/형태, 출신지역, 가족구성 형태, 가정형편, 외모, 다문화가족, 학교유형 등으로 인한 차별 가해 여부, 차별 가해의 대상, 방법, 빈도, 그리고 차별 가해 후 느낀 감정 등이다.

세 번째 영역은 차별 피해 경험에 대한 것으로 차별 가해 경험의 측정과 마찬가지로 김경준 외(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및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내용은 차별 가해 경험 문항과 동일하며 여기에 차별 피해 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의 반응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네 번째 영역은 차별 목적 경험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의 연구진이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른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누가,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차별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목격한 차별에 대한 생각, 차별 목적 시 반응과 감정,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여부와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의 반응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역은 차별 전반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 및 차별 개선방안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응답자들에게 우리 사회의 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지, 그리고 스스로 타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타인들과 동등하게 대접받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이와 더불어 연구진은 응답자들에게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 필요하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집단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표 IV-8 설문조사 영역 및 내용

영역		내용
1	차별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에 대한 지각(심각성)</li> <li>· 차별에 대한 가치관</li> <li>· 차별에 대한 감수성</li> </ul>
2	차별 피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종교, 장애, 나이, 학업성적, 거주유형/형태, 출신지역, 가족구성 형태, 가정형편, 외모, 다문화가족 여부, 학교유형 등에 의한 차별 피해 경험</li> <li>· 주요 차별 피해 대상</li> <li>· 주요 차별 피해 방법</li> <li>· 차별 피해 빈도</li> <li>· 차별 피해 행동에 대한 생각 및 감정</li> </ul>
3	차별 피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종교, 장애, 나이, 학업성적, 거주유형/형태, 출신지역, 가족구성 형태, 가정형편, 외모, 다문화가족 여부, 학교유형 등에 의한 차별 피해 경험</li> <li>· 자신을 가장 차별한 대상</li> <li>· 주요 차별 피해 방법</li> <li>· 차별 피해 빈도</li> <li>· 차별 피해 행동에 대한 생각 및 감정</li> <li>·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도움을 요청한 사람,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의 반응</li> </ul>
4	차별 목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 목격 경험 여부 (누가, 얼마나, 누구를, 어떤 이유로 차별하였는지)</li> <li>· 차별에 대한 생각</li> <li>· 차별 목격 시 반응과 감정</li> <li>·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여부와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의 반응</li> </ul>
5	차별에 대한 생각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li> <li>·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집단 등</li> </ul>

## 2.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결과<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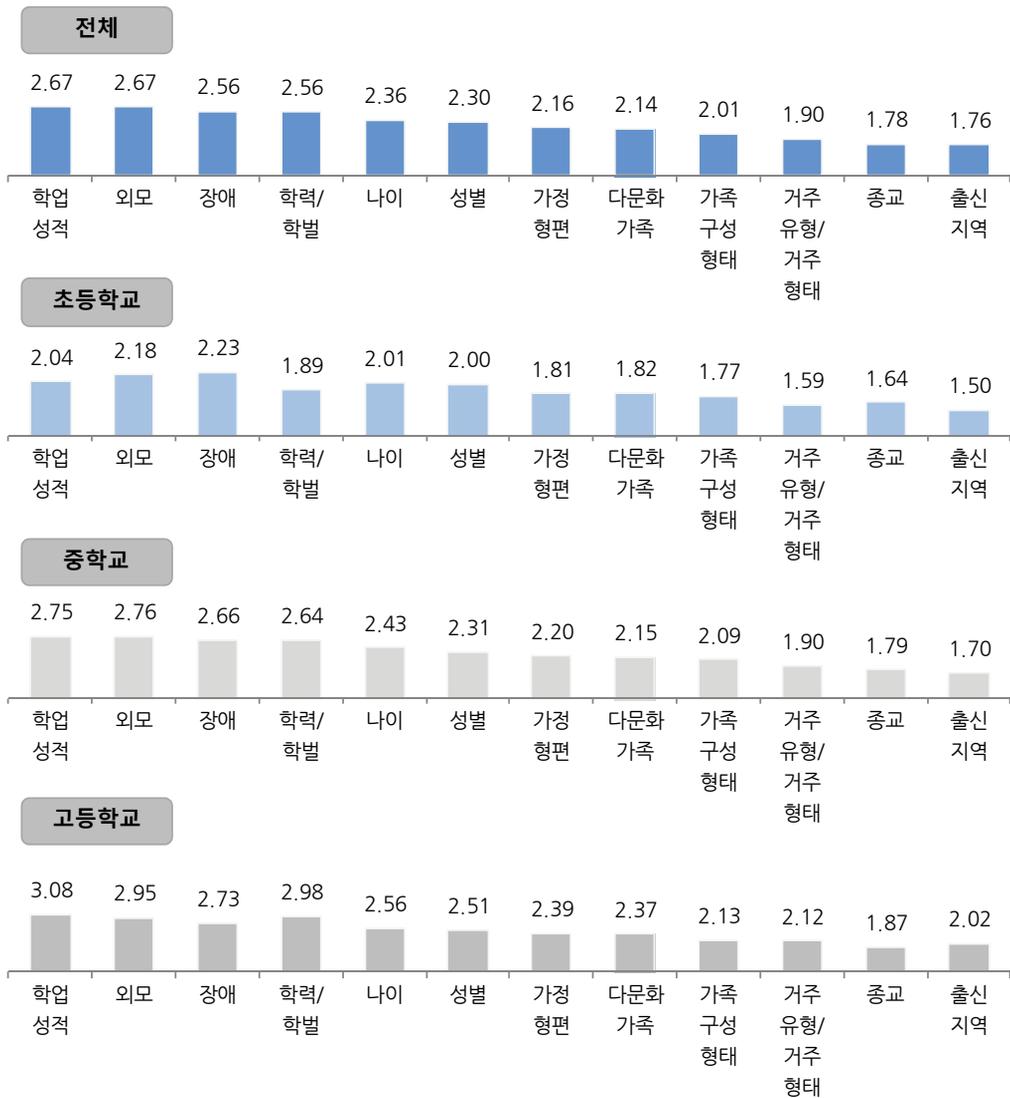
### 1) 차별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이 보기에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 4점 척도(1=전혀 심각하지

29) 본 장은 최정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않다, 4=매우 심각하다)를 이용해 응답자들로 하여금 12개 유형의 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평가하게 한 결과 [그림 IV-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2개 유형의 차별 중 외모와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평균 2.67점을 기록하여 가장 심각한 차별 문제로 인식됐고 그 뒤를 이어 학력/학벌과 장애(2.56점), 나이(2.36점), 성별(2.30점)에 따른 차별 순으로 심각성이 줄어들었다.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볼 때 외모로 인한 차별을 제외하면 성적과 학력/학벌 등 교육적 요인으로 인한 차별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되는 것이다.

반대로 심각성이 가장 떨어지는 차별 문제로는 고향, 종교, 거주유형/형태에 따른 차별로 각각 평균 1.76점, 1.78점, 1.90점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응답자의 학교급, 즉 초·중·고등학생 사이에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유독 교육적 요인으로 인한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초·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평가가 같았다. [그림 IV-1]이 보여주듯이 중·고등학생은 교육으로 인한 차별 문제에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초등학생들은 이보다 장애 또는 외모로 인한 차별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응답자일수록, 즉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모든 유형의 차별 문제에 대해 더 부정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 그림 IV-1 】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우리 사회 차별 문제의 심각성(유형별 평균점수)

[그림 IV-1]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면 <표 IV-9>는 차별에 대한 청소년들의 도덕적 가치관과 감수성을 보여준다.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본 측정에서도 응답자는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를 이용해 주어진 항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였다. 표를 통해 우리는 청소년들이 성별,

성적, 학력, 가정형편, 출신지, 외모 등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 가해 및 피해의 당위성 모두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윤리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반(反)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평등 원칙에 대한 응답자들의 적극적 옹호에서도 드러나는데 청소년들은 성별, 성적, 학력, 가정형편 등 개인의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하며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차별받는 친구를 도와주거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위해 단체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차별의 불합리성과 부당함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이 초등학생들의 생각이다. 차별 피해자에 대한 응답자들의 감수성 역시 높게 나타났는데 차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는, 즉 차별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응답자들이 대세를 이루었다.

**표 IV-9**      **차별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감수성(사안별 평균점수)**      (단위 : 점)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출신 사람들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함	3.29	3.31	3.36	3.22
2.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픔	3.23	3.22	3.22	3.25
3. 모든 사람은 개인의 특성과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	3.15	2.94	3.29	3.19
4. 차별을 받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것임	3.12	3.34	3.07	3.01
5. 사회적 약자, 소수자 대변 모임/조직은 차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92	3.05	2.94	2.81
6.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회를 먼저 혹은 더 많이 주어야 함	2.92	2.89	2.97	2.89
7.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돕기 위한 단체,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	2.70	2.83	2.68	2.64
8. 청소년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을 따라야 함	2.11	2.29	2.01	2.06
9. 친구를 사귄 때 친구의 성적, 종교 등은 중요함	1.70	1.69	1.71	1.71
10. 차별받을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당연함	1.69	1.61	1.71	1.75
11. 성별 등에 따라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함	1.33	1.24	1.32	1.40
12. 성별 등에 따라 차별받는 것은 당연함	1.31	1.23	1.29	1.38

종합하면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차별 문제 중, 장애, 교육(학력/학벌 및 학업성적), 외모에 따른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일수록 차별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 차별의 당위성과 관련해 청소년들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반대로 누군가에 의해 차별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납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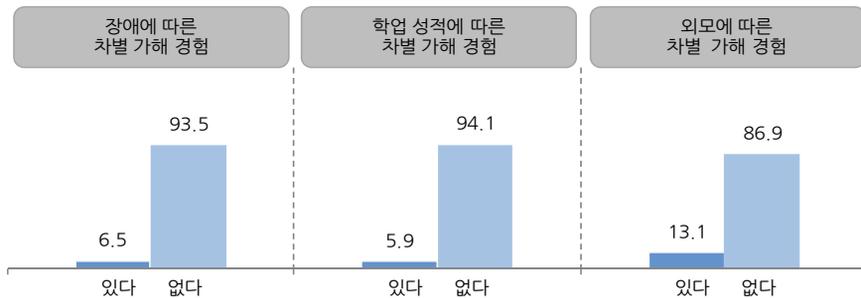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성별, 교육 수준, 가정형편 등 개인적 특성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 피해자에 대한 청소년들의 감수성 역시 높게 나타났다.

## 2) 차별 가해 경험

차별의 당위성을 부정하고 차별 피해자에 대해 동정심을 느낄 줄 아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차별과 관련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 앞 절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청소년들이 외모, 교육 수준,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차별들이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어떤 양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즉 가해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가해 경험, 대상, 방법, 주기, 그리고 가해 후 느낌 등이 분석됐다.

### (1) 차별 가해 경향

[그림 IV-2]는 외모, 학업성적, 장애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해 본 청소년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유형별 가해 경험자의 비율은 각각 13.1%, 5.9%, 65%로, 외모로 인한 차별을 제외하면 학업성적, 장애 등의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해 본 청소년의 비율은 100명 중 채 7명이 안 된다. 대다수의 청소년은 성적과 장애를 이유로 타인을 차별해 본 경험이 없는 것이다.<sup>30)</sup> 어떤 이유에서든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반대로 차별을 당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상응하는 결과이다.



【 그림 IV-2 】 청소년들의 차별 가해 경험 비율(유형별 %)

30) 다른 유형의 차별에서도 가해 경험자의 비율은 최대 5.9%, 최저 0.7%로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차별 가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오직 소수의 응답자들만이 타인을 차별해 본 경험이 있지만 응답자들의 학교급, 학업성적, 가정형편 등에 따라 차별 가해 경험의 추이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표 IV-10>은 응답자의 학교급에 따른 장애 차별 경험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로 두 변수 사이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chi^2=17.013$ ,  $df=2$ ,  $p=.000$ ). 즉, 장애로 인해 누군가를 차별해 본 경험이 초·중·고생별로 상이함을 의미한다. 학교급별 관측빈도와 기대빈도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있다’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낮은 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 ‘있다’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가해 경험 경향이 증가함을 말해준다.

**표 IV-10** 학교급×장애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장애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학교급	초등학교	관측빈도	149	2827	2976
		기대빈도	194.4	2781.6	2976.0
		학교급 중 %	5.0%	95.0%	100.0%
	중학교	관측빈도	262	3248	3510
		기대빈도	229.3	3280.7	3510.0
		학교급 중 %	7.5%	92.5%	100.0%
	고등학교	관측빈도	271	3682	3953
		기대빈도	258.3	3694.7	3953.0
		학교급 중 %	6.9%	93.1%	100.0%
전체	관측빈도	682	9757	10439	
	기대빈도	682.0	9757.0	10439.0	
	학교급 중 %	6.5%	93.5%	100.0%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가정형편과 장애에 따른 차별 경험 역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6.201$ ,  $df=2$ ,  $p=.045$ 로 <표 IV-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정형편이 상, 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가해 경험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은 반면, 중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전자가 후자에 비해 장애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IV-11 가정형편×장애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장애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가정형편	상	관측빈도	126	1720	1846
		기대빈도	120.5	1725.5	1846.0
		가정형편 중 %	6.8%	93.2%	100.0%
	중	관측빈도	520	7694	8214
		기대빈도	536.3	7677.7	8214.0
		가정형편 중 %	6.3%	93.7%	100.0%
	하	관측빈도	34	321	355
		기대빈도	23.2	331.8	355.0
		가정형편 중 %	9.6%	90.4%	100.0%
전체		관측빈도	680	9735	10415
		기대빈도	680.0	9735.0	10415.0
		가정형편 중 %	6.5%	93.5%	100.0%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학업성적과 장애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역시 유의미한 연관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0.050$ ,  $df=2$ ,  $p=.007$ ).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학업성적이 가장 낮은 하 집단의 가해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크게 상회하는 반면 중 집단은 관측빈도가 기대빈도에 많이 못 미친다. 성적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장애에 따른 차별 가해의 경향이 중, 상 집단보다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IV-12 학업성적×장애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장애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학업성적	상	관측빈도	232	3260	3492
		기대빈도	228.1	3263.9	3492.0
		학업성적 중 %	6.6%	93.4%	100.0%
	중	관측빈도	253	4137	4390
		기대빈도	286.7	4103.3	4390.0
		학업성적 중 %	5.8%	94.2%	100.0%
	하	관측빈도	195	2335	2530
		기대빈도	165.2	2364.8	2530.0
		학업성적 중 %	7.7%	92.3%	100.0%
전체		관측빈도	680	9732	10412
		기대빈도	680.0	9732.0	10412.0
		학업성적 중 %	6.5%	93.5%	100.0%

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경향 역시 응답자의 학교급, 가정형편,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표 IV-13>은 응답자의 학교급과 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을 교차 분석한 결과로 두 변수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chi^2=87.432$ ,  $df=2$ ,  $p=.000$ ). 학교급별 가해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고등학생의 경우 모두 가해 경험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대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에 따른 차별 가해 사례와 마찬가지로 외모에 따른 차별 역시 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일수록 가해 성향이 높아진다.

**표 IV-13** 학교급×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학교급	초등학교	관측빈도	149	2827	2976
		기대빈도	194.4	2781.6	2976.0
		학교급 중 %	5.0%	95.0%	100.0%
	중학교	관측빈도	262	3248	3510
		기대빈도	229.3	3280.7	3510.0
		학교급 중 %	7.5%	92.5%	100.0%
	고등학교	관측빈도	271	3682	3953
		기대빈도	258.3	3694.7	3953.0
		학교급 중 %	6.9%	93.1%	100.0%
전체	관측빈도	682	9757	10439	
	기대빈도	682.0	9757.0	10439.0	
	학교급 중 %	6.5%	93.5%	100.0%	

응답자의 가정형편 역시 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경향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데 ( $\chi^2=30.446$ ,  $df=2$ ,  $p=.000$ ), 상·중의 가정형편에 해당하는 응답자에 비해 가정형편이 가장 낮은 응답자의 경우 차별 가해 경험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크게 상회함을 알 수 있다. 가정형편이 낮은 응답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외모를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표 IV-14 가정형편×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가정형편	상	관측빈도	233	1611	1844
		기대빈도	241.0	1603.0	1844.0
		가정형편 중 %	12.6%	87.4%	100.0%
	중	관측빈도	1045	7154	8199
		기대빈도	1071.5	7127.5	8199.0
		가정형편 중 %	12.7%	87.3%	100.0%
	하	관측빈도	81	275	356
		기대빈도	46.5	309.5	356.0
		가정형편 중 %	22.8%	77.2%	100.0%
전체		관측빈도	1359	9040	10399
		기대빈도	1359.0	9040.0	10399.0
		가정형편 중 %	13.1%	86.9%	100.0%

<표 IV-15>는 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경향을 응답자의 학업성적과 교차 분석한 결과이다. 유의미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chi^2=31.099$ ,  $df=2$ ,  $p=.000$ )는 학업성적 역시 청소년들의 외모 차별 경향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를 통해 우리는 성적이 아주 우수하거나 혹은 아주 떨어지는 학생들의 경우 가해 경험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중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반대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의 두 집단이 후자에 비해 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이다.

표 IV-15 학업성적×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학업성적	상	관측빈도	514	2970	3484
		기대빈도	456.1	3027.9	3484.0
		학업성적 중 %	14.8%	85.2%	100.0%
	중	관측빈도	479	3903	4382
		기대빈도	573.6	3808.4	4382.0
		학업성적 중 %	10.9%	89.1%	100.0%
	하	관측빈도	368	2163	2531
		기대빈도	331.3	2199.7	2531.0
		학업성적 중 %	14.5%	85.5%	100.0%
전체		관측빈도	1361	9036	10397
		기대빈도	1361.0	9036.0	10397.0
		학업성적 중 %	13.1%	86.9%	100.0%

마지막으로 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 경향에서 응답자의 학교급, 가정형편, 학업성적 모두 차별 경험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표 IV-16>은 학교급에 따른 차별 가해 경향을 교차 분석한 결과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55.705$ ,  $df=2$ ,  $p=.000$ 이다. 가해 경험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에 훨씬 못 미치는 초등학생들과 달리,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외모, 장애에 따른 차별 가해 경향과 마찬가지로 상급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차별 경향을 보여준다.

**표 IV-16** 학교급×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학교급	초등학교	관측빈도	96	2879	2976
		기대빈도	175.6	2799.4	2976.0
		학교급 중 %	3.2%	96.8%	100.0%
	중학교	관측빈도	230	3281	3510
		기대빈도	207.2	3303.8	3510.0
		학교급 중 %	6.6%	93.4%	100.0%
	고등학교	관측빈도	290	3661	3953
		기대빈도	233.2	3717.8	3953.0
		학교급 중 %	7.3%	92.7%	100.0%
전체	관측빈도	616	9821	10439	
	기대빈도	616.0	9821.0	10439.0	
	학교급 중 %	5.9%	94.1%	100.0%	

<표 IV-17>은 응답자들의 가정형편 역시 이들의 차별 가해 경향과 유의미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 $\chi^2=9.393$ ,  $df=2$ ,  $p=.000$ ). 가정형편이 상 또는 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 유경험자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지만, 중 집단은 기대빈도가 관측빈도를 상회하므로 전자가 후자에 비해 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IV-17 가정형편×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가정형편	상	관측빈도	118	1729	1847
		기대빈도	108.9	1738.1	1847.0
		가정형편 중 %	6.4%	93.6%	100.0%
	중	관측빈도	463	7752	8215
		기대빈도	484.3	7730.7	8215.0
		가정형편 중 %	5.6%	94.4%	100.0%
	하	관측빈도	33	320	353
		기대빈도	20.8	332.2	353.0
		가정형편 중 %	9.3%	90.7%	100.0%
전체		관측빈도	614	9801	10415
		기대빈도	614.0	9801.0	10415.0
		가정형편 중 %	5.9%	94.1%	100.0%

마지막으로 <표 IV-18>은 응답자의 학업성적과 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의 교차 분석 결과로 응답자의 학업성적에 따라 차별 가해 경험도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chi^2=41.984$ ,  $df=2$ ,  $p=.000$ ). 각 셀의 관측빈도와 기대빈도를 비교해 보면 학업성적이 중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가하는 경향이 낮은 반면 성적이 상 또는 하인 학생들은 성적이 이유로 차별을 가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18 학업성적×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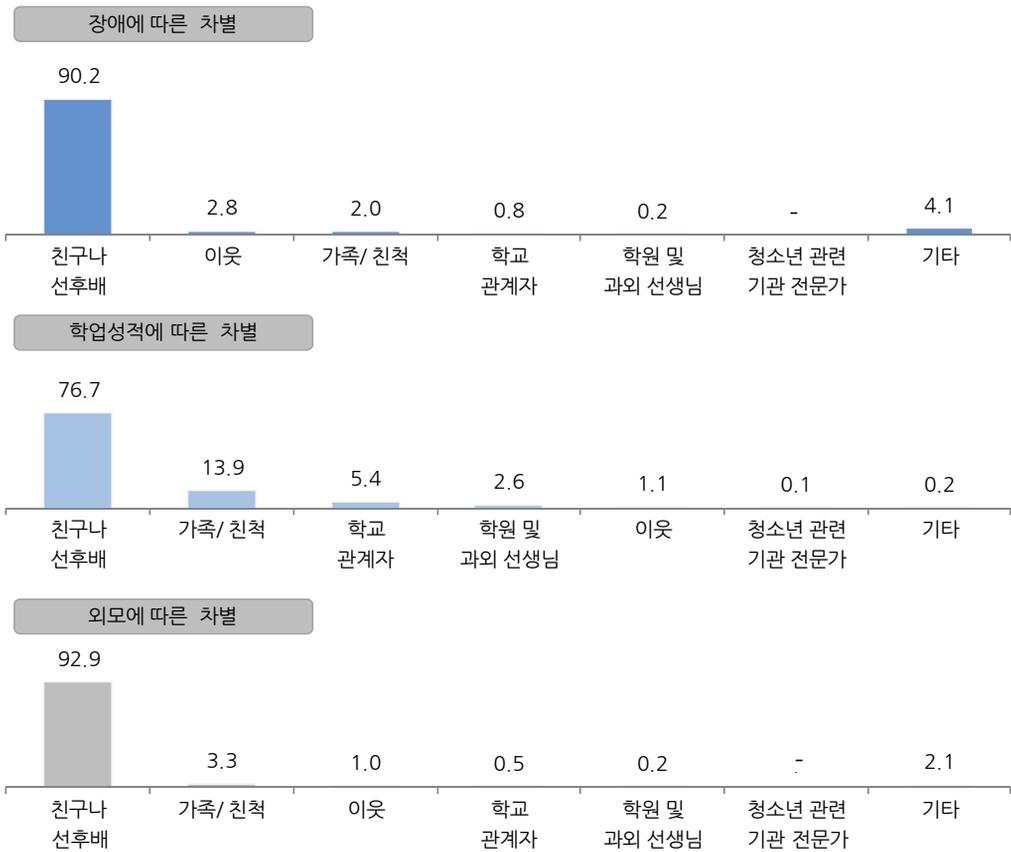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학업성적	상	관측빈도	118	1729	1847
		기대빈도	108.9	1738.1	1847.0
		학업성적 중 %	6.4%	93.6%	100.0%
	중	관측빈도	463	7752	8215
		기대빈도	484.3	7730.7	8215.0
		학업성적 중 %	5.6%	94.4%	100.0%
	하	관측빈도	33	320	353
		기대빈도	20.8	332.2	353.0
		학업성적 중 %	9.3%	90.7%	100.0%
전체		관측빈도	614	9801	10415
		기대빈도	614.0	9801.0	10415.0
		학업성적 중 %	5.9%	94.1%	100.0%

## (2) 주요 차별 대상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의 차별 가해 경험을 외모, 성적, 장애에 따른 차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외모로 인한 차별 사례를 제외하면 장애와 성적을 이유로 타인을 차별해 본 청소년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 청소년의 차별 실태에서 가해자로서의 경험은 실질적인 우려 대상이 아님을 암시한다. 또한 응답자의 가정형편, 학업성적, 학교급에 따라 차별 가해 경험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가지 유형의 차별에서 상급 학교급에 재학 중인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가해 경험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적과 가정형편은 차별 유형에 따라 달라졌다.

비록 실제 차별을 가해 본 가해자는 전체 응답자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외모, 성적, 장애를 이유로 가장 많이 차별한 대상은 누구일까? [그림 IV-3]에서 알 수 있듯이 친구/선·후배가 주요 피해자였다. 본 실태조사의 응답자들은 일과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또래집단과 보내는 초·중·고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결과라 보기 어렵다. 차별 유형에 상관없이 가해 대상자로 친구/선·후배에 대한 쏠림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응답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제로 앞 절의 교차분석에서 사용했던 응답자의 학교급, 학교 성적, 가정형편 등을 이용해 장애로 인한 차별 가해 대상자의 변화 여부를 분석한 결과 어느 변수도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전체의 25%를 넘어간 관계로 카이제곱 검정 대신 피셔의 정확도 검사를 사용했는데 그 결과는 학교급(초·중·고)의 경우  $p=.583$ , 가정형편의 경우  $p=.137$ , 학업성적의 경우  $p=.198$ 로 모두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그림 IV-3 】 차별 유형별 주요 가해 대상(%)

반면,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의 경우 주요 차별 대상자는 응답자의 가정형편에 따라서만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045$ , 피셔의 정확도 검사). <표 IV-1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정형편이 상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경우 학업성적을 이유로 친구나 선후배를 차별해 본 경우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중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가족/친척 셀에서, 하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학교 관계자 셀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다.

표 IV-19 가정형편×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대상자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대상							전체	
		가족/ 친척	이웃	친구나 선후배	학교 관계자	학원 및 과외 선생님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기타		
가정 형편	상	관측빈도	29	2	238	4	2	0	0	275
		기대빈도	38.4	2.8	210.3	15.3	7.4	.5	.5	275.0
		가정형편 중%	10.5%	.7%	86.5%	1.5%	.7%	0.0%	0.0%	100.0%
	중	관측빈도	39	2	144	15	8	0	1	209
		기대빈도	29.2	2.1	159.8	11.6	5.6	.4	.4	209.0
		가정형편 중%	18.7%	1.0%	68.9%	7.2%	3.8%	0.0%	.5%	100.0%
	하	관측빈도	15	2	73	14	6	1	0	111
		기대빈도	15.5	1.1	84.9	6.2	3.0	.2	.2	111.0
		가정형편 중%	13.5%	1.8%	65.8%	12.6%	5.4%	.9%	0.0%	100.0%
전체	관측빈도	83	6	455	33	16	1	1	595	
	기대빈도	83.0	6.0	455.0	33.0	16.0	1.0	1.0	595.0	
	가정형편 중%	13.9%	1.0%	76.5%	5.5%	2.7%	.2%	.2%	100.0%	

마지막으로 외모에 따른 차별 대상이 가해자의 교육 수준, 학업성적, 가정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피셔의 정확도 검사를 통해 측정된 결과 응답자의 가정형편에 따라서만 가해 대상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7, 피셔의 정확도 검사). 그러나 <표 IV-20>을 통해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대상자의 관측빈도와 기대빈도를 비교해보면 두 빈도 사이에 큰 격차를 보여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즉, 통계적 의미의 유의성만 있을 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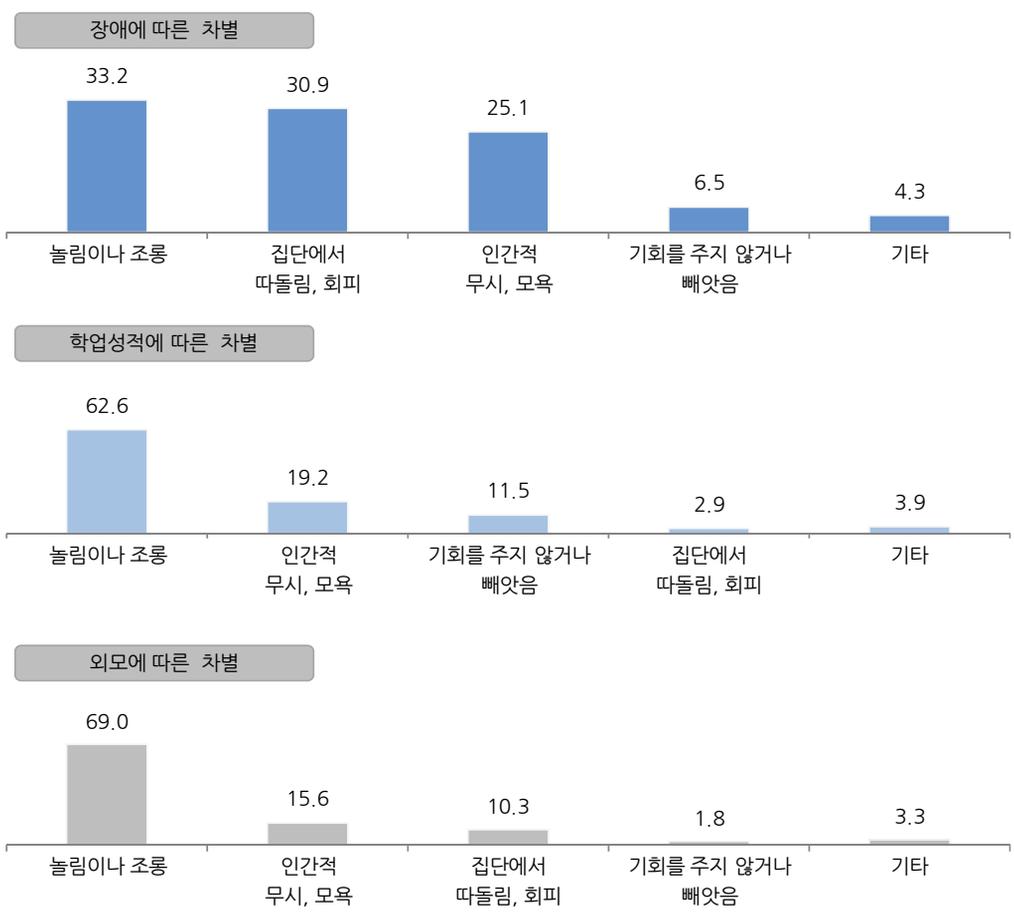
표 IV-20 가정형편×외모에 따른 차별 대상자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외모에 따른 차별 대상						전체	
		가족/ 친척	이웃	친구나 선후배	학교 관계자	학원 및 과외 선생님	기타		
가정 형편	상	관측빈도	7	7	205	1	1	4	225
		기대빈도	7.4	2.2	208.9	1.2	.5	4.8	225.0
		가정형편 중 %	3.1%	3.1%	91.1%	.4%	.4%	1.8%	100.0%
	중	관측빈도	33	6	945	3	2	21	1010
		기대빈도	33.1	10.0	937.6	5.4	2.3	21.6	1010.0
		가정형편 중 %	3.3%	.6%	93.6%	.3%	.2%	2.1%	100.0%
	하	관측빈도	3	0	67	3	0	3	76
		기대빈도	2.5	.8	70.6	.4	.2	1.6	76.0
		가정형편 중 %	3.9%	0.0%	88.2%	3.9%	0.0%	3.9%	100.0%
전체	관측빈도	43	13	1217	7	3	28	1311	
	기대빈도	43.0	13.0	1217.0	7.0	3.0	28.0	1311.0	
	가정형편 중 %	3.3%	1.0%	92.8%	.5%	.2%	2.1%	100.0%	

(3) 주요 차별 방법

앞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청소년들의 차별 대상이 자신들의 친구나 선·후배에 집중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장애, 학업성적, 외모를 이유로 친구나 선·후배를 차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그림 IV-4]는 차별 유형에 따라 가해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한 차별 방식이 다름을 보여준다. 외모 및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의 경우 놀림/조롱이, 장애에 따른 차별의 경우 집단 따돌림/회피와 놀림/조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IV-4 】 차별 유형별 가해 방법(%)

이와 더불어 가해 청소년의 학업성적, 가정형편, 학교급에 따라 차별 방법이 유의미하게 달라지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장애에 따른 차별의 경우, 가해 청소년의 학업성적은 차별 방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chi^2=12.557$ ,  $df=8$ ,  $p=.128$ ), 학교급과 가정형편은 차별 방법에 유의미한 변화를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먼저, 학교급에 따른 차별방식의 경우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30.179$ ,  $df=8$ ,  $p=.000$ 으로 초등학생은 인간적 무시나 모욕, 중학생은 기회박탈과 집단 따돌림, 고등학생은 놀림/조롱에서 예상보다 높은 관측빈도를 보여주었다 <표 IV-21 참조>.

표 IV-21 학교급×장애에 따른 차별 방법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장애에 따른 차별 방법					전체
			놀림이나 조롱	인간적 무시, 모욕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기타	
학교급	초등학교	관측빈도	48	50	8	27	8	141
		기대빈도	46.9	35.6	9.0	43.5	6.0	141.0
		학교급 중 %	34.0%	35.5%	5.7%	19.1%	5.7%	100.0%
	중학교	관측빈도	68	62	24	88	8	250
		기대빈도	83.2	63.1	16.0	77.1	10.6	250.0
		학교급 중 %	27.2%	24.8%	9.6%	35.2%	3.2%	100.0%
	고등학교	관측빈도	103	54	10	88	12	267
		기대빈도	88.9	67.4	17.0	82.4	11.4	267.0
		학교급 중 %	38.6%	20.2%	3.7%	33.0%	4.5%	100.0%
전체	관측빈도	219	166	42	203	28	658	
	기대빈도	219.0	166.0	42.0	203.0	28.0	658.0	
	학교급 중 %	33.3%	25.2%	6.4%	30.9%	4.3%	100.0%	

가해 청소년들의 가정형편 역시 차별 방식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는데 ( $\chi^2=20.991$ ,  $p=.007$ ), <표 IV-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정형편이 상에 해당하는 경우 놀림/조롱 및 인간적 무시/모욕 셀에서, 중의 경우 집단 따돌림/회피 셀에서, 그리고 하의 경우 놀림/조롱 셀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다.

표 IV-22 가정형편×장애에 따른 차별 방법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장애에 따른 차별 방법					전체
			놀림이나 조롱	인간적 무시, 모욕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기타	
가정형편	상	관측빈도	45	40	12	21	3	121
		기대빈도	40.3	30.2	7.7	37.5	5.3	121.0
		가정형편 중 %	37.2%	33.1%	9.9%	17.4%	2.5%	100.0%
	중	관측빈도	160	117	30	173	25	505
		기대빈도	168.1	125.9	32.2	156.6	22.3	505.0
		가정형편 중 %	31.7%	23.2%	5.9%	34.3%	5.0%	100.0%
	하	관측빈도	14	7	0	10	1	32
		기대빈도	10.7	8.0	2.0	9.9	1.4	32.0
		가정형편 중 %	43.8%	21.9%	0.0%	31.3%	3.1%	100.0%

구분		장애에 따른 차별 방법					전체
		놀림이나 조롱	인간적 무시, 모욕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기타	
전체	관측빈도	219	164	42	204	29	658
	기대빈도	219.0	164.0	42.0	204.0	29.0	658.0
	가정형편 중 %	33.3%	24.9%	6.4%	31.0%	4.4%	100.0%

그러나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의 경우 가해자의 학업성적, 학교급, 가정형편 모두 차별 방법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학업성적과 차별 방법, 학교급과 차별 방법의 교차 분석에 따른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각각  $\chi^2=9.585$ ,  $df=8$ ,  $p=.295$ ,  $\chi^2=11.427$ ,  $df=8$ ,  $p=.179$ 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가정형편과 차별 방법의 경우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전체의 25%를 넘어간 관계로 피셔의 정확도 검사를 적용하였으나 이 또한 유의하지 못한 결과( $p=.063$ , 피셔의 정확도 검사)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외모에 따른 차별의 경우, 가해 청소년의 학업성적은 차별 방법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chi^2=7.645$ ,  $df=8$ ,  $p=.469$ ), 학교급과 가정형편은 차별 방법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학교급과 차별 방법의 교차 분석에 따른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20.287$ ,  $df=8$ ,  $p=.009$ 로, <표 IV-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등학생의 경우 인간적 무시/모욕, 중학생은 집단 따돌림/회피, 고등학생은 놀림/조롱 셀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다. 가정형편의 경우, 차별 방법과의 교차 분석에 따른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20.756$ ,  $df=8$ ,  $p=.008$ 로, 가해자의 가정형편이 상에 해당하는 경우 인간적 무시/모욕이, 중의 경우 집단 따돌림이, 하의 경우 놀림/조롱이 기대빈도를 상회하는 관측빈도를 보여주었다<표 IV-24 참조>.

**표 IV-23 학교급×외모에 따른 차별 방법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외모에 따른 차별 방법					전체	
		놀림이나 조롱	인간적 무시, 모욕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기타		
학교급	초등학교	관측빈도	143	53	5	25	8	234
		기대빈도	161.5	36.4	4.1	24.1	7.9	234.0
		학교급 중 %	61.1%	22.6%	2.1%	10.7%	3.4%	100.0%
	중학교	관측빈도	314	70	5	59	15	463

구분		외모에 따른 차별 방법					전체
		놀림이나 조롱	인간적 무시, 모욕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기타	
고등 학교	기대빈도	319.5	72.1	8.1	47.7	15.6	463.0
	학교급 중 %	67.8%	15.1%	1.1%	12.7%	3.2%	100.0%
	관측빈도	447	81	13	51	21	613
	기대빈도	423.0	95.5	10.8	63.2	20.6	613.0
	학교급 중 %	72.9%	13.2%	2.1%	8.3%	3.4%	100.0%
전체	관측빈도	904	204	23	135	44	1310
	기대빈도	904.0	204.0	23.0	135.0	44.0	1310.0
	학교급 중 %	69.0%	15.6%	1.8%	10.3%	3.4%	100.0%

표 IV-24 가정형편×외모에 따른 차별 방법 교차 분석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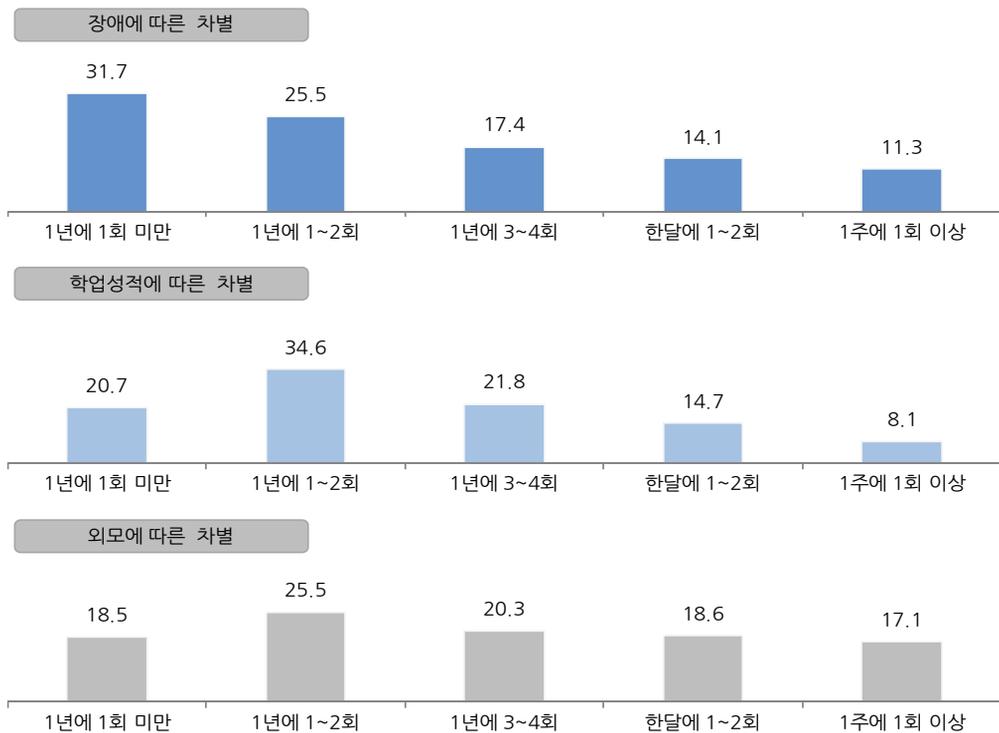
구분		외모에 따른 차별 방법					전체	
		놀림이나 조롱	인간적 무시, 모욕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기타		
가정 형편	상	관측빈도	48	50	8	27	8	141
		기대빈도	46.9	35.6	9.0	43.5	6.0	141.0
		가정형편 중 %	34.0%	35.5%	5.7%	19.1%	5.7%	100.0%
	중	관측빈도	68	62	24	88	8	250
		기대빈도	83.2	63.1	16.0	77.1	10.6	250.0
		가정형편 중 %	27.2%	24.8%	9.6%	35.2%	3.2%	100.0%
	하	관측빈도	103	54	10	88	12	267
		기대빈도	88.9	67.4	17.0	82.4	11.4	267.0
		가정형편 중 %	38.6%	20.2%	3.7%	33.0%	4.5%	100.0%
전체	관측빈도	219	166	42	203	28	658	
	기대빈도	219.0	166.0	42.0	203.0	28.0	658.0	
	가정형편 중 %	33.3%	25.2%	6.4%	30.9%	4.3%	100.0%	

#### (4) 차별 가해 빈도

지금까지 우리는 외모, 학업성적, 장애에 따른 차별 사례를 통해 청소년들의 차별 가해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외모로 인한 차별을 제외하면 실제 성적과 장애를 이유로 타인을 차별해

본 청소년의 비율은 7%에 못 미치고 그 대상 역시 자신들의 또래집단, 즉 친구/선·후배에 집중돼 있었다. 차별 유형에 따라 차별 방법은 상이한 양상을 띠었는데, 학업성적이나 외모에 따른 차별의 경우 놀림/조롱이, 장애에 따른 차별은 놀림/조롱과 집단 따돌림/회피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됐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일상에서 장애, 성적, 또는 외모를 이유로 비단 또래집단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얼마나 자주 차별해 보았을까? [그림 IV-5]는 가해 경험자의 과반수가 1년에 4회 이하로 장애, 성적, 또는 외모를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해 봤음을 보여준다. 잦은 빈도는 아니다. 그러나 외모에 따른 차별의 경우 장애나 성적에 따른 차별에 비해 잦은 빈도에 해당하는 항목들, 즉 한 달에 1~2회 또는 1주에 1회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외모를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다른 유형의 차별보다 일상화됐음을 말해준다.



【 그림 IV-5 】 차별 유형별 가해 빈도(%)

차별 빈도 역시 차별 사례에 따라 가해자의 학업성적, 가정형편, 학교급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장애에 따른 차별의 경우, 가해자의 학업성적, 가정형편, 학교급과 차별 빈도와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각각  $\chi^2=15.584$ ,  $df=8$ ,  $p=.049$ ,  $\chi^2=8.721$ ,  $df=8$ ,  $p=.366$ ,  $\chi^2=5.802$ ,  $df=8$ ,  $p=.669$ 로 가해자의 학업성적만이 차별 빈도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표 IV-25>에 따르면 학업성적이 상인 가해자의 경우 1년에 1회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빈도에서 모두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는 추이를 보인 반면, 중·하의 경우 반대로 1년에 1회 미만의 셀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크게 상회하는 추이를 보여주었다. 즉, 전자가 후자에 비해 장애를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는 경우가 훨씬 잦게 발생함을 말한다.

표 IV-25 학업성적×장애에 따른 차별 가해 빈도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장애에 따른 차별 가해 빈도					전체	
		1년에 1회 미만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 달에 1~2회	1주에 1회 이상		
학업성 적	상	관측빈도	52	62	46	40	27	227
		기대빈도	71.5	58.0	39.6	31.9	26.0	227.0
		학업성적 중 %	22.9%	27.3%	20.3%	17.6%	11.9%	100.0%
	중	관측빈도	87	56	44	29	26	242
		기대빈도	76.2	61.8	42.2	34.0	27.8	242.0
		학업성적 중 %	36.0%	23.1%	18.2%	12.0%	10.7%	100.0%
	하	관측빈도	67	49	24	23	22	185
		기대빈도	58.3	47.2	32.2	26.0	21.2	185.0
		학업성적 중 %	36.2%	26.5%	13.0%	12.4%	11.9%	100.0%
전체	관측빈도	206	167	114	92	75	654	
	기대빈도	206.0	167.0	114.0	92.0	75.0	654.0	
	학업성적 중 %	31.5%	25.5%	17.4%	14.1%	11.5%	100.0%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의 경우, 가해자의 학업성적과 차별 빈도 사이의 연관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15.239$ ,  $df=8$ ,  $p=.055$ ), 가해자의 가정형편 역시 차별 빈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chi^2=13.600$ ,  $df=8$ ,  $p=.093$ ). 반면, 가해자의 학교급에 따라 차별 빈도는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chi^2=26.240$ ,  $df=8$ ,  $p=.001$ ), <표 IV-26>은 상급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자일수록 잦은 빈도의 셀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성적을 이유로 더 잦은 차별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표 IV-26 학교급×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 빈도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 빈도					전체
			1년에 1회 미만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 달에 1~2회	1주에 1회 이상	
학교급	초등 학교	관측빈도	29	28	15	10	7	89
		기대빈도	18.4	30.8	19.3	13.1	7.4	89.0
		학교급 중 %	32.6%	31.5%	16.9%	11.2%	7.9%	100.0%
	중학 교	관측빈도	45	88	49	21	12	215
		기대빈도	44.3	74.5	46.6	31.7	17.9	215.0
		학교급 중 %	20.9%	40.9%	22.8%	9.8%	5.6%	100.0%
	고등 학교	관측빈도	45	84	61	54	29	273
		기대빈도	56.3	94.6	59.1	40.2	22.7	273.0
		학교급 중 %	16.5%	30.8%	22.3%	19.8%	10.6%	100.0%
전체	관측빈도	119	200	125	85	48	577	
	기대빈도	119.0	200.0	125.0	85.0	48.0	577.0	
	학교급 중 %	20.6%	34.7%	21.7%	14.7%	8.3%	100.0%	

마지막으로 외모에 따른 차별의 경우 가해자의 학업성적을 제외하면( $\chi^2=4.785$ ,  $df=8$ ,  $p=.780$ ), 가정형편과 학교급 모두 차별 빈도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먼저, 가정형편과 가해 빈도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16.840$ ,  $df=8$ ,  $p=.032$ 로 우리는 <표 IV-27>을 통해 가정형편이 상인 가해자의 경우 1년에 3~4회를 분기점으로 더 잦은 가해 빈도에 해당하는 셀들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모두 상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가정형편이 중간 이하에 해당하는 가해자의 경우, 잦은 빈도에 해당하는 셀들의 관측빈도가 대체로 기대빈도에 못 미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정형편이 좋은 가해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가해자에 비해 외모에 따른 차별을 더 잦게 범하고 있는 것이다.

표 IV-27 가정형편×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빈도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빈도					전체
			1년에 1회 미만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 달에 1~2회	1주에 1회 이상	
가정 형편	상	관측빈도	35	41	45	54	40	215
		기대빈도	39.7	54.7	43.8	39.9	36.8	215.0
		가정형편 중 %	16.3%	19.1%	20.9%	25.1%	18.6%	100.0%
	중	관측빈도	187	258	192	169	169	975
		기대빈도	180.2	248.2	198.7	180.9	167.0	975.0
		가정형편 중 %	19.2%	26.5%	19.7%	17.3%	17.3%	100.0%

구분		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빈도					전체
		1년에 1회 미만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 달에 1~2회	1주에 1회 이상	
하	관측빈도	11	22	20	11	7	71
	기대빈도	13.1	18.1	14.5	13.2	12.2	71.0
	가정형편 중 %	15.5%	31.0%	28.2%	15.5%	9.9%	100.0%
전체	관측빈도	233	321	257	234	216	1261
	기대빈도	233.0	321.0	257.0	234.0	216.0	1261.0
	가정형편 중 %	18.5%	25.5%	20.4%	18.6%	17.1%	100.0%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학교급과 차별 빈도 사이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32.575$ ,  $df=8$ ,  $p=.000$ 로, <표 IV-28>은 고등학생 가해자의 경우 한 달에 1~2회 혹은 그 이상의 셀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는 반면, 초·중학생의 경우 1년에 3~4회 또는 그 이하에 해당하는 셀들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고등학생들이 초·중학생에 비해서 더 자주 일상에서 외모 차별을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8 학교급×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빈도 교차 분석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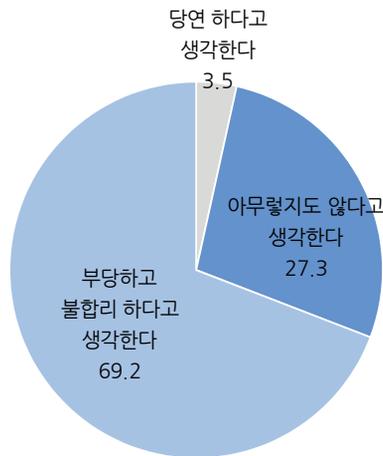
구분		외모에 따른 차별 가해 빈도					전체	
		1년에 1회 미만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 달에 1~2회	1주에 1회 이상		
학교급	초등 학교	관측빈도	58	63	46	35	30	232
		기대빈도	42.9	59.2	47.1	43.1	39.7	232.0
		학교급 중 %	25.0%	27.2%	19.8%	15.1%	12.9%	100.0%
	중학 교	관측빈도	85	116	110	79	59	449
		기대빈도	83.0	114.7	91.2	83.3	76.9	449.0
		학교급 중 %	18.9%	25.8%	24.5%	17.6%	13.1%	100.0%
	고등 학교	관측빈도	90	143	100	120	127	580
		기대빈도	107.2	148.1	117.7	107.6	99.3	580.0
		학교급 중 %	15.5%	24.7%	17.2%	20.7%	21.9%	100.0%
전체	관측빈도	233	322	256	234	216	1261	
	기대빈도	233.0	322.0	256.0	234.0	216.0	1261.0	
	학교급 중 %	18.5%	25.5%	20.3%	18.6%	17.1%	100.0%	

(5) 차별 가해 경험에 대한 감정과 생각

우리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차별 가해 실태를 외모, 장애,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사례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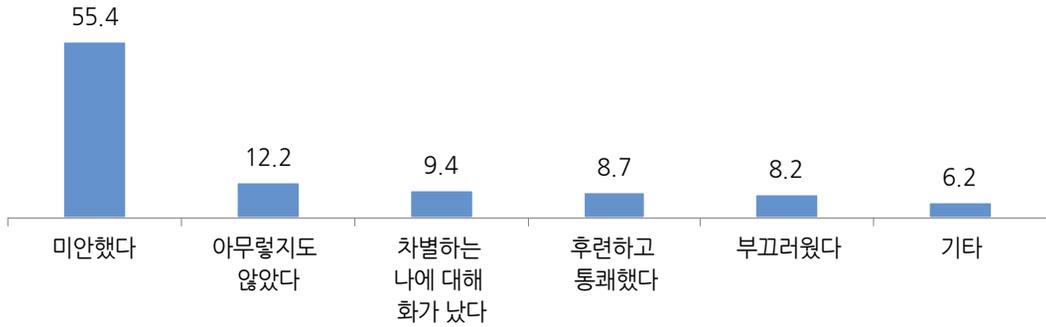
살펴보았다. 비록 앞 절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본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는 응답자들이 다른 유형의 차별도 가해 본 경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타 차별 사례에서도 가해 경험자의 비율은 외모, 장애, 성적에 따른 차별 사례와 견주어 비슷하거나 훨씬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차별 가해 문제가 심각한 우려 대상이 아님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차별해 본 가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해 경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을까?

[그림 IV-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가해자 중 69.2%는 자신의 가해 행위에 대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반면 나머지 30.8%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만 나머지 3명은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다.



【 그림 IV-6 】 차별 행동에 대한 가해자의 생각(%)

이와 유사하게 [그림 IV-7]은 차별 행위를 행할 당시 가해자가 느꼈던 감정으로 ‘미안했다’, ‘부끄러웠다’, ‘나에 대해 화가 났다’ 등 가해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반영하는 감정은 전체 응답의 72.9%에 달한다. 나머지 27.1%는 가해 당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이는 [그림 IV-6]에서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의 가해 행위를 반성하는 반면 나머지 3명은 그렇지 않았던 결과와 다르지 않다.



【 그림 IV-7 】 차별 당시 가해자의 감정(%)

이처럼 과반수의 가해자가 자신의 차별 행위에 대해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가해자의 학업성적, 가정형편, 학교급에 따라 생각과 감정이 다른 양상을 띠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학업성적은 차별 행위에 대한 생각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chi^2=5.599$ ,  $df=4$ ,  $p=.231$ ) 가정형편과 학교급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가정형편의 경우 생각과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15.321$ ,  $df=4$ ,  $p=.004$ 로 <표 IV-29>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형편이 상 또는 하에 해당하는 가해자의 경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셀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지만, 중에 해당하는 가해자는 반대로 죄의식을 느끼는 셀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다. 전자의 두 집단과 달리 후자 집단은 자신의 차별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IV-29 가정형편×차별에 대한 생각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다른 사람을 차별한 행동에 대한 생각			전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상	관측빈도	15	135	281
	기대빈도	15.1	117.8	298.1
	가정형편 중 %	3.5%	31.3%	65.2%
중	관측빈도	58	481	1284
	기대빈도	64.0	498.2	1260.8
	가정형편 중 %	3.2%	26.4%	70.4%
하	관측빈도	10	30	70

구분		다른 사람을 차별한 행동에 대한 생각			전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전체	기대빈도	3.9	30.1	76.1	110.0
	가정형편 중 %	9.1%	27.3%	63.6%	100.0%
	관측빈도	83	646	1635	2364
	기대빈도	83.0	646.0	1635.0	2364.0
	가정형편 중 %	3.5%	27.3%	69.2%	100.0%

가해자의 학교급 또한 차별 행동에 대한 생각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는데 ( $\chi^2=10.710$ ,  $df=4$ ,  $p=.030$ ), <표 IV-30>은 고등학생 가해자가 초·중학생 가해자에 비해 자신의 차별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향이 더 강함을 보여준다. 전자의 경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모두 상회하고 있지만, 반대로 후자에서는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고 있다.

표 IV-30 학교급×차별에 대한 생각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다른 사람을 차별한 행동에 대한 생각			전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학교급	초등학교	관측빈도	16	122	376	514
		기대빈도	17.8	140.4	355.8	514.0
		학교급 중 %	3.1%	23.7%	73.2%	100.0%
	중학교	관측빈도	22	222	583	827
		기대빈도	28.7	225.9	572.4	827.0
		학교급 중 %	2.7%	26.8%	70.5%	100.0%
	고등학교	관측빈도	44	302	678	1024
		기대빈도	35.5	279.7	708.8	1024.0
		학교급 중 %	4.3%	29.5%	66.2%	100.0%
전체	관측빈도	82	646	1637	2365	
	기대빈도	82.0	646.0	1637.0	2365.0	
	학교급 중 %	3.5%	27.3%	69.2%	100.0%	

타인을 차별할 당시 가해자가 느낀 감정의 경우도 가해자의 학업성적, 가정형편, 학교급과 모두 유의미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각각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26.496$ ,  $df=10$ ,  $p=.003$ ,  $\chi^2=22.870$ ,  $df=10$ ,  $p=.011$ ,  $\chi^2=64.302$ ,  $df=10$ ,  $p=.000$ 과 같다. <표 IV-31>에 따르면, 성적이 우수한 가해자의 경우 후련하고 통쾌함 또는 아무렇지도 않음과 같은 느낌을 가진 사례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했지만 성적이 중간 이하인 가해자들의 경우 반대로 미안함, 부끄러움, 화남과 같은 느낌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가해자가 그렇지 못한 가해자에 비해 차별 당시 죄의식을 상대적으로 느끼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표 IV-31 학업성적×차별 당시 느낀 감정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다른 사람을 차별했을 때 느꼈던 감정						전체	
		후련하고 통쾌했다	미안했다	부끄러웠다	차별하는 나에 대해 화가 났다	기타	아무렇지도 않았다/그냥 그랬다		
학업 성적	상	관측빈도	87	439	68	70	68	126	858
		기대빈도	74.0	475.0	70.3	80.6	53.3	104.9	858.0
		학업성적 중 %	10.1%	51.2%	7.9%	8.2%	7.9%	14.7%	100.0%
	중	관측빈도	62	527	72	88	48	92	889
		기대빈도	76.6	492.2	72.8	83.5	55.3	108.6	889.0
		학업성적 중 %	7.0%	59.3%	8.1%	9.9%	5.4%	10.3%	100.0%
	하	관측빈도	52	325	51	61	29	67	585
		기대빈도	50.4	323.9	47.9	54.9	36.4	71.5	585.0
		학업성적 중 %	8.9%	55.6%	8.7%	10.4%	5.0%	11.5%	100.0%
전체	관측빈도	201	1291	191	219	145	285	2332	
	기대빈도	201.0	1291.0	191.0	219.0	145.0	285.0	2332.0	
	학업성적 중 %	8.6%	55.4%	8.2%	9.4%	6.2%	12.2%	100.0%	

가정형편의 경우 <표 IV-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감정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후련/통쾌와 같은 감정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는 상의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두 집단에서는 상반된 감정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특정 감정 경향과 연결 짓기 어렵다. 이는 두 변수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의 실질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표 IV-32 가정형편×차별 당시 느낀 감정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다른 사람을 차별했을 때 느꼈던 감정						전체	
		후련 하고 통쾌 했다	미안 했다	부끄러 웠다	차별하는 나에 대해 화가 났다	기타	아무렇 지도 않았다/ 그냥 그랬다		
가정 형편	상	관측빈도	51	236	32	31	30	43	423
		기대빈도	37.0	234.2	34.6	39.7	26.1	51.5	423.0
		가정형편 중 %	12.1%	55.8%	7.6%	7.3%	7.1%	10.2%	100.0%
	중	관측빈도	140	1010	147	172	104	228	1801
		기대빈도	157.4	997.0	147.4	169.0	111.1	219.1	1801.0
		가정형편 중 %	7.8%	56.1%	8.2%	9.6%	5.8%	12.7%	100.0%
	하	관측빈도	13	46	12	16	10	13	110
		기대빈도	9.6	60.9	9.0	10.3	6.8	13.4	110.0
		가정형편 중 %	11.8%	41.8%	10.9%	14.5%	9.1%	11.8%	100.0%
전체	관측빈도	204	1292	191	219	144	284	2334	
	기대빈도	204.0	1292.0	191.0	219.0	144.0	284.0	2334.0	
	가정형편 중 %	8.7%	55.4%	8.2%	9.4%	6.2%	12.2%	100.0%	

마지막으로 <표 IV-33>을 통해 학교급에 따른 감정의 차이를 살펴보면, 초·중학생의 경우 여러 감정 중 유독 미안함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특정 감정이 부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죄책감과 거리가 먼 감정뿐만 아니라 부끄러움 및 화남과 같은 감정에서도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고 있다.

표 IV-33 학교급×차별 당시 느낀 감정 교차 분석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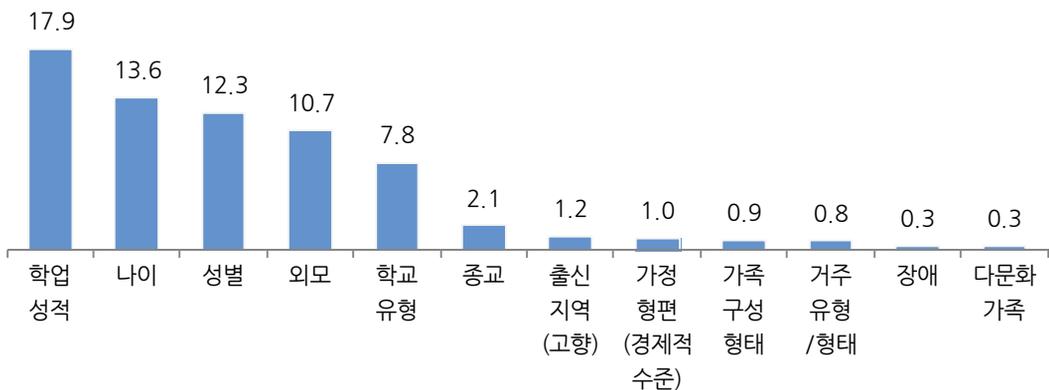
구분		다른 사람을 차별했을 때 느꼈던 감정						전체	
		후련 하고 통쾌 했다	미안 했다	부끄러 웠다	차별하는 나에 대해 화가 났다	기타	아무렇 지도 않았다/ 그냥 그랬다		
학교 급	초등 학교	관측빈도	45	320	39	42	25	36	507
		기대빈도	44.3	280.8	41.5	47.3	31.3	61.9	507.0
		학교급 중 %	8.9%	63.1%	7.7%	8.3%	4.9%	7.1%	100.0%
	중학 교	관측빈도	66	501	51	71	47	85	821
		기대빈도	71.7	454.8	67.1	76.6	50.6	100.2	821.0
		학교급 중 %	8.0%	61.0%	6.2%	8.6%	5.7%	10.4%	100.0%
	고등 학교	관측빈도	93	473	101	105	72	164	1008
		기대빈도	88.0	558.4	82.4	94.1	62.1	123.0	1008.0
		학교급 중 %	9.2%	46.9%	10.0%	10.4%	7.1%	16.3%	100.0%
전체	관측빈도	204	1294	191	218	144	285	2336	
	기대빈도	204.0	1294.0	191.0	218.0	144.0	285.0	2336.0	
	학교급 중 %	8.7%	55.4%	8.2%	9.3%	6.2%	12.2%	100.0%	

### 3) 차별 피해 경험

지금까지 우리는 외모, 장애,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사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이러한 차별을 일상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자주 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외모에 따른 차별을 제외하면 가해 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은 현저하게 낮았을 뿐만 아니라, 이는 앞 절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본 차별 실태조사에 포함된 다른 유형의 차별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추이였다. 결국, 청소년의 차별 실태에 있어 청소년의 가해 경험, 즉 가해자로서의 청소년은 심각한 우려 대상이 아님이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의 청소년, 즉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 피해의 실태는 어떤 양상을 띠고 있을까? 본 절에서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 피해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1) 차별 피해 경향

[그림 IV-8]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 피해의 실태를 보여준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야기하는 차별 사례는 바로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로 전체 응답자의 17.9%가 성적을 이유로 차별을 당해보았다. 그 뒤를 이어 나이(13.6%), 성별(12.3%), 외모(10.7%)에 따른 차별 순으로 피해자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고등학생만 응답한 학교 유형에 따른 차별 사례를 제외하면 나머지 사례의 경우 피해자 비율은 모두 2% 이하로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세 개 유형의 차별, 즉 학업성적, 나이, 성별에 따른 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피해 경험이 학교급, 학업성적, 가정형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주1) 각 차별 피해 유형별 '있다' 응답 비율을 제시함  
 주2) 학교 유형의 경우, 고등학생만 응답함

【 그림 IV-8 】 청소년의 차별 피해 경험 실태(%)

먼저,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의 경우 응답자의 학업성적, 가정형편, 학교급 모두 피해 경험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응답자의 학업성적과 피해 경험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132.275$ ,  $df=2$ ,  $p=.000$ 으로 <표 IV-34>를 통해 우리는 학업성적이 중간 이상인 학생들보다 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성적 차별에 더 많이 노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적으로 인한 차별인 만큼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차별에 더 노출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표 IV-34

## 학업성적×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학업성적	상	관측빈도	494	2992	3486
		기대빈도	625.7	2860.3	3486.0
		학업성적 중 %	14.2%	85.8%	100.0%
	중	관측빈도	733	3657	4390
		기대빈도	788.0	3602.0	4390.0
		학업성적 중 %	16.7%	83.3%	100.0%
	하	관측빈도	640	1885	2525
		기대빈도	453.2	2071.8	2525.0
		학업성적 중 %	25.3%	74.7%	100.0%
전체	관측빈도	1867	8534	10401	
	기대빈도	1867.0	8534.0	10401.0	
	학업성적 중 %	18.0%	82.0%	100.0%	

가정형편의 경우, 피해 경험과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98.911$ ,  $df=2$ ,  $p=.000$ 으로 <표 IV-35>는 가정형편이 상에 속한 학생들이 성적을 이유로 차별 당한 빈도가 기대빈도에 크게 못 미치지만 반대로 중·하의 학생들이 차별받은 빈도는 기대빈도를 크게 상회함을 보여준다. 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가 가정형편이 중 이하인 학생들에게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가정형편이 학업성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일수록 학원, 과외 등 정규 수업 이외의 학습 기회를 많이 누릴 수 있다. 즉, 좋은 학업성적을 내기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가정형편과 학업성적 사이의 서열 상관계수는  $\rho=.299$ ,  $p=.000$ 으로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일수록 성적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5

## 가정형편×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가정형편	상	관측빈도	234	1612	1846
		기대빈도	331.2	1514.8	1846.0
		가정형편 중 %	12.7%	87.3%	100.0%
	중	관측빈도	1511	6690	8201
		기대빈도	1471.2	6729.8	8201.0
		가정형편 중 %	18.4%	81.6%	100.0%
	하	관측빈도	121	234	355

구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전체		관측빈도	63.7	291.3	355.0
		기대빈도	34.1%	65.9%	100.0%
		가정형편 중 %			
		관측빈도	1866	8536	10402
		기대빈도	1866.0	8536.0	10402.0
		가정형편 중 %	17.9%	82.1%	100.0%

마지막으로 학교급과 피해 경험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589.548$ ,  $df=2$ ,  $p=.000$ 으로 <표 IV-36>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차별을 경험하는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크게 상회함을 보여준다.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성적으로 인한 차별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된다는 말이다.

**표 IV-36** 학교급×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학교급	초등학교	관측빈도	141	2834	2975
		기대빈도	533.2	2441.8	2975.0
		학교급 중 %	4.7%	95.3%	100.0%
	중학교	관측빈도	641	2861	3502
		기대빈도	627.6	2874.4	3502.0
		학교급 중 %	18.3%	81.7%	100.0%
	고등학교	관측빈도	1087	2865	3952
		기대빈도	708.2	3243.8	3952.0
		학교급 중 %	27.5%	72.5%	100.0%
	전체	관측빈도	1869	8560	10429
		기대빈도	1869.0	8560.0	10429.0
		학교급 중 %	17.9%	82.1%	100.0%

성적에 따른 차별 사례 다음으로 가장 높은 피해자 비율을 기록한 나이에 따른 차별 사례 역시 응답자의 학업성적, 가정형편, 학교급과 모두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먼저, 학업성적과 차별 경험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19.341$ ,  $df=2$ ,  $p=.000$ 으로 학업성적이 중간인 학생들을 제외하면 상·하인 학생들이 나이에 따른 차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와 달리 후자의 경우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모두 상회하고 있다.

표 IV-37 학업성적×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학업성적	상	관측빈도	518	2970	3488
		기대빈도	473.0	3015.0	3488.0
		학업성적 중 %	14.9%	85.1%	100.0%
	중	관측빈도	519	3867	4386
		기대빈도	594.8	3791.2	4386.0
		학업성적 중 %	11.8%	88.2%	100.0%
	하	관측빈도	373	2150	2523
		기대빈도	342.2	2180.8	2523.0
		학업성적 중 %	14.8%	85.2%	100.0%
전체		관측빈도	1410	8987	10397
		기대빈도	1410.0	8987.0	10397.0
		학업성적 중 %	13.6%	86.4%	100.0%

가정형편과 나이 차별 경험 사이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11.915$ ,  $df=2$ ,  $p=.003$ 으로 가정형편이 윤택한 학생들의 경우 실제 차별을 경험한 빈도수는 기대빈도보다 낮았지만, 가정형편이 중간 이하인 학생들은 오히려 기대수준보다 더 많이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8 가정형편×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가정형편	상	관측빈도	215	1632	1847
		기대빈도	250.1	1596.9	1847.0
		가정형편 중 %	11.6%	88.4%	100.0%
	중	관측빈도	1130	7072	8202
		기대빈도	1110.4	7091.6	8202.0
		가정형편 중 %	13.8%	86.2%	100.0%
	하	관측빈도	63	288	351
		기대빈도	47.5	303.5	351.0
		가정형편 중 %	17.9%	82.1%	100.0%
전체		관측빈도	1408	8992	10400
		기대빈도	1408.0	8992.0	10400.0
		가정형편 중 %	13.5%	86.5%	100.0%

앞서 살펴본 학업성적과 가정형편 모두 나이 차별 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지만 그 연관성이 전달하는 실질적인 의미는 명확하지 못하다. 오히려 나이에 따른 차별 경험에서 더 의미 있는 것은 학생들의 나이를 반영하고 있는 학교급에 따른 차별 경험의 변화 양상이다. 두 변수 사이에도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chi^2=98.039$ ,  $df=2$ ,  $p=.000$ ), <표 IV-39>는 나이 차별의 피해가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더 심각하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급 학교에 재학 중인, 즉 나이가 어린 청소년일수록 나이로 인한 차별 피해에 더 취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래 표는 상급 학교에 재학 중인 나이 많은 학생일수록 나이로 인한 차별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IV-39 학교급×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학교급	초등학교	관측빈도	251	2724	2975
		기대빈도	403.2	2571.8	2975.0
		학교급 중 %	8.4%	91.6%	100.0%
	중학교	관측빈도	513	2989	3502
		기대빈도	474.6	3027.4	3502.0
		학교급 중 %	14.6%	85.4%	100.0%
	고등학교	관측빈도	649	3300	3949
		기대빈도	535.2	3413.8	3949.0
		학교급 중 %	16.4%	83.6%	100.0%
전체	관측빈도	1413	9013	10426	
	기대빈도	1413.0	9013.0	10426.0	
	학교급 중 %	13.6%	86.4%	100.0%	

세 번째로 피해 경험자 비율이 높았던 성별에 따른 차별의 경우 응답자의 학업성적, 가정형편, 교육과정 모두 피해 경험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성별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상황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학업성적과 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의 경우 응답자의 성별을 고려하기 전에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가  $\chi^2=10.037$ ,  $df=2$ ,  $p=.007$ 로 유의미하게 나왔지만 응답자의 성별이 고려된 후에는 오직 여학생들에게서만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됐다 ( $\chi^2=11.341$ ,  $df=2$ ,  $p=.003$ ). 즉, 남학생의 경우 성적과 차별 피해 사이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 <표 IV-40>을 보면 성적이 하위권인 여학생들이 성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 상위권, 중위권의 순서로 피해 경험자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표 IV-40

학업성적(여)×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학업성적 (여)	상	관측빈도	258	1323	1581
		기대빈도	250.7	1330.3	1581.0
		학업성적 중 %	16.3%	83.7%	100.0%
	중	관측빈도	308	1878	2186
		기대빈도	346.6	1839.4	2186.0
		학업성적 중 %	14.1%	85.9%	100.0%
	하	관측빈도	226	1002	1228
		기대빈도	194.7	1033.3	1228.0
		학업성적 중 %	18.4%	81.6%	100.0%
전체	관측빈도	792	4203	4995	
	기대빈도	792.0	4203.0	4995.0	
	학업성적 중 %	15.9%	84.1%	100.0%	

가정형편 역시 학생들의 성별을 고려하기 전에는 차별 피해 경험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지만( $\chi^2=26.296$ ,  $df=2$ ,  $p=.000$ ), 성별이 고려된 후에는 여학생들에게서만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chi^2=19.080$ ,  $df=2$ ,  $p=.000$ ). <표 IV-41>는 가정형편이 중간 이하인 여학생들이 기대수준 이상으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지만 가정형편이 좋은 여학생들은 반대로 기대수준 이하의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41

가정형편(여)×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가정형편 (여)	상	관측빈도	99	701	800
		기대빈도	126.6	673.4	800.0
		가정형편 중 %	12.4%	87.6%	100.0%
	중	관측빈도	648	3375	4023
		기대빈도	636.8	3386.2	4023.0
		가정형편 중 %	16.1%	83.9%	100.0%
	하	관측빈도	44	130	174
		기대빈도	27.5	146.5	174.0
		가정형편 중 %	25.3%	74.7%	100.0%
전체	관측빈도	791	4206	4997	
	기대빈도	791.0	4206.0	4997.0	
	가정형편 중 %	15.8%	84.2%	100.0%	

마지막으로 학교급에 따른 성차별 경험의 경우 여학생, 남학생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됐다. 두 변수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각각  $\chi^2=6.181$ ,  $df=2$ ,  $p=.045$ ,  $\chi^2=54.466$ ,  $df=2$ ,  $p=.000$ 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성차별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고등학생들로 초·중학생과 달리 피해자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크게 상회하였다. 마찬가지로 여자 고등학생들의 피해 경험 관측빈도도 초·중학생들의 경우와 반대로 기대빈도를 크게 상회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동일한 피해 경향을 보여주었다.

**표 IV-42 학교급×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남	학교급	초등학교	관측빈도	118	1423	1541
			기대빈도	138.4	1402.6	1541.0
			학교급 중 %	7.7%	92.3%	100.0%
		중학교	관측빈도	163	1670	1833
			기대빈도	164.6	1668.4	1833.0
			학교급 중 %	8.9%	91.1%	100.0%
		고등학교	관측빈도	206	1844	2050
			기대빈도	184.1	1865.9	2050.0
			학교급 중 %	10.0%	90.0%	100.0%
	전체	빈도	487	4937	5424	
		기대빈도	487.0	4937.0	5424.0	
		학교 구분 중 %	9.0%	91.0%	100.0%	
여	학교급	초등학교	관측빈도	150	1283	1433
			기대빈도	227.2	1205.8	1433.0
			학교급 중 %	10.5%	89.5%	100.0%
		중학교	관측빈도	266	1409	1675
			기대빈도	265.5	1409.5	1675.0
			학교급 중 %	15.9%	84.1%	100.0%
		고등학교	관측빈도	377	1517	1894
			기대빈도	300.3	1593.7	1894.0
			학교급 중 %	19.9%	80.1%	100.0%
	전체	빈도	793	4209	5002	
		기대빈도	793.0	4209.0	5002.0	
		학교급 중 %	15.9%	84.1%	100.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학생 집단에서만 성차별 피해 경험이 피해자의 학업성적, 가정형편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준 것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차별에 더 노출돼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성차별의 주요 피해자는 남학생이 아닌 여학생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성별과 성차별 경험을 교차 분석한 결과 두 변수 사이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 $\chi^2=114.626$ ,  $df=1$ ,  $p=.000$ ). <표 IV-43>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차별에 더 취약함을 보여준다.

**표 IV-43 성별×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성별	남	관측빈도	487	4937	5424
		기대빈도	666.3	4757.7	5424.0
		성별 중 %	9.0%	91.0%	100.0%
	여	관측빈도	794	4210	5004
		기대빈도	614.7	4389.3	5004.0
		성별 중 %	15.9%	84.1%	100.0%
전체	관측빈도	1281	9147	10428	
	기대빈도	1281.0	9147.0	10428.0	
	성별 중 %	12.3%	8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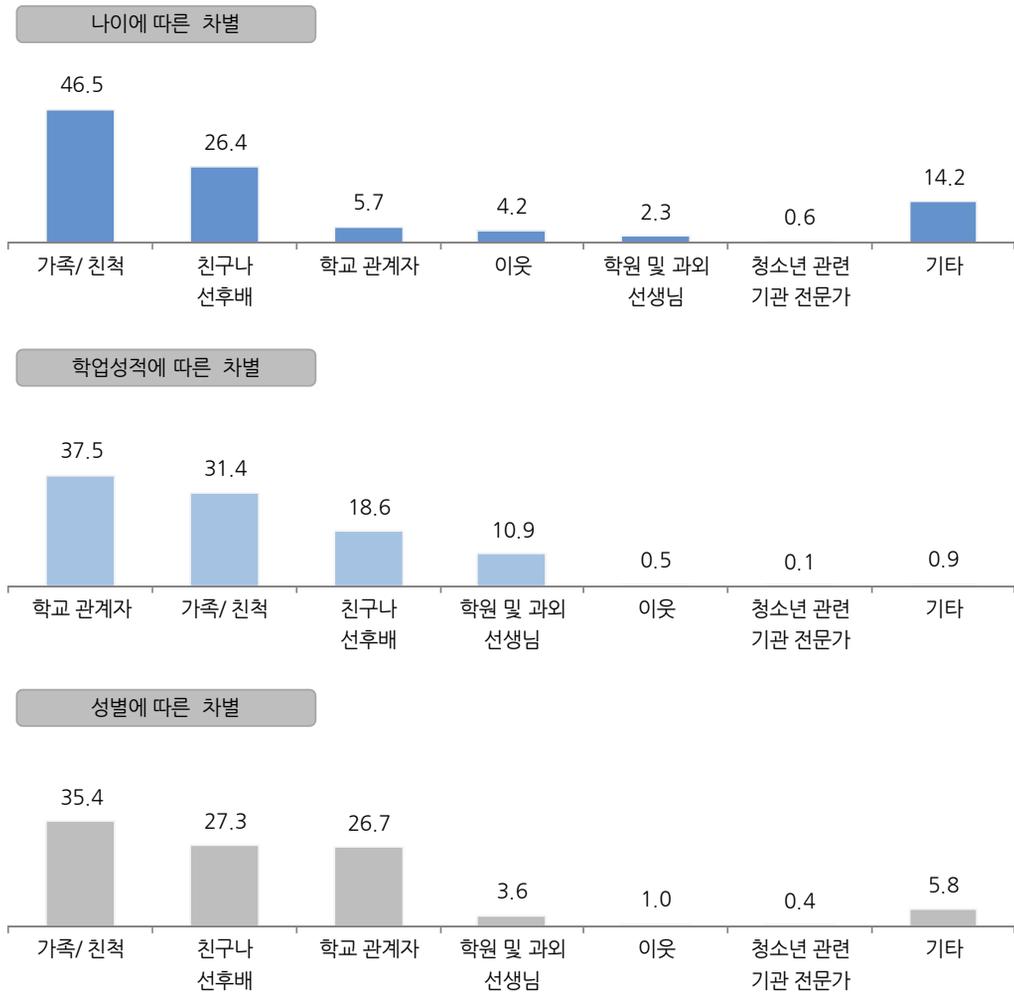
이를 승산비(odds ratio)와 상대 위험도(relative risk)로 계산한 결과 각각 .523, .566의 값을 얻었는데, 환언하면 남학생이 성차별 피해를 경험할 승산(odds)은 여학생의 .523배이고 남학생이 성차별 피해를 경험할 확률은 여학생의 .566배라는 말이다. 두 결과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성차별 피해에 더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

## (2) 주요 차별 가해자

우리는 지금까지 학업성적, 나이, 성별에 따른 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피해 경험을 살펴보았다. 학업성적과 가정형편이 떨어지는 학생일수록 그리고 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일수록 성적으로 인한 차별에 더 많이 노출돼 있었고, 나이에 따른 차별의 경우 하급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들보다 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들이 더 취약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별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차별에 더 많이 노출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적, 나이, 성별 등을 이유로 청소년을 가장 많이 차별한 가해 집단은 누구일까? [그림 IV-9]를 통해 우리는 차별 유형별로 주요 가해자 집단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학업성적을 이유로 학생들을 가장 많이 차별한 집단은 바로 학교 선생님,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등으로 구성된 학교 관계자였다. 학교 관계자가 전체 피해 사례의 37.5%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가족/친척이 31.4%를 차지하였다. 성적을 이유로 청소년들을 가장 많이 차별한 집단은 학교 관계자와 가족/친척인 셈이다. 나이에 따른 차별의 경우 전체 피해 사례의 46.5%가 가족/친척으로부터, 그리고 26.4%가 친구/선·후배로부터 기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의 경우 가장 큰 가해자는 가족/친척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35.4%가 가족/친척에 의해, 그 뒤를 이어 친구/선·후배와 학교 관계자가 각각 27.3%, 26.7%를 차지하였다. 청소년들이 경험한 성차별 피해 사례 10건 중 6건에 피해자의 가족/친척 또는 학교 관계자들이 개입돼 있었다는 사실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 그림 IV-9 】 차별 유형별 가해자 집단(%)

이러한 가해자 집단은 차별 유형에 따라 피해자의 학교급, 학업성적, 가정형편 등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 예로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의 경우 피해자의 학업성적은 가해자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chi^2=21.142$ ,  $df=12$ ,  $p=.048$ ). <표 IV-44>에 따르면 학업성적이 상인 피해자의 경우, 학교 관계자 및 학원/과외 교사의 경우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했지만 하의 경우 친구/선·후배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 학업성적×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자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자							전체	
		가족/ 친척	이웃	친구나 선후배	학교 관계자	학원 및 과외 선생님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기타		
학업 성적	상	관측빈도	153	6	66	189	59	0	6	479
		기대빈도	150.7	2.6	89.3	179.6	52.2	.3	4.2	479.0
		학업성적 중 %	31.9%	1.3%	13.8%	39.5%	12.3%	0.0%	1.3%	100.0%
	중	관측빈도	221	2	135	267	79	1	5	710
		기대빈도	223.4	3.9	132.3	266.3	77.4	.4	6.3	710.0
		학업성적 중 %	31.1%	.3%	19.0%	37.6%	11.1%	.1%	.7%	100.0%
	하	관측빈도	195	2	136	222	59	0	5	619
		기대빈도	194.8	3.4	115.4	232.1	67.4	.3	5.5	619.0
		학업성적 중 %	31.5%	.3%	22.0%	35.9%	9.5%	0.0%	.8%	100.0%
전체	관측빈도	569	10	337	678	197	1	16	1808	
	기대빈도	569.0	10.0	337.0	678.0	197.0	1.0	16.0	1808.0	
	학업성적 중 %	31.5%	.6%	18.6%	37.5%	10.9%	.1%	.9%	100.0%	

피해자의 학교급 역시 가해자 유형과 유의미한 연계성을 보여주었다( $\chi^2=290.764$ ,  $df=12$ ,  $p=.000$ ). <표 IV-45>에서 알 수 있듯이 초·중학생은 성적 차별을 주로 가족/친척 및 친구/선·후배를 통해 받은 반면 고등학생은 주로 학교 관계자를 통해 성적으로 인한 차별의 피해를 입었다.

표 IV-45 학교급×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자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가해자							전체	
		가족/친척	이웃	친구나 선후배	학교 관계자	학원 및 과외 선생님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기타		
학교급	초등학교	관측빈도	68	0	46	12	12	0	0	138
		기대빈도	43.4	.7	25.8	51.8	15.0	.1	1.2	138.0
		학교급 중 %	49.3%	0.0%	33.3%	8.7%	8.7%	0.0%	0.0%	100.0%
	중학교	관측빈도	278	5	129	112	92	0	1	617
		기대빈도	194.1	3.1	115.3	231.6	67.2	.3	5.5	617.0
		학교급 중 %	45.1%	.8%	20.9%	18.2%	14.9%	0.0%	.2%	100.0%
	고등학교	관측빈도	223	4	163	555	93	1	15	1054
		기대빈도	331.5	5.2	196.9	395.6	114.8	.6	9.3	1054.0
		학교급 중 %	21.2%	.4%	15.5%	52.7%	8.8%	.1%	1.4%	100.0%
전체	관측빈도	569	9	338	679	197	1	16	1809	
	기대빈도	569.0	9.0	338.0	679.0	197.0	1.0	16.0	1809.0	
	학교급 중 %	31.5%	.5%	18.7%	37.5%	10.9%	.1%	.9%	100.0%	

나이에 따른 차별 사례의 경우, 피해자의 학업성적과 가정형편 모두 가해자 유형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의 학교급에 따라서는 가해자 집단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chi^2=80.246$ ,  $df=12$ ,  $p=.000$ ), <표 IV-46>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주로 친구/선·후배를 통해, 중학생은 주로 가족/친척을 통해 차별을 당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관계자 및 기타 셀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다.

표 IV-46 학교급×나이에 따른 차별 가해자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나이에 따른 차별 가해자							전체	
		가족/친척	이웃	친구나 선후배	학교 관계자	학원 및 과외 선생님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기타		
학교급	초등학교	관측빈도	86	9	112	2	8	1	24	242
	중학교	기대빈도	112.6	10.3	63.8	13.7	5.6	1.4	34.6	242.0

구분			나이에 따른 차별 가해자							전체
			가족/친척	이웃	친구나 선후배	학교 관계자	학원 및 과외 선생님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기타	
중학교	학교급 중 %	관측빈도	35.5%	3.7%	46.3%	.8%	3.3%	.4%	9.9%	100.0%
		기대빈도	250	19	115	26	10	4	61	485
		기대빈도	225.7	20.6	127.8	27.4	11.2	2.9	69.3	485.0
	고등학교	학교급 중 %	51.5%	3.9%	23.7%	5.4%	2.1%	.8%	12.6%	100.0%
		관측빈도	289	29	127	48	13	3	107	616
		기대빈도	286.7	26.1	162.4	34.9	14.2	3.7	88.1	616.0
전체	학교급 중 %	46.9%	4.7%	20.6%	7.8%	2.1%	.5%	17.4%	100.0%	
	관측빈도	625	57	354	76	31	8	192	1343	
	기대빈도	625.0	57.0	354.0	76.0	31.0	8.0	192.0	1343.0	
전체	학교급 중 %	46.5%	4.2%	26.4%	5.7%	2.3%	.6%	14.3%	100.0%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의 경우 피해자의 학업성적, 가정형편, 학교급 모두 가해자 유형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sup>31)</sup>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서도 가해자의 유형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chi^2=269.976$ ,  $df=6$ ,  $p=.000$ ), <표 IV-47>은 남성 피해자에게는 가해자가 학교 관계자에 편중되는 반면 여성 피해자에게는 가해자가 가족/친척에 편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47 성별×성별에 따른 차별 가해자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성별에 따른 차별 가해자							전체
			가족/친척	이웃	친구나 선후배	학교 관계자	학원 및 과외 선생님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기타	
성별	남	관측빈도	61	7	130	221	32	4	12	467
		기대빈도	165.3	4.5	127.4	124.7	16.5	1.5	27.1	467.0
		성별 중 %	13.1%	1.5%	27.8%	47.3%	6.9%	.9%	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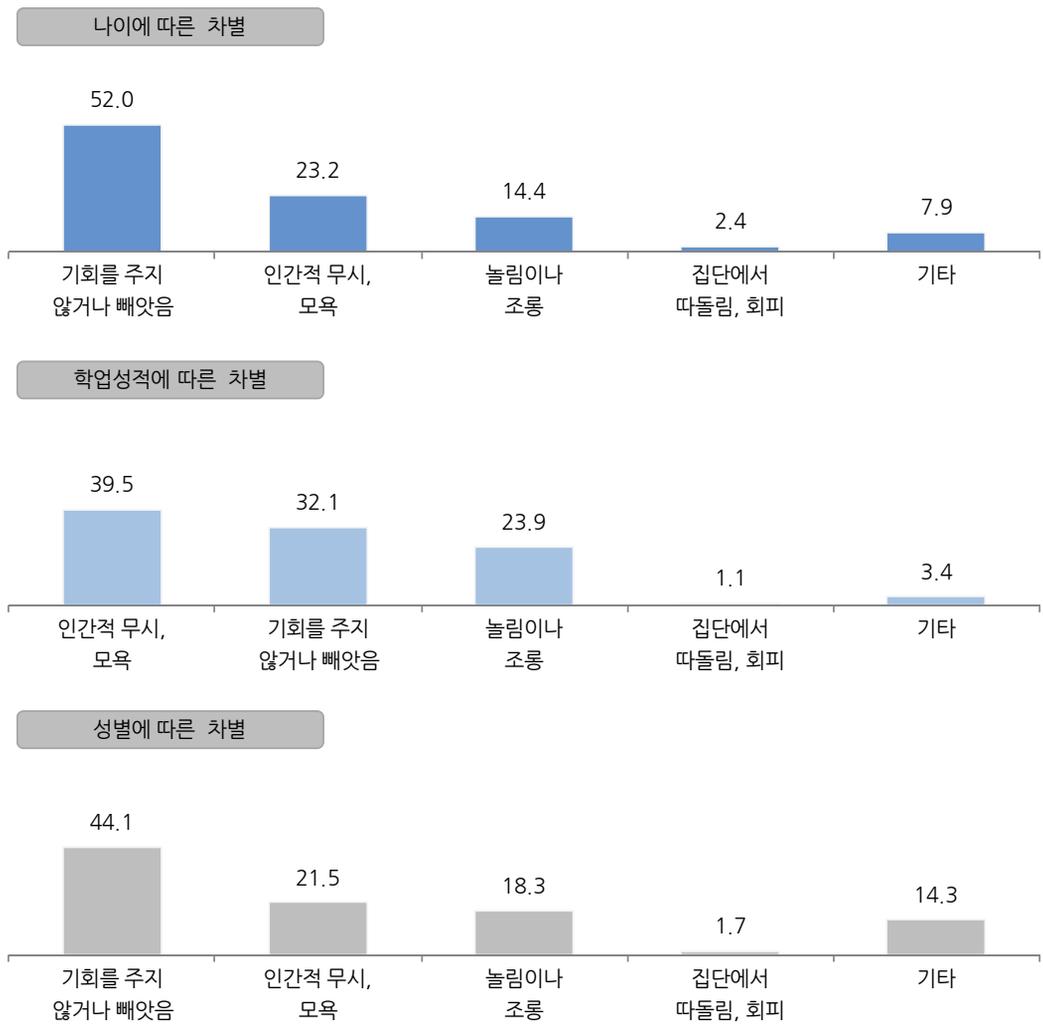
31) 해당 결과는 피해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조건에서 얻은 것이며 피해자의 성별을 고려할 경우 기대 빈도 5 미만의 셀이 모든 교차 분석에서 과도하게 증가하여 일반적인 카이제곱 검정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피셔의 정확도 검사를 적용하였으나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구분		성별에 따른 차별 가해자							전체
		가족/ 친척	이웃	친구나 선후배	학교 관계자	학원 및 과외 선생님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기타	
여	관측빈도	379	5	209	111	12	0	60	776
	기대빈도	274.7	7.5	211.6	207.3	27.5	2.5	44.9	776.0
	성별 중%	48.8%	.6%	26.9%	14.3%	1.5%	0.0%	7.7%	100.0%
전체	빈도	440	12	339	332	44	4	72	1243
	기대빈도	440.0	12.0	339.0	332.0	44.0	4.0	72.0	1243.0
	성별 중%	35.4%	1.0%	27.3%	26.7%	3.5%	.3%	5.8%	100.0%

### (3) 주요 차별 방법

우리는 지금까지 학업성적, 성별, 나이에 따른 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피해 경험과 주요 가해자 집단을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해 본 성적 차별의 경우, 주요 가해 집단은 학교 관계자와 가족/친척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학업성적과 학교급에 따라 가해 집단이 달라지기도 했는데 학업성적이 중간 이상인 피해자는 주로 학교 관계자 및 학원/과외 교사에 의해, 하인 피해자는 주로 친구/선·후배에 의해 차별을 당했다. 나이에 따른 차별의 경우, 가족/친척과 친구/선·후배가 주요 가해자로 꼽혔다. 특히, 피해자의 학교급에 따라 가해자 유형이 달라졌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친구/선·후배에 의해, 중·고등학생의 경우 가족/친척에 의해 가장 많이 차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의 경우, 남학생은 학교 관계자에 의해, 여학생은 가족/친척에 의해 주로 차별을 당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차별 경험하였을까? [그림 IV-10]에 따르면 나이와 성별에 따른 차별 사례의 경우 피해자들이 경험한 차별 방식은 매우 유사하다.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는, 즉 기회박탈이 각각 52%, 44.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인간적 무시/모욕이 각각 23.2%, 21.5%로 2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성적에 따른 차별 사례의 경우 피해자들은 주로 인간적 무시/모욕(39.5%)을 통해 차별을 경험하였고 기회박탈(32.1%)도 적지 않았다.



【 그림 IV-10 】 차별 유형별 피해 방식(%)

피해자들의 학업성적, 학교급, 가정형편에 따라 차별 사례별 피해 방식이 달라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사례의 경우 피해자의 학업성적과 학교급 모두 피해 방식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차별 방식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23.821$ ,  $df=8$ ,  $p=.002$ 으로 <표 IV-48>에 따르면 학업성적이 중간 이상인 학생들의 경우 기회박탈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지만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경우 인간적 무시/모욕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크게 상회하였다.

표 IV-48 학업성적×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방식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방식					전체	
		놀림이나 조롱	인간적 무시, 모욕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기타		
학업 성적	상	관측빈도	101	170	177	7	24	479
		기대빈도	114.5	189.4	153.6	5.4	16.2	479.0
		학업성적 중 %	21.1%	35.5%	37.0%	1.5%	5.0%	100.0%
	중	관측빈도	168	269	231	9	17	694
		기대빈도	165.9	274.4	222.5	7.8	23.4	694.0
		학업성적 중 %	24.2%	38.8%	33.3%	1.3%	2.4%	100.0%
	하	관측빈도	156	264	162	4	19	605
		기대빈도	144.6	239.2	194.0	6.8	20.4	605.0
		학업성적 중 %	25.8%	43.6%	26.8%	.7%	3.1%	100.0%
전체	관측빈도	425	703	570	20	60	1778	
	기대빈도	425.0	703.0	570.0	20.0	60.0	1778.0	
	학업성적 중 %	23.9%	39.5%	32.1%	1.1%	3.4%	100.0%	

학교급과 차별 방식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211.743$ ,  $df=8$ ,  $p=.000$ 으로 <표 IV-49>는 초등학생의 경우 주로 놀림/조롱에서, 중학생은 인간적 무시/모욕에서, 그리고 고등학생은 기회박탈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크게 상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49 학교급×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방식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방식					전체	
		놀림이나 조롱	인간적 무시, 모욕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기타		
학교 급	초등 학교	관측빈도	56	52	11	3	9	131
		기대빈도	31.3	51.7	42.1	1.5	4.4	131.0
		학교급 중 %	42.7%	39.7%	8.4%	2.3%	6.9%	100.0%
	중학 교	관측빈도	175	306	91	5	26	603
		기대빈도	144.1	237.9	193.9	6.8	20.3	603.0
		학교급 중 %	29.0%	50.7%	15.1%	.8%	4.3%	100.0%
	고등 학교	관측빈도	194	344	470	12	25	1045
		기대빈도	249.6	412.4	336.0	11.7	35.2	1045.0
		학교급 중 %	18.6%	32.9%	45.0%	1.1%	2.4%	100.0%

구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방식						전체
	놀림이나 조롱	인간적 무시, 모욕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기타		
전체	관측빈도	425	702	572	20	60	1779
	기대빈도	425.0	702.0	572.0	20.0	60.0	1779.0
	학교급 중 %	23.9%	39.5%	32.2%	1.1%	3.4%	100.0%

나이에 따른 차별 사례의 경우, 피해 방식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준 것은 피해자의 가정형편과 학교급이었다. 가정형편과 차별 방식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16.359$ ,  $df=8$ ,  $p=.038$ 로, <표 IV-50>을 보면 가정형편이 윤택한 피해자의 경우 놀림/조롱에서, 중간인 경우 기회박탈 및 기타에서, 그리고 하의 경우 인간적 무시/모욕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 두 빈도의 차이는 근소하며 가정형편에 따라 두 빈도 사이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셀을 찾아보기 어렵다. 즉,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방식의 차이에 대해 통계적 유의미성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말이다.

표 IV-50 가정형편×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방식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방식						전체	
	놀림이나 조롱	인간적 무시, 모욕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기타			
가정형편	상	관측빈도	38	44	106	8	10	206
		기대빈도	30.0	47.6	106.8	5.1	16.5	206.0
		가정형편 중 %	18.4%	21.4%	51.5%	3.9%	4.9%	100.0%
	중	관측빈도	152	244	563	25	94	1078
		기대빈도	157.1	249.3	558.6	26.4	86.6	1078.0
		가정형편 중 %	14.1%	22.6%	52.2%	2.3%	8.7%	100.0%
	하	관측빈도	6	23	28	0	4	61
		기대빈도	8.9	14.1	31.6	1.5	4.9	61.0
		가정형편 중 %	9.8%	37.7%	45.9%	0.0%	6.6%	100.0%
전체	관측빈도	196	311	697	33	108	1345	
	기대빈도	196.0	311.0	697.0	33.0	108.0	1345.0	
	가정형편 중 %	14.6%	23.1%	51.8%	2.5%	8.0%	100.0%	

피해자의 학교급과 나이로 인한 차별 방식 사이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63.168$ ,  $df=8$ ,

p=.000으로 우리는 <표 IV-51>을 통해 초등학생의 경우 놀림/조롱에서, 중학생은 기회박탈 및 기타에서, 그리고 고등학생은 인간적 무시/모욕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크게 상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51 학교급×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방식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방식					전체	
		놀림이나 조롱	인간적 무시, 모욕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기타		
학교급	초등학교	관측빈도	66	57	91	11	15	240
		기대빈도	34.6	55.8	124.9	5.7	19.1	240.0
		학교급 중 %	27.5%	23.8%	37.9%	4.6%	6.3%	100.0%
	중학교	관측빈도	54	93	281	6	52	486
		기대빈도	70.0	112.9	252.9	11.5	38.6	486.0
		학교급 중 %	11.1%	19.1%	57.8%	1.2%	10.7%	100.0%
	고등학교	관측빈도	74	163	329	15	40	621
		기대빈도	89.4	144.3	323.2	14.8	49.3	621.0
		학교급 중 %	11.9%	26.2%	53.0%	2.4%	6.4%	100.0%
전체	관측빈도	194	313	701	32	107	1347	
	기대빈도	194.0	313.0	701.0	32.0	107.0	1347.0	
	학교급 중 %	14.4%	23.2%	52.0%	2.4%	7.9%	100.0%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방식의 경우, 피해자의 학업성적과 가정형편 모두 피해 방식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성별을 고려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의 학교급에 따라서는 차별 방식이 유의미하게 달라졌으며 피해자들의 성별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상황에서도 두 변수의 유의미한 연관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학교급과 차별 피해 방식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각각  $\chi^2=25.4$ ,  $df=8$ ,  $p=.001$ ,  $\chi^2=22.303$ ,  $df=8$ ,  $p=.004$ 로, <표 IV-52>, <표 IV-53>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학교급에 따라 부각되는 차별 방식이 매우 유사함을 보여준다.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은 놀림/조롱에서, 중학생은 기회박탈 및 기타에서, 그리고 고등학생은 인간적 무시/모욕 및 기회박탈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고 여학생의 경우도 초등학생은 놀림/조롱 및 인간적 무시/모욕에서, 중학생은 기회박탈에서, 그리고 고등학생은 인간적 무시/모욕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다.

표 IV-52 학교급(남)×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방식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방식					전체	
		놀림이나 조롱	인간적 무시, 모욕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기타		
학교 급 (남)	초등 학교	관측빈도	36	18	35	4	8	101
		기대빈도	15.0	20.1	55.8	2.1	8.0	101.0
		학교급 중 %	35.6%	17.8%	34.7%	4.0%	7.9%	100.0%
	중학 교	관측빈도	17	30	98	3	18	166
		기대빈도	24.6	33.1	91.8	3.4	13.2	166.0
		학교급 중 %	10.2%	18.1%	59.0%	1.8%	10.8%	100.0%
	고등 학교	관측빈도	20	50	139	3	13	225
		기대빈도	33.4	44.8	124.4	4.6	17.8	225.0
		학교급 중 %	8.9%	22.2%	61.8%	1.3%	5.8%	100.0%
전체	관측빈도	73	98	272	10	39	492	
	기대빈도	73.0	98.0	272.0	10.0	39.0	492.0	
	학교급 중 %	14.8%	19.9%	55.3%	2.0%	7.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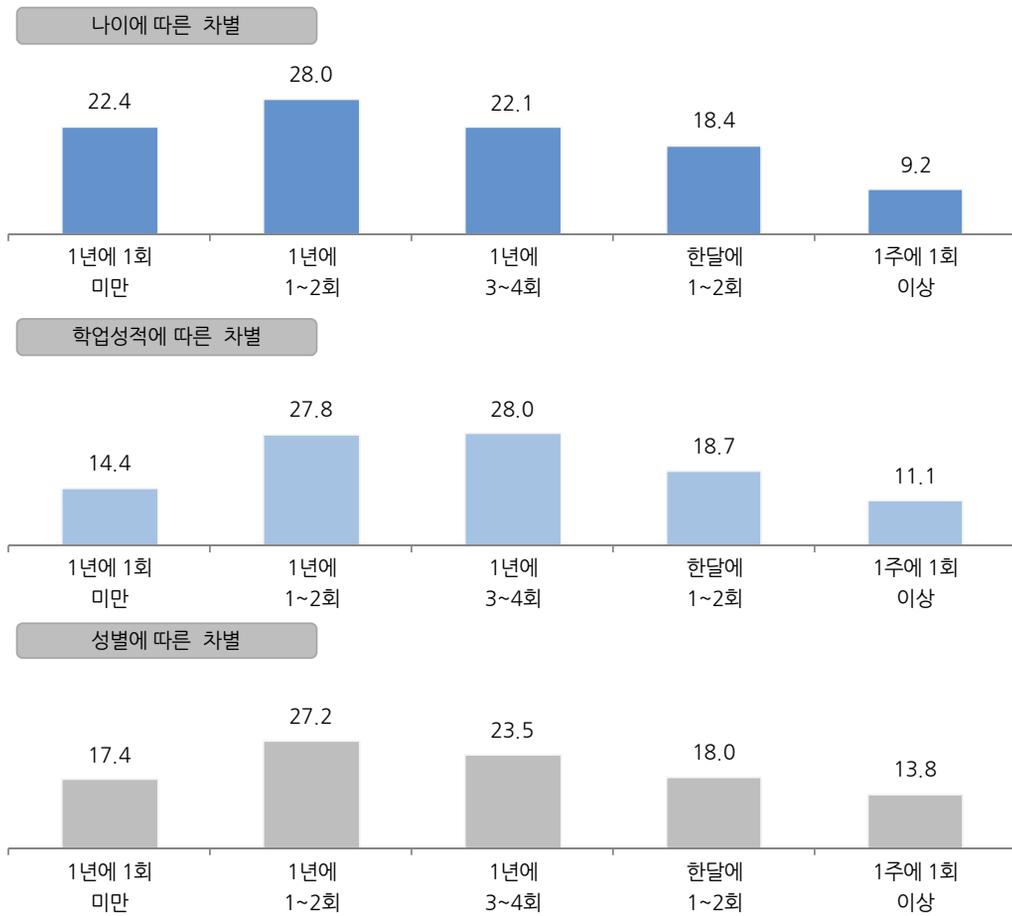
표 IV-53 학교급(여)×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방식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방식					전체	
		놀림이나 조롱	인간적 무시, 모욕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기타		
학교 급 (여)	초등 학교	관측빈도	30	39	56	8	8	141
		기대빈도	19.9	35.4	70.6	3.8	11.4	141.0
		학교급 중 %	21.3%	27.7%	39.7%	5.7%	5.7%	100.0%
	중학 교	관측빈도	37	63	183	3	34	320
		기대빈도	45.2	80.3	160.2	8.6	25.8	320.0
		학교급 중 %	11.6%	19.7%	57.2%	.9%	10.6%	100.0%
	고등 학교	관측빈도	54	113	190	12	27	396
		기대빈도	55.9	99.3	198.2	10.6	31.9	396.0
		학교급 중 %	13.6%	28.5%	48.0%	3.0%	6.8%	100.0%
전체	관측빈도	121	215	429	23	69	857	
	기대빈도	121.0	215.0	429.0	23.0	69.0	857.0	
	학교급 중 %	14.1%	25.1%	50.1%	2.7%	8.1%	100.0%	

#### (4) 차별 피해 빈도

청소년의 차별 피해 실태와 관련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내용은 피해의 빈도이다. [그림 IV-11]은 성차별을 1주일에 1회 이상 경험한 청소년이 다른 차별 사례에 비해 높음을 보여준다. 1주에 1회 이상 성차별을 경험한 피해 청소년은 13.8%로, 나이 차별의 9.8%, 성적 차별의 11.1%보다 높다. 그러나 빈도의 전반적인 분포를 고려하면 1년에 4회 이하로 차별을 당한 전체 피해자의 비율은 성적, 성별, 나이에 따른 차별의 경우 각각 70.2%, 68.1%, 72.5%로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일상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IV-11 】 차별 유형별 피해 빈도(%)

피해 빈도 역시 차별 사례에 따라 피해자의 학업성적, 학교급, 가정형편과 유의미하게 연관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의 경우, 피해자의 가정형편만이 차별 빈도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두 변수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22.303$ ,  $df=8$ ,  $p=.004$ 로 <표 IV-54>는 1년에 3~4회를 분기점으로 가정형편이 가장 떨어지는 피해자들은 잦은 빈도에 해당하는 셀로 이동할수록, 중의 경우는 낮은 빈도의 셀로 이동할수록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는 상반된 추이를 보여준다. 가정형편이 안 좋은 피해자들이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에 비해 더 자주 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다.

**표 IV-54 가정형편×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빈도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피해 빈도					전체	
		1년에 1회 미만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 달에 1~2회	1주에 1회 이상		
가정 형편	상	관측빈도	33	52	67	35	29	216
		기대빈도	31.2	60.0	60.3	40.6	23.9	216.0
		가정형편 중 %	15.3%	24.1%	31.0%	16.2%	13.4%	100.0%
	중	관측빈도	211	404	381	265	142	1403
		기대빈도	203.0	389.8	391.4	263.6	155.3	1403.0
		가정형편 중 %	15.0%	28.8%	27.2%	18.9%	10.1%	100.0%
	하	관측빈도	7	26	36	26	21	116
		기대빈도	16.8	32.2	32.4	21.8	12.8	116.0
		가정형편 중 %	6.0%	22.4%	31.0%	22.4%	18.1%	100.0%
전체	관측빈도	251	482	484	326	192	1735	
	기대빈도	251.0	482.0	484.0	326.0	192.0	1735.0	
	가정형편 중 %	14.5%	27.8%	27.9%	18.8%	11.1%	100.0%	

나이에 따른 차별의 경우 피해자의 학업성적, 가정형편, 학교급 모두 차별 빈도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먼저, 학업성적과 차별 빈도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24.443$ ,  $df=8$ ,  $p=.002$ 로 <표 IV-55>를 살펴보면 성적이 우수한 피해자의 경우 한 달에 1~2회 정도 차별을 받은 경우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지만, 성적이 중간 또는 그 이하인 피해자는 1년에 1~4회 정도 차별을 받는 경우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이 우수한 피해자가 그렇지 못한 피해자에 비해 나이 차별에 더 자주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표 IV-55 학업성적×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빈도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빈도					전체	
		1년에 1회 미만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 달에 1~2회	1주에 1회 이상		
학업 성적	상	관측빈도	109	142	83	111	41	486
		기대빈도	108.8	136.3	106.9	89.6	44.4	486.0
		학업성적 중 %	22.4%	29.2%	17.1%	22.8%	8.4%	100.0%
	중	관측빈도	96	143	112	70	43	464
		기대빈도	103.9	130.1	102.1	85.5	42.4	464.0
		학업성적 중 %	20.7%	30.8%	24.1%	15.1%	9.3%	100.0%
	하	관측빈도	84	77	89	57	34	341
		기대빈도	76.3	95.6	75.0	62.9	31.2	341.0
		학업성적 중 %	24.6%	22.6%	26.1%	16.7%	10.0%	100.0%
전체	관측빈도	289	362	284	238	118	1291	
	기대빈도	289.0	362.0	284.0	238.0	118.0	1291.0	
	학업성적 중 %	22.4%	28.0%	22.0%	18.4%	9.1%	100.0%	

피해자의 가정형편 역시 피해 빈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두 변수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37.383$ ,  $df=8$ ,  $p=.000$ 으로 <표 IV-56>을 보면, 가정형편이 좋은 피해자의 경우 가장 높은 피해 빈도인 1주에 1회 이상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고, 중간인 경우 1년에 1회 미만 또는 3~4회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마지막으로 하의 경우 한 달에 1~2회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정형편이 가장 좋거나 반대로 가장 안 좋은 피해자가 피해를 더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셈이다.

표 IV-56 가정형편×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빈도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빈도					전체	
		1년에 1회 미만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 달에 1~2회	1주에 1회 이상		
가정 형편	상	관측빈도	39	60	30	33	36	198
		기대빈도	44.3	55.4	43.7	36.3	18.3	198.0
		가정형편 중 %	19.7%	30.3%	15.2%	16.7%	18.2%	100.0%
	중	관측빈도	243	286	239	185	80	1033
		기대빈도	231.2	288.9	228.0	189.6	95.2	1033.0
		가정형편 중 %	23.5%	27.7%	23.1%	17.9%	7.7%	100.0%
	하	관측빈도	7	15	16	19	3	60
		기대빈도	13.4	16.8	13.2	11.0	5.5	60.0
		가정형편 중 %	11.7%	25.0%	26.7%	31.7%	5.0%	100.0%

구분		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빈도					전체
		1년에 1회 미만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 달에 1~2회	1주에 1회 이상	
전체	관측빈도	289	361	285	237	119	1291
	기대빈도	289.0	361.0	285.0	237.0	119.0	1291.0
	가정형편 중 %	22.4%	28.0%	22.1%	18.4%	9.2%	100.0%

피해자의 학교급도 나이에 따른 차별 빈도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두 변수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23.347$ ,  $df=8$ ,  $p=.003$ 으로 <표 IV-57>은 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일 수록, 즉 피해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피해 빈도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의 경우 1년에 3~4회를 분기점으로 그보다 낮은 빈도의 셀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모두 상회하지만 반대로 초·중학생의 경우 한 달에 1~2회 또는 1주에 1회 이상의 셀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가장 높은 빈도인 1주에 1회 이상의 관측빈도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큰 폭으로 기대빈도를 상회하였다. 저학년의 청소년들일수록 나이로 인한 차별을 더 자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표 IV-57 학교급×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빈도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나이에 따른 차별 피해 빈도					전체	
		1년에 1회 미만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 달에 1~2회	1주에 1회 이상		
학교급	초등 학교	관측빈도	42	58	47	54	32	233
		기대빈도	52.3	65.1	51.4	43.1	21.3	233.0
		학교급 중 %	18.0%	24.9%	20.2%	23.2%	13.7%	100.0%
	중 학교	관측빈도	104	134	94	97	45	474
		기대빈도	106.3	132.3	104.5	87.6	43.3	474.0
		학교급 중 %	21.9%	28.3%	19.8%	20.5%	9.5%	100.0%
	고등 학교	관측빈도	144	169	144	88	41	586
		기대빈도	131.4	163.6	129.2	108.3	53.5	586.0
		학교급 중 %	24.6%	28.8%	24.6%	15.0%	7.0%	100.0%
전체	관측빈도	290	361	285	239	118	1293	
	기대빈도	290.0	361.0	285.0	239.0	118.0	1293.0	
	학교급 중 %	22.4%	27.9%	22.0%	18.5%	9.1%	100.0%	

마지막으로 성차별 피해의 경우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가정형편, 학업성적, 학교급이 차별 빈도와 맺는 연관성이 달라졌다. 먼저, 학업성적은 피해자의 성별 구분 없이 피해 빈도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지 않았고, 가정형편의 경우도 오직 여학생에게서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었다. 두 변수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22.270$ ,  $df=8$ ,  $p=.004$ 로 <표 IV-58>은 가정형편이 윤택한 여학생의 경우 1주에 1회 이상의 셀에서, 중간인 경우는 1년에 1회 미만 또는 1년에 3~4회에서, 그리고 하의 경우 한 달에 1~2회에서 차별 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58 가정형편(여)×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빈도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빈도					전체	
		1년에 1회 미만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 달에 1~2회	1주에 1회 이상		
가정 형편 (여)	상	관측빈도	39	60	30	33	36	198
		기대빈도	44.3	55.4	43.7	36.3	18.3	198.0
		가정형편 중 %	19.7%	30.3%	15.2%	16.7%	18.2%	100.0%
	중	관측빈도	243	286	239	185	80	1033
		기대빈도	231.2	288.9	228.0	189.6	95.2	1033.0
		가정형편 중 %	23.5%	27.7%	23.1%	17.9%	7.7%	100.0%
	하	관측빈도	7	15	16	19	3	60
		기대빈도	13.4	16.8	13.2	11.0	5.5	60.0
		가정형편 중 %	11.7%	25.0%	26.7%	31.7%	5.0%	100.0%
전체	관측빈도	289	361	285	237	119	1291	
	기대빈도	289.0	361.0	285.0	237.0	119.0	1291.0	
	가정형편 중 %	22.4%	28.0%	22.1%	18.4%	9.2%	100.0%	

학교급에 따른 성차별의 피해 빈도 차이 역시 여학생들에게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두 변수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25.029$ ,  $df=8$ ,  $p=.002$ 로, <표 IV-59>는 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일수록 성차별 피해 빈도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피해 빈도는 1년에 3~4회를 분기점으로 더 낮은 빈도에 해당하는 셀로 이동할수록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지만, 초·중학생의 경우 반대로 한 달에 1~2회 또는 1주에 1회 이상 등 잦은 빈도에 해당하는 셀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다. 특히, 두 빈도의 격차는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의 경우가 더 컸다. 종합하면, 피해자가 남학생일 경우 이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의 빈도는 학교급과 무관하지만, 피해자가 여학생일 경우 하급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일수록, 즉 나이가 어린 여학생일수록 더 잦은 성차별에 노출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59 학교급(여)×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빈도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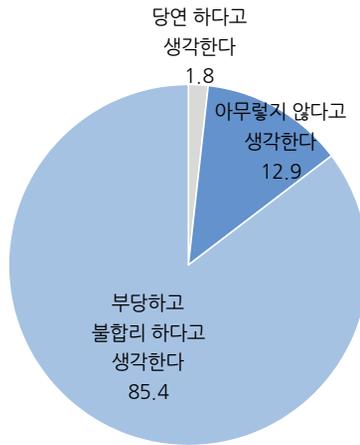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 빈도					전체	
		1년에 1회 미만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달에 1~2회	1주에 1회 이상		
학교급 (여)	초등 학교	관측빈도	42	58	47	54	32	233
		기대빈도	52.3	65.1	51.4	43.1	21.3	233.0
		학교급 중 %	18.0%	24.9%	20.2%	23.2%	13.7%	100.0%
	중 학교	관측빈도	104	134	94	97	45	474
		기대빈도	106.3	132.3	104.5	87.6	43.3	474.0
		학교급 중 %	21.9%	28.3%	19.8%	20.5%	9.5%	100.0%
	고등 학교	관측빈도	144	169	144	88	41	586
		기대빈도	131.4	163.6	129.2	108.3	53.5	586.0
		학교급 중 %	24.6%	28.8%	24.6%	15.0%	7.0%	100.0%
전체	관측빈도	290	361	285	239	118	1293	
	기대빈도	290.0	361.0	285.0	239.0	118.0	1293.0	
	학교급 중 %	22.4%	27.9%	22.0%	18.5%	9.1%	100.0%	

(5) 차별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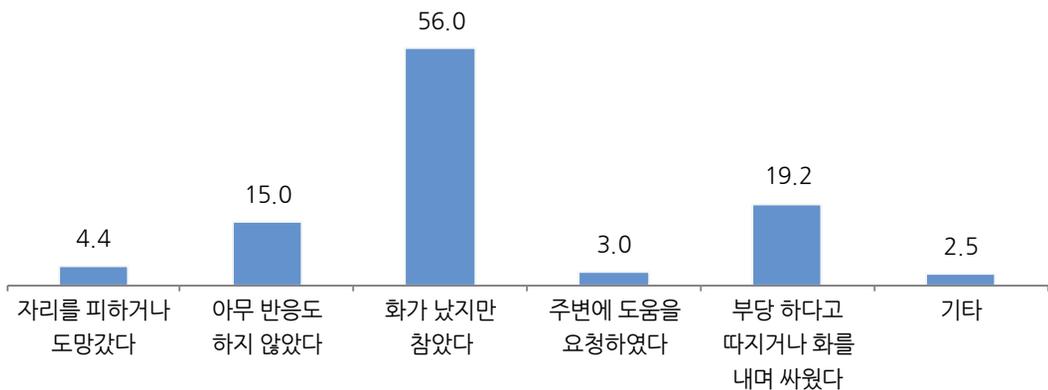
우리는 차별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여러 유형의 차별 중 특히 성적, 나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 실태를 가해자, 차별 방법, 차별 빈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차별 피해 실태와 관련해 성적, 나이, 성별로 인한 차별 피해 사례가 가장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포함해 어떤 이유에서건 한 번이라도 차별을 당해본 청소년들은 자신의 피해 경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였을까?

[그림 IV-12]는 차별을 당해 본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현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피해 학생의 85.4%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부당,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직 14.6%만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 학생 10명 중 적어도 8명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그림 IV-12 】 차별 경험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

이처럼 피해자 대다수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 중 당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본 경우는 희소하다. [그림 IV-13]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 중 당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해자에게 화를 내며 싸운 경우는 22.2%에 불과하며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75.4%는 인내, 무반응, 도피 등의 소극적 방식으로 당시 상황을 방치 또는 외면하였다. 피해 청소년 중 대다수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채 차별당하는 것을 용납한 셈이다.



【 그림 IV-13 】 차별 경험 당시 피해자의 대응(%)

그러나 우리는 피해자의 학업성적, 학교급에 따라 대응방식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학업성적과 대응방식 사이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51.584$ ,  $df=10$ ,  $p=.000$ 로 <표 IV-60>은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피해자일수록 피해 상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성적이 하인 피해자의 경우 소극적 대응에 해당하는 인내, 무반응, 도피 등의 관측빈도가 모두 기대빈도를 상회하지만 성적이 중간 이상인 경우 반대로 적극적 대응방식에 해당하는 도움 요청, 항거 등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한다.

**표 IV-60 학업성적×차별 경험 당시 피해자의 대응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차별 경험 당시 피해자의 대응						전체	
		자리를 파하거나 도망갔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 였다	부당 하다고 따지거나 화를 내며 싸웠다	기타		
학업 성적	상	관측빈도	35	142	606	29	246	38	233
		기대빈도	48.3	163.9	613.2	32.8	211.2	26.7	233.0
		학업상적 중 %	3.2%	13.0%	55.3%	2.6%	22.4%	3.5%	100.0%
	중	관측빈도	51	193	697	53	212	33	474
		기대빈도	54.6	185.2	693.2	37.0	238.7	30.2	474.0
		학업상적 중 %	4.1%	15.6%	56.3%	4.3%	17.1%	2.7%	100.0%
	하	관측빈도	57	150	512	15	167	8	586
		기대빈도	40.1	135.9	508.6	27.2	175.1	22.1	586.0
		학업상적 중 %	6.3%	16.5%	56.3%	1.7%	18.4%	.9%	100.0%
전체	관측빈도	143	485	1815	97	625	79	1293	
	기대빈도	143.0	485.0	1815.0	97.0	625.0	79.0	1293.0	
	학업상적 중 %	4.4%	15.0%	55.9%	3.0%	19.3%	2.4%	100.0%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학교급 역시 대응방식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두 변수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29.822$ ,  $df=10$ ,  $p=.001$ 로 우리는 <표 IV-61>을 통해 하급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일수록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가 가장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 가장 적극적인 대응방식인 화를 내고 싸웠다는 사례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며 이보다 덜 적극적인 대응방식의 관측빈도는 기대빈도를 하회하였다. 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응방식들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는데, 특히 고등학생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을 가능케 한다. 먼저 부정적인 해석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점차 차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차별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차별을 당해도 이를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험 자체가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차별을 당해도 이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반대로 긍정적인 해석은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 학생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과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차별 문제에 대응해 준다면 향후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차별 문제를 둘러싼 초·중·고등학생 사이의 대응 방식 차이가 세대 차이의 결과라면, 즉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에 따른 변화라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면, 즉 차별을 방관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환경으로 인한 결과라면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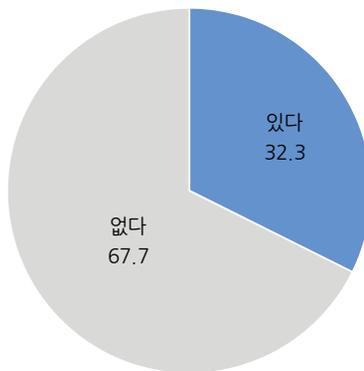
표 IV-61 학교급×차별 경험 당시 피해자의 대응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차별 경험 당시 피해자의 대응							전체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부당하다고 따지거나 화를 내며 싸웠다	기타		
학교급	초등학교	관측빈도	35	142	606	29	246	38	233
		기대빈도	48.3	163.9	613.2	32.8	211.2	26.7	233.0
		학교급 중 %	3.2%	13.0%	55.3%	2.6%	22.4%	3.5%	100.0%
	중학교	관측빈도	51	193	697	53	212	33	474
		기대빈도	54.6	185.2	693.2	37.0	238.7	30.2	474.0
		학교급 중 %	4.1%	15.6%	56.3%	4.3%	17.1%	2.7%	100.0%
	고등학교	관측빈도	57	150	512	15	167	8	586
		기대빈도	40.1	135.9	508.6	27.2	175.1	22.1	586.0
		학교급 중 %	6.3%	16.5%	56.3%	1.7%	18.4%	.9%	100.0%
전체	관측빈도	143	485	1815	97	625	79	1293	
	기대빈도	143.0	485.0	1815.0	97.0	625.0	79.0	1293.0	
	학교급 중 %	4.4%	15.0%	55.9%	3.0%	19.3%	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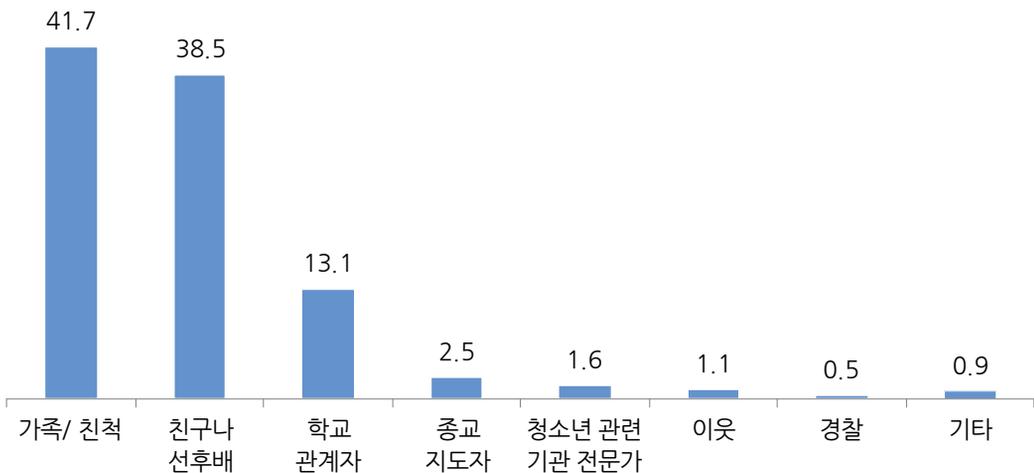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 중 자신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얼마나 많을까? [그림 IV-14]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중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해 본 경우는 32.3%에 불과하였다. 피해자 10명 중 3명만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나머지 7명은 피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말이다.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한 피해자들이 주로 접촉한 대상은 [그림 IV-15]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친척, 친구/선·후배, 학교 관계자였다. 이는 응답자들의 중복 선택이 반영된 결과로 가족/친척이 전체 응답의 41.7%, 친구/선·후배가 38.5%, 그리고 학교 관계자가 13.1%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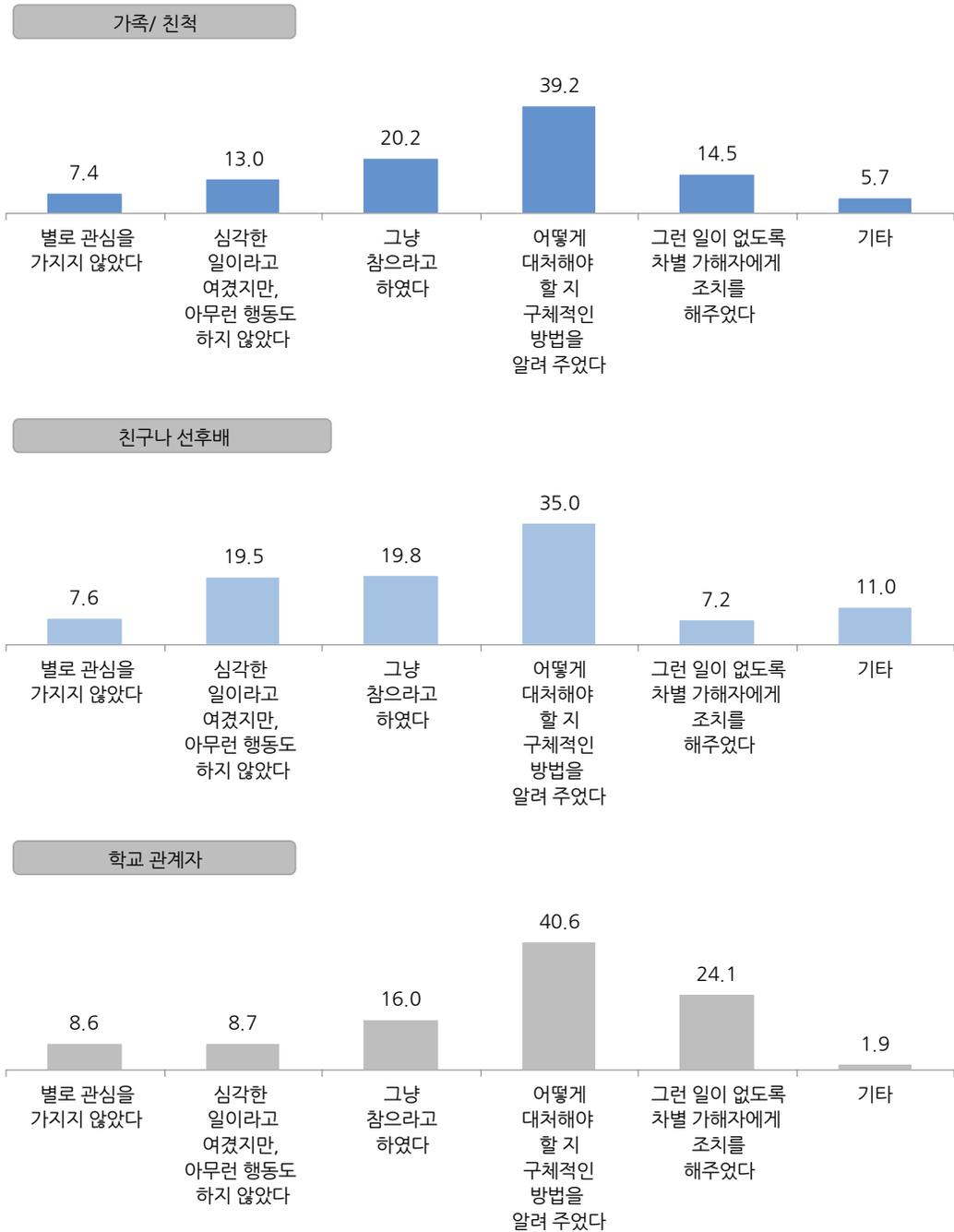
【 그림 IV-14 】 차별을 받았을 때 주변에 도움을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험(%)



【 그림 IV-15 】 차별 피해에 대한 의논 및 도움 요청 대상(중복응답 허용)(%)

이처럼 피해자들의 주요 상담 창구가 가족/친척, 친구/선·후배, 그리고 학교 관계자에 집중된 상황에서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을까? [그림 IV-16]은 각 집단이 피해자들의 요청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는지를 보여준다.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거나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시정 조치를 취한, 즉 적극적인 대처를 보여준 사례는 학교 관계자의 경우 64.7%, 가족/친척은 53.7%, 친구/선·후배는 42.2%로 학교 관계자가 세 집단 중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알 수 있다. 세 집단 중 학생들의 의존도는 가장 낮았지만, 정작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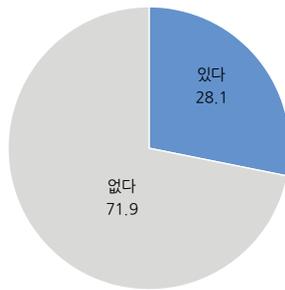
이를 통해 볼 때 차별을 당한 청소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가족/친척, 친구/선·후배와 같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보다는 학교 관계자와 같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준(俊)전문가 집단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상담 집단이 피해자들의 요청에 소극적 또는 부정적으로 대응한 사례 또한 적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 사항이 아닐 수 없다. 학교 관계자의 경우 33.3%, 가족/친척의 경우 40.6%, 그리고 친구/선·후배의 경우 46.9%가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사실은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차별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청소년들의 차별 피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단 학교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가족/친척 및 청소년 모두가 차별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키우고 이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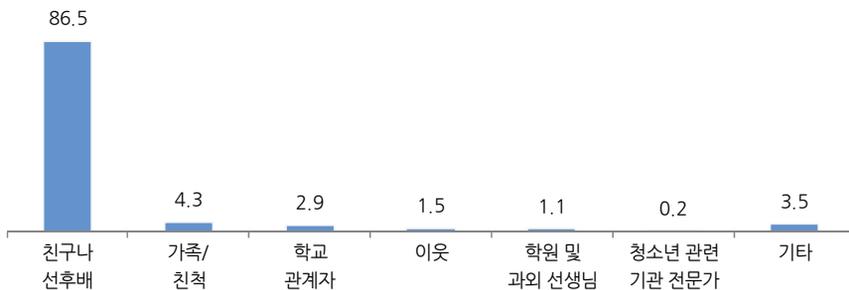
【 그림 IV-16 】 피해 도움 요청 대상의 반응(%)

#### 4) 차별 목격 경험

우리는 지금까지 청소년의 차별 가해 및 피해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절에서는 차별의 직접적인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림 IV-17]은 누군가 차별받는 것을 한 번이라도 목격해 본 청소년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의 28.1%는 누군가가 차별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일상에서 차별을 목격하는 셈이다. 본 실태조사가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가장 많이 목격할 수 있는 차별의 피해자는 자신들의 또래집단일 가능성이 높는데,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친구/선·후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IV-18]에 나와 있듯이 친구/선·후배의 비율이 86.5%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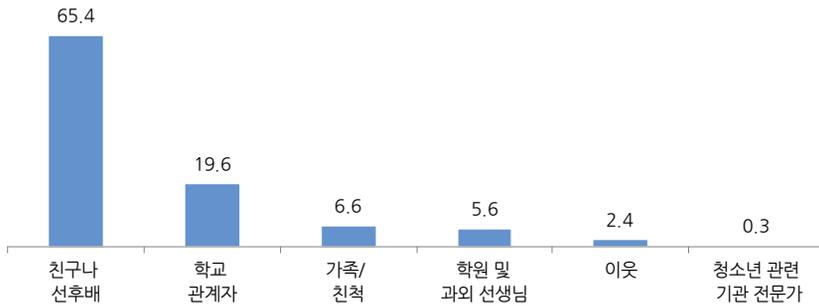
【 그림 IV-17 】 차별 목격 경험(%)



【 그림 IV-18 】 목격한 차별 피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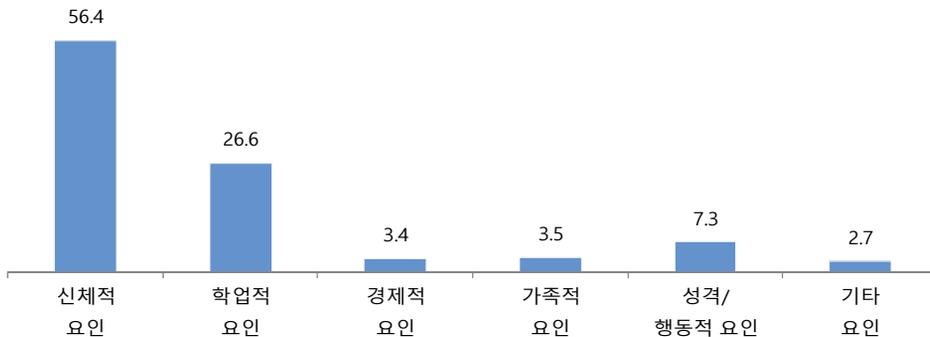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목격자들의 또래집단을 가장 많이 차별한 가해자 집단은 다름 아닌 피해자들의

또래집단, 즉 친구/선·후배였다. [그림 IV-19]는 응답자들의 1, 2순위 선택을 통합한 결과로 전체 응답 중 또래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65.4%에 달했고 그 뒤를 이어 학교 관계자가 19.6%를 차지하였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하루의 일과 대부분을 보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이기에 이들이 가장 많이 목격하는 차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자신들의 동료, 즉 또래집단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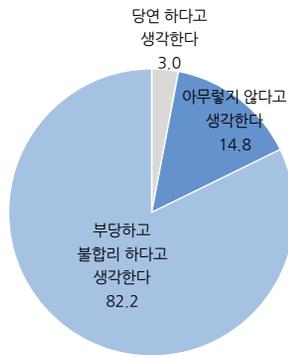
【 그림 IV-19 】 친구나 선후배를 차별한 가해자 집단(1, 2순위 통합)(%)

[그림 IV-20]은 목격자들의 친구/선·후배들이 차별당한 이유 1, 2위를 합한 결과로 신체와 학업 관련 요인이 각각 56.4%, 26.6%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신체 요인은 성별, 외모, 장애,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학업 관련 요인은 학업성적, 학교 유형에 따른 차별을 의미한다. 피해자들의 가정형편, 가족환경 등은 이들의 차별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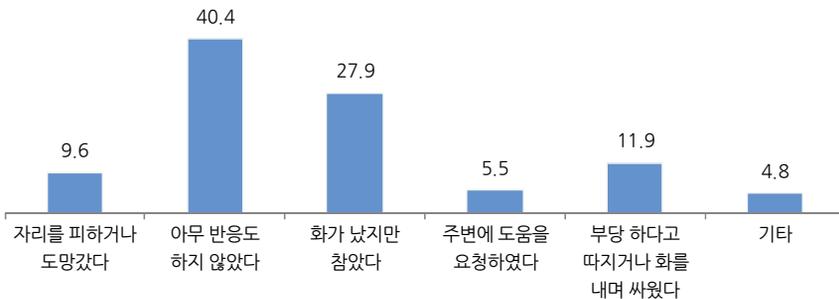
【 그림 IV-20 】 친구나 선후배가 차별을 받은 이유(1, 2순위 통합)(%)

비록 자신이 차별 피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또래집단이 차별받는 것을 목격한 청소년들은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들의 차별 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앞서 청소년의 차별 피해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피해 청소년의 대다수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차별에 대한 가치관과 관련해 청소년 대다수가 차별의 당위성을 윤리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림 IV-21]은 또래집단이 차별당한 것을 목격한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래집단이 차별당하는 것을 목격한 청소년의 82.2%는 그러한 상황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였다.



【 그림 IV-21 】 친구나 선후배의 차별 피해에 대한 목격자의 생각(%)

그러나 [그림 IV-22]가 보여주듯이 정작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또래집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매우 낮다. 전체 목격자 중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해 본 경우는 17.3%에 불과하고 77.9%는 인내, 무반응, 도피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당시 상황을 방치하였다. 자신의 또래집단이 차별당하는 것을 목격한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당시 상황을 좌시한 셈이다.



【 그림 IV-22 】 친구나 선후배의 차별 피해 목격 당시 목격자의 반응(%)

이처럼 대다수의 목격자가 소극적 방식으로 당시 상황에 대처했지만 목격자들의 학업성적, 학교급, 가정형편에 따라 대처 방식이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표 IV-62>는 학업성적에 따른 대응방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두 변수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27.302$ ,  $df=10$ ,  $p=.002$ 로 학업성적이 하위권인 목격자일수록 친구/선·후배가 당하는 차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업성적이 하인 목격자의 경우 회피, 무반응 등 적극성이 가장 떨어지는 대응 사례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고 있지만 학업성적이 중간인 목격자는 인내 사례에서, 그리고 상인 목격자는 적극적인 항변 사례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큰 폭으로 상회한다.

**표 IV-62 학업성적×친구/선후배 차별 피해 목격 당시 목격자의 대응 방식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차별 목격 당시 목격자의 대응 방식						전체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부당하다고 따지거나 화를 내며 싸웠다	기타		
학업 성적	상	관측빈도	76	376	236	44	135	55	922
		기대빈도	88.7	373.2	256.7	49.9	109.3	44.2	922.0
		학업성적 중 %	8.2%	40.8%	25.6%	4.8%	14.6%	6.0%	100.0%
	중	관측빈도	91	363	282	49	99	32	916
		기대빈도	88.2	370.8	255.0	49.6	108.6	43.9	916.0
		학업성적 중 %	9.9%	39.6%	30.8%	5.3%	10.8%	3.5%	100.0%
	하	관측빈도	66	241	156	38	53	29	583
		기대빈도	56.1	236.0	162.3	31.5	69.1	27.9	583.0
		학업성적 중 %	11.3%	41.3%	26.8%	6.5%	9.1%	5.0%	100.0%
전체	관측빈도	233	980	674	131	287	116	2421	
	기대빈도	233.0	980.0	674.0	131.0	287.0	116.0	2421.0	
	학업성적 중 %	9.6%	40.5%	27.8%	5.4%	11.9%	4.8%	100.0%	

목격자의 가정형편과 대응방식 사이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21.007$ ,  $df=10$ ,  $p=.021$ 로 <표 IV-63>은 가정형편이 좋은 목격자의 경우 목격 당시 가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준 반면 중간 이하 목격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응 자세를 취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정형편에 따른 대응방식의 차이는 앞서 살펴본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만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표 IV-63 가정형편×친구/선후배 차별 피해 목격 당시 목격자의 대응 방식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차별 목격 당시 목격자의 대응 방식						전체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부당하다고 따지거나 화를 내며 싸웠다	기타		
가정형편	상	관측빈도	35	171	111	29	58	23	427
		기대빈도	41.1	172.5	119.0	23.3	50.9	20.3	427.0
		가정형편 중 %	8.2%	40.0%	26.0%	6.8%	13.6%	5.4%	100.0%
	중	관측빈도	187	757	540	89	217	90	1880
		기대빈도	180.8	759.6	523.7	102.4	224.2	89.2	1880.0
		가정형편 중 %	9.9%	40.3%	28.7%	4.7%	11.5%	4.8%	100.0%
	하	관측빈도	11	51	24	14	14	2	116
		기대빈도	11.2	46.9	32.3	6.3	13.8	5.5	116.0
		가정형편 중 %	9.5%	44.0%	20.7%	12.1%	12.1%	1.7%	100.0%
전체	관측빈도	233	979	675	132	289	115	2423	
	기대빈도	233.0	979.0	675.0	132.0	289.0	115.0	2423.0	
	가정형편 중 %	9.6%	40.4%	27.9%	5.4%	11.9%	4.7%	100.0%	

마지막으로 목격자의 학교급과 대응방식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90.187$ ,  $df=8$ ,  $p=.000$ 으로 <표 IV-64>는 저학년의 목격자가 고학년의 목격자에 비해 또래집단의 피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목격자의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대항한 사례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반대로 인내, 무반응, 회피와 같은 소극적 대응 사례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다. 이는 앞서 다룬 청소년의 차별 피해 실태에서 차별당한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피해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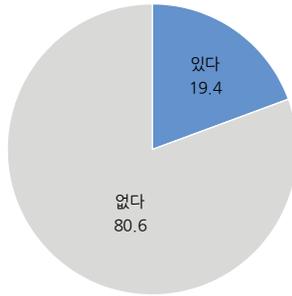
표 IV-64 학교급×친구/선후배 차별 피해 목격 당시 목격자의 대응 방식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차별 목격 당시 목격자의 대응 방식					전체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부당하다고 따지거나 화를 내며 싸웠다		
학교	초등	관측빈도	61	131	117	44	84	32

구분		차별 목격 당시 목격자의 대응 방식					전체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부당하다고 따지거나 화를 내며 싸웠다		
급	학교	기대빈도	45.2	189.5	130.6	25.7	55.6	22.4
		학교급 중 %	13.0%	27.9%	24.9%	9.4%	17.9%	6.8%
	중학교	관측빈도	96	375	211	40	94	29
		기대빈도	81.4	341.4	235.3	46.3	100.2	40.4
		학교급 중 %	11.4%	44.4%	25.0%	4.7%	11.1%	3.4%
		고등학교	관측빈도	77	475	348	49	110
	기대빈도		107.4	450.1	310.2	61.0	132.1	53.2
		학교급 중 %	6.9%	42.6%	31.2%	4.4%	9.9%	4.9%
		전체	관측빈도	234	981	676	133	288
기대빈도	234.0		981.0	676.0	133.0	288.0	116.0	
학교급 중 %	9.6%		40.4%	27.8%	5.5%	11.9%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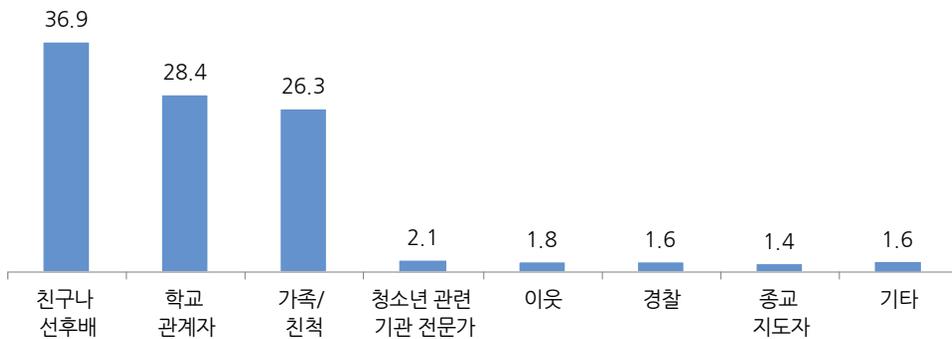
청소년의 차별 피해 실태에서 우리는 차별 피해자의 32.3%만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청해 본 경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기고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 당사자가 아닌 목격자의 입장에서 비단 자신의 또래집단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차별당한 것을 목격한 청소년들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려 했을까?

안타깝게도 [그림 IV-23]은 누군가의 차별 피해를 목격한 경우에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이를 외부에 알려 도움을 청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목격자의 19.4%만이 외부에 도움을 청해 본 경험이 있을 뿐이다. 목격자 10명 중 채 2명도 안 되는 경우만 타인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려 도움을 청한 셈이다. 비록 차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차별을 목격하고도 이를 방치하는 청소년들의 실태는 우려 대상이 아닐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이 피해 당사자인 경우에도 이를 외부에 알리길 꺼려하는 청소년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목격자들에게 외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 그림 IV-23 】 목격한 차별을 주변에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험(%)

소수의 목격자들만이 자신이 목격한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주로 찾은 상담 집단은 친구/선·후배, 학교 관계자, 그리고 가족/친척이었다. [그림 IV-24]는 응답자들의 중복응답을 반영한 결과로 친구/선후배의 비중은 36.9%로 가장 높았고, 학교 관계자가 28.4%, 그리고 가족/친척이 26.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앞서 다룬 청소년의 차별 피해 실태에서 피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과 관련해 주로 도움을 청했던 집단과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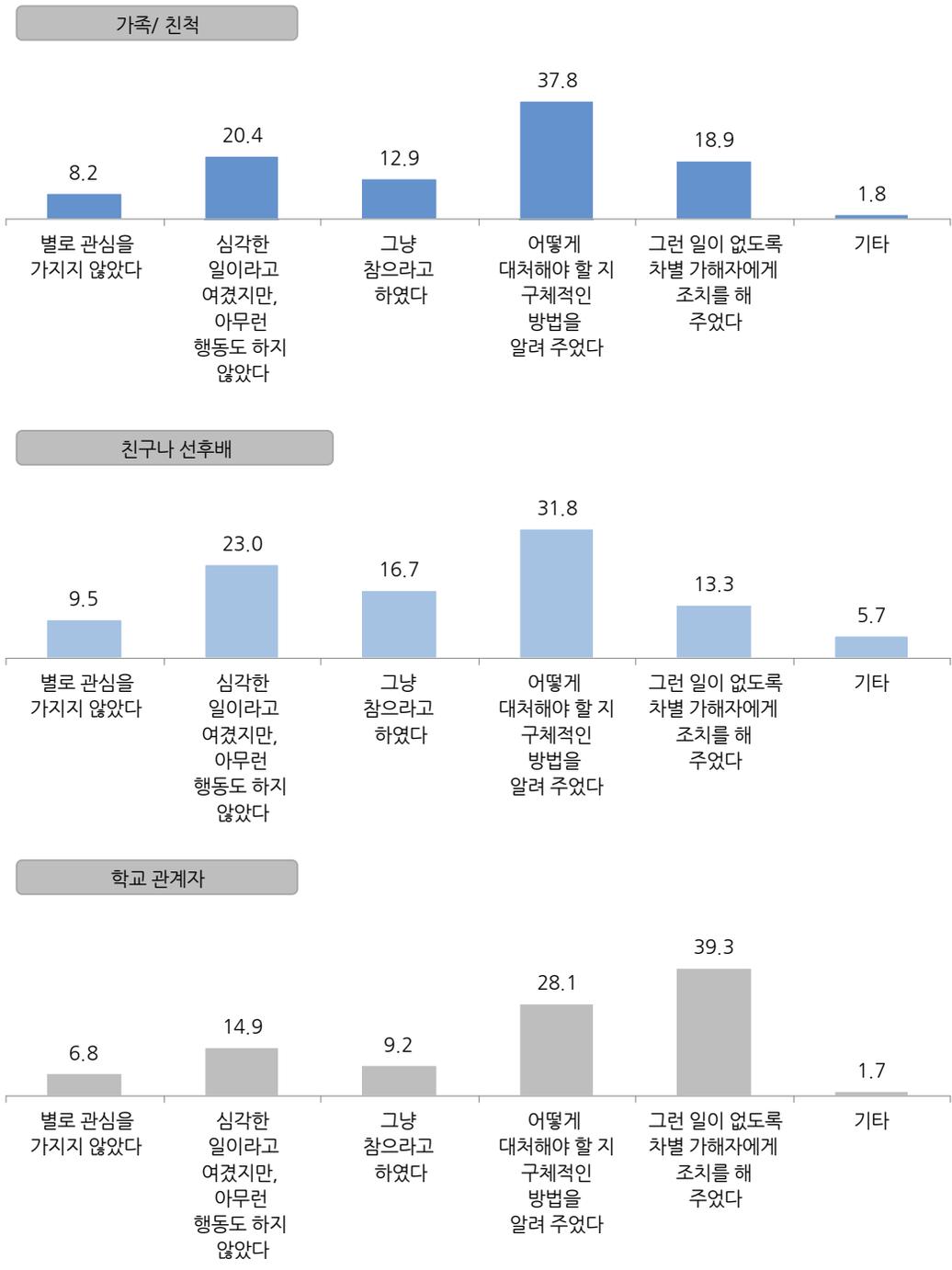


【 그림 IV-24 】 목격한 차별에 대한 의논 및 도움 요청 대상(중복응답 허용)(%)

[그림 IV-25]는 이들 세 집단이 차별 목격자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보여준 반응들이다. 학교 관계자의 67.4%, 가족/친척의 56.7%, 그리고 친구/선후배의 45.1%는 피해 사실을 의뢰한 목격자들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거나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여주었다. 청소년의 차별 피해 실태에서도 그랬듯이 목격자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의존했던 친구/선·후배들은 결과적으로는 문제 해결에 가장 도움이 안 된 반면 가족/친척 및 학교 관계자 집단이 역으로 문제 해결에 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이 목격자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과반수 혹은 그에 가까운 경우가 유익한 도움을 준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나, 반대로 목격자에게 인내를 종용하거나 무관심, 무대응으로 외면한 사례 역시 친구/선·후배의 경우 49.2%, 가족/친척의 경우 41.5%, 학교 관계자의 경우 30.9%에 달하였다.

청소년이 가장 많이 목격한 차별 사건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피해 문제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집단은 이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상을 보내는 성인들, 즉 가족과 학교 관계자들이다. 이들이 청소년의 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청소년 차별 문제가 개선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 그림 IV-25 】 목격한 차별에 대한 의논 및 도움 요청 대상의 반응(%)

## 5) 차별에 대한 개선방안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 개선을 위해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림 IV-26]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믿는 조치는 법령 개정과 시민들의 인식 변화였다. 제도적, 비제도적 접근 방식 모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 그림 IV-26 】 차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청소년들의 이러한 생각은 다시 응답자들의 학업성적, 가정형편,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지기도 하였다. <표 IV-65>는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에 따른 개선방안의 선호도 차이를 보여주는데 두 변수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31.385$ ,  $df=8$ ,  $p=.000$ 이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청소년의 경우 대중매체와 교육을 통한 사회 인식의 변화에서, 중간은 법령 개정 및 비정부 단체들의 운동에서, 그리고 하는 법령 개정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비제도적 접근을 통한 차별 문제 개선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표 IV-65 학업성적×차별 개선방안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우리 사회의 차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전체	
		차별 관련 법령 개정	대중 매체나 교육을 통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시민 단체, 인권 단체, 차별 시정 단체의 역할	차별받는 사람 스스로의 개선 노력	기타		
학업 성적	상	관측빈도	1005	1223	573	504	150	3455
		기대빈도	1073.6	1155.0	612.9	488.9	124.6	3455.0
		학업성적 중 %	29.1%	35.4%	16.6%	14.6%	4.3%	100.0%
	중	관측빈도	1374	1419	812	587	154	4346
		기대빈도	1350.5	1452.9	770.9	615.0	156.8	4346.0
		학업성적 중 %	31.6%	32.7%	18.7%	13.5%	3.5%	100.0%
	하	관측빈도	825	805	444	368	68	2510
		기대빈도	779.9	839.1	445.2	355.2	90.6	2510.0
		학업성적 중 %	32.9%	32.1%	17.7%	14.7%	2.7%	100.0%
전체	관측빈도	3204	3447	1829	1459	372	10311	
	기대빈도	3204.0	3447.0	1829.0	1459.0	372.0	10311.0	
	학업성적 중 %	31.1%	33.4%	17.7%	14.1%	3.6%	100.0%	

마찬가지로 가정형편에 따른 개선방안의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chi^2=68.417$ ,  $df=8$ ,  $p=.000$ ), <표 IV-66>은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의 경우 비정부 단체들의 활동 및 차별 피해자들의 노력에서, 중간 이하는 대중매체와 교육을 통한 사회 인식 변화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했음을 보여준다.

표 IV-66 가정형편×차별 개선방안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우리 사회의 차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전체	
		차별 관련 법령 개정	대중 매체나 교육을 통한 사회 구성원 들의 인식 변화	시민 단체, 인권 단체, 차별 시정 단체의 역할	차별받는 사람 스스로의 개선 노력	기타		
가정 형편	상	관측빈도	566	502	363	307	73	1811
		기대빈도	562.5	605.2	320.9	256.6	65.9	1811.0
		가정형편 중 %	31.3%	27.7%	20.0%	17.0%	4.0%	100.0%
	중	관측빈도	2541	2817	1416	1100	273	8147
		기대빈도	2530.5	2722.5	1443.4	1154.3	296.3	8147.0
		가정형편 중 %	31.2%	34.6%	17.4%	13.5%	3.4%	100.0%
	하	관측빈도	96	127	48	54	29	354
		기대빈도	110.0	118.3	62.7	50.2	12.9	354.0
		가정형편 중 %	27.1%	35.9%	13.6%	15.3%	8.2%	100.0%
전체		관측빈도	3203	3446	1827	1461	375	10312
		기대빈도	3203.0	3446.0	1827.0	1461.0	375.0	10312.0
		가정형편 중 %	31.1%	33.4%	17.7%	14.2%	3.6%	100.0%

마지막으로 학교급에 따른 개선방안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693.624$ ,  $df=8$ ,  $p=.000$ 으로 초등학생은 법령 개정 및 차별 피해자의 노력을 통한 개선에서, 중학생은 법령 개정에서, 그리고 고등학생은 대중매체와 교육을 통한 사회 인식 변화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큰 폭으로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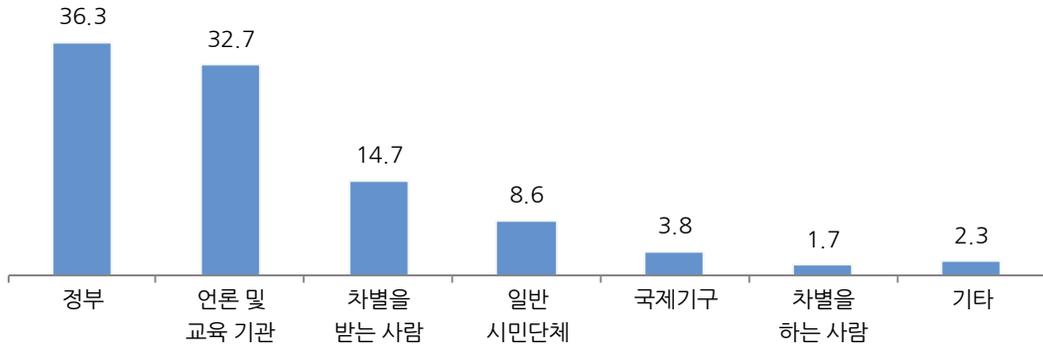
표 IV-67 학교급×차별 개선방안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우리 사회의 차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전체
			차별 관련 법령 개정	대중 매체나 교육을 통한 사회 구성원 들의 인식 변화	시민 단체, 인권 단체, 차별 시정 단체의 역할	차별받는 사람 스스로의 개선 노력	기타	
학교 급	초등 학교	관측빈도	1030	536	751	509	103	2929
		기대빈도	909.2	978.1	518.8	415.9	106.9	2929.0
		학교급 중 %	35.2%	18.3%	25.6%	17.4%	3.5%	100.0%
	중학 교	관측빈도	1208	1095	598	474	105	3480
		기대빈도	1080.3	1162.1	616.4	494.2	127.0	3480.0
		학교급 중 %	34.7%	31.5%	17.2%	13.6%	3.0%	100.0%
	고등 학교	관측빈도	969	1819	481	484	169	3922
		기대빈도	1217.5	1309.7	694.7	556.9	143.1	3922.0
		학교급 중 %	24.7%	46.4%	12.3%	12.3%	4.3%	100.0%
전체	관측빈도	3207	3450	1830	1467	377	10331	
	기대빈도	3207.0	3450.0	1830.0	1467.0	377.0	10331.0	
	학교급 중 %	31.0%	33.4%	17.7%	14.2%	3.6%	100.0%	

종합하면, 상급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교육 및 매체를 통해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비제도적 접근법을 선호한 반면 하급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업성적이 중간 이하인 학생들은 법령 개정과 같은 제도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하는 집단으로 청소년들은 정부를 1순위, 언론/교육기관과 차별 피해자를 각각 2, 3위에 꼽았다[그림 IV-27 참조]. 앞서 소개했던 차별 개선방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선호도에서 대중매체와 교육을 통한 사회 인식 변화와 법령 개정이 각각 1, 2위를 차지한 만큼 차별 문제 해소와 관련해 정부와 언론/교육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꼽힌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 그림 IV-27 】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집단(%)

<표 IV-68>은 응답자의 학업성적에 따른 선호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두 변수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chi^2=31.763$ ,  $df=12$ ,  $p=.002$ 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 언론 및 교육기관, 국제기구에서, 중간인 학생들은 시민단체, 차별 피해자에서, 그리고 하인 학생들은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앞서 지적하였던 응답자의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개선방안의 변화 추이와 유사성을 보여준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언론 및 교육기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교육과 대중 매체를 통한 사회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표 IV-68 학업성적×차별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하는 집단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집단							전체	
		정부	일반 시민단체	차별을 받는 사람	언론 및 교육 기관	국제기구	기타	차별을 하는 사람		
학업 성적	상	관측빈도	1247	251	501	1155	148	89	63	3454
		기대빈도	1253.8	296.7	507.0	1130.6	130.6	78.0	57.3	3454.0
		학업성적 중 %	36.1%	7.3%	14.5%	33.4%	4.3%	2.6%	1.8%	100.0%
	중	관측빈도	1536	330	662	1412	164	97	79	4340

구분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집단							전체
			정부	일반 시민 단체	차별을 받는 사람	언론 및 교육 관	국제 기구	기타	차별을 하는 사람	
하	기대빈도	1575.4	372.8	637.1	1420.6	164.1	98.0	72.0	4340.0	
		35.4%	9.0%	15.3%	32.5%	3.8%	2.2%	1.8%	100.0%	
	관측빈도	961	245	351	809	78	47	29	2520	
		914.8	216.5	369.9	824.9	95.3	56.9	41.8	2520.0	
	기대빈도	38.1%	9.7%	13.9%	32.1%	3.1%	1.9%	1.2%	100.0%	
		3744	886	1514	3376	390	233	171	10314	
전체	기대빈도	3744.0	886.0	1514.0	3376.0	390.0	233.0	171.0	10314.0	
	관측빈도	36.3%	8.6%	14.7%	32.7%	3.8%	2.3%	1.7%	100.0%	
	학업성적 중 %									

응답자의 가정형편에 따라서도 선택 집단은 유의미하게 달라졌는데( $\chi^2=60.641$ ,  $df=12$ ,  $p=.000$ ), <표 IV-69>는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의 경우 차별 피해자와 국제기구에서, 중간은 언론 및 교육기관에서, 그리고 하는 정부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크게 상회함을 보여준다. 가정형편이 중간 이하인 학생들이 공공기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차별 피해자들의 개별 노력을 강조한 셈이다.

표 IV-69 가정형편×차별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하는 집단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집단							전체
			정부	일반 시민 단체	차별을 받는 사람	언론 및 교육 기관	국제 기구	기타	차별을 하는 사람	
가정형편	상	관측빈도	600	163	339	543	101	38	25	1809
		기대빈도	656.8	154.9	265.6	592.2	68.4	41.0	30.0	1809.0
		가정형편 중 %	33.2%	9.0%	18.7%	30.0%	5.6%	2.1%	1.4%	100.0%
	중	관측빈도	3001	694	1127	2718	280	191	138	8149
		기대빈도	2958.7	697.8	1196.4	2667.9	308.2	184.9	135.1	8149.0
		관측빈도								

구분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집단								전체
		정부	일반 시민 단체	차별을 받는 사람	언론 및 교육 기관	국제 기구	기타	차별을 하는 사람		
하	가정형편 중 %	36.8%	8.5%	13.8%	33.4%	3.4%	2.3%	1.7%	100%	
	관측빈도	143	26	48	115	9	5	8	354	
	기대빈도	128.5	30.3	52.0	115.9	13.4	8.0	5.9	354.0	
	가정형편 중 %	40.4%	7.3%	13.6%	32.5%	2.5%	1.4%	2.3%	100%	
전체	관측빈도	3744	883	1514	3376	390	234	171	10312	
	기대빈도	3744.0	883.0	1514.0	3376.0	390.0	234.0	171.0	10312.0	
	가정형편 중 %	36.3%	8.6%	14.7%	32.7%	3.8%	2.3%	1.7%	100%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학교급에 따른 선택 집단의 차이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chi^2=446.839$ ,  $df=12$ ,  $p=.000$ ). <표 IV-70>은 초등학교의 경우 차별 피해자와 국제기구에서, 중학교의 경우 정부에서,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언론/교육기관 및 기타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크게 상회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IV-70** 학교급×차별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하는 집단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집단								전체
		정부	일반 시민 단체	차별을 받는 사람	언론 및 교육 기관	국제 기구	기타	차별을 하는 사람		
학교 급	초등 학교	관측빈도	932	331	628	727	187	51	69	2925
		기대빈도	1061.8	250.6	430.1	956.8	110.4	66.5	48.7	2925.0
		학교급 중 %	31.9%	11.3%	21.5%	24.9%	6.4%	1.7%	2.4%	100%
	중학 교	관측빈도	1410	287	454	1085	134	67	47	3484
		기대빈도	1264.8	298.5	512.3	1139.6	131.5	79.3	58.0	3484.0
		학교급 중 %	40.5%	8.2%	13.0%	31.1%	3.8%	1.9%	1.3%	100%
	고등 학교	관측빈도	1408	267	437	1567	69	117	56	3921
		기대빈도	1423.4	335.9	576.6	1282.6	148.0	89.2	65.3	3921.0

구분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집단								전체
	정부	일반 시민 단체	차별 을 받는 사람	언론 및 교육 기관	국제 기구	기타	차별 을 하는 사람		
	학교급 중 %	35.9%	6.8%	11.1%	40.0%	1.8%	3.0%	1.4%	100.0%
전체	관측빈도	3750	885	1519	3379	390	235	172	10330
	기대빈도	3750.0	885.0	1519.0	3379.0	390.0	235.0	172.0	10330.0
	학교급 중 %	36.3%	8.6%	14.7%	32.7%	3.8%	2.3%	1.7%	100.0%

### 3. 소결

우리는 지금까지 청소년의 차별 실태와 관련해 청소년들이 차별 현상에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가치관, 가해 경험, 피해 경험, 그리고 목격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청소년들의 문제의식과 관련해 청소년들은 장애, 외모, 교육으로 인한 차별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하였고 차별은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차별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반(反)차별적 가치관과 태도는 평등 가치관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청소년들 대다수가 모든 사람은 개인적 특성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크게 동조하고 있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에 비해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는 의사가 더 강했다.

차별의 부당함에 대한 청소년들의 윤리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차별 가해 실태는 우려할 수준이 못했다. 청소년들이 심각성을 제기한 우리 사회의 외모, 학업성적, 그리고 장애에 따른 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가해 실태를 살펴본 결과, 외모에 따른 차별 사례를 제외하면 다른 두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해 본 가해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에도 미치지 못했다. 100명 중 채 7명도 안 되는 청소년들만이 가해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가해자의 비율은 전체 대비 소수에 불과했지만 청소년들의 학업성적, 가정형편, 학교급에 따라 가해 경험은 다른 추이를 띠기도 하였다. 이중 일관된 추이는 초등학생들의 가해경험이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적었다는 점이다. 즉, 누군가를 차별하는 행위가 초등학생들 사이에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록 소수의 가해 사례이나 외모, 성적, 또는 장애를 이유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차별해 본 집단은 바로 자신들의 또래집단, 즉 친구 및 선·후배였다. 본 실태조사의 응답자들이 모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또래집단이 가장 빈번한 가해 대상으로 선택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친구나 선·후배에 대한 쓸림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성적, 가정형편, 학교급 등에 따라 피해자 집단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사례는 드물었다.

청소년들이 비단 또래집단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차별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차별 사례별로 상이한데 외모 및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의 경우 놀림/조롱이, 장애에 따른 차별의 경우 집단 따돌림과 놀림/조롱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일반적 추이와 함께 가해자의 학교급, 성적, 가정형편에 따라 차별 방식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장애를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할 때 인간적 무시나 모욕을, 중학생은 기회박탈과 따돌림, 고등학생은 놀림/조롱 등에서 기대빈도를 상회하였고 가정형편이 좋은 가해자는 인간적 무시나 모욕에서, 중간인 가해자는 집단 따돌림과 회피에서, 그리고 하인 가해자는 놀림/조롱에서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다.

가해 빈도와 관련해 가해자 대다수는 1년에 4회 이하로 장애, 성적, 또는 외모를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해 보았다.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결코 가해자들의 일상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차별 사례별로 가해자의 성적, 학교급, 가정형편 등이 가해 빈도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 차별 사례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발견된 경향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자들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자들보다 더 잦은 빈도로 차별을 범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일수록 가해 경험자의 비율이 더 높아진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가해 행위에 대한 생각과 관련해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나머지 3명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가정형편이 좋거나 반대로 나쁜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 반면 중간인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고등학생 가해자가 초·중학생 가해자에 비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진 않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는 고등학생 가해자일수록 초·중학생 가해자에 비해 더 잦은 빈도로 누군가를 차별했다는 사실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차별 피해 실태는 가해 실태에 비해 문제의 소지가 컸다. 피해 실태의 경우 피해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게 집계된 학업성적, 나이, 성별에 따른 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각 사례의 피해자 비율은 각각 17.9%, 13.6%, 12.3%로 가해 실태에서 가장 높았던 가해 경험자 비율이 13.1%(외모에 따른 차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피해 실태가 가해 실태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차별 사례별 피해 경험 역시 청소년들의 학업성적, 가정형편,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례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비해 중간 이하인 학생은 성적으로 인한 차별 피해에 더 노출돼 있었고 가정형편이 중간 이하인 학생도 상인 학생에 비해 성적으로 인한 차별 피해에 더 노출돼 있었다. 물론 이러한 추이는 차별 사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한 가지 예외는 학교급에 따른 차별 피해 경험의 경향이었다. 차별 가해 실태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 실태에서도 고등학생들이 초·중학생들에 비해 차별 피해를 경험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별 사례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성차별 피해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차별 사례에 따라 청소년들을 차별한 주요 가해자 집단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성적으로 인한 차별의 경우 제1가해자는 학교 선생님,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과 같은 학교 관계자였고 가족/친척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나이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의 경우 가족/친척이 제 1가해자로, 친구/선·후배가 제 2가해자로 확인됐다. 청소년들의 차별 피해 경험과 관련해 가족/친척이 다른 집단들보다 부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 피해에 가족/친척이 크게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우려사항이 아닐 수 없다.

차별 사례에 따라 가해자 집단은 피해자의 학교급, 학업성적, 가정형편 등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 예로 성적에 따른 차별의 경우 학업성적이 중간 이상인 피해자는 학교 관계자 및 학원/과외 교사에 의해 차별받는 경우가, 하인 피해자는 친구/선·후배를 통해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다. 학교급에 따른 구분의 경우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는 가족/친척 또는 친구/선·후배에 의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는 주로 학교 관계자에 의해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별의 경우 여학생은 주로 가족/친척에 의해, 남학생은 학교 관계자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차별 방식은 기회박탈과 인간적 무시/모욕이었다. 물론 피해 청소년들의 학업성적, 학교급, 가정형편에 따라 피해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성적에 따른 차별의 경우 학업성적이 중간 이상인 학생들은 주로 기회박탈을 통해, 학업성적

이 하인 학생들은 인간적 무시/모욕을 통해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다. 피해자의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놀림/조롱을 통해, 중학생은 인간적 무시/모욕을 통해, 그리고 고등학생은 기회박탈을 통해 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기대빈도를 상회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별의 경우 초등학생은 놀림/조롱을 통해, 중학생은 기회박탈을 통해, 그리고 고등학생은 인간적 무시/모욕을 통해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기대치보다 높았으며 이는 남녀 피해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됐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이러한 경험들이 피해 청소년들의 일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피해 청소년 대다수가 1년에 4회 이하로 차별을 경험하였다. 물론 차별 사례에 따라 피해자의 성적, 가정형편, 학교급이 피해 빈도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성적에 따른 차별의 경우 가정형편이 안 좋은 피해자는 중간인 피해자에 비해 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더 자주 경험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별의 경우 오직 여학생들에게서만 성적, 가정형편, 학교급에 따라 피해 빈도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별에 취약한 집단은 남학생이 아닌 여학생임을 확인시켜 준 결과였다.

비단 학업성적, 성별, 나이에 따른 차별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당해본 피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경험을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피해 청소년들 대다수가 자신의 피해 경험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차별을 당할 당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본 피해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8명은 인내, 무반응, 회피 등 소극적 방식으로 당시 상황을 방치하였다. 특히 학업성적이 낮거나 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일수록 피해 당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오히려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이는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을 가능케 하는데, 먼저 긍정적인 해석은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성장 과정에서도 이러한 성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가 향후 개선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었다. 반대로 부정적인 해석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차별 문제를 방관하고 있으며 이를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학습한 청소년들이 결국 자신들이 경험하는 차별 문제에 대해 시정 의지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차별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에는 변화가 없지만 정작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차별 피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는 경향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 청소년 10명 중 불과 3명만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상담 또는 도움을 청해봤다는 조사 결과는 피해 청소년 대다수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에 공개하여 집단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방증한다. 피해 청소년들이 이처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는 데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집단이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청해 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찾은 집단은 가족/친척, 친구/선·후배, 학교 관계자로 그나마 학교 관계자 집단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집단은 차별로 인한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혹은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로 각각의 집단이 피해 청소년으로부터 도움을 의뢰받았을 때 이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 사례는 학교 관계자가 10건 중 6건으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작 학교 관계자 집단을 찾는 피해 청소년들의 비율이 가족/친척 또는 친구/선·후배를 찾는 피해 청소년의 비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는 점이다. 피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즉 보다 긍정적인 피해 상담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비단 피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처 교육이 시행돼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뢰받은 피해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차별 목격 실태와 관련해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일상에서 누군가가 차별받는 모습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목격한 차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신들의 또래집단인 친구/선·후배로, 이들은 주로 성별, 외모, 장애, 나이 등의 신체 요인과 성적, 학교 유형 등의 학업 요인으로 차별을 당하였다. 이들을 차별한 주요 가해자 집단은 다름 아닌 피해자들의 친구/선·후배와 학교 관계자들이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본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대다수는 차별의 불합리함과 부당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차별을 당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례는 드물었다. 자신이 피해 당사자인 경우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청소년들이 타인의 피해 사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친구/선·후배의 차별 피해를 목격한 청소년 10명 중 8명은 그 상황을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생각했지만 정작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는 10명 중 채 2명도 안 됐다. 특히, 학업성적이 낮거나 또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목격자의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해 인내, 무반응, 무관심 등의 방식으로 외면한 경향이 높았다.

비단 친구/선·후배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차별을 목격한 청소년들 중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해 본 경우는 10명 중 채 2명도 안됐다. 도움을 청해 본 소수의 목격자들이 주로 찾은 상담 집단은 가족/친척, 친구/선·후배, 학교 관계자로, 차별당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찾았던 집단과 다르지 않았다. 차별을 목격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은 집단은 친구/선·후배였지만 정작 이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사례는 가족/친척 또는 학교 관계자보다 낮았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차별 피해든 아니면 목격한 차별 피해든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의뢰한 피해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단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 관계자들은 청소년들의 차별 피해 상담 및 해결과 관련해 새로운 문제의식과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표 IV-71 차별 피해 경험×차별 가해 경험 교차 분석** (단위 : 명, %)

구분		가해 경험		전체	
		있다	없다		
피해 경험	있음	관측빈도	1676	1830	3506
		기대빈도	874.6	2631.4	3506.0
		피해 경험 중 %	47.8%	52.2%	100.0%
	없음	관측빈도	931	6014	6945
		기대빈도	1732.4	5212.6	6945.0
		피해 경험 중 %	13.4%	86.6%	100.0%
전체	관측빈도	2607	7844	10451	
	기대빈도	2607.0	7844.0	10451.0	
	성별 중 %	24.9%	75.1%	100.0%	

이와 함께 본 실태조사가 주는 또 다른 시사점은 차별을 한 번이라도 당해본 청소년들이 다시 누군가를 차별하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표 IV-71>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번이라도 차별을 당해 본 청소년들의 경우 가해 유(有)경험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크게 상회하지만 반대로 피해 경험이 없는 경우 가해 무(無)경험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를 승산비(odds ratio)와 상대 위험도(relative risk)로 계산한 결과 각각 5.919, 3.566의 값을 얻었는데, 환언하면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가해 경험이 있을 승산(odds)이 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5.919배이고 차별을 당해 본 청소년이 누군가를 차별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3.566배라는 말이다. 두 결과 모두 차별의 악순환, 즉 차별이 또 다른

차별을 부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이 차별을 당했을 때 학교 관계자들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외면당한 차별의 피해자는 결국 새로운 차별을 야기하는 가해자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별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청소년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 제 V 장

---

# 청소년 차별 실태 심층면접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2. 연구 결과
3. 소결



# 제 V 장

## 청소년 차별 실태 심층면접

본 연구는 청소년 차별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차별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 실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관점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 1) 연구참여자 선정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차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다양한 차별의 가해, 피해, 목격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서울과 경기지역 인문계 및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들을 만나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특히 연구참여자인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은 후 면접을 진행하였다. 단, 대안학교 학생들의 경우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부모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해당 학교 선생님에게 구두로 동의를 받아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는 반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는 면접 사례비로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참여자 현황은 <표 V-1>에 제시되어 있다.

**표 V-1** 참여대상자 현황

참여자	학교급/유형	학년	나이	성별	거주지	참여횟수	비고
A01	대안고등학교	2	17	남	경기(충남)	2	

참여자	학교급/유형	학년	나이	성별	거주지	참여횟수	비고
A02	대안고등학교	2	17	남	경기(경기)	2	
A03	대안고등학교	2	17	남	경기(경기)	2	
A04	대안고등학교	2	17	남	경기(인천)	2	
A05	대안고등학교	2	18	남	경기(경기)	2	
A06	대안고등학교	2	17	남	경기(경기)	2	
A07	대안고등학교	3	18	남	경기(경기)	2	
A08	대안고등학교	3	18	남	경기(경기)	2	
A09	대안고등학교	3	18	남	경기(충남)	2	
A10	대안고등학교	3	18	남	경기(인천)	2	
A11	대안고등학교	3	18	남	경기(경기)	2	
A12	대안고등학교	3	18	남	경기(대구)	2	
A13	대안고등학교	3	18	남	경기(인천)	2	
A14	대안고등학교	3	18	남	경기(서울)	2	
B01	인문계고등학교	1	17	여	서울	2	
B02	특성화고등학교	1	17	여	서울	2	
B03	특성화고등학교	1	17	남	서울	2	
B04	특성화고등학교	1	17	남	서울	2	
B05	인문계고등학교	2	18	여	서울	2	
B06	인문계고등학교	3	19	남	서울	2	
B07	특성화고등학교	2	18	여	서울	2	
B08	인문계고등학교	2	18	남	서울	2	
B09	특성화고등학교	2	18	여	서울	2	
B10	특성화고등학교	1	17	남	서울	2	
B11	인문계고등학교	3	19	남	서울	2	
B12	인문계고등학교	3	19	여	서울	2	

## 2) 자료수집 방법

면접을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진이 반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면접은 연구진이 진행자가 되어 직접 청소년들과 만나 실시하였고, 각 집단별 회당 면접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포커스그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토의에 앞서 5~10분 정도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연구진과 각 청소년들이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의견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도입질문을 실시하였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주요 질문을 진행하였다. 주요 질문에 대한 토의가 어느 정도 종결되었을 때 마무리 질문을 통해 도출된 의견과 청소년들의 생각을 정리하며 인터뷰를 종료하였다. 심층면접 질문 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 V-2 심층면접 질문 영역

연구문제		세부 질문
도입질문		차별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차별 현상의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요 질문	우리 사회 차별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얼마나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사회는 평등한 사회입니까? -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십니까? -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등하게 대우받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차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의 가해/ 피해/ 목격 경험	여러분이 경험한 차별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차별 가해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경험인지 말씀해주세요. - 차별 피해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경험인지 말씀해주세요. - 차별 목격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경험인지 말씀해주세요. 차별 경험으로 인한 감정이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 차별 가해 경험 후 차별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 차별 피해 경험 후 차별행위(및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 차별 목격 경험 후 차별행위(및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차별로 인한 문제를 경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누구에게 요청했습니까? - 요청받은 사람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차별의 발생 원인, 차별에 대한 생각, 차별 개선방안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별이 해소되기 위해(또는 차별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질문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지금, 어떤 생각(또는 감정)이 듭니까?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로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전문가에게 분석자료를 보여주고 의견을 들었다.

## 2. 연구결과

### 1) 청소년이 생각하는 차별

#### (1) 차별의 개념

청소년들은 차별에 대해 다수가 소수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차별이라고 하면 외적인 어떤 조건에 따라, 특히 성적이나 외모 등에 따라 좋고 싫음을 판단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A04 : 일대 다수인데 다수가 일을 다르다고 생각하고 좀 다르게 대하는 것

B01 : 약간 학생으로 비유하면 두 학생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성적이 좋고, 한 사람은 성적이 그냥 그만 그만한데. 선생님께서 좋은 성적이 학생만 좋아하는.

B06 : 외적인 것들로만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B04 :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좀 잘해주고 좀 싫으면 잘 안 해 주는 것.

## (2)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별 현상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별유형으로 성차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 성적에 따른 차별, 물리적 힘, 인종에 따른 차별 등을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기타 의견으로 지역이나 생각의 차이, 종교에 따른 차별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 ① 성별에 따른 차별 (11명)

청소년들은 ‘차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성차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청소년들은 여성다움, 남성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라 차별을 하거나, 여성은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 한다’거나 남성은 강하고 ‘남자이기 때문에’ 우대받아야 한다는 것은 차별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B07 : 여자라서 안 되고 남자라서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A07 : 여자는 무조건 보호 받아야 되고 약한데. 남자는 여자를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 드는.

A08 : 뭐뭐다움이라는 게 나다움이나 너다움은 있어도 여성다움, 남성다움처럼 한 쪽으로 일관되게 한 것 정도. 남성답다 하면 뭔가 남자답다 할 때 멋있다 아니면 근육질 이런 걸 생각하고 여성다움 할 때 청순하다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인식적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성에 대한 고정 관념?) 네. 그것도 일종의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여성이 남성을 성희롱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남성이 성희롱을 하는 것은 장난이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 등과 같은 고정관념도 있다고 하였다.

A03 : 남자가 여자 화장실 스스로 들어가면 강간범, 성 범죄자 그 쪽으로 몰리고요. 여자가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 실수죠. 그런 식으로, 한 마디로 여자가 남자 거를 만지면 장난. 남자가 여자를 만지면 변태. 그런데 여자가 만지면 장난으로.

A01 : 여자랑 남자랑 만약에 잤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열 명의 여자랑 자고 이 여자도 열 명의 여자 와 잤어요. 남자는 능력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안 좋은 소리 하죠. 몸을 함부로 굴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가지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차별을 야기하게 되고, 취업 시 여성이 남성과 같거나 더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선발에서 불이익을 보게 된다는 차별현상을 언급하면서 선발 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정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B05 : 뭘 뽑을 때도 신입 사원 같은 거를... 제가 아는 친구의 아는 사람이 남자인데.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나오지 못 했어요. 그런데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회사가 들어가기 힘든데 들어갔어요. 이 남자는. 그런데 이 회사 직원들 여자들 보니까 다 대학원 졸업해야 되고 좋은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무조건 나와야 되고. 남자들은 딱히 그런 걸 별로 안 따지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요.

B01 : 그런데 제가 요즘 저희 학교에서 문과 이과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 해주시는데. 영어 선생님께서 막 남자는 같은 대학을 나와도 남자는 면접 통과를 하는데. 여자는 면접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약간 그런 데에서 차별을 보는 게 아닌가. 그냥 적당히 반반씩 해 가지고 채용을 하면 괜찮지 않나.

남성으로부터의 성범죄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여성 전용 칸, 여성 전용 주차장 등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부분으로 보는 관점도 있는 반면, 일부 청소년들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여성을 위해 지하철에 여성 전용 칸을 지정하거나 여성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며 남성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A04 : 그런데 예를 들면 여성 전용 칸 여성들이 지하철에서 하도 막 성 이런 게 사건이 많았잖아요. 아저씨들이 다리를 만지거나 그러는 게 많아서 여성 전용 칸이 생기는 거는 저는 나쁘게 생각 안 하는데. 일부는 그렇게 이게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남자들이 많잖아요. 여자들도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여성 주차장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쪽은 차별이 아니고 차이 라고 생각해요.

B06 : 여성을 약자라고 생각 하고 그런 부분이요. 여성 전용 지하철 칸이나 여성 전용 주차장 같은 것도 물론 여자들도 요즘은 취업 같은 것도 남자들만큼 취업률도 올라가고 있는데. 여성만 약자로 취급해서 여성 전용 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 됐다고 생각 해요.

B05 : 여성 전용 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B02 : (여성전용칸) 그게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특히 남녀평등을 위해 군 가산점 제도나 물의를 일으킨 남성 연예인 실명 공개금지 등 남성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B05 : 그것 아직도 있나요? 군대 갔다 오면 (가산점?) 그걸 주는 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쩔 때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2년 동안 자기 의지 상관없이 갔다 오는 건 좀 불쌍하기 는 한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B07 :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이 사고 치면 실명을 공개 안 하는데. 남자 연예인들은 다 실명 공개 하는 것. 그것 좀 남녀 차별인 것 같아요.

## ②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9명)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경제력으로 신분이 결정되고, 돈이 많은 사람은 군면제를 받거나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한 처벌을 덜 받는 것과 같은 현실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A14 : 요즘은 돈이 곧 신분 아니에요? 요즘에는.

B10 : 그냥 솔직히 좀 뭔가 허탈했죠. 돈 때문에 먹고 살려면 위에서 뭐라 하든 간에 사람 말대로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것 보고 좀.

B10 : 공고 나온 애들 솔직히 말해서 저희 나라에서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맞벌이 안 하고, 왜냐하면 공고 나와 가지고 솔직히 대기업 가고 막 그런 사람이 손꼽아서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고 나와서 잘 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영어 선생님이 다른 나라에 이런, 이러한 정보들이 있다는 걸 알려 주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안 좋은 점을 막 보여 줘요. 그런데 봤는데, 돈이 있으면 그냥 죄를 지어도 막 형이 막 깎아지고 그냥 바로 나오고, 그것 보고, 돈이 없으면 그것 뭐지.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라면 하나인가. 라면 한 봉지, 3천 얼마 3만 얼마를 훔쳤는데, 징역이 3년 형인가 몇 년 형을 받았는데, 이걸희 그런 회장들, 그 사람들은 76일 만에 출시하고 돈도, 그걸 보고 좀 진짜 돈에 대한 지가 잘못을 해도 돈으로 해결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것 보고 솔직히, 솔직히 정치도 그렇고 약간 좀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해서 이민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B05 : 안 좋아요. 원래 뉴스에서 나왔는데, 고위층 사람들의 자녀들은 군대를 거의 다 면제 시켜 준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어차피 다 가야 되는 것 왜 그 사람들만 면제를 시켜 주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 ③ 성적에 따른 차별 (8명)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이자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차별은 성적일 것이다. 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의 성적이 좋고 나쁨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하였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편애하고 쉽게 건들지 않지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막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A02 :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안 건드려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왜 안 건드리냐면 우리보다 잘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설불리 개네들 건드리면 선생님들한테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기 많고, 그런 애들은 못 건드리는 거죠 저희가. 안 좋은 애들은.

A01 :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그걸로 다 뭐든지 판별하잖아. 솔직히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 일반고에서 엄청 좋아하잖아. 그런데 진짜 꼴통 애들. 그냥 9등급 이런 애들. 내신 9등급 이런 애들도 착한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개네들도 선생님들도 무시하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뭐라고 그러지. 기술 반 선생님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맨날 잠 잔다고 막 너 같은 새끼 소각장으로 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런 발언도 했거든요. 그 선생님은 또 자기들 반 애들한테는 는 처음에 뭐라고 그러지. 기술 반 선생님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맨날 잠 잔다고 막 너 같은 새끼 소각장으

로 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런 발언도 했거든요. 그 선생님은 또 자기들 반 애들한테는 니네들 세월호 터졌을 때 사건 니네 세월호 선장 같은 새끼 된다 막 그러면서. 진짜 그런 발언을 심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와 같이 경쟁사회 속에서 아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것이 노력에 대한 결과인 성적이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수업태도도 좋고 성실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이러한 차별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A03 : 그런데 선생님들은 저희한테 수업을 하고 숙제를 내주든가 그런 것 하잖아요. 그런데 잘 하는 친구들은 그 숙제를 성실하게 잘하고 수업도 성실히 듣고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이 예뻐할 수밖에 없고 공부 좀 못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자고 선생님 말 무시하고 약간 (중략)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성실하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고 공부 못 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보지도 않고 친구들끼리 막 떠들고 있고 수업 시간에 자고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선생님들이 무시하고 그러는 거지. 그것도 차별이 아니고 약간 학생들 개개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A04 :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현재 이런 시스템을 가진 사회에서는 아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노력의 결과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무엇으로 구분할까. 그것도 문제 될 것 같아요.

#### ④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 (7명)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나 학벌에 대해서도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취업 이후에 대학을 가는 것이 좋다는 주변의 권유나 사회적 인식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특히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관련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선발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비전공자일지라도 4년제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과 같거나 그 이상의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살려면 그러한 조건들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이 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선택한 청소년들은,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인 대기업과 같은

일자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이미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목표가 돼 버렸다.

B10 : 대학교를 나와서 자격증도 따고,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리저리 학원도 다니고 저런 학원도 다니고,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스펙을 어마무시하게 쌓기 위해서 봉사라는 봉사도 엄청 많이 하고, 그냥 그렇게 일을 해 가지고 스펙을 쌓아도 그렇게 스펙을 쌓았는데, 이것 이력서 내는 것 백 장을 써서 단 한 번도 안 붙었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와 놀랐어요. 좀 심각하다. 저렇게 스펙이 좋은 사람도 취직이 안 되는데. 그냥 저같이 공고 나와서 자격증 세 네 개 있어 가지고 대기업 가기에는 좋은 회사 가기에는 아 좀 안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B06 : 취업도 그렇고 보통 결혼할 때도 보면 먼저 보는 게 학교 어디냐 이런 거니까. 그런 면에서 차별이.

B02 : 저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려면 저희는 취업을 하는 학교니까 점점 고졸 채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를 가면, 취직을 하면 3년 뒤에 선 취업 후 진학으로 가라고, 매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고졸 채용을 왜 늘렸는지, 그리고 선 취업, 후 진학을 해 가지고 대학을 나오면 더 승진이 빨리 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대학을 굳이 저는 굳이 갈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가 나중에 커서 돈을 더 잘 벌고 잘 살기 위해서는 대학을 꼭 가야 된다. 아무리 고졸 채용이 늘어나도, 막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 쪽에서는 취업 하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그래도 대학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 하는 것 보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사회가. 근데 이 나라에서 살려면 (학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B09 : 저는 그냥 이것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희는 대학교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대학교를 나와 가지고 굳이 안 나와도 일을 잘할 수 있는데, 4년은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4년이라는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의미 없게 투자 하거나. 그 시간에 일을 나갈 수도 있는데, 일을 하고 싶으면 일을 좀 더 배워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당한 이익을 받게 되거나. 그렇게 되고, 대학을 나와도 그 전공을 그 전공 과를 전공하지도 않은 그 회사를 지원해도 똑같이 그 대우를 받잖아요. 똑같이 대학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대우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과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른 전공을 한 회사에 들어간 거면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학을 안 간 사람이나 대학을 간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무조건 대학을 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높게 보거나 그렇게 너무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경쟁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아서 애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 나라가 이게 안 좋다고 청소년 시기부터 나라에 대한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 ⑤ 물리적 힘에 따른 차별 (2명)

우리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차별 중 청소년들은 물리적 힘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

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친구관계나 학교 내 상황을 제외하고도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물리적인 힘에 따른 차별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대체로 덩치가 좋고 힘이 세거나 기가 센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힘으로 제압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별을 한다고 하였다.

A09 : 힘에 대한 차별. (어떤 힘?) 그냥 주먹.

A05 : 그러니까 이렇게 호리호리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호리호리한 친구를 이렇게 덩치 큰 친구들이 괴롭힌다거나 그런. (물리적인 힘?) 네. 물리적인 힘이에요. 대신 이 친구는 이 친구를 괴롭히는 데. 이 친구보다 더 덩치가 큰 친구는 이 친구가 괴롭히지 못 하는 거죠. 더 덩치 큰 친구랑 이 친구랑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차별한다고 그럴까.

## ⑥ 인종차별 (3명)

청소년들은 인종차별도 우리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이라고 하였다. 여전히 인종차별이라고 하면 백인과 흑인을 차별하는 것이 주되게 작용하고 있었고,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등의 응답이 있었다.

A07 : 인종 차별이요. 백인이나 흑인.

B12 : 인종 차별. 그냥 일본 하면 별로고, 흑인이랑 백인 봤을 때 없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일어나고는 있고

## ⑦ 기타

이외에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차별현상으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발생하는 나이나 선후배 관계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지켜야 할 차례와 질서가 있다는 유교적 가치관이 잘못 적용되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린 사람을 막 대해도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한 살만 많아도, 한 학년만 높아도 선배가 후배를 무시하거나 막 대하는 것을 문제시 하였으며,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교육이라는 이유로 자녀를 체벌하는 등의 경우도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A10 : 나이 차별도 있고 그리고 선후배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B08 : 부모님은 자식을 그렇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해도 그렇게 때려도 때리면 자식은 그걸 무조건 참아야 하고 안 참으면 뭐라고 그러고 무조건 참아야 되나. 그런 것

이외에도 지역에 따른 편견이나 고정관념, 종교에 따른 차별도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차별이라고 하였다.

A14 : 지역별 차이도 있어요 경상도

A07 : 종교적 차별.

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사회의 차별 외에도 청소년들은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도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차별로 보고 있었다. 나와 다른 사상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구분하고, 비하하고, 무시하는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서도 그것은 차별의 주요 현상으로 보이고 있었다.

A08 : 의견에 대한 차별.

A07 : 남녀 차별보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상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 까는 게 더 심하지 않나?

### (3) 우리나라의 차별 정도

청소년들은 차별을 많이 받는 경우를 0으로,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10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사회를 차별이 많은 사회라고 인식하는 경우(0~3점)가 11명,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4~6점)가 13명, 차별이 없는 사회라고 인식하는 경우(7~10점)가 2명 있었으며, 잘 모르겠다거나 모호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2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우리가 차별상황에 적응되어 있어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 차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 학교 밖으로 나가 사회에 나가면 차별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A07 : (차별이) 많이 일어나죠.

A08 : 이렇게 부모의 가정환경에 따라서도 차별이 극심하니까. 그런 차별부터만 시작해도 무궁무진하잖아요. 뭐든지 다. 인식이.

A02 : 학교에서는 괜찮은데 밖으로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나가면 차별 되게 많지 않을까.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사소한 것에 대한 것에도 차별이 있으니까.

A12 : 저희가 차별에 적응을 해서 모르는 거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차별은 다 일어나고 있을 걸요.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차별이 일어나고 있을 거고요.

인간이 개성을 가지고 있는 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차별은 줄여야 한다고 보면서도, 평등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A11 : 애초에 평등하려면 모두가 평등하기 위해서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똑같다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도 어찌면 차별이니까. 개성이 사람이라는 게 지성이 있고 개성이 있는 한 차이가 나타날 밖에 없는 거지만 그 차별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A14 : 어쩔 수 없이 평등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 2) 청소년들의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

### (1) 가정에서의 차별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가정에서의 차별은 출생순위나 성별, 학업성적 등에 따른 차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출생순위에 따른 차별: 막내에 대한 편애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경험한 대부분의 차별은 출생순위에 따른 차별이었다. 대체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첫째가 야단을 맞고 막내는 혼나거나 야단을 맞는 일에서 벗어나거나 막내이기 때문에 더 많이 보호를 받고 편애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04 : 제 위로 누나가 두 명 있거든요. 그런데 막 제 위 누나가 있으니까 뭐 잘못 해도위의 누나가 있

어서 항상 첫째가 잘못했다 하시고 그러니까 솔직히 좀 차별하는 것 같아요. 항상 첫째한테만 뭐라 하고 막내인 저는 그냥 옆에서 가만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A12 : 저는 동생인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예쁨을 많이 받았다고 해야 되나. 막내여서 두 명밖에 없기는 하지만 좀 편애 같은 거를 받았다고 스스로 좀 느끼고 있어 가지고요. 조금씩.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형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하면 오히려 형이 좀 잘 생활하고 그러는 편이여 갖고 크게 놀라고 아니면 혼나고 하거나. 아니면 또 뭐냐. 공부 쪽 외에는 웬만해서는 다 잘했거든요. 공부도 평균까지는 했고. 그래서 약간 좀 어느 정도의 방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형도. 제가 어렸을 때 막 못나고 사고도 많이 치고 해 가지고. 그 쪽 관계 때문에 오히려 동생. 못한 저를 위한다는 것 때문에 착하고 상냥한 저희 형이 역차별 받지 않았나. 항상 싸움은 제가 잘못을 한 거였거든요. 제가 먼저 저희 형한테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이상한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은 형이 저에게 막 아예 터치를 안 한다기 보다는 상냥하게 잘해 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역차별이 있던 것 같기도 해요.

A07 : 저는 본의 아니게 시킨 게. (직접 가해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뭔가 그렇게 해 버린 거니까 좀 미안함하고 고마움이 같이 있어요. 제가 본의 아니었다 해도 형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탓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이 그렇게 막 케어를 못 받고 한 게. 그래서 좀 미안하고. 제일 고마운 건 고마운 것도 좀 있는 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형에게 못 갔다고 해도 형은 계속 저에게 잘 해주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래요. 미안하고.

A09 : 그런거요? 음. 저도 형이랑 동생이랑 그 간의 차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차별, 차별, 차별 당하고 가족이랑 잘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 안 좋았는데 사이는. 그것 때문에 더 얘기 안 해요. 집도 잘 안 들어가려고 하고. 일부러 좀 그래서 독립하려는 의지가 좀 강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용돈도 잘 안 받고. 원래 잘 안 주기도 하지만 잘 안 받으려고 하고 더. 그렇죠. 그래서 독립하려는 의지가 좀 그게 좀 차별. 차별을 당하면 기분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내가 더 잘났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 ② 남자이기 때문에: 장남이라는 굴레

출생순위도 중요한 차별의 원인이었지만 청소년들은 ‘장남’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을 부담스러워했다. 장남이기 때문에 ‘남자라는 이유로’ 더 많이 혼나기도 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어이없음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B10 : 누나랑 싸우면 누나가 잘못을 했어도 뭐라 하면 제가 혼나거든요. 이유를 물어 보면 남자니까 혼나야 된대요. 좀 어이 없죠. 그냥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냥

좀 억울했어요. (부모님은) 니가 남자다 라고 참으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면서 그냥 맛있는 걸 사 줘요. 엄마랑 아빠가 맛있는 걸 사 줘요.

B08 : 누나 해 준다고 했잖아요. 저는 장남이라 장남이라고... 장남이기 때문에 또 남자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깐. 제가 아까 차별 중에 부모님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거랑 연관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장남이라서 혼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억울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면 아빠도 말을 하고 서로 말이 안 통하다 보면 싸움이 싸운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제가 차별을 생각 하는 게 뭐냐면 저는 분명히 억울해서 말을 한 건데 왜 대드냐. 이것 그거랑 연관 짓는 게 왜 대드냐. 엄청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내가 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서로 싸우다가 어쩌다 어쩌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차별. 그것 때문에 차별이 일어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장남이라서 억울하게 혼나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했을 뿐인데. 저는 그 분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왜 나만 억울하게 당하게 되냐. 거기서 내가 뭘 말을 하면 집을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집 나온 상태예요. 일주일 됐는데 모르겠어요.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너무 일방적이라서. 그게 좀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어른들로부터 밥을 더 많이 먹으라는 등 우대를 받는 경험도 있었다. 그렇지만, 우대를 받는 것은 차별당하는 다른 형제가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을 생각하거나 우대를 받는 것 그 자체로도 부담스럽고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B11 : 저는 반대로 그게 좀 어릴 적 이야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추석 때 친가를 간단 말이에요. 저 두 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저희 집 장남이여 가지고 밥을 먹을 때 할머니가 저보고 많이 먹으라고 그러고. 동생한테는 옛날에 조금만 먹으라고 그런 적이 있어서. 동생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우대를 받을 때) 그냥 별 말은 안 했는데. 부담스럽다는 생각은 하죠. 그런데 저희 집안이 딱히 보수적이고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어릴 적에 몇 번 있었던 일이라서 그냥 저는 딱히 좋지도 않았는데 당하는 입장이 기분이 안 좋겠죠.

### ③ 성적에 따른 차별

청소년들은 가족 내에서도 성적에 따라 차별을 받았다고 하였다. 가족들은 성적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거나 형제간에 성적을 비교하기도 한다. 성적에 따라 용돈 액수가 달라질 뿐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는 등 무시하기도 하였다.

A11 : 저는 그 차별, 성적. 그러니까 저희 누나, 저는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누나는 성적은 저처럼

나뻐지만 그림을 되게 잘 그렸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좋은 국립대, 강원대도 들어가고 했는데. 저는 고 3인 지금 시점에서 보면 대학 알아보면 갈 대학이 마땅치. 대학은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대학.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무래도 그런 차별이 좀 심하죠. 니네 누나는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누나의 그 계단을 똑같이. 같은 초등학교도 나왔고 중학교도 나왔고 같은 고등학교도 나왔고. 그런데 똑 같은 계단을 밟았는데 왜 다르냐 이런 식의 차별이 있죠.

A01 :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잘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누나는 공부를 잘하던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좋은 데 있고 그런데. 외삼촌들이 외가를 가면 항상 차별을 당해요 저는. 그러니까 외삼촌 저 오면 누나랑 같이 오면 너도 누나같이 되라 맨날 이 소리 하는데. 저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알았어요 이려고 마는데. 진짜 용돈도 거의 두 배 이상 차이 나고. 오면 누나랑 한 살 밖에 차이 안 나는데. 누나랑 오면 저는 솔직히 그래요. 거들떠도 안 봐요. 누나는 진짜 막 외가 한번 갔다 오면 호위호식해서 와요. 저는 생 까요 막. 진짜 말썽 아니 말썽보다 공부 못 한다고. 무시하는 거죠.

#### ④ 품행에 따른 차별

평소 청소년들의 품행은 부모님들의 훈육방식에도 차이를 갖게 하였다. 형제 간 다툼이 있을 때 부모님은 품행이 좋은 자녀에게는 말로 훈육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에게는 체벌의 방법을 사용하는 등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들은 이를 차별이라고 인식하였다.

A13 : 그러니까 저는 동생이 있기는 한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비교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가정에서 행실이 바른 편인데. 동생은 좀 그러지 못해요. 부모님한테 가끔 대들기도 하고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어릴 때 좀 싸우거나 하더라도 부모님은 저한테는 말로 하시고 동생은 좀 손을 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 (2) 학교에서의 차별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차별은 크게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차별, 선생님과의 관계에서의 차별, 규정으로 인한 차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외모와 성격, 놀이로 무리에서 구분을 짓거나 가정환경, 가족구성, 장애, 성적, 연령/학년 등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는 교사-학생 간 위계관계, 학교규정 미준수,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 ① 친구와의 관계

### 가. 외모나 성격, 놀이로 무리에서 구분 짓기

청소년들은 친구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기도 하지만, 외모가 못생겼다고 놀리는 등의 행동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대신 인상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졌을지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그에 따라 대처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나한다고 하였다.

A01 : 얼굴 같은 걸로 솔직히 차별 같은 것 해 봤고 차별당해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동네에서 끼리 끼리 놀잖아요. 그러다가 (중략) 막 못생긴 애 만나면 너네 왜 그 따위로 생겼냐 말하기도 하고 (중략) 근데 그런 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조금 더 새로운 발전의 단계로 나아가죠.

B07 : 인상이 좀 안 좋다고 안 좋은 애처럼 보고 그런 게 많아요.

B06 : (외모에 따라서) 살짝 선입견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죠. 재는 좀 무섭게 생겼으니까 좀 양아치일 것이다. 그러면 좀 피하게 되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는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뿐만 아니라 친구의 성격 등을 보고 놀 친구, 놀 수 없는 친구, 놀지 않는 친구로 무리를 구분 짓기도 하였다.

B05 : 구분을 짓는 것 같아요. 노는 애들과 놀 수 없는 애들, 놀지 않는 애들. 좀 성격 같은 게 잘 맞거나 그냥 제 기준에서는 저는 좀 센 애들하고는 안 놀거든요. 개네들 보면 좀, 좀 별로예요. 이런 애들은 좀 약간, 좀 약간 자기만의 색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좀. 그런 애들하고는 뭔가 좀 구분이 되죠. 다 같이 놀 때 좀 어느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또한 외모나 성격 외에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할 때, 게임을 잘 하지 못하는 친구와 함께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괴롭히거나 무리에서 배제시키기도 하였다.

B10 :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만약에 못 생겼으면 갈구고 괜히 시비 걸고, 아님가. 게임 한다거나 그러면 막 빼고 게임하고. (무리에서 배제시키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못 하는 것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갈구거나 빼고 그런 것.

B08 : 게임 같은 경우는 못 하는 애들 배제시키는 거는 그런데 그게 게임이 재미있을려고 스트레스 풀

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못 하는 친구랑 같이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단 말이지요. 기분을 풀려고 한 게임을 기분을 잡치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못 하는 친구를 배제하는 것 같아요.

#### 나. 가정환경(사회경제적 배경)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많은 친구는 무리에 끼워주고 같이 놀러 다니며 잘해주는 경향이 있는 반면, 평범한 가정이나 돈이 없는 친구들은 때리거나 함부로 대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A02 : 저는 예전 학교에서 돈 좀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좀 돈은 많은데 싸움 같은 것도 잘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노는 애들끼리 막 데려 가죠. 그런데 그러면 개네는 돈 내도 돈 엄청 많이 쓰니까 주변에서. 그런 애들이랑 많이 놀죠. 그런데 돈 없는 애들 좀 돈 없는데. 왕따 이런 애들 있으면 좀 때리고 그런 것도 있죠.

B07 : 돈 많은 친구. 그러니까 좀 잘사는 애들이랑 친구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돈을 잘 쓰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되게. 만약에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애는 좀 잘 사는 애고 애는 그냥 평범한 보통의 가정의 아이예요. 그러면 애한테는 막 잘해주고 그런데 애한테는 막 대하고 그런 게 있어요.

가정의 경제력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통해 자연스럽게 무리를 짓게 하고, 청소년들은 그러한 구분 속에서 열등감이나 부러움을 경험하기도 하며 질투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B09 : 저는 그런데 그거를 차별이라기 보다는 그냥 열등감이나 부러움에서 나오는 그냥 약간 질투.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질투.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차이는 경제적인 차이는 날 수 밖에 없고 저희 반에서도 화장품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고가의 화장품을 많이 쓰는 아이들이 있고 그냥 거의 화장을 안 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냥 같이 그런 화장품 쓰는 애들끼리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애들끼리 어떻게 그냥 딱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끼리 무리를 짓는 것 같아요. 구분을 짓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아이들에게 하나의 소품 같은 얘기 거리가 나오면 그 얘기 거리 하나로 아이들 사이에서도 무리가 나뉘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단순히 같이 놀고 무리에 끼워주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이나 짜증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B08 : 돈 많은 애들은 용돈을 또 많이 받으니까. 제가 저번에 일주일에 십 몇 만원 받는 애 봤거든요 봉투에 받았는데. 그걸 이려고 펼쳐 가지고 겁나게 까부는데 진짜 때리고 싶더라고요. 이려고 까부는데.

또한 청소년들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친구들이 단순히 다른 친구들로부터 우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부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B11 : 비슷한 것 있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 경험인데. 막 집안의 친구들 반 친구들 중에서 누구누구가 잘 산다. 누구 아빠가 의사 선생님이다 이러면 오히려 너는 왜 공부 왜 안 하냐고. 아빠가 알아서 할 건데. 애들이 좀 놀려서 좀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B12 : 뒷말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뒤에서 애들끼리 말하는 그런 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학교 애들은 부모님이 되게 의사, 의사, 판사, 판사 이런 부모님도 되게 많은 말이에요. 오히려 안 그런 애들이 더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개네는 부모님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더 열심히 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뒤에서 하거나 대놓고 앞에서 하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확실히 애들도 보는 게 있고 하니까 오히려 더 그런 애들한테는 막 공부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 다. 가족구성

청소년들은 가족구성을 이유로 다른 친구들을 놀리기도 하였지만, 주로 미성숙하던 초·중학교 때나 서로를 잘 모를 때 심하며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일로 놀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A01 : 네. 저 친구 어머니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 친구 엄마가 같이 니 어미 없지 막 이랬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런 거는 어렸을 때 있고, 지금은 고등학교니까 그런 게 많이 없죠. 오히려.

A04 :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 할 거라는 게 많이 미성숙해지니까. 좀 약간 나이가 생기고 고등학교 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 봐 일부러 말 안 하고, 니 엄마 없잖아.

엄마 진짜 없는데 엄마 없잖아. (보통 언제?) 중학교 서로 모를 때. 미성숙할 때. 초등학교 때. 되게 심해요.

## 라. 장애

장애에 대한 차별은 흔히 재미 삼아 놀림이나 구타 등의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놀림이나 구타 등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A05 : 그냥 재미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지적 장애인이었는데. 놀려도 웃고 때려도 웃고 막 이상한 걸 먹여도 웃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걸려 갖고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청소년들이 장애를 가진 친구를 차별하는 행위는 보통 중학교 때까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긴 했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들을 감싸주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남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바뀌고 장애인이 차별받는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A10 : 중학교 초기 때 정도. 아까 말했듯이 특수학교 다닐 때 약간 좀 안 좋은 시선들이 있었는데. 물론 초등학교 때도 안 된다. 안 된다 배우기는 했지만 사람의 마음처럼 그게 쉽지 않잖아요.

A05 : 당시에는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후회 되죠. 장애인을 감싸 줘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점에서.

A10 : 저는 열어지기는 했는데 지금은 많이. 가끔, 가끔 또 아직도 생각을 하는 게 장애인에 관련된 차별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뭐라고 해야 되지. 특수학교 그쪽 비슷한 쪽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쪽에서 다니다 보니까... 위탁 학교였는데. 거의 피난. 왕따 쪽이여 가지고 제가 좀 피난 가듯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장애우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저희가 장애우라고 부르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도 좀 있고. 그 쪽 사람들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면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그 쪽 사람들은 훨씬 친절하고 순수하고 믿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도 보면 막 제가 다녔던 정신 쪽 그 쪽으로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신체만 약간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하더라도 굉장히 차별 같은 게 좀 심한 경우가 있었어요. 장애인이야 라고 욕하는 것만 들어도 솔직히 저는 그것 자체도 좀 기분이 나쁜거든요.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욕으로 사용한다는 게 막. 흑인이야 라

고 하는 거랑 똑같은, 다른 게 없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 봤죠.

또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도 주변의 성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보다는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는 상황은 청소년들에게 안타깝고 부당한 현실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A06 : 저는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 옆 학교 거기서 장애인인데. 애 다섯 명에서 장애인 데려 가 가지고 산에 데려 가서 막 구타를 했어요. 그래서 담배 빵 같은 것 지지고 막 그런 것도 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전체에서 개를 별로... 장애인 이렇게 해 갖고 저희 같은 학년이었으니까 저희 학년에는 다 그렇게. 근데 그냥 거기 교장 선생님이 경찰이랑 좀 덮고 넘어 가려고 했었어요. 경찰에다 알렸는데. 그냥 교장 선생님이 증거 없는데 왜 이러시냐고 막 이러니까. 담배 빵 당한 것 흔적은 있는데 이게 장애인 애가 아무 것도 괜찮다고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거의 몇 개월 동안 거기 학교 앞에서 1인 시위 했었어요. 그런 것 증거 찾고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A04 : 그런데 학교에서 또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학교 말고 다른 중학교 때 그런 것 생각 하면 진짜 대부분 괴롭힌 애들 보면 잘생긴 애들보다 키 작거나 힘 약하거나 못생겼거나 장애 가졌거나. 제가 좀 중학교 때 장애인 친구 괴롭힌 적도 있었거든요. 진짜 장애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중학교 1학년 애 화장실에다 가져 놓고서 장애인 친구 막 압축 시키고 그랬거든요. 애들이랑. 그런데 저는 도와줬죠. 진짜 거기서 애 쓰러지자마자 바로 보건실 데려다 주고 돈 흘렸길래 돈도 주워주고 그랬다가. 그런데 진짜 전부 다 보면요. 사회에서요. 약자인 애들만 그렇게 당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 마. 성적

성적은 단순히 어른들이 학생을 향해 차별을 가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학생들 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차별영역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 스스로 성적이 좋은 아이들 주변에 몰려 있기도 하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며, 성적이 좋은 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단서가 되기도 하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그 아이와

유사해지거나, 그 아이와 같은 무리에 속하게 되는 등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하였다.

B12 : 성적 차별은 꼭 선생님, 학생 아니어도 학생, 학생들끼리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들이 나는 성적 보고 친구 사귀지 않아 라고 말을 해도 이렇게 다 있으면 애가 성적이 좋은 애들한테는 확실히 애들이 더 많이 주위에 몰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그것 하지 않아도 애가 나 뭐 부족해 하면 일부터 더 가서 해 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뒤에서 말을 할 때도 재는 성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제일 월등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같이 있음으로 해서) 제가 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같이 있음으로 해서 이익을 본다는. 부모님들도 공부 잘하는 애랑은 친하게 지내고 애랑은 놀지 말고 이런 말씀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놀면 개랑 똑같이, 개랑 비슷하게 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 무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 바. 연령/학년

선후배와의 관계, 즉 학년 서열은 학교 내에서 엄격히 지켜지고 있었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학년은 학교 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서열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이었다. 후배는 선배가 하는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B08 : 급식 먹을 때. 제가 아직 3학년이 안 되고 1, 2학년이잖아요. 3학년도 계신 거죠. 저보다 선배님들이 뒤에서 줄 서시다가 유유히 앞으로 가면 말을 못 하거든요. 3학년이라서 말을 못 하니까. 그냥 유유히 그냥 저희 딱 쳐다보시더니 저희가 이려고 있으면 유유히 앞으로 가시더니 급식 맛 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런 것 학교에서. 네. 1, 2학년 차이.

A05 : 선배들. 같은 나이인데. 3학년이랑 같은 나이거든요. 그런데 한 학년 밑 기수라고 차별해요. 형이라고 부르라고 계속. 무서워하거든요. 형이라고 아니 저는 그래도 꿇고 들어왔으니까 선배 대접을 해줘야겠다 선배를. 계속 형이라고 부르고.

#### 사. 기타

흔한 사례는 아니었지만, 사투리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경험도 있었다. 사투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사투리를 고칠 것을 강요하는 친구들 때문에 다툰 적이

있다고 하였다.

A14 : 저 원래 지방 살다가 올라와 갖고 사투리가 엄청 심해 가지고 처음에 서울 왔을 때 많은 애들이랑 말 좀 다르게 쓴다고 그걸로 좀 그것 동물원에서 원숭이 보듯이 봤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 가지고. 어렸을 때 좀 어렸을 때라 나는 왜 말 이렇게 하냐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약간 좀 저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던 게 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짜증 나 갖고 개들이랑 싸웠어요 싸워서 이겨 먹고 계속 사투리 썼죠.

## ② 선생님과과의 관계

학교에서는 친구뿐만 아니라 선생님과도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다. 친구와는 다르게 선생님은 학생과 위계관계에 놓여있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규칙, 규범을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선생님과과의 관계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체로 교사-학생 간 위계에 따른 차별, 학교규정과 관련한 차별, 성적에 따른 차별 등이 있었다.

### 가. 교사-학생 간 위계에 따른 차별

청소년들은 선생님과과의 관계에서 선생님과 동등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학생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을 부당하다고 하였다. 화장실을 구분하여 놓고 선생님 화장실에만 휴지를 구비하여 놓는 것, 추운 날씨에도 패딩을 못 입게 하는 것, 선생님은 교내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학생들에게는 실내화를 신게 하는 것, 놀러갈 때 학생들에게 치마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은 ‘학생이기 때문에’ 두는 제한이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때 억울하다고 하였다.

B12 : 교사 화장실이란 학생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 학생 화장실, 저희 학교는 안 그런데. 제가 지금 음악을 해서 학교를 두 개 다니고 있거든요. 직업 학교처럼. 그런데 저희 학교는 안 그런데 다른 학교로 다니는 그 학교에는 학생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화장실에만 휴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다 좌변기고. 그래서 그런데 휴지가 없는 건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학생이 들어가면 거기에 별점이니. 청소년이 이렇게 붙여 놓거든요. 학생 출입 금지 이렇게. 그래서 막 학교에서는 어쨌든 말로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서 그런 차별이 있을 때는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 A04 : 중학교 때 교복을 입고 가야 하는데. 교복을 입는 건 별로 문제 되지 않지만 겨울 됐을 때 추운데 패딩을 입으면 교복에 마이도 입고 또 그 위에 패딩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팔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너무 불편한데. 패딩만 입고 있으면 패딩을 학생부에서 와서 막 뺏어 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왜 교복도 안 입으면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뭐라 하고. 또 우리한테는 슬리퍼만 신고 다니라 하면서 선생님들은 신발 신고 그냥 돌아다니고. 그게 되게 억울했었어요.
- A03 : 그리고 어디 놀러 갈 때 학생들은 치마 이런 것 못 입게 하잖아요 중학교 때. 그런데 선생님들은 치마 입고 와서 선생님은 치마 입는데 왜 학생들은 못 입게 하냐고. 꼬면 선생님 되라고. 그리고 약간 차별 심한 것 같습니다.

#### 나. 학교규정 미준수로 인한 차별

학생은 학교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학교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학생들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강압적인 처벌은 학생에게 부당하고 학생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였다.

- A04 : 애초부터 학생들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것도 좀 차별 아닌가. 일단 명찰을 달게 되면 이름이 노출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안 달고 다니면 또 잡고. 또 선생님들은 그렇다고 자기들이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조금 시어머니 심보 같은 것도 좀 있는데. 차별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청소년들은 교복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가의 교복을 다시 입지 못하게 잘라버리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규율을 지키도록 하는 행동에 대해 너무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였다.

- A03 : 교복바지 통 줄여서 안 고쳐 오면 진짜 바지 그냥 칼로 단 부분 있잖아요. 여기요. 칼로.
- A02 : 그거는 다시 꼬맬 수 있는데. 우리 내 담임은 여기 가운데 바지를 이렇게 잘랐어. 여기 가랑이 있는 데를 이렇게 반을. 교복 반바지로 잘랐었어. 너무 강압적이지 않나?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심한 구타나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처벌을 받은 청소년은 학교에 가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들 정도였다고 하였다. 규율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에 비해 과한 구타, 체벌, 인권침해적인 언행 등은 청소년에게 매우 상처가 되고 학교에 대한 거부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01 : 저 뭐지. 인사. 선생님 인사 하라고 할 때 안 했다고 그냥 갑자기 중학교 때 여자 선생님이 중 1 때 저 갑자기 밖으로 데려 가요. 인사 몇 번씩 해요. 하다가 중간에 말았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밖으로 데려가 가지고 진짜 구타를 해요. 그래 가지고 뺨 때리고 진짜 주먹으로 얼굴 치고 막 조인트 가고 하이힐로 제 발등 찍고 그래요. 그러고서 선도부 데리고 가 가지고 나는 학교 다닐 가치가 없다고 선도 받으라고 그래 가지고 받는다고 신고하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남자 선생님들이 솔직히 강제적으로 가서 사과. 무릎 꿇고서 사과 하라고 그래 가지고 반 애들 다 있는 데서 무릎 꿇고서 사과를 했어요.

A02 : 제가 중 2 때요. 담배 하다 걸렸어요. 담배 걸려서 체육 시간에 담배를 주머니에 넣어 놔는데 체육 선생님이 보고 그거를 학생부로 저를 데리고 가서 애 담배 주머니에 담배 놔다고 해 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될 상태였는데. 저는 맛고 진술서 쓰고 이런 식으로. 부모님한테 전화가 가고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맞겠다 이려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배를 입에다 물래요. 담배 꺾을. 입에다 물었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학생부 문을 열더니 오리 걸음으로 학교 한 바퀴 돌래요. 학교 안을. 3층부터 1층까지. 후배들 다 보는데. 선배 다 보고. 그리고 엄청 약간 인권 침해 그런 것 되게 많이 당했어요. 입에다 물고 오리 걸음으로 1층부터 3층까지 계속 돌고. 급식 실에서도 담배 입에다 물고 피켓 들고 서 있었어요. 엄청 쪽 팔렸었죠. 그때. 그래 가지고 그 다음 날 학교 안 갔어요. 너무 쪽 팔려서. 처음으로 학교 안 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쪽 잘 나가다가. 빠진 적 한번도 없었는데. 중학교 때 그 일 있고 나서 쪽 팔려서 학교 못 다니겠다고 하고 다음 날에 학교 안 갔어요. 그 뒤로 그 뒤로 학교 한 달에 15번 빠진 것 같아요. 반만 가고 반은 안 간 것 같아요.

때로는 한 학생에 대한 강력한 규정 위반 단속이 다른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체를 손상, 훼손시키는 행위 등 과도하게 엄격한 단속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짜증이나 억울함, 반항심 등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강력한 규정 위반 단속과 이에 따른 처벌 행위가 학생들을 통제하는 데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A12 : 근처 학교에서 귀걸이 하고 다닌다고 어떤 되게 고지식한 남자 선생님이 그걸 잡아 뜯었대요. 이걸 이 상태로. 그냥 뜯었대요. 그래서 여자 애가 되게 많이 다쳤었는데. 그 뒤로 아니 원래 귀걸이는 금지였는데. 귀걸이를 여학생이 머리를 가리면서 하고 다녔었다가 걸렸나 봐요. 그런데

그 뒤로 귀걸이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대요.

- A10 : 저는 머리가 원래 중학교 때 자연 갈색이여 가지고 좀 갈색 빛이 돈단 말이에요. 햇빛 받으면 그런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그냥 염색 했다고 자꾸 우기시면서 아침 정문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바리깡 들고 밀렸어요. 억울하지 않는데. 애초에 억울해야 정상인데 억울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면 학교 규칙이 그러니까 제가 잘못 한 게 되어 버리니까. 그런데 솔직히 애초에 머리를 규제 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학교 안에서는 그게 정상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러면 미용실 가서 밀지. 왜 바리깡으로 제 걸 입니까. 그것도 아니 여기만 딱 여기만 잘라 가지고 미용실까지 갈 때도 자살하고 심게 만들고 좀 그랬어요 ... 객기를 부려 봤는데 맞았어요. 제 머리가 원래 이렇다고 대들고 막 엮드려 뺨쳐 하라 했는데. 그렇게 대드니까 엮드려 뺨쳐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그냥 빼팅겼는데. 징계 준다 하고 맞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 A09 : 저도요. 중학교 때 머리 버티면서 기르다가 그냥 밀렸어요. 짜증나죠. 짜증 나고 억울한데. 그냥 받아 들였던 것 같아요.
- A11 : 애들이랑 싸우는 게 되게 쓸데없는 거라 생각해요. 오히려 잡지 말고 해라. 해도 좋다 그런 쪽으로 나가면 애들도 그러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반항심 때문에 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차별 문제나 인권침해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데 비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절히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 A02 : 학교에 건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없었어요.
- A05 : 저희(대안학교)는 자치적으로 함으로써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자치적인 게 진짜 전혀 하나도 없어요.
- A03 : 저희는 거의 다 그랬어요. 학생 의견 반영이라는 게 없었어요.
- A01 : 학생 의견이라는 게 전교 부회장, 전교 회장 이렇게 세 명.

학교 내에 건의함이 비치되어 있긴 하지만, 누군가 건의함에 의견을 넣으면 다른 친구들이 꺼내보거나, 학교 측에서 의견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의함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 A01 : 네. 그것(건의함) 학교 바로 앞에 달려 있잖아요. 이상한 쪽지 통 같은 것. 거기 넣어도 바뀌는

게 없는데. 뭐 하러 합니까.

A04 : 솔직히 일반고에서 쓰이는 게 없어요. 진짜 그런 것 넣잖아요. 갑자기 막 다른 애 넣는 것 보면 솔직히 뒤집어 가지고 털어 가지고 다시 막 빼고 그랬어요.

간혹 선생님 중에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이유를 설명해주시거나,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 경우 학생들은 오히려 규정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더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04 : 교복을 제가 안 입고 다녀서 선생님이 교복 입고 다니라고 그러면 왜 입고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막연히 너는 학생이니까 라는 말만 해 주시고.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좋으셔서 가지고 제가 체육복만 입고 다닐 때도 있었는데. 그때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이 사과 하시면서 이유도 안 말해 주고 그렇게 시켜서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가끔씩 입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시키는 게 아니라 이유조차 설명해 주지 않고 그러는 게 조금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A05 :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가지 좋은데 그런 선생님들이 몇 분 안 계세요.

A03 : 자치 회의라는 걸 해요. 주제를 하나 정해 놓고 애들 담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그래서 하루에 네 개피 해 주자 이렇게 해서 몇 년 전에 자치 회의에서 정해져서 저희는 금연 노력실하고 있어요. 진짜 못 끊겠는 사람은 담배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A02 : 저희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교생 강당에 다 모여서 자기의견 말하고

### ③ 성적차별

학교 내에서 성적에 따른 선생님의 차별은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스트레스가 되고 부당한 경험으로 인식되었다. 자신의 장래를 결정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있어 진학과 취업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며, 이로 인해 성적이 진학과 취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청소년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다.

#### 가. 편애

청소년들은 성적이 아이들의 노력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더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성실한 아이들이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더 예뻐 보일 것이라고 하였다.

A021 :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는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가진 사회에서는 아이들을 구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노력의 결과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무엇으로 구분 할까. 그것도 문제 될 것 같아요.

A04 : 그런데 선생님들은 저희한테 수업을 하고 숙제를 내주든가 그런 것 하잖아요. 그런데 잘 하는 친구들은 그 숙제를 성실하게 잘하고 수업도 성실히 듣고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이 예뻐할 수밖에 없고 공부 좀 못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자고 선생님 말 무시하고 약간 그런 반 하는 애들일 것 아니에요. 공부 못 하는 애들 반이.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성실하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이 더 좋아할 수 밖에 없고 공부 못 하는 애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쳐다도 안 보고 친구들끼리 막 떠들고 있고. 수업 시간에 자고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선생님들이 무시 하고 그러는 거지. 그것도 차별이 아니고 약간 학생들 개개인의 차이.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B12 : (성적차별) 있죠. 있겠죠. 그래도 성적 좋은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더 보이는 게 좋게 보이고 하니까.

B09 : (성적에 따라 기회를 달리주는) 그런 선생님도 있고 안 그러신 선생님도 있는데. 그러신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가 좀 그런 게 지나치니까. 학생들의 반응은 다 좋지 않은데. 학교 측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거의 대부분 그러시는 선생님들 연령대가 꽤 높으시거나 아니면 학교에 오래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말을 하거나 그래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얘기만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간에 선생님한테 말한다. 그래도 선생님들 간에도 (위계가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 나. 성적순에 따른 기회제한

청소년들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편애하는 것에 대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성적에 따라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외부활동 기회, 입학설명회 참석 기회, 교내 수상기회 등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B09 : 성적 차별이요. 성적이 예를 들어서 잘 나오는 애들만 따로 불러 가지고 생기부에 더 적을 수

있는 그런 외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거는 그 아이에게만. 원래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가질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아이들에게만 주어진 기회니까.

B11 : (성적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제가 고 3이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입학부에서 많이 학교를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문대학교는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 입학 설명회를 듣고 싶어서. 그런데 한 반에 몇 명까지 자르는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애들 위주로 지원. 애들이 많이 지원해도 공부 잘 하는 친구들만 뽑아서 못 가는 애들은 좀 속상해 하더라고요.

B05 :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적 좋은 애들한테는 상 같은 것 몰아주고 안 좋은 애들은 아무리 잘해도 그냥 제일 낮은 상 주고 그런 것. 이미 줄 수 있는 상이 있는데. 그런 거를 반 1등 그런 애들한테만 주고, 작년에 제가 상점. 저희 학교는 상점을 많이 주면 반에서 1, 2, 3등 정해서 상장을 주는데. 제가 반에서 3등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반에서 2등이었던 애도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개랑 저를 싫어했어요. 그래 가지고 상 안 주고 그냥 공부 잘 하는 애 주고 그랬어요.

B01 : 저희 학교에서 영어 시간이 교과서가 있고 문법 책, 독해 책이 따로 있거든요. 선생님이 달라요. 그런데 독해 선생님께서 성적순대로 잘라서 1,2,3,4 그룹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번에 바뀌었는데. 1번이 문법 설명하는 건 시간이 많이 든다고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1번들한테 먼저 보고 오라고 한 다음에 2,3,4번한테 알려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듣고 온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1번이라는 애는 성적이 높으니까 애네 들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성격대로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좀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충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희가 충분히 듣고서 할 수도 있는데. 성적순대로 자르니까 좀 뭔가 좀 차별받는다느 느낌. 그런 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성적에 따라서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캠프를 따로 보내주거나 취업의뢰나 연수기회가 있을 경우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 먼저 취업의 기회를 주고 나머지 학생들은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취업되고 나서야 취업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02 : 저희 학교는 상위 30프로인 애들만 따로 취업 반 만들어 가지고 캠프 따로 보내주고 3학년 되면 취업 의뢰 들어오는 것 개네 먼저 시켜 주고 그래서 나머지 70프로 애들은 개네가 취업이 되면 해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부당감을 느끼고. 다 같이 취업 하는 목적으로 들어오는 애들인데. 개네가 먼저.

B03 : 도제반이라고 해서 저희 학교에서. 저희 학교랑 또 저 쪽 다른 학교도 하는데. 2학년에 먼저 회

사에 가서 일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 갖고 1학년 때 뽑는데. 그게 35명을 뽑아요. 그런데 100명 중에 35명 뽑는 건 좀 부당하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고 있으나, 성적에 따라 학생들에게 외부활동이나 교내수상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별행위는 학교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다. 성적에 따른 편의 제공

성적은 단순히 입시나 취업에서 보다 좋은 기회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거나, 규정단속 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입소 순서나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도 성적을 기준으로 차별을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B05 : 저희 학교가 내년에 이사를 가는데 좀 멀리 가요. 강남 수서로 그런데 그러면 원래 이 근처 사는 애들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너무 멀어지니까 기숙사를 짓겠다 했는데. 이게 좀 성적순으로 자른다는 말이 초반에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다 엄청 뭐라 해 가지고 좀 방 인원을 좀 늘리고 해 가지고 다 수용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좀 불안하고 기분 좀 안 좋았어요.

A09 : 자습실 에어컨 틀어 달라고 하면 저희는 공부 못 하는 애들은 안 틀어 주거든요. 개네들은 어차피 그냥. 그냥 있어 보라고 그러는데. 공부 잘하거나 선생님들이 가서 덤다고 하면 바로 틀어 주세요.

학생들은 성적이 좋으면 학교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공공연하게 공부만 잘하면 규정을 어겨도 터치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고, 학생들도 규정을 어겼을 때 성적에 따라 차별적인 처벌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07 : 공공연하게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니네가 만약에 전교 1등 하고 공부 잘하

고 하면 담배 피든 말든 뭐 상관이나고.

A10 : 버려둔다기 보다 잡으려고 하시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위에 있는 애들보다는 많이 차별을 두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 공부 하는 애들이 만약에 저희가 자습실이라는 게 있어요 3학년이. 그런데 자습실에서 다 같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다른 반 가서 애들 알려 주겠다 이러면 보내 주는데.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가겠다 그러면 나는 공부도 안 하고 여기서 자는데 왜 나가냐. 이런 차별이 좀 있죠.

A14 : 나 그것 생각 나.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때 1학년 때 같이 수업 빠지고 PC방 간 애가 있어요 저랑. 그런데 걔는 공부 별로 못 했었거든요. 갔는데. 걔는 무단 결과 받았고. 저는 무단 안 된 적 있어요. 그래서 개한테 미안했어요. 그때 그래서 친구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같이 갔는데 솔직히.

A08 : 저요. 저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공부 되게 잘 한 애랑 싸웠어요. 그런데 걔가 먼저 시비를 걸어 갖고 싸웠는데. 걔는 하나도 안 혼나고 저만 혼났어요. 성적은 일단 인식이 있잖아. 성실한 이미지. 그때 때려 부수고 싶었어요. 아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구나.

#### ④ 기타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의 행동에 대해 학생들이 경험하는 감정이나 생각에 무관심하고 이들의 인권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하였다.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거나 어른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그것이 학생들을 무시하거나 학생들에게 무관심한 태도였고, 자신이 차별받았음을 인식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A08 : 제가 초등학교 때 사소하다 느낄 수 있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컴퓨터 보급도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컴퓨터 수업이 있어서 컴퓨터실에 가면 2학년 때 항상 두 명, 세 명 정도가 자리가 없어서 못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담임 선생님께서 컴퓨터 실 가기 전에 키순으로 한 줄을 세우셨어요. 저는 그때 키가 제일 커서 맨 뒤에 있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순서대로 들어가서 앉게 하면 저는 항상 서 있었어요. 컴퓨터실에. 다른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시고. 그때 제가 숫기가 없어서 그렇게 그 학년을 쪽 보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좀 뭔가 어리다고 무시당한 느낌. 그런 거죠. 생각이 있거나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선생님이 자기가 쓰던 거라도 주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선생님도 자기 컴퓨터로 자기 일 보시면서 우리 애들은 그냥 뒤에 세워 놓고 아무 것도 못 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네요.

A09 : 저는 처음에는 그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 싶기도 해 갖고. 지금 생각하면 그냥 학생들한테 무관심 한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좀 화가 나죠. 제가 어릴 때, 저희가 아주 어릴 때만 할 때도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잖아요. 제가 왼손으로 글씨를 쓸 때는 볼 때마다 선생님한테 글씨 쓰는 걸 왼손으로 쓰는 걸 보이면 맞았어요. 오른 손으로 쓰다가 정말 힘들면 공부 하든 뭐 하건 몰래 다시 왼손으로 바꾸거나 했는데. 그러면 등짝을 맞거나 회초리로 맞거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겨우 고치기는 했는데. 딱히 그것 때문에 지금 더 나빠졌다 느끼는 건 없지만 그런 것도 안 좋았다.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 (3) 사회에서의 차별

사회에서의 차별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아르바이트 경험에서의 차별, 연령에 따른 차별, 유해업소 출입과 관련된 차별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 ①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들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을 받거나 외식업체에서 서빙을 하는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차별 경험을 하였는데, 업체가 학생이기 때문에 기회를 제한하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잡다한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하였다.

B01 : 얼마 전에 저 알바(서빙) 하려고 했었는데. 다 전화를 해 보니까 학생이라서 안 된다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차별이.

A03 : 알바를 처음에 가면요. 일단 나이랑 전화번호를 쓰잖아요. 쓰는데. 일단 오늘 한번 써 보고 우리가 사용할지 안 할지 고민 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만약에 되더라도 좀 얘기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는 잘 안 불러요. 학생들은.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일만 해 가지고 필요 할 때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안 와도 된다. 그러면서 돈을 조금씩 주면서 하는 게.

B02 : 제가 서비스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지. 주문을 받는 거는 언니들이 하고. 쓰레기 치우고 이런 거는 다 저희가 하거든요.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파트 별로 하면 시간이 날 때가 있는데. 언니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 저한테 시키시니까. 너무 막내라고 시키시고. 약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시키니까. 한 명이 시키면 괜찮은데 세 명, 네 명 한꺼번에 시켜 버리니까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것도 있어요.

B10 : 그 가게가 재 오픈을 해서 모두 다 전부 새로 구한 건데. 다 같이 시작하는데. 매니저를 정했어요. 그런데 매니저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매니저는

딱히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앉아서 사장이랑 카톡하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매니저가 여자였는데. 저는 서빙도 하고 주방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가끔씩 뭐 하라고 하면 주방에서 요리 같은 것 간단한 것도 하고. 저 혼자 뽀세게 했어요.

B07 : 저는 알바 하면서 그 일을 오래 한 사람은 일을 쉬운 걸주고 쉬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주는데. 그거를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처음 한 사람은 되게 힘든 일 많이 시키고 쉬는 시간을 되게 안 주더라고요. 그런 것. 이유는 딱히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데. 좀 뭔가 오래 됐고. 그러니까.

종종 시급을 적게 받는 경우도 있었다. 업체는 일을 하고 싶은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청소년을 굳이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A03 : 아니 20살 누나와 저는 그 당시 18살 정도 됐고요. 그때 일 했는데. 저는 미성년자고 저 누나는 20살이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다 보니까 어쩔 때 한 시간 쓸 때도 있고. 원래 계약을 한 게 8시간씩 아니 5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시간 때 손님 없다가 미성년자라고 보낸 적도 있고. 또 차별 같은 것도 20살 누나는 더 많이 시킬 때도 있고. 성인이다 보니까. 밤늦게도 시키고 그러는데. 가끔 한 시간씩 손님 없으면 시키고. 시급도 미성년자라고 6100원인가 그때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성인이라고 6500원.

B07 : 돈을 좀 적게 준다거나. 그 쪽에서는 알바를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게 부당하다 싶으면 애는 그냥 안 시키면 되니까. 왜냐하면 애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돈을 좀 어린이랑 다르게 주더라고요. 그런 걸로 청소년과 어른이라고 그렇게 일 하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돈을 적게 받는다는 거는 저희도 학교에서 배우다시피 좀 아닌 것 같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되게 이렇게 하면서까지 알바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 것에 대해 얘기해 본 적은 있는지?) 아니요. 아직은. 그래서 알바를 이제 안 해요.

또한 청소년들에게, 근로계약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족쇄가 되는 것처럼 설명하고는 근로조건을 업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B10 : 그걸(근로계약서) 원래 שלא 했는데. 알바인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안 좋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걸 쓰면 사장의 노예가 된다는 그런 말이 딱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 주방장이요. 제가 먼저 학교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물어 봤어요. 근로 계약서를 쓰면 야간 수당에다가 주휴 수당에다가 이런 걸 준다 했더니. 꼭 그거를 쓰는 것만이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어 봤더니 지각을 하면 사장이 무조건 그 식당이나 가게나 회사에서 사장이 만든 이러이러한 법들이 있으면 이것 이것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어기면 무조건 사소한 것 하나라도 다 지켜

야 되고 만약에 그걸 어기면 돈도 차감 되는 것 당연한 거고 시급도 깎이게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좋다고 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말았어요

A01 : 저는 그것 알바 하면서요. 원래 8시간을 근무하면요. 쉬는 시간 한 시간이랑 점심시간을 같이 줘요. 원래 법에서 지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매니저가 7시간 일하게 해 가지고 최대한 더 부려 먹은 다음에 그 한 시간 쉬는 시간 빼고 점심시간도 원래 거기서 내는 거예요. \*\*\* 바에 거기서 해요.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못 하게. 전부 다 7시간을 딱 잘랐단 말이에요. 근무 시간을. 그런 식으로 차별인지 뭐지 저 좀 싫어 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상황에서도 외모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외모에 따라서 근로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B09 : 저는 제 얘기는 아닌데. 제 친구가 알바 했을 때 얘기인데요. 제 친구가 음식점에서 알바를 구하길래 알바를 같이 했는데. 알바 하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가서 친구 두 명에서 음식점에 알바를 하러 간 거예요. 음식점에 알바를 하면 보통 앞에 서 있는 일이 많으니까 약간 외모도 좋고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제 친구하고 그 둘 다 그렇게 그냥 딱 둘 다 나쁘지도 않고 딱 괜찮았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제 친구는 나오지 말고 그 다른 친구만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외모적인 걸로 차별받았다고 어이없다고.

## ② 나이에 따른 차별: ‘청소년이기 때문에’

### 가.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나 순서를 양보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인식, 화장을 하거나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 청소년이기 때문에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등이 있었다. 먼저 청소년들은 어리기 때문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양보해야 하고, 아침부터 줄을 서있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가로채인다고 하였다.

A06 : 저는 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딱히 알바를 해 본 적은 없고요. 제가 작년 여름 방학 때 학원을 다녔었는데 강남으로. 그래서 강남까지 가려면 고속버스를 타고 두 시간을 가야 돼요. 그

런데 아침 일찍 가야 되어서 피곤한 상태로 그 버스에 타면 앉자마자 바로 자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서 많이 타는 건 괜찮은데, 그 쪽에 나이 드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주위에 보내는 시선이 저 같은 어린 애가 생생하고 건강한 어린 애가 앉아 있으면 조금 어른들은 서 계시는데, 제가 앉아 있기가 조금 뭐해서 비켜 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두 시간 동안 서서 가는 건데, 그게 조금 암묵적 차별이 아닌가.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청소년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B12 : 왜 그런 자리 있잖아요. 페스티벌하는 자리. 공원에서 축제 같은 걸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할 때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이 저희가 서 있으면, 막 오히려 대학생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희 애를 잠깐 꺼 줘도 될까요를 못 하는데, 청소년들한테는 그걸 유독 편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애네들 정도는 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어쨌든 저는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애기,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로채기를 할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어쨌든 어리든 많은 그만큼의 저희도 시간을 가지고 했고, 그냥 솔직히 성인보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말하기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좀 이렇게 가로채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작 청소년이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기피해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고 업무담당자의 다른 업무에 밀려 일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B11 : 그러면 간접적인 차별 같은 걸 겪은 것 같은데, 올해 초에 제가 중국 나라를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기다렸는데, 엄청 수사를 늦게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저 말고 많은 피해자들을 모아서 연락을 해서 어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좀 진정서를 넣으니까 그제야 수사의 진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3월 둘째 주에 넣었는데 거의 5개월 이후에 재판이 열리고, 그래서 친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경찰인 친구한테 물어 봤는데, 경찰이 바쁘기는 한데 좀 미루거나 그런 게, 일의 우선순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대요. 제가 만약에 아빠가 경찰이거나 그런 좀 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좀 더 수사가 빨리 되지 않았을까.

#### 나.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지: 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

또한 ‘청소년’은 공부에만 전념해야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화장을 하거나 염색을 하는 청소년을 나쁘게 보는 시선, 늦은 시간에 남녀청소년이 모여 음료수를 마시기만 해도 비행청소년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은 청소년들을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B12 : 그냥 생각하는 편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인데 화장을 해, 염색을 해. 이런 그런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 물론 안 하는 게 더 좋고 굳이 할 필요도 없지만 꼭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이 아이가 하고 싶다면 그냥 해도 상관없는 건데. 나쁘게 보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하지 않아도 될, 되게 당연하게 하고 있는 편견들 같아요.

B12 :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 앞에 중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중학교가 다 문이 잠겨 있잖아요. 후문이고 정문이고. 그런데 제가 나온 중학교고 가까우니까. 친구랑 저희 집에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가, 중간고사 공부를 하다가 너무 막 답답하고 막 어차피 다음 날은 주일이니까 조금 쉬었다 오자 그래서. 저랑 여자 애 하나랑 남자 애 하나랑 해서 셋이서 되게 낮은 담을 하나 넘고, 과자랑 주스를 이렇게 사 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가서 걷다가 앉아서 먹다가 그랬는데. 경비 아저씨가 다른 날은 안 나오셨는데. 그 날은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애들이 과자랑 음료수를 두 개 두니까 그냥, 그냥 먹는 건데도 이 음료수가 되게 그런 나쁜 쪽의, (술이라고 생각?) 술이라고 생각을 했고. 보자마자 너희 비행 소년 이냐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말은 안 보고, 그 전의 그런 건 안 보고. 그냥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단정 지어 버리는. 그래서 막 주스라고 얘기도 해 드리고, 원 플러스 원이라서 하나도 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게 낮은 시간에 애들이 나와 있으면 다 비행 소년이고. 문제가 있을 것만 같고. 학교에서 애가 어떻게 잘했든 다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청소년이라서 그렇게 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애가 반에서 전교 1등을 하든 그렇든 아니든.

### ③ 보호와 규제 사이: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들을 규제하는 법률과 제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청소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지만, 청소년이 필요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 PC방과 같은 업소의 경우에 이용시간 규제로 인해 청소년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B05 : 청소년은 PC방 아침 9시 지나야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런데 제가 숙제를 하려고 새벽 6시부터 있는데 쫓겨났어요. 그 때 망했다. 숙제 하는데. 좀 짜증났어요.

청소년들은 이러한 규제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경험이 적고 나쁜 일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의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B02 : 나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출입하면 안 되는) 이상한 데 갈 수 있잖아요.

B03 : 네. 저도 나쁜 일 하나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갔는데 애가 PC방이라고 거짓말 칠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B04 : 아침 일찍 간 건 피해 없는데요. 밤 10시 후에는 PC 방 못 들어가서 막 그냥 애들끼리 그냥 가서 좀 더 12시까지 그렇게 오래 있고 싶은데 청소년이라서 안 되니까 그냥 나왔어요. (제한을 받은 거네요) (나라에서는) 안 좋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뭐가?) 다 그러기는 한데. 늦게까지 그렇게 있으면 집에 안 들어가고 있으면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자기는 학교도 가야 되는데. 생각 없이 계속 있다 보면 누가 옆에서 나가라고 말을 해 줘야지 나가지, 시간을 잘 안 보잖아요 애들 놀 때.

B05 : (청소년은) 경험을 많이 안 했잖아요. 어른들보다 많이 살지는 않았으니까. 어른들보다 많이 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좀 특특 할 수도 있고, 좀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려면 1년 반 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랑 제 그거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는 달리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다. 이들은 청소년 중에도 자신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보호라는 명목으로 청소년들의 행동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B04 : 네. 그냥 PC방에 늦게까지 있는 건 자기 맘이잖아요. 오랫동안 게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누가 가라고 안 그랬으면 좋은데.

B06 : 청소년 정도면 자기를 제어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됐다고 생각 하니까. 자기를 충분히 제어 할 수 있고, 또 밤에만 놀 때 느끼는 더 극한 재미. 밤에만 더 할 수 있는 그런 놀이가 있잖아요. 불꽃놀이처럼. 그런 것도 더 많이 느껴보고 경험할 수 있는데. 제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많이 못 느껴 보게 되니까 제재는 그냥 원하는 사람은 할 수 있되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B01 : 자기 절제만 있으면 그런 PC방 그런 청소년 보호법 이런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B06 :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해요. 몇몇 애들만 그렇게 방황하고 그런 데로 빠지는 건데.

같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같은 취급을 해 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즉, 청소년이 절제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어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제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듯이, 규제의 범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의견이 있었으며, 이러한 규제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었다.

B06 : 그냥 애매하다고만 생각해요. (애매하다는 건 어떤 의미?) 그냥 사회적으로 아니면 그냥 친구들 끼리는 그냥 친구 함께 놀고 그럴 수 있을 텐데. 몇 개월 차이만으로 애는 가능하고 나는 안 되는 거니까. 그 차이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제재를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B02 : 너무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른들이?) 네. 영화 보러 간다고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상한 데 가는 것 아니냐고 못 나가게 하니까. 그냥 못 믿는 것 같아요.

B05 : 딱히 그건 청소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어를 잘하면 되기는 되는데. 계속 그러면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많으니까.

청소년들은 규제 방법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가령 규제를 많이 하는 곳을 피해 더 위험한 유해업소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규제 방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B05 : 찜질방 같은 그런 좀 약간 다 같이 자는 거잖아요. 제 친구들 보면 찜질방 같은 데서 걸려 가지고 못 들어가구요. 지들끼리 돈 모아서 모텔 들어가서 자고 막 그렇거든요. 그게 더 안 좋잖아요. 솔직히. 돈도 더 많이 들고. 찜질방 같은 것 좀 풀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텔 들어가는 것도 제한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숨어서 들어가던데. 어차피 제대로 걸러내지도 못 할 거면 애들이 그렇게 위험한 데 돈 내느니 차라리 찜질방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요.

#### ④ 미성숙한 의사 결정: 선거연령에서도 차별

청소년들은 선거연령이 19세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

들의 생각이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19세 이상이 되면 성숙하다고 간주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학생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B05 : 의원들 투표해서 뽑잖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그런 것 만 19세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무슨 기준으로 정해서 19세가 넘으면 다시 생각이 똑바로 되서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지.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그것도.

B01 :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아직 미성년자라서 생각이 성숙하지 못 하다고 어른들이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투표를 못 하게 만 19세 이상만 생각이 성숙하다고 생각 하시는 것 같아서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B06 :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학생과 관련된 그런 투표는 학생들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방금 말했듯이 교육감 같은 그런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니까 학생들이 직접 투표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대선 같은 거는 학생들은 아직 뭐라고 해야 되지. 정치에 관심을 많이 둔 학생이 많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잘 알고 있지 않는 지식으로 그냥 투표를 하는 것이 별로 옳지 않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선거에 참여하는 연령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소년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 즈음에 투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B02 : 고등학생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못 하게 하는지는 딱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B05 : 17세 정도면.

B05 : 갓 들어갔을 때 말고. 그때는 좀 철이 없으니까.

B05 :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부터는 대학을 가야겠다 싶고 좀 약간 정신 좀 들고 뭐지. 교육감 뽑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청소년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자기가 그것 대한 것 하는 거니까. 그쯤 17세부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B05 : 고등학생 정도 되면 회장, 부회장 선거를 할 때도 중학교 때까지는 인기투표 했을지 몰라도 좀 반을 좀 잘 이끌어 가고, 알려진 것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좀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그 정도 나이쯤 되면 잘 잡혀 있으니까 막 뽑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하였다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청소년들이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B04 :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B03 : 저는 아직 정치 쪽에는 관여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면 만약에 잘못 당선 되면 또 그런 점 있지않아요. 당선 된 사람 비리가 있다든가 그러면 잘못 투표 할 수 있으니까. 공약도 잘 안 지키고.

### ⑤ 학벌/학교에 대한 차별

청소년들은 학벌이나 학력에 대한 차별보다 ‘학교유형’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차별을 느낀다고 하였다.

A01 : 양아치, 양아치 많냐고 그러고.

A13 : 저는 저번에 쓰레기 취급당했어요 어른한테. 되게 기분 나빠 갖고.

A04 : 약간 여기 다니는 애들은 뭐가 부족하거나 사고를 쳐서 왔다. 그런 류. 다른 학교에서 받아 주지 않으니깐 여기로 왔다. 그렇게 생각 하시니까.

A06 : 갑자기 평소에 좋게 보다가 학교 어디 다니냐고 물어 봐요. 저 \*\*\*\*\*라고 대안교육 하는 학교 다녀요 이러면 갑자기 꼴통이겠네 막 이래요. 꼴통 같이 안 생겼는데. 잘 알지도 못 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B02 : 저는 진학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앞으로 취업 할 때 취업 자리에 따라서 너무 그렇게 안 좋은데는 아닌데. 그 이하로 바라보는 시선도 많아서 그게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급은 아닌데 너무 안 좋게 바라보니까 좀 제 입장에서는 짜증 나죠.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간 건데.

B03 : 인터넷 뒤지다가 저번에 제가 중학생 때인데. 학교를 특성화 고로 가려고 했는데. 다른 학교 애들이 공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그것에 대해서 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해요.

A11 : 정작 보면 그렇게 학교 얘기를 안 좋게 하시는 애들을 보면 만약에 제 친구다 그러면 제가 개보다 생활을 잘하고, 개보다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학교를 욕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래도

내가 다니는 학교고 그런 학교인데.

청소년들의 노력이나 학교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이유로, 대안학교라는 이유로 학교를 무시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짜증나고 기분 나빴지만, 학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서는 선입견이 사라지고 오히려 학교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 A06 : 되게 막 깔보는 느낌이었는데. 몇 년 지나고 애들 다시 만나고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은 보면서 선생님들이 상담도 잘 해 주시고 관심도 되게 많다고 하니깐 자기도 그때 같이 원서 쓸 걸 그러면서 부러워해요.
- A04 : 잘 알지 몰랐을 때는 함부로 말하다가 뭔가 이게 학교 활동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 해 주고 학교에 대해 얘기를 해 주니까 또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 A09 : 일반 학교를 적응 못 하고 다닌 애. 양아치네.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인식 차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른들한테는. 양아치 새끼고 중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막 다니던 새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좀 아니잖아요. 저희 학교는 학력 인정도 되고 대학도 잘 가는 사람들은 잘 가고 하니깐. 그러니까 그런 인식에서는 차별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나이 또래는 좋아하는 애들 많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인식 되게 안 좋아요.

### 3) 차별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은 차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차별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고, 노력을 하도록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차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차별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개인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상호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세 번째는 차별은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본능처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하며, 가해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갖는 열등감이 문제라고 보았다.

#### (1) 차별은 필요하다

차별에 대한 첫 번째 입장은 차별이 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고, 차별이 없으면 노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차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대체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차이를 갖게 되고, 그러한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하기 때문에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 지배력 등으로 개인을 평가하여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존경과 선망의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입장을 가진 청소년들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은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들에 대해 선망의 태도를 보이며 차별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근본적으로 ‘차이’와 ‘차별’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① 차별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차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차별이 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차별은 사회 내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않은 방식, 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방식을 통해 기득권을 갖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득권층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 등 사회 환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층의 변화만을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A08 :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양 쪽, 어느 쪽도 아닌 게 차별이라는 것도 정당한 차별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을 노력을 해서 스스로 일군 차별. 그게 정당한 차별이라고 보고 부당한 차별은 아까 이 친구가 말했듯이 더러운 일 있잖아요. 더러운 쪽으로 뭔가 손을 대 가지고 한 것이 손을 대가지고 얻은 게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고 어느 쪽도 아닌 차별이라고 보는 게 건우가 말한 대물림이라는 건데. 사실상 내가 이만큼 성공을 했으니까 나의 자식에게 그 성공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이만큼 돈이 많은데 내가 죽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자기 자식에게 못 물려진다 치면. 그러니까 애초에 대물림이라는 것도 정당한 것이라고는 봐요. (중략) 정당한 또는 타당한 차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노력에 대한 거라든가 능력에 대한 거라든가 성공에 대한 것. 그런 것에 대한 차별만 남기고 또 아까 말했던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복지 있잖아요. 일정 이상의 복지. 일단 복지 자체만 해 주고 기회를 부여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정당하게 사회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좋은 답이

라고 생각해요.

A14 : 기득권 세력은요. 자기가 기득권 세력이 된 것에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뛰어난 리더십이 있어서 아니면 남들은 생각하지 못한 발상을 가지고서 그걸 현실로 만든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잖아요. 아니면 모두가 피하던 것에서 자기가 혼자 거기 뛰어 들어가서 최고가 된 사람이 기득권 세력이 되잖아요. 그게 싫고 편안한 삶을 유지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노동자가 되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편안한 삶을 하니까 어떻게든 좀 더 편안한 삶을 유지하고 그걸 평생 유지하고 싶고 그걸 자식에게 대물림 하고 싶으니까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는 위험한 도박을 안 하고 돈을 버니까 그걸 물려주고 좀 더 크게 벌고 싶으니까 그러게. 그래서 기득권한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중략) 대물림은. 그 말이 있어요. 부자가 옛날에는 3대가 유지 된다고 했잖아요. 3대가 유지 됐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야. 그만큼 가진 애가 다시 그 돈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든 거야.

A03 : 그만큼 금수저들은 아빠가 그만큼 노력 했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그만큼 부유해지고 그런 거니까.

A02 : 저는 솔직히 저 친구가 말한 거는 최악의 상황이고 그런 건.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만 바라본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솔직히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도 기부 많이 하잖아요. 우리 대기업도 기부 같은 것 많이 하고 나중에 재산 같은 것 사회에다가도 환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저렇게까지 생각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A14 : 아니 굳이 그거를 바꿔야 되나 생각도 싫어요 솔직히. 조금만 옛날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게 안 나왔잖아요. (중략) 왜 갑자기 조금씩, 조금씩 나오면서 튀어나오다 그게 한번 구멍이 딱 뚫리니까 나와서 이러는 건데. (중략) 솔직히 누가 안 찢러 줬으면 거기에 대한 생각도 못 하고 살았을 거면서. 이게 남의 생각을 아 이것 하면 나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생각 막 따라 가면서 죽을 듯이 주장하는 게 좀. 자기주장도 아니고.

## ② 차별은 동기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차별은 노력에 대한 대가로 돌아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노력을 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A09 :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차별이 없으면 노력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 했나.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공산주의 같은 경우도 노력을 해도 보상 받지 못 하기 때문에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차별이 없으면 자신이 노력을 하고 싶어도 노력을 해도 그에 대한 동기 부여는 안 될 것 같아요.

③ 누구나 노력을 통해 기득권이 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이 필요

차별이 필요하다고 보는 청소년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조차 그들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보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변화를 통해 기득권층을 변화시키고 차별을 개선하기보다 사회구조를 조정하여 누구나 노력을 통해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들은 노력의 대가로 얻게 되는 차이와 차별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며, 사회의 구조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변화 없이 단순히 제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이러한 청소년들은 차이와 차별의 구분이나 차별에 대한 인식이 명확치 않으며 제도 개선만으로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을 갖고 있었다.

A14 : 그러니까 그러려면 인식보다는 구조를 조정해야지. 사장, 직원이 사장까지 올라 올 수 있는 구조를 조정해야 되는 거지. 굳이 지금 대하고 있는 차별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2) 차별은 불합리하다

차별에 대한 두 번째 입장은 앞서 차별이 노력의 대가이고 동기부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 청소년들과는 달리, 차별을 불합리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청소년들은 개인이 가진 배경으로 인해 능력이나 기회를 제한받는 것은 불합리하고, 누구에게나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개인의 특성이 모두 다르다 보니 개인 간에 다양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① 차별은 불합리하다

청소년들은 차별의 기준이 되는 개인의 특성이 스스로가 원해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속성도 있는데, 개인의 배경이나 속성에 따라 기회를 제한받거나 차별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였다.

B05 :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돈이 없고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집에는 태어나 보니까 막 엄마가 엄청 부자고. 그런데 그러면 다 같이 같은 날에 태어났어도 나는 약간 살아가는 게 많이 다르잖아요. 먹는 것도 많이 다르고.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맥 같은 걸로 낙하산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남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B01 : 요즘 저희 학교에서 저희가 사립고다 보니까 선생님들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학력하신 분들 다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셨는데. 다 사립고는 학교에 조금 돈을 주고 인맥 이런 것. 그러면 거의 다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의사 되려고 해도 좀 돈도 조금 더 주고 막 그렇게 해야지 의사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금 수저, 흙 수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 가지고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B01 : 완전 부당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 그런 존이 게스트 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가 흔히 말하기로 게스트, 백녀라고 하더라고요. 백이 많아서. 그러니까 공연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방송 관계자들이 친구로 있거나 아니면 동료로 있어서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 티켓을 주면 그 사람들은 게스트로 가서 앞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좀 부당하고. 또 저희도 할 수 있는 직업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채 가는 거잖아요. 그런 직업들을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것도 부당한 것 같아요.

특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배경으로 인해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 사회가 잘못되었고, 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B02 : 그런 금 수저 같은 사람들보다 더 일을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더 많이 차별받으니까 차별받아서 내 능력을 못 발휘 하니까 좀 더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B05 : 잘못 됐죠. 그 아이 말고 다른 애들이 좀 더 나은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애 뒤의 사람들을 보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이 잘할 수 있고 그런데.

## ②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청소년들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배경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배경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은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좌절을 야기하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가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B02 :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어느 집안에 태어나는 거는 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다 똑 같은 사람인데. 살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차별 당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 B06 : 부유하다거나 권력이 있어서 기회나 그런 걸 먼저 갖게 되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먼저 채용한다고 치면. 그러면 원래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백만으로 채용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건 상위 층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 B06 : 결국에는 낙담하는 사람이나 좌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③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배려 필요

또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 권리가 있으므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에 비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세금지수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적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단, 청소년들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노인이나 어린 아이, 장애인 등을 사회적 약자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 A06 : 사회에 경제적 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벌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서 세금이 다시 약자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니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B06 : 사회적 약자를 돕는 거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권리가 있는데. 그들 돈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살짝 부족한 것뿐인데. 그 이유만으로 많은 거를 제한하게 되니까 그런 것에서는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B05 : 우리같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런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 노인 분들 같으면 잘 못 올라갈 수도 있고 저희는 쉽게 올라가니까. 똑같이 잘해야 되나. 그 이미지는 좀 서로 도와 가면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 B06 : 아무래도 대학 같은 것 뽑을 때는 장애인은 저희와 동등하게 시험을 치를 수 없으니깐 좀 달리 해서 시험을 치러서 따로 뽑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B05 : 배려해야죠. 그런데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딱히 몸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약자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애인이나 그런 노인 분들은 어린 애들은 약자니까 돌봐 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 ④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호 존중노력이 필요하다

차별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B10 : 네. 돈이 많다고 자만심 갖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똑 같은 인간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다이가 들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금수저 들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물론 자기는 이만큼 해서 성공을 했는데. 남들은 좀 니네가 노력을 안 해서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혼자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냥.

A06 : 서로서로 존중하고 감사해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자들도 많이 배려해 주니까.

B10 :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욕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무슨 잘 못을 하지 않았으면 욕을 할 권리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도 그 사람들만의 노력을 해 가지고 그 마만큼의 자리에 올라간 건데. 그런데 좀 부당한 짓을 안 하면 모를까. 돈이 많다는 이유로 자기는 그냥 돈만 내고 형을 그냥 3년 형을 받았는데도 70 며칠 만에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백화점 같은 데 가 가지고 막 진상 부리고 뺨 때리고 돈 주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괜히 김여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것 가지고 욕을 하는 거면 솔직히 그런데 잘 돈 많은 사람들의 행동 가지고 갑질 한다하는 거니까.

#### (3) 차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차별에 대한 세 번째 인식은 차별이 불합리하긴 하지만, 차별현상은 어쩔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청소년들은 동물 세계에도 본능적으로 위계가 나타나듯, 인간사회에서도 이러한 위계가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보고 있다.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기득권 세력도 어차피 그들 나름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차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차별을 느끼는

것은 차별을 당한 사람의 열등감일 뿐이므로 차별을 당한 사람 스스로가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청소년들은 차별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선의 의지나 노력 없이 무기력하게 차별현상을 받아들여야 하며, 스스로 차별을 받지 않고 있다고 위안하는 등 차별에 대한 민감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를 포함하여 누구도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차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사람 혹은 집단이 없기 때문에 차별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① 차별은 어쩔 수 없는 것

이러한 입장을 가진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 차별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입장을 대변하여 이야기할 수 없고, 누군가의 편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편에게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차별현상 자체를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별현상이 정당한 것이며, 차별을 하는 것은 일종의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부당하거나 불의가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이러한 경향은 결국 실제로 이 사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조리에 맞서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A02 : 그런데 이게 어떤 쪽에서도 편을 들든 저 쪽에서 편을 들든 다 같리고 다 둘 다 아까 말했듯이 둘 다 좋아질 수가 없으니까 차별 된 인식을 바꿀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연 현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받아 들였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A09 :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까 애네 오기 전에도 얘기 했듯이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게네도 개네만의 고통이 있을 테고 저희도 돈 많은 애들도 돈 많은 애들만의 고통이 있을 테고 그런 거니까. 네이버 무슨 웹툰 중에 금수저라는 웹툰이 있어요. 그런 웹툰을 최근에 보는데. 어떤 내용이나면 금수저하고 흙수저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몸이. 그런 내용인데. 금수저도 금수저만의 그런 고통이 있고 흙수저도 흙수저만의 고통이 있는데. 그걸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산도 대물림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부자면 그 다음 자식이 내 재산을 받을 테고 그렇게 반복되면 어쩔 수 없이 자수성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책이 없지 않을까.

B06 : 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 하면 이 세상은 지금 돈으로 돈만 있고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 보면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친구들도 다 돈을 중시하고 있

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냥 다 돈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A11 : 옛날에 드라마 봤는데. 대학에서 되게 잘사는 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애가 자기가 혼자 튀니까 애들이랑 잘 있다가. 어떤 애가 개가 개네 아버지가 엄청 잘 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그 잘사는 애한테 식당을 가면 왜 너는 이것밖에 안 내냐고 잘 사는 놈이. 이러면서 그런 역차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 사는 애랑 못 사는 애랑 같이 있으면 못 사는 애가 돈이 없어서 애가 돈 많으니까 애가 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잘사는 애한테 부담감을 가지고 그런 게. 생각이 다르니까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거는.

A13 : 어쩔 수 없지 않을까.

## ② 차별은 인간의 본능

동물의 사회에서도 계급이 나뉘어 있듯이, 차별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방법은 찾기 어렵다. 청소년들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고, 이득을 한번 맛보게 되면 더 큰 이득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이 획득한 부와 명예 등과 같은 이득을 유지하기 위해 기득권이 된 자신에게 유리한 법이나 제도를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입장이다. 차별이 존재할지라도 인간이 가진 본능임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주장하며 합리화하는 입장은, 스스로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외부집단에 대해 존경과 선망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 역시 경제적인 우위에 있는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차별 개선 노력으로 인해 그들이 입을 손해를 우려하는 등 기득권층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A11 : 그런데 완전한 계급 사회가 아닌데. 원래 동물들도 계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우두머리가. 그거는 생물의 (본능?) 완전한 본능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완화하는 방법을 찾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이득을 가진 한번 본 사람은 계속 똑 같은 이득을 보고 더 큰 이득을 보려고 하니까.

A14 :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이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애네들은 그걸 계속 유지 하려고 개네들한테 유리한 법을 계속 만들고. 애네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고 사려면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아래로 들어간 게 지금까지 유지 됐고. 개네들은 계속 유지 하려고 하고. 애네 들은 이제 생각이 터서 이걸 바꿔 보려고 하지만 위의 계층은 너무 단단하니까 깨부술 수가 없는 거죠.

- A08 :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문제, 이게 다 문제가 되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알면서도 만약 정작 자신이 그런 걸로 득을 볼 수 있다 하면 그것 또한 거절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 A12 : 차별은 진짜로 아예 영원히 갈 것 같은데요.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잃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관계라서 그거는, 뭔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도 보고.
- A14 : 그거는 그게 아니죠. 사람이 갑자기 발전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자기 돈만 지키려고 하니까 이기적인 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돈 버는데, 그 사람들은 악착같이 모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세금 폭탄 맞으면 돈 번 것 다 뺏기는 생각이겠죠. 그 쪽도 북유럽도 몇 십 년 동안 시행착오 겪어 가면서 그렇게 겨우 한 건데, 한 순간에 그러려면 누가 좋겠어요, 그거를.

### ③ 차별은 피해자의 열등감일 뿐이다

차별은 기득권층이 가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신이 처한 입장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보며 부러워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열등감으로 인해 스스로를 차별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할 때에 비해 스스로 차별을 별로 경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유능감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Crosby, 1984; 한규석, 2013:513 재인용)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나 차별로 인해 유발되는 감정을 최대한 통제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별에 대처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 B12 : 그런데 그런 차별 자체를 막 오히려 요즘 금 수저, 흙 수저 하는 것처럼 오히려 정말 부모님들이 그런 게 생긴 것 자체가 오히려 아예 부모님들의 백이 되게 어마어마한 애들보다는 진짜 그냥 보통 아이들한테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차별들이 일어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애네들이 만드는 거야 라고 하지만 오히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들이 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굵을 매기는 게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 굵이라는 걸 매기는 게, 오히려 저희가 그런 걸 매기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무슨 수저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 자체가 막 정말 잘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 했다고 생각하기, 말하기 보다는 아예 저희가 그런 차별들을 만든 듯한 느낌이에요.

B07 : 저는 가정환경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다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으니까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돈이 많으면 좋다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돈을 많이 벌어야 좋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애들도 당연히 아 돈이 많으면 좋은 거구나 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한테 더 이렇게 해 주는 게 더 당연하게 된 것 같아요.

B09 : 저는 제가 지금 디자인 쪽 하고 있는데. 디자인 쪽에서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디자인을 그냥 입시 위주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일러스트나 포토샵 같은 걸 다 같이 해서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노트북 같은 거나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차이 날 수 밖에 없는 게. 애들도 지금 몇 명, 좀 집이 좀 살거나 그런 아이들은 맥, 거의 맥이 디자인 쪽에서 가장 편찮으니까 맥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아이들은 그냥 컴퓨터로 하거나 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보면 아 그냥 부럽다. 그런데 그래도 아 돈은 정말 있으면 좋은 거구나.

아니면 또 입시 위주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 가려면. 그런데 입시 위주 하려면 그 입시 위주 자체를 거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그게 안 맞으니까 그냥 엄마가 유학을 보내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학 간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보면서 제가 약간 진로 같은 것에 대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주위 아이들의 환경을 보면서, 나한테, 나한테는 어느 정도가 적합한 건지 이렇게 생각 하게 되면서 진로를 굉장히 많이 고민 했던 것 같아요.

A14 : 저희는 안 좋게 사는 사람들은 복지 혜택을 받는데. 저희는 잘 사는 사람들은 복지 혜택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으로 복지 혜택을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질투 그런 게.

#### ④ 해결할 수 없는 차별

결국 차별은 어느 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특히 청소년들은 개인이 경험하는 차별의 경우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개인의 의견 하나만으로 법이나 제도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차별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B01 : 이거는 정부가 해결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돈이 엄청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개인 소유인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마음대로 막 이거를 사회에 환원해라 이러면 그 사람은 좀 화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번 건데. 그래 가지고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뭐라 할 수 없으니까.

A02: 막 무조건 위계층이 나쁘다, 아래 계층이 그렇다 하는 차별은 없고요. 위 계층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아래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평준화를 시킨다, 평균화를 시킨다 한들 예를 들어 세금을 위 계층을 더 많이 가져가면 그것도 또 차별이라고 하고, 또 그걸 또 안 한다고 하면 또 이것도 차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둘 다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A14 : 그런데 그거는 해결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B10 : 솔직히 말해서 대처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 거를 불만을 가져서 얘기를 하면 불만 있으면 관둬라, 사표 써라 이런 식으로 말할 게 뻔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면 진짜 다른 나라로 갈 것 같아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피하는 방법?) 네. 왜냐하면 진짜 어느 누구 하나가 제 말을 들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거를 말한다 해 가지고 대통령이 막 법을 바꿔 주거나 그러지는 못 하잖아요. 제 의견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죠, 피해야죠.

B07 : 저도 딱히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 4) 차별 개선방안

##### (1) 차별에 대한 반응

청소년들은 차별을 받았을 때 대체로 학교 밖으로 나가거나 아르바이트 업체를 그만두는 등 충동적으로 그 상황을 피해버리기도 하지만, 당당히 맞서는 경우도 있었다.

A05 : 난 충동적으로 나가는데, 일 하다가 나가거나 학교 다니는데 나간다가 그런 것. 아니 그런데 차별받으면 그 상황에 있기 싫으니까 피하고 싶어지던데.

A01 : 저는 피하지 않습니다. 저 당당히 맞습니다.

A02 : 차별 당하면 솔직히 말로 풀어야죠.

##### (2) 해소방안

청소년들은 차별을 경험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는 혼자 화를 내고 말거나 친구들이나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들에게 차별경험을 이야기한다고 하였다.

B02 : 혼자 화내고 마는 것 같아요.

A01 : 같이 알바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막 뒷담 갔죠.

B01 : 그냥 친구들한테 얘기 하고.

B05 : 저 완전 화 나가지고 학교에 다 떠벌리고 다녔어요.

청소년들은 차별을 경험했을 때 자신의 경험을 친구나 동료에게 호소하는 이유는, 비록 해결이나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자신의 분풀이를 하거나 입장을 공감해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A01 : 그냥 분 풀라고 친구들이랑 얘기 하면 분이라도 풀리니까.

A02 : 그런 것 같아요. 의지하는 거죠 친구들한테.

A06 : 그냥 자기 생각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A01 : 그냥 같이 까 달라는 거죠. 알바 메이트들은 전부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상사를 누가 좋아합니까.

A03 : 다 분풀이하려고 친구들한테 얘기 하거나 그런 것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청소년들도 있었으나, 이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선생님이 한해서이고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하거나 조사하는 듯한 태도로 상담을 할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A03 : 선생님이나 아니면 마음 맞는 동기들이나.

A02 : 맞아요. 여기(대안학교) 선생님은 좀 저희 얘기를 더 들어 주고 막 그런 쪽으로 하니까.

A06 : 상담 그것도 우리는 일 대 일로 하는데. (예전에는) 교무실에서 하잖아. 선생님 다 있는 데서 상담해.

차별 경험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에게 일일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부모님과 얘기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A02 : 부모님한테는 잘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A01 : 얘기할 시간도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또한 어른이 알게 됨으로 인해 절차가 복잡해지고 귀찮아지며,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차별의 경우 신고를 해서 일자리를 잃으면 결국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A01 : 신고 해 봤자 미성년자라 또 엄마한테까지 달고 그러는 게.

A04 : 귀찮죠.

A05 : 귀찮으니까.

A03 :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그것 신고하면 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절차가 복잡하니까.

A01 : 거기 신고해 봤자 일자리 하나 또 없어지는 건데요 뭐. 그러니까 거기 신고해 봤자 그래 봤자 내 손해인데 뭐 하러 신고하냐고 이러면서.

### (3) 개선을 위한 노력 여부

#### ① 차별 개선을 주도해야 할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로 청소년들은 기득권층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기득권층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가지고 다양한 계층이 공존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A01 : 가장 중요한 거는 위의 머리들이 중요하죠.

A06 : 위에 맨 위의 사람들이 밑의 사람들을 약간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밑의 사람들이 위사람들한테 고마워하고 그런 것도.

B11 : 우리나라 기득권층하고 극 보수주의 사람들이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 그 사람들은 다양한 계층이 이뤄지는 집단을 만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 역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기득권층의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스스로



A07 : 기회가 된다면 하죠.

A08 : 요즘 SNS에 그런 것 올리면 거의 다. 알릴 수 있으니까 할 것 같아요.

B07 :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를 지지해 주고 같이 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지만 없어도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혼자서라도 할 생각은 있어요. 바뀌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누군가 나서지 않는다면.

B10 :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걸 좀 아니다 싶으면 그럴 것 같아요.

## 나) 남들이 하면 따라서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나서거나 혼자서 나서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거나 먼저 나서주면 따라서 함께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B06 :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서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못 할 것 같아요.

B08 : 지금은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차별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저도 참여를 하거나 따지거나 그럴 것 같은데. 다만 저는 만약에 저 같은 차별받는 대상들만 모여 있다거나 저 혼자 있을 경우에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참는다. 어차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어차피 차별받는 대상끼리 있는 거면 아무리 센 애들한테 말을 해 봤자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거다. 차라리 내가 그것 뭐지. 차별받는 대상끼리 그렇게 시위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할 바에는 그 시간에 백을 한 명 구해서 개네랑 같이 시위를 하겠다. 혼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귓등으로도 안 들을 테니까.

## 나. 두려워서 나서기 어려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청소년들과는 달리 사회를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묻히거나 차별상황이 절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서기가 두렵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A09 : 저는 무서워서 못 나설 것 같아요 솔직히.

A12 : 묻히는 게 무섭기도 무섭고.

A11 : 그 정도 각오는 아니라는 거죠. 그 만큼 절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그릇도 작

다고 할 수도 있겠고.

B11 : 저는 저도 바꾸고 싶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막상 보면 무기력하고 소시민적인 태도가.

#### 다. 참여의사 없음

또 다른 청소년들은 다른 일 하기도 바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B05 :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것 하기 바쁘는데.

B02 : 해도 안 바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일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들어줄 것 같은데.

#### (4) 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

청소년들은 차별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인식의 개선과 가정교육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① 인식의 개선

청소년들은 차별이 편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인의 생각이 차별적이고 편견에 갇혀 있는 것인지는 아닌지 스스로 의문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하여 일반 국민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B06 : 인식 변화. (누구의?) 전체적으로 변화해야 되겠죠. 서로 합의 하에 전체가 공평하거나 균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A06 : 그렇게 될 것 같은. 한시라도 사람들이 인식을 바꿔 서로 동등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들.

A08 : 이것도 인식의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 빈부격차. 못 산다고 저능아이고 못 배운 게 아니고 그럴 수도, 배우고 하는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돈이 많다고 무조건 지식이 많고

그렇다는 인식이 있어 갖고 문제인 것 같아요. (중략) 우리나라도 이게 잘 산다고 무조건 많이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못 산다고 무조건 배우고 아니면 잡일하고 이런 인식이 없어져야 이것도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A07 : 그건 아빠 세대로 거슬러가는 것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세대로 옛날에는 못 살아서 사무직에서 일을 해야 잘산다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모두가 화이트 칼라만 원하고 공사하는 사람. 옛날에 공부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었던 일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무직은 공부를 하고 조건이 충족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못 한 사람이 여기 갔으니까 그것에 생각이 일반화 되어서 그것에 대한 우리나라는 차별이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와 같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데, 기존에 학교에서 진행되어오던 인식개선 교육들은 어른 혹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지루함을 느끼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 내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교육을 통해 차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에게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B09 : 와 달지가 않아요. 학교도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잖아요. 학교에서도 인식 교육을 하지만 학교 안에서도 그런 차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바꿔 가면서 그런 인식 교육을 같이 그런 차별 교육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른들의 입장이나 교육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 와 달지 않고, 그러면 그 수업은 지루한 수업으로 다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오히려 저런 수업은 차라리 안 듣는 게 낫다. 안 듣고 싶다. 재미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B08 : 그 시간은 자는 시간이다. 진짜 와 달지 않아요. 앞에서 뭐라고 떠드는지. 선생님부터 고치지. 뭘 앞에서 떠들고 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잡음밖에 안 들려요. 그런 생각이.

B07 : 저도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차별을 행하는데. 그런 교육을 해서 저희의 그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게 그냥 어이가 없고.

B11 : 저도 주입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험으로 나오는 게 경험에서 느껴지는 게 더 바뀔 것 같아요.

### 가. 체험을 통한 인식개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보다는 충분한 경험을



A04 :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교육과정에서 토론 수업을 해 가지고 생각을 사고방식을 좀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 ② 가정교육의 필요성

청소년들은 차별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변화해야 하는 것 못지않게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빈부격차나 직업 등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고, 부에 대한 가치관을 강조하는 교육이 청소년들과 사회성원들로 하여금 차별의 가해자 및 피해자를 만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잘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B06 :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B05 : 부모님들부터 애를 키울 때 잘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A07 :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죠. 저는 차별 심한 사회, 사회 특성보다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개인 인성 차이라고도 봐요. 그 나라의 완전 개인 인성. 솔직히 막 사회가 이렇다 해서 제가 나쁘게 보는 것도 없고, 사회가 좋다 해서 제가 나쁘게 보는 것도 없고, 사회 나쁘다고 해서 제가 좋게 보는 것도 없거든요. 그런 것 보면 저는 진짜 제 좇대대로 마음대로 차별을 해요. 차별 할 거면. 제가 할 때는. 당할 때는 뭐. 당할 때도 솔직히 거의 수긍하는 입장이지 막. 완전 반항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완전 뛰쳐나가 버려요. 학교에서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면 학교 밖으로 나가 버리지 학교 안에서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해요. 수긍하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들어온다면. 저는 제가 차별을 가할 때도 다른 사회의 그런 것보다 솔직히 제 좇대 마음대로. 그런 것 보면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 것 보면 그냥 이건 개인 인성이지,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 제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책임을 못 맡기지. 그거는 그냥 이기적으로 내 책임 아니다 떠넘기는 것 같아요. 사회 책임이다 라고.

B10 : 고치기 힘들 것 같아요. 가정교육 때문에. 저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해서 저렇게 된 거다. 너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거의 세뇌 시키다 보니까 김여사가 나오고 갑질이 나오는 게 아닌가. 가정교육이 잘못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가정교육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저들이 알아서 생각하는 힘들 것 같아요. 게다가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돈 많은 사람들끼리 학교를 다니니까 자기들끼리 초등학생인데도 부유한 걸 막 티내잖아요. (중략) 가정환경에서 돈 많은 걸 티내니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 ③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일부 청소년들은 사회의 차별에 직접 저항하기보다는 부당하게 차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국가적 지원을 통해 차별로 인해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A04 : 그런 문제가 차별로 문제가 일어날 때 처벌 위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선생님들이 이해하고 감싸 주는 게 더 좋은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A08 : 부당을 알리기보다는 부당함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해 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 B07 : 저희 나라가 저소득층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요즘 학원비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학원 못 가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 가려면 솔직히 혼자 공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부 방 같은 거나 학원을 만들어 주거나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④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실현 가능성이나 다른 차별의 유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 B09 : 그런데 법이 약간 실현 가능한 건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중략) 그러니까 법의 내용을 보고서 그 내용이 정당. 그 차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 법인지도 살펴보고 그 법이 실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법이 실행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법이 무작정 실행되면 내용도 모르고 오히려 저희한테 그 법이 차별을 개선시키려는 법이지만 저희한테 더 차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부터 보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한 법을 통해 규제를 할 경우 다른 차별이 유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B05 : (법적인 규제) 할 거면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B10 : 법을 바꾸면 솔직히 말해서 법은 바뀌야 될 거라고 생각이예요. (중략) 그걸 못 지켰을 시에는 좀 세계, 세계 나가야지 그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니예요. 쉽게 말해서 법이 세면 당연히 지켜야 될 거고, 그냥 법이 바뀌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 ⑤ 언론의 노력

언론의 차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 청소년들은 TV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으며, 대중들은 이러한 매체에서 보이는 것을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편견, 선입견 등에 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B07 : 언론, 그러니까 저희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나 요즘에 다 스마트 폰 사용 하니까 SNS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일단 사용하는 그 언어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개선 시켜야 될 것 같아요.

B07 : 네. 왜냐하면 많이 보여지는, 사람들은 거의 보여지는 대로 거의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론에서 제공하는 캠페인이나 공익광고 등은 해당 기간에는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 영향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서 쉽게 잊힐 수 있다고 하였다.

A03 : 캠페인이요? 캠페인보다 캠프 2박 3일로 날 잡고 갔다 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A02 : 결국 매체의 영향을 받게 되면 당장 그 캠페인 같은 것 할 때는 바뀌겠지만 또 다시 막 캠페인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매체의 영향을 받아서 차별하고 그럴 텐데.

B01 : 요즘 공익 광고들이 거의 오전 아니면 저희가 다 거의 학교 있을 시간에. 아니면 10시 11시쯤에 드라마 끝나면 담배 공익 광고 이런 것들밖에 못 봐 가지고.

B05 : 그건 좀 쉽게 잊혀지는 것 같아요.

이에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개그 코너나 인기 프로그램에 이러한 내용을 접목하여

교육할 수 있다면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B06 : 요즘 학생들에게 요즘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걸 융합시켜서 만들면. 예를 들어서 개그 코너나 유행어 같은 것하다가 접목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외에 차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중에는 시위와 같은 방법도 제기되었다. 대체로 이러한 방법을 제안한 청소년들은 기득권층이 가진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중의 인식개선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즉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소수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이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A10 : 청렴하게 살고 싶어도 정말 더러운 데 손이 한번 왔다 가면 그게 정말 그걸 썩 보고 그냥 지나 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중략) 그냥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지. 해결할 방법은 정말 없어 가지고 말 그대로 체제나 이 세상을 한 번에 깨서 바꿔야 될 것 같다는데. 그것도 주변 인식 때문에 정말 힘든 것 같아요.

A11 :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세상을 깨려고 소수가 일어나서 노력을 하는데. 이 몰타기가 너무 실은 우리나라에서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런 류에서 몰타기를 하게끔 해서 사람들을 좀 더 세력을 키우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어려워요.

A12 : 그런데 사회를 바꾸려면 아예 맨 위에서부터 다 파내서 갈아엎어야지 바뀔 것 같아요.

A14 : 노력하고 노력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노력해서는 안 되고 요즘에는 자수성가 하려면 그냥 노력이 아니라 노오력을 해야만 성공을 한다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고치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자본주의 체제부터 싹 다 처음부터 갈아엎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집단도 이미 생겨나 버렸고. 이미 이렇게 존재가 된 이상 나라를 바꾸지 않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 ⑥ 참고 적응해가는 방법

A13 : 그런데 제도를 바꿔도 그 다음 바꾸면 그 제도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차선택이 나와야 되는데. 그 차선택이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걱정인 것 같아요. 바꾼다 해도, 차라리 그냥 뒤도 큰 불편함이 없으면 좀 참고 사

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A09 : 어차피 적응해야 될 거면 그렇죠. 이득이 안 되고 \*\* 말대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적응을 해 나가면서. 자기가 자기에 맞게 약간씩만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 5) 인터뷰를 마치며

두 차례의 짧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청소년들은 차별에 대해 잘 알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인터뷰에 응했었지만, 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겪은 것은 아니어도 우리 사회에 다양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신이 모르고 했던 말이나 행동이 차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놀라기도 하였다. 대체로 청소년들은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면서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지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차별이 우리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며,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어 가길 바란다고 하였다. 제한된 짧은 시간에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차별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이 차별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B10 : 저는 이것 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그냥 그런 것. 좋게 바뀌면 좋겠는데. 솔직히 그게 쉽게 되지는 않으니깐. 그냥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졌어요.

B08 : (인터뷰에) 참여하면서요? 일단은 나도 어지간히 차별을 했기는 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덜 그래야겠다.

B07 : 저희가 직접 겪은 차별이 아니어도 되게 다양한 차별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각자 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것. 빨리 차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B09 : 차별에 대해 진짜 좀 더 이렇게 파고 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차별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 할 수도 있었고. (중략) 그런 차별에 대한 외국 사례 하고 비교해 가지고 연구 같은 것도 해 보면 조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 3. 소결

청소년들은 자신이 겪은 차별 경험과 그것을 차별로 인식하는 것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차별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평소 차별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차별이 있음을 깨닫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인식하기도 하였다.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특히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차별 경험 중 하나였다. 과도한 경쟁 속에서 성적에 따라 우열을 가리고 편애하는 것 외에도 취업기회, 수상기회 또는 입시설명회 기회 등과 같이 동등한 기회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회를 잃는 것, 나아가 학교규정을 지키는 것이나 지습실 사용, 기숙사 입소 등에서까지 차등을 두는 현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분노와 무력감, 회피욕구 등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일 정도로 압담한 것이었다. 또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보호라는 이유로 규제를 당하는 것, 그리고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면서 동료들과 모여 뒷말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그 차별을 차별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차별을 차별로 인식하는 것이 불편하고,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되어버리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청소년들에게 차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무기력함을 계속 주입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청소년들은 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차별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힘들고 불편한 경험이었는지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들이, 그리고 사회의 가치들이 우리를 얼마나 차별과 불평등 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청소년들은 인식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하였고, 인식 개선방안을 찾으면서 보다 희망찬 기대를 품는 것 같았다. 청소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돌아보면서 분명 변화하고 있었다.

## 제 VI 장

---

# 전문가 의견조사

1. 의견조사 방법 및 내용
2. 의견조사 결과
3. 소결



## 제 VI 장 전문가 의견조사

본 연구는 청소년 차별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차별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FGI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차별 문제와 심각성,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의견조사 방법 및 내용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차별 현황을 파악해보고, 차별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총 15명의 학계 전문가에게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첫째, 청소년의 차별 경험 및 차별의 심각성, 둘째, 청소년 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 셋째,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의견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청소년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 및 연구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었고, 2016년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자 우편을 통해 의견조사서를 배부 및 회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의견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I-1**     전문가 의견조사 질문 영역

연구문제	세부 질문
청소년의 차별 경험에 대한 인식	1. 개인 특성(성별, 종교, 장애, 나이, 학업성적, 거주유형, 출신지역, 가족구성 형태, 가정형편, 외모, 다문화가족 여부, 학력 또는 학벌 등)에 대한 우리 사회 청소년의 차별 경험 정도

연구문제	세부 질문
	2. 개인 특성(성별, 종교, 장애, 나이, 학업성적, 거주유형, 출신지역, 가족구성 형태, 가정형편, 외모, 다문화가족 여부, 학력 또는 학벌 등)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
청소년 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	1. 현재 우리 사회가 청소년 차별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현재 우리 사회가 청소년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사회의 성원으로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선생님의 청소년기와 비교해 현재의 청소년들이 사회의 성원으로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지금의 청소년들과 비교해 미래의 청소년들이 사회의 성원으로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보장받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6. 차별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중 어떤 위치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차별 실태 조사 결과에 관한 의견	1.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이러한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노출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청소년들의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앞서 언급된 차별 외에도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차별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청소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선생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이기에’ 경험하는 차별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이기에’ 경험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우리 사회의 청소년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우리 사회의 청소년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집단이 가장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의견	청소년 차별과 관련한 기타 의견

## 2. 의견조사 결과

### 1) 청소년 차별 경험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의 정도, 그리고 차별의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차별의

영역별로 차별의 정도와 심각성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1) 우리 사회 청소년의 차별 경험 정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개인 특성(성별, 종교, 장애, 나이, 학업성적, 거주유형, 출신지역, 가족구성 형태, 가정형편, 외모, 다문화가족 여부, 학력 또는 학벌 등)에 대한 우리 사회 청소년의 차별 경험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2**      **청소년의 차별 경험에 대한 인식**

구 분	차별 경험의 정도***			차별의 심각성***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성별에 따른 차별	3	4	3.20	2	4	2.93
종교에 따른 차별	1	3	2.13	1	4	2.13
장애에 대한 차별	2	4	3.67	2	4	3.60
나이에 따른 차별(나이가 많거나 어린 것)	2	4	3.40	2	4	3.40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	3	4	3.87	3	4	3.80
거주유형/거주형태에 대한 차별*	2	4	3.14	2	4	3.07
출신지역(고향)에 따른 차별	1	4	2.57	1	4	2.57
가족구성 형태에 따른 차별**	2	4	3.33	2	4	3.40
가정형편(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	3	4	3.73	3	4	3.73
외모에 대한 차별	3	4	3.80	3	4	3.67
다문화가족(또는 인종)에 대한 차별	2	4	3.53	3	4	3.67
학력 또는 학벌에 대한 차별	3	4	3.57	2	4	3.46

\* 거주유형은 주택/아파트/빌라/건물/시설 등을 의미하며, 거주형태는 자가/전세/반전세/월세 등을 의미함.

\*\* 가족구성 형태는 이혼가정, 재혼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의미함.

\*\*\* 각 항목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최소값은 1, 최대값은 4임.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 경험 중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3.87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외모(3.80점), 가정형편(3.73점), 장애 여부(3.67점), 학력 또는 학벌(3.57점), 다문화가족 여부(3.53점)로 인한 차별 순으로 그 경험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종교(2.13점)나 출신지역(2.57점)에 따른 차별, 거주유형(3.14점)에 따른 차별,

성별(3.20점)에 따른 차별은 상대적으로 그 경험의 정도가 낮을 것으로 보았다.

개인 특성(성별, 종교, 장애, 나이, 학업성적, 거주유형, 출신지역, 가족구성형태, 가정형편, 외모, 다문화가족 여부, 학력 또는 학벌 등)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은 학업성적(3.80점), 가정형편(3.73점), 외모 및 다문화가족 여부(각 3.67점), 장애 여부(3.60점)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의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종교(2.13점)나 출신지역(2.57점), 성별(2.93점)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 2) 청소년 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해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사회청소년들이 사회의 성원으로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그것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미래의 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지 등 청소년들의 차별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표 VI-3 청소년의 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

구 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현재 우리 사회가 청소년 차별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9	3.79
현재 우리 사회가 청소년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7	3.20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사회의 성원으로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5	3.47
귀하의 청소년기와 비교해 현재의 청소년들이 사회의 성원으로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7	5.13
지금의 청소년들과 비교해 미래의 청소년들이 사회의 성원으로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보장받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4	8	6.27
차별 문제와 관련해 우리 청소년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중 어떤 위치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2	5	3.33

\* 각 문항은 0~10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가 청소년 차별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보통 이하(3.79점)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청소년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통 이하(3.20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 청소년들 스스로도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회 자체도 청소년들의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사회의 성원으로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통 이하(3.47점)로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보장받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청소년기에 비해 대체로 이 사회의 성원으로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보장받고 있다(5.13점)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미래의 청소년들은 지금의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의 성원으로 보다 더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보장받을 것(6.27점)으로 긍정적인 예측을 제시하였다.

차별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중 어떤 위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차별의 가해자이기보다는 피해자 쪽에 가깝다(3.33점)고 인식하고 있어 청소년 스스로가 차별의 가해자이기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 현상들로 인해 청소년이 차별의 피해를 받게 됨에 주목하였다.

### 3)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의견

#### (1) 청소년들이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노출되는 주요 원인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이러한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노출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노출되는 주요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이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노출되는 주요 원인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과 그로 인한 가부장적 사회적 분위기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가부장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효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나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이 빈번히 발생하며, 성인은 청소년이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받고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급속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경제수준, 외모, 학력, 학벌 등과 같은 외형적인 조건에 가치를 두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였고, 승자독식 위주의 경쟁사회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구별 짓기와 정치, 경제, 사법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해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해짐에 따라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 등 인권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정치나 권력으로부터의 인권침해에는 관심이 많은 반면,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권침해에는 무관심한 사회분위기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피해자 역시 자신이 차별을 당하고 있음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항의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가 차별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이러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음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차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 및 신고시스템이 부재한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태생적 차이에 따른 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적용되는 데 비해 한국은 차이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며, 이러한 차이로 인한 차별이 발생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을 사소한 인권침해로 치부하여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침해나 폭력 등의 범죄가 공정하게 처벌받지 않는 사회 환경은 차별을 보다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 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기보다 경쟁을 강조하고 서로 비교하여 서열이나 순위를 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청소년이 가져야 할 가치나 시민의식과 관련한 체계적인 인성교육이 부재인 것이 원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및 교사의 인식, 언어, 생각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대중매체에 나타난 외모지상주의, 장애인 차별, 남녀차별, 지역주의 등 차별사안을 일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접하면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점차 낮아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의 특성 혹은 문화로 차별을 이해해야 하는 부분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청소년기에는 차별을 위협하고 나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차별행위를 장난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친구들과의 동조행동이 많아지면서 무의도적으로 차별성을 드러낼 수도 있으므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행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 (2) 청소년들의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 개선방안

청소년들의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무엇보다도 사회제도 및 분위기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성향

으로 인해 청소년 시기에도 또래집단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로 인한 타 집단에 대한 무조건적인 텃새 문화와 따돌림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정적 현상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또한 가정 내에서부터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어린 나이일 때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도록 돕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해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 시기에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다름’에 대해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돕고,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피해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차별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양성평등교육, 인성교육, 세계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장애인 이해교육 등이 정규 인성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차별 가해 및 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면담과 상담을 제도화하여 향후 차별로 인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부모 교육이나 학교상담교육 등을 통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등의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일상생활 장면에서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사항을 사례를 통해 교육하고, 인권침해 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등 이론교육보다는 실제적인 학교생활, 가족생활, 마을생활 등 삶의 현장에서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사례 중심적인 교육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은연중에 표현되는 차별적 요소에 대한 학생 인식개선을 위해 교과서 등에 내용을 탑재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무시한 채 상위 학교로의 진학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무한 경쟁하도록 내몰고 있으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은 끊임없는 차별과 배제, 무시를 경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성적에 따른 줄 세우기가 아닌 성적 이외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학생들의 다면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차별 피해자 발생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차별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상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차별을 당한 원인에 따라 제도로만 해결할 수 없거나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사회 전반에 걸쳐 평등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법의 개정 및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인권보호 및 차별 극복을 위한 정책이 외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이 적용되는 집행현장에서는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 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법이나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책무 하에 철저히 감시하고, 다름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차별 문제 중에서도 사안의 경중과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영역에는 법률의 힘을 빌려 강제적 개선을 시도하되, 보다 장기적 관점의 해결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 등의 윤리적, 문화적 차원의 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넷째, 제도적 측면의 일부이긴 하나, 청소년들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인권을 대변하고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청소년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소년들에 대한 단순한 인권교육이나 캠페인에 머무르는 인권운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청소년들이 당면한 인권문제와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인권옹호활동을 전개하는 청소년인권단체 및 인권운동가가 필요하다. 즉, 청소년 스스로 자신과 거리가 먼 문제가 아닌, 자신의 주변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인권을 법률이 아닌 도덕 수준에서 해석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교, 마을, 청소년시설 등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 청소년인권옹호관이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입시학원 강사,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진행 강사,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인권에 대한 연 1회 이상 의무교육 실시하고 인권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들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청소년 대상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스스로가 역량을 키워 차별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차별에 대한 피해의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봉사활동이나 사회참여 확대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다섯째, 언론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및 대중매체에 대한 규제이다.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언론이나 매체를 통한 차별 금지 혹은 평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단, 언론과 대중매체가 지닌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언론과 대중매체의 차별적 언행은 대중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체가 보여주는 차별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규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섯째, 차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 및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가해자에게 맞서 해결방안을 이끌어 내는 것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시민단체가 앞장서 피해자들의 문제를 대변하고 이를 사회문제로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3)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차별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차별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을 ‘성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 존재’로 보는 시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규제이다. 즉,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차별은 1차적으로 연령이 전제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각종 법에 따른 연령의 제한이 그 요인이 될 수 있다. 법적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권리의 유보와 보호의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며, 권리의 유보 또는 제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선거 연령을 제한하거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것(정당 활동 금지, 집회참여 금지 등) 등이 있다. 청소년이 선거권을 갖는 것에 대해 청소년들의 성숙도 또는 정치적 참여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를 선거 연령 인하의 반대 요인으로 거론하긴 하나, 연령 제한은 청소년들의 의사나 의견, 청소년 정책 지원에 관한 폭넓은 지지나 지원을 방해하는 것으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의 배경 요인이 될 수 있다. 후자인 보호의 강화 측면은 연령에 따라 유해매체 접근이나 유해업소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령에 대한 차별적 요소보다는 보호의 이념이 우선되고는 있으나, 보호라는 명목으로 차별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보호 연령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의 연령 기준과 문화 관련 법들의 연령 규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연령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이라는 명목의 인권침해이다. 청소년들은 미래를 위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정, 학교 등에서 끊임없이 학습을 강요받고 있다. 과도한 학업 부담 및 대학입시로 인한 비효율적 학습 및 경쟁구도 속에서 청소년들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학교 이외의 사회적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개인의 특성과 개성을 공부 이외의 분야에서 쉽게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며, 무조건 입시를 위해 교과학습 학원을 필수로 생각하고 강요당하고 있다.

셋째, 앞서 말한 교육이라는 명목의 인권침해와 유사한 맥락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 있어서의 인권침해이다.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바로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진로관을 강요하고, 진로에 대해서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그것이 유일한 길인 것처럼 강요하는 행동, 좋은 학과·좋은 대학의 기준을 제시하고 강요하는 행위, 대학 진학 이외의 진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태도는 청소년기 동안 청소년이 자신의 특성에 대해 고민하고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며, 청소년들이 부모나 사회의 진로기대에 따라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넷째, 근로상황에서의 차별이다. 법적으로 15세 미만은 일을 할 수 없고, 18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이므로 계약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다. 일을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인에 비해 낮은 시급을 받거나, 채용이나 승진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업무내용에서도 낮은 수준의 업무 혹은 허드렛일을 맡게 되는 등 차별을 당하고 있다. 물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계약권한을 갖지 못하거나, 근로연령의 제한을 두는 것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개념으로도 이해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차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이므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을 당연시하고 진로나 미래마저 기성세대가 결정해 주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는 있다.

다섯째,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개인 성장 특징에 대한 무시가 있을 수 있다. 사춘기에 갖는 이성애에 대한 관심이나 자신을 꾸미고 싶어 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이성 관계나 외모 가꾸기 등의 현상을 지나치게 문제시하고 교정의 대상으로 보아 억제하고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이러한 특성을 보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주변 성인(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친 언어 사용이나 게임에의 몰두, 폭력성 등을 청소년의 문제라고 치부하기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라온 환경임을 인식하고 성인들의 문화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들은 학교 내 두발 및 복장 제한, 특정 종교 선택의 자유 제한 등 학교 내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기회조차 없이 무조건적으로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학교 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제도 내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어리다는 이유로 의견을 묵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 입양 시 15세 미만자의 의사표명권, 특정 종교의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의사표명권 등 청소년의 의사표명권을 분명히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 (4) ‘청소년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차별의 개선방안

청소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첫째,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차별과 권위주의적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부모나 기성세대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똑같은 기대를 갖지 않도록 부모 및 사회의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고 인간으로서 공부 이외의 부분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진로와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를 구현하는 것도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을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 공급자로서 바라보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과거의 청소년에 비해 지식이 많고 성장 과정에서 쌓은 경험이 풍부한 편인 데 비해 교육제도가 다른 정책적 차원에서는 청소년을 정책의 수요대상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립의지, 학업역량, 대인관계역량 등을 인정받거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을 정책의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혜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공급자의 입장으로 조망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들의 선거권 등 의사 전달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정치적 합의도 필요하나, 투표법 등 법 개정 전의 대안으로 현재의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같은 제안 중심의 제도보다 지자체 기반으로 실제 의사표시를 정치인들에게 전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청소년 근로와 관련하여 법률로서 동등한 근로 조건을 보장해주고, 이를 어겼을 경우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근로 청소년 대상 피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임금 및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기관을 늘리고, 청소년 상담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하거나 편리한 신고 시스템 접수 방법 등을 고안하여 청소년이 느끼는 차별 실태를 보다 친근하고 밀접하게 도와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섯째, 청소년에 적절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오늘날과 같은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정보화기기를 보조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화기기를 다루는 교육에 대해서는 공교육 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가능케 하여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정보기기 접근권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권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양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보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째, 차별방지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차별에 대해 윤리/도덕 교과 등의 교육과정에서 다룸으로써 그와 같은 차별이 부당함을 사회 전체에 인지시키고, 차별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에 대한 지속적인 면담과 상담을 통해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단순히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부모들 스스로 자녀들을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좋은 학원에 보내면 좋은 양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편적인 양육관을 개선하고, 보호 또는 교육의 명목으로 가하는 무의식적인 차별에 대해 인식하게 함으로써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다른 가정의 아이들과 비교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등의 언어습관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및 청소년시설 등에서는 수업, 프로그램 운영, 회의진행 등 공식적인 활동에서 반말이나 욕설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어법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등 청소년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 내 집회참여, 두발·복장 등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확산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5)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이기에’ 경험하는 차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이기에’ 경험하는 차별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유교적

전통을 잘못 적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유교적 전통이 잘못 적용되어 나타나는 대표적인 차별은 연령에 대한 차별과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청소년 차별 또는 청소년인권 문제는 근본적으로 청소년보호와 교육이라는 명목 속에 감춰져 있는 성인 중심주의에서 파생되는 문제이다. 즉, 청소년은 아직 어리고 보호받고 교육받아야 하는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에 책임감 있는 성인들이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는 데서 파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장유유서의 개념을 단순하게 서열로 인식하고 서열이 낮은 사람에게 윗사람의 생각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교사의 말이 틀렸더라도 학생들은 따라야 한다, 선생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위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예를 갖추지 않고 성인이기 때문에 어린 사람에게 무조건 반말을 해도 된다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무차별적으로 옥박을 지르는 등의 방식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부모-자녀 간 종속관계가 매우 강력한 문화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절대복종 등의 원인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시스템 부족, 무단 장기결석에 대한 문제인식 및 예방시스템 부족 등 불우한 환경 등에 기인한 청소년 차별 현상은 부모가 도와주지 못하기에 차별받는 현상일 수 있으므로 학교 차원이나 사회복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차별은 성차별이라 할 수 있다. 유교에서의 남존여비사상에 의한 남녀 차별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성차별이 완화되고 성역할 고정관념도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은 거의 없고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성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매체나 사회에서 보이는 역할 모델은 남성은 일하는 사람, 여성은 여전히 가정을 책임지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가족유형이 다양화되고 이에 따른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가정의 자녀, 한부모가정의 자녀의 경우 공공 서류나 책임관계 확인 시 부의 존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편이다.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문제도 차별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은 우리가 예전부터 다문화사회였음을 강조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간 우리가 배워온 단일민족이라는 가치는 다른 민족

혹은 다른 인종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차별하는 근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서양권 국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기인한 차별에 대한 양극화된 이미지 고착화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특이한 차별 문화로, 이러한 차별적 인식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의도적/비의도적으로 차별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장애 청소년들의 경우 장애에 따른 사회적 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고 사회적 진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차별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 사회의 청소년은 ‘공부하고, 대학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세대로 정의되는 것, 그리고 무조건 학업성적에 따라 서열화하는 경쟁문화 역시 한국 사회 청소년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차별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다른 나라(특히 선진국)와 비교하여 청소년기에 다양한 자기개발 경험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한 선택의 기회 부족도 우리나라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과는 남성 우위, 문과는 여성 우위 등 계열, 학과, 전공 선택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두발 및 복장의 제한, 학생 소지품 검사, 학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여학생의 임신·출산 불허(또는 임신한 여학생의 경우 학업 유지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일) 등과 같은 규정 및 규정위반에 대한 간접적 체벌이나 언어폭력 등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유형의 차별이자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외모지상주의에 길들여진 우리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은 날씬하고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는 이유로 차별적 경험을 특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차별이라 할 수 있다.

#### (6)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이기에’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이기에’ 경험하는 차별의 원인 중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유교적 전통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였고, 그 중 유교적 전통에 의한 장유유서, 남존여비의 문화가 잘못 적용되어 나타나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별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유교적 문화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유교적 전통에 의한 장유유서의 문화와 태도를 현대 사회에 적합하게 해석하여 수용하여 예절의 문화로 전환 또는 승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한국문화 특유의 왜곡된 정서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교육

및 상담을 제도화하는 등 법이나 정책의 개선을 통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가정과 학교 전반에 만연한 가부장적이고 수직구조적인 인간관계는 보다 수평적인 인간관계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유유서라는 개념이 단순한 서열을 지정하고 상명하복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등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각자의 위치에 맞게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 맞게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야 하며 성인, 특히 교사나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성인 중심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용의 마음을 교육하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지지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단순히 연령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식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이고, 정부의 가족친화정책을 확대하여 육아와 가사는 여성과 남성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여건 차이나 지역불균형 등 개인의 특성으로 인한 차별이 아닌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또는 저개발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또는 특화된 지원방식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에게 맞는 적절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추세를 고려할 때 다문화 문제와 학교 및 지역복지 차원에서 장기결석 청소년이나 가정폭력 피해가정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해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7) 청소년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를 통한 사회구성원의 인식변화(41.7%)와 차별 관련 법령(법률과 명령)을 제, 개정하는 것(25.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차별시정단체의 역할(16.7%), 시민단체와 인권단체의 역할(4.2%), 기타(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4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력(중복응답)**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차별 관련 법령 제, 개정	6	25.0
대중매체나 교육을 통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10	41.7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역할	1	4.2
차별시정단체의 역할	4	16.7
기타	3	12.5
합계	24	100.0

(8)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집단

우리 사회의 청소년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정부(45.0%)가 가장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기관(30.0%), 언론기관(15.0%), 기타(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5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집단(중복응답)**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정부	9	45.0
언론기관	3	15.0
교육기관	6	30.0
기타	2	10.0
합계	20	100.0

### 3. 소결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청소년이라는 시기를 모두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별, 그리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심각해지는 경쟁적 사회분위기에 따른 학력과 학벌, 그리고 성적에 따른 차별 등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규제하기에 어려운 뿌리 깊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소년 차별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사회문화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개선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교육기관, 일반시민 단체, 개인 등 어느 한 곳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안에서 동시다발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청소년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까지 이어지므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차별이 청소년이라는 대상과 영역 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차별의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서,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수준에서의 의식교육이 필요하며, 차별에 대한 정의와 인식이 부족하여 차별의 행위 자체를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분명 조금 더 사회의 성원으로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보장받고 있으며, 지금의 청소년들에 비해 미래의 청소년들은 좀 더 나은 권리와 대우를 보장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차별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년 스스로의 문제의식도 별로 높지 않은 편이고, 우리 사회의 차별 개선 노력 역시 높지 않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미래 청소년들이 경험할 정당한 권리와 대우는 우리의 핑크빛 기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제 VII 장



## 정책제언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2. 정책제언



## 제 VII 장 정책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 차별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차별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차별에 대한 인식,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 가해 및 피해, 목격의 영역과 방법, 빈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차별 정도에 대한 생각들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이 차별을 보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 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차별의 가해 및 피해 경험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차별상황에 대해 인내하거나 무반응, 무관심 등의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차별상황에 대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사람이 가족이나 친척, 학교 관계자 등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어 차별 피해에 대한 해결역량이 부족함을 볼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고 성인의 보호와 규제 사이에서, 그리고 학업성적, 학력, 학벌 등 우리나라 청소년으로서 달성해야 하는 끝없는 경쟁의 분위기 속에서 미성숙한 존재로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과거에 비해 그들의 권리가 좀 더 보장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청소년들이 차별 피해를 당했을 때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기관도,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성인도 부재한 현실은 청소년들의 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법률상, 정책상 지원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 1) 법률상의 제한점

청소년 차별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차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도는 물론, 보다 작게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도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차별은 인권과 관련한 법률이나 제도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으며, 청소년 차별과 관련한 내용은 차별과 관련된 일부 법률 및 제도 중에서도 매우 일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법무부에서 성별, 장애, 인종 등의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차별금지 대상에 동성애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에 밀려 국회에서 논의조차하지 못한 채 국회 회기만으로 폐기되었으며, 이후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발의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입법이 철회된 상태이다.

차별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그리고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그리고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과 같이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 중에는 ‘청소년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만 되어 있을 뿐 청소년들이 차별을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성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될 경우 구제책이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과는 달리 청소년 관련법에서는 청소년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선언적 규정만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선이 요구된다.

## 2) 제도상의 제한점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권상담전화나 인권전담기구의 경우 청소년의 문제를 전문적인 영역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데다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청소년들이 차별의 문제에 당면하였을 경우에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차별 문제에 관해 상담을 받기에는 다소 접근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활용하

여 인권침해 및 차별 문제에 대한 상담 및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이러한 제도 역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학생 수에 비해 학생인권옹호관의 수가 다소 적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제도 자체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와 같이 학교 관련 모든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대상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차별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상담 및 구제방안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서울시와 같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전문인권보호관제도를 운영하거나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서울시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근거하여 0세~19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청소년기본법에 포함되는 후기 청소년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면담, 그리고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를 통해 도출한 청소년 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2. 정책제언

### 1) 법률 관련 개선방안

#### (1) ‘복종’ 및 ‘순종’ 문화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 ① 친권자에 대한 복종 및 순종문화 개선

민법상 친권자에 대한 복종의무는 개정을 반복하면서 법률로 규정되었다가 2005년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 법률상 복종의 의무는 삭제되었으나 청소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법률은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친권자 및 교사에 대한 복종 및 순종 문화는 청소년의 선택의 자유 자체에 대한 인식결여를 가져온 듯하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 관련 법률은 청소년(아동)의 거취 여부를 청소년의 의사반영 없이 결정하고 있다. 청소년(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안의 경우, 최소한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자 및 보호자와의 동거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② 교사에 대한 복종 및 순종 문화 개선

학교에서는 교칙위반으로 인한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교육적 처분의 일환으로 징계가 가능하다. 교칙위반의 대부분은 교복, 실내화, 색조화장 등의 학교공동체 소속이라는 표지의 훼손과 학생 신분이라는 지위비행이 문제가 되는데, ‘교사지시 불이행’은 기존의 교칙위반과는 다른 맥락의 기준이다. 이것은 친권자에 대한 복종을 명시적으로 삭제하는 법률 개정과는 반대되는 명시적 규범화의 맥락으로 청소년에게 복종과 순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정당한’ 교사지시에 따른 불이행이었지만 정당한 교사지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일방이 하며 구제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학생이라는 신분은 본인이 납득할 만한 정당한 지시를 받았는지와 관련 없이 복종 및 순종을 강제하는 장치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불이행 시 벌점을 부과하고 선도위원회나 자치법정을 통한 징계(교육적 처분)를 받고 있다. 교사지시 불이행에 따른 벌점부과와 징계 시스템에는 교사의 지시가 정당했는지에 관한 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의 판단 기준은 ‘특정 행위의 지시’에 대한 복종 및 순종의 여부가 아니라, 다른 대안을 선택할 기회가 학생에게 주어졌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가 생각하는 최선이 학생에게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음이 고려되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2) 교육 및 복지정책에서 나타나는 국친 사상의 과적용 문제

### ① 학생 신분으로 인한 차별적 권리침해 문제

학생이라는 신분에 의해서 ‘비학생 및 성인’과 차별적으로 권리침해를 받게 되는 유형은 교육 및 복지현장에서 많이 나타난다. 교육 및 복지적 차원의 개입 시 국가는 국친 사상의 과도한 적용을 하게 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친권자 및 스승에 대한 ‘복종 및 순종’ 문화와도 직결된다. 국가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개입한다는 사상은 우리 문화와 결부되어 청소년에게 ‘복종 및 순종’을 묵시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2007년 12월 14일 신설하였다. 그러나 헌법의 기본권과 대표적인 국제인권조약인 ‘1959년 유엔아동권리선언’이나 ‘1989년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경우, 권리향유의 주체가 아니라 청소년(아동)을 권리행사의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이 적용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하고 인류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협약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에게는 ‘교도소’의 ‘수형자’만큼이나 권리행사의 주체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자유’에 있어서는 교도소 수형자만큼도 선택의 폭이 없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원의 인건비가 전부 국가예산으로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가 강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의 선택이 불가능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② 권리행사 방해 시 구제책 부재 문제

전반적으로 법적 권리행사의 주체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구제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 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청소년은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았을 경우나 권리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기타 적절한 구조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법원 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소관당국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자유박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최근 소년법은 소년분류심사원의 미결구금에 대해서 국선보조인을 통한 인권보장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시, 성인 사건과는 달리 보호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집행력을 가진다.

### ③ 학생자치권의 침해문제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서 보장되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 중 하나로 보장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인 자치의 원칙에 의한 학생자치권이 문제된다. 학생도 학교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는 사적자치권이 있다.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죄와 형벌의 종류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하게 되어 있으며, 법률은 대의민주주의 하의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통과된다.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법률을 통과시키게 된다. 사형부터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 자격정지, 자격상실, 벌금형 등등 개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국가의 개입은 반드시 국민의 손을 대신하는 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에 대해서는 자치권한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선도 조치들이나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조치들은 학생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역시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성인의 손으로 만들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성인이 집행하고 학생들은 집행의 대상이 될 뿐이다. 단순한 규범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교육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헌법은 물론이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현재 학생신분에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 ④ 형사책임연령(만 14세)과 실질적 구금하한연령(만 10세)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인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입이 시작되는 연령은 만 10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하한연령이 만 10세라는 점이다. 소년원 학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교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구금시설이다.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만 10세도 소년원 송치를 통한 구금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은 본질적으로 요보호성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항고를 하여도 바로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불복을 하여도 구금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자유권침해에 대한 불복 수단의 차별이다.

### (3) 청소년을 국가유지의 수단으로만 규정한 문제의 개선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청소년 개인적 차원에서 선언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법이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법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소속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람으로 육성하는 것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소속감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특히 ‘국가공동체 의식에 대한 자질 양산’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것과 분명하게 다른 이념이다.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국가주의와 사회주의’를 수단으로 제기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상의 기본이념은 자유민주의 국가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청소년 개인의 차원에서 다시 선언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한 수단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2) 정책 관련 개선방안

### (1)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 가해 청소년들의 경우 대체로 타인에 대한 가해 경험이 1년에 4회 이하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 차별 가해자의 경우 초·중학생에 비해 차별을 가하는 빈도가 높은 것에 비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는 청소년들이 가해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 가해 행동을 하면서도 심각한 차별이 아닌 경우에 그것이 차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심층면접에서도 청소년들은 차별이라는 것이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인터뷰를 하는 동안 자신이 경험한 차별 경험도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할 만큼 일상 속에서의 차별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차별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해 둔감해진 채 차별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의 피해자로, 그리고 또 다른 차별의 가해자로 살아가는 것을 적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의 차별 경험은 단순히 일개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피해자인 청소년이 차별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차별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3.5배 이상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차별의 가해와 피해가 다른 폭력의 가해 및 피해와 마찬가지로 순환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차별 피해를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니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청소년들과 청소년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청소년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을 두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노력이나 정부의 노력과 같이 일부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교육기관, 일반시민단체, 언론, 개인 등이 우리 사회의 차별 실태를 직시하고 건강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 내에서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인식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동시다발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언론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오랜 유교적 전통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차별을 가한 대상이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 함께 생활하고, 성장발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선생님, 사회복지사, 상담선생님 등 학교 관계자와 가족 및 친척이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는 교육의 대상을 단순히 아동청소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등 청소년 관련 성인들,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을 볼 때 일시적인 캠페인보다는 청소년과 부모, 학교 관계자가 함께 모여 체험활동, 봉사활동, 역할극 등의 방법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을 기본적으로 함양하고 차별의 문제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 (2) 교육과정 내 인성 및 인권교육의 기본 핵심가치 및 교수방법에 대한 재고 필요

교육부에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등 10개 대주제로 범주화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였으나 인권교육이 아직 정식 교육과정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교육부는 입시와 성적 중심 교육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바른 인성을 지닌 학생이 주체가 되는 건강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2015년에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교육과정별, 발달단계에 따른 체계적 인성교육 지원방안 및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가 부족하였다는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단계별로 필요한 핵심가치와 덕목을 설정하고 교육과정별로 중점사항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인성교육기본법 내 인성의 핵심가치와 덕목이 예, 효, 정직, 배려, 책임, 협동 등에 맞추어져 있고, 인권은 이러한 가치를 아우르는 기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의 운영이 생명존중과 안전교육(초등), 행복교육, 봉사 및 진로교육(중등), 진로설계, 사명교육(고등)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어 이러한 교육의 내용이 인성의 핵심가치와 덕목을 전달하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의문이 생긴다. 청소년에게 인간에 대한 존중과 권리, 그리고 나아가 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인성교육에 있어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청소년인권옹호관 제도의 도입

앞서 제도상의 제한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차별 문제를 경험하였을 때 도움을 요청할 만한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지자체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청소년들은 차별 문제를 경험한 경우 학교 관계자와 같은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처를 하는 데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리고 대체로 친구나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며 분풀이를 하는 정도로 대처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차별 경험에 대해 중·고등학생보다도 초등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이 보다 어린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해 알리고 대처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해상황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서 무시나 방관하는 성인의 태도를 반복적으로 경험함에 따라 차별에의 대응에 무기력해지고 소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태도는 차별에 대한 시정 의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결국 우리 사회가 차별에 대해 둔감해지고 부당함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어린 연령에서부터 차별상황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차별에 대한 시정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권상담전화 1331과 유사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피해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권상담전화 및 청소년인권전담기구를 마련하거나 학생인권센터를 청소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센터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등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을 위한 인권옹호관을 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생인권센터 내에 학생인권옹호관이 배치되어 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전문가들은 모두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청소년인권옹호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인 관점에서는 지역사회 내 학교나 청소년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교사나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들을 청소년인권옹호관으로 교육시켜 최소 1기관당 1명 이상의 청소년인권옹호관을 두고 지자체 혹은 교육청 등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전문 인권보호관 제도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생인권센터 내 청소년인권옹호관 제도를 벤치마킹하되,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을 아우르는 연령(최소 0~만 24세)의 학생 및 학교 밖 아동청소년을 모두 포함하고, 인권침해 및 권리 구제의 영역을,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교사 및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등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청소년인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다. 인권옹호관제도를 도입할 경우 청소년인권옹호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법령 규정을 두어 구체적 활동지침을 제공하고,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경우 특히 청소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성인이므로 이들의 청소년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 (4) 차별 피해자 지원제도 마련

청소년의 차별 피해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청소년인권옹호관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은 가해 및 피해 청소년들이 차별행위를 인식하고 가해자 처벌 시 혹은 피해자 지원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충분한 공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차별 가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충분한 반성하도록 돕고, 피해자에게는 심리치유와 상담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회복적 정의를 도입하여 조정을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가해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통해 치유를 함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가해행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또 다른 차별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청소년인권옹호관이 차별의 가해와 피해 사례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이외에 학교 및 청소년시설의 상담실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상담 및 관계개선을 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및 청소년시설에서는

상당사와 청소년인권옹호관이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학교나 청소년시설 내 차별 피해사례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 청소년의 의견청취 및 참여기회 확대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학생인권문제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등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편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들조차 두발 및 복장 자율화 또는 체벌금지 조항 정도만 인지하고 있을 뿐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 현장에서 역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 통제의 어려움 등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교사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그간의 학교 규칙으로부터 벗어나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교사는 학생을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구성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규칙이 무너지고 어려운 혼란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옹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선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형식적인 건의함이나 학생회 임원만이 참석할 수 있는 자치회의 등의 절차에서 탈피하여 학생 한명 한명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이를 학교 운영에 반영하려는 학교의 노력을 통해 학생들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학교 현장과 지자체는 단순히 학교인권조례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에 초점을 두기보다 학생들과 교사 모두에 대해 충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학생들이 학교라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타인과 자신의 권리를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참 고 문 헌

- 강병철, 김지혜 (2006).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강지명 (2004). **비행소년에 대한 소년사법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지명 (2013).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담론**, 7(2), 168-192.
- 권영성 (2010). **헌법학원론**. 경기: 법문사.
-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동춘, 한홍구, 조효제 (2006).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인권을 위한 강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 김두상, 박상식 (2016). 형사처벌 대상자의 연령인하와 치유사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4(2), 1-20.
- 김성돈, 강지명 (2012).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 제도와의 관계-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원식 (2013). 한국사회 양극화와 다차원적 정의. **사회와 철학**, 26, 223-250.
- 김원식 (2015). **배제, 무시, 몰화: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경기: 사월의 책.
- 김지혜 (2014).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정책과제-청소년 권리옹호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민무숙, 이수연, 박영도, 이준일 (2004). **국민통합을 위한 차별해소 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박수미, 정기선, 김혜숙, 박건 (2004).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박찬걸 (2013).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와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22, 191-222.
- 배화옥, 김성희 (2004).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와 관련요인. **한국장애인복지학**, 1, 61-83.
- 서울특별시 (2014.9.2). ‘서울시, 18세까지 어린이·청소년 인권강화 3년 플랜’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 서정아, 권해수, 정찬석 (2006).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송인한, 권세원,정은혜 (2011).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99-223.
- 오선영 (2016). **아동의 인권침해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권상황인식과 인권감수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혜경, 김정애 (2000).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서울: 학지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 이덕인 (2012).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23(1), 5-40
- 이문수 (2012).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honneth와 Fraser의 인정이론을 통해 본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3), 23-45.
- 이정규 (2003).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근원과 발달**. 서울: 집문당.
- 이준일 (2012). 차별, 소수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학연구**, 18(2), 177-222.
- 장영민 (2004).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진수 (편.),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개선방안[II]**(pp.132-226).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영순, 전종설 (2010).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분석: 부모방임, 또래관계, 차별경험, 우울, 가족과 문화. **한국가족학회**, 22(3), 73-96.

- 정재준 (2012).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문제를 위한 제언. *형사법연구*, 24(1), 25-61.
- 지그문트 바우만(저)/정일준(역) (2008). *쓰레기가 되는 삶들*. 서울: 새물결.
- 조순경, 김선옥, 정경아, 정형옥, 한승희 (2002). *간접차별 판단 기준을 위한 연구*. 노동부.
- 조영달 (2012). *고통의 시대 희망의 교육*. 서울: 드림피그.
- 주호노 (2010).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법조* 59(12), 41-76
- 최현주, 박선영 (2015). 청소년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역할. *청소년복지연구*, 17(2), 81-105.
- 한규석(2013).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홍순혜, 김혜래, 이혜원, 변귀연, 정재훈, 이상희 (2007).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황옥경(2011). 차별에 대한 아동의 인식. *아동과 권리*, 15(3), 313-335.
- Abercrombie, N., & B. S. Turner. (1978). The dominant ideology thesi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29(2), 149-170.
- Abrams, D., & M. A. Hogg. (1988). Comments on the motivational status of self-esteem in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discrimin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4), 317-334.
- Alwin, D. F., G. Gornev, & L. Khakhulina. (1995). Comparative referential structures, system legitimacy, and justice sentiment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In J. R. Kluegel, D. S. Mason, & B. Wegener (Ed.), *Social justice and political change: Public opinion in capitalist and post-communist states* (pp. 109-130). New York: A. de Gruyter.
- Ardevini-Brooker, J., & S. Caringella-Macdonald. (2002). Media attributions of blame and sympathy in ten rape cases. *Justice Professional*, 15(1), 3-18.
- Bauer, Y. (2001). *Rethinking the holocaus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Becker, H. (1973). *Outsiders*. New York: Free Press.
- Bhorat, H., P. Naidoo, & C. van der Westhuizen. (2006). *Shifts in non-income*

- welfare in South Africa, 1993-2004*. DPRU Working Paper 06/108.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230.
- Choi, J. W. (2013). Public perceptions of income inequality and popular distributive justice sentiment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3(3), 42-58.
- Cooley, C. H. (192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Crosby, F. (1984). The denial of personal discrimin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7, 371-386.
- Della Fave, L. R. (1980). The meek shall not inherit the earth: Self-evaluation and the legitimacy of stra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6), 955-71.
- Della Fave, L. R. (1986). Toward an Explication of the Legitimation Process. *Social Forces*, 65(2), 476-500.
- DeParle, J. (2004). *American dream: Three women, ten kids, and a nation's drive to end welfare*. New York: Viking Press.
- Du Bois, W. E. B. (1969). *The soul of black folk*.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Fein, S., & Spencer, S. J. (1997). Prejudice as self-image maintenance: Affirming the self through derogating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1), 31-44.
- Fraser, Nancy. (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 Philosophical Exchange*. London: Verso
- Friedman, R., M. Kane, & D. B. Cornfield. (1998). Social support and career optimism: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network groups among black managers. *Human Relations*, 51(9), 1155-1177.
- Gilman, M. E. (2014). The return of the welfare queen. *American University Journal of Gender, Social Policy & the Law*, 22(2), 247-279.
- Gradin, C. (2013). Race, poverty and deprivation in south africa. *Journal of*

*African Economies*, 22(2):187–238.

Honneth, A. (1995).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Cambridge: The MIT Press.

Honneth, A. (2008). *Reification: A new look at an old ide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unter, R. (1992). *Indirect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Annandale: Federation Press.

Ibarra, H. (1995). Race, opportunity, and diversity of social circles in managerial network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3), 673–703.

Jost, J. T., & M. R. Banaji.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1), 1–27.

Jost, J. T., M. R. Banaji, & B. A. Nosek. (2004). A decade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Accumulated evidence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bolstering of the status quo. *Political Psychology*, 25(6), 881–919.

Junger–Tas, J., & S. H. Decker. (2006).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juvenile justice*. New York, Dordrecht: Springer–Verlag.

Klasen, S. (2000). Measuring poverty and deprivation in south afric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6(1), 33–58.

Kluegel, J. R., & M. Miyano. (1995). Justice beliefs and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in advanced capitalism. In J. R. Kluegel, D. S. Mason, & B. Wegener (Ed.), *Social justice and political change: Public opinion in capitalist and post–communist states* (pp.81–108). New York: A. de Gruyter.

Kluegel, J. R., G. Csepele, T. Kolosi, A. Orkeny, & M. Nemenyi. (1995). Accounting for the rich and the poor: Existential justice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J. R. Kluegel, D. S. Mason, & B. Wegener (Ed.), *Social justice and political change: Public opinion in capitalist and post–communist states* (pp.179–208). New York: A. de Gruyter.

Lane, R. E. (1959). The fear of equal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 53(1), 35–51.
- Lane, R. E. (1986). Market justice, political just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2), 383–402.
- Law Reform Commission of Hong Kong. (2000). *Report on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hong kong*. Hong Kong: Law Reform Commission.
- Lerner, M. J. (1977). The justice motive: Some hypotheses as to its origins and forms. *Journal of Personality*, 45(1), 1–52.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Plenum Press.
- Levin, Jack & W. C. Levin. (1982). *The Functions of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New York: Harper & Row.
- Lonsway, K. A., & L. F. Fitzgerald.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2), 133–164.
- McPherson, M., & L. Smith–Lovin. (1987). Homophily in voluntary organizations: Status distance and the composition of face-to-face group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3), 370–379.
- McPherson, M., L. Smith–Lovin, & J. M. Cook. (2001). Birds of a feather: Homophily in social network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415–444.
- Mead, G. H. (1913). The social self. *Journal of Philosophy, Psychology and Scientific Methods*, 10(14), 374–380.
- Mead, G. H. (1962).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ad, G. H. (1982). *The individual and the social self*.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rton, R. K. (194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Antioch Review*, 8(2), 193–210.
- Moody, J. (2001). Race, school integration, and friendship segregation in americ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3), 679–716.
- Moor, A. (2010). She dresses to attract, he perceives seduction: A gender gap in attribution of intent to women's revealing style of dress and its relation

- to blaming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Women's Studies*, 11(4), 115–127.
- Paris, D. C. (1997). School reform: Too much talk, too little action. *Forum for Applied Research and Public Policy*, 12(3), 46–56.
- Penal Reform International. (2013).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Justice for Children Briefing No. 4). London: Penal Reform International.
- Rubin, M., & M. Hewstone. (1998). Social identity theory's self-esteem hypothesis: A review and some suggestions for clarif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1), 40–62.
- Rubin, M., & M. Hewstone. (2004). Social identity, system justification, and social dominance: Commentary on reicher, jost et al., and sidanius et al. *Political Psychology*, 25(6), 823–844.
- Schmitt, M. T., N. R. Branscombe, T. Postmes, & A. Garcia. (2014). The Consequenc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0(4), 921–948.
- Scottish Law Commission. (2001). *Discussion paper on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Discussion Paper 115). Edinburgh: Stationery Office.
- Sidanius, J., & F. Pratto. (1999). *Social dominance: An intergroup theory of social hierarchy and oppre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danius, J., F. Pratto, C. V. Laar, & S. Levin. (2004). Social dominance theory: Its agenda and method. *Political Psychology*, 25(6), 845–880.
- Smith, J. A., M. McPherson, & L. Smith-Lovin. (2014). Social distance in the united states: Sex, race, religion, age, and education homophily among confidants, 1985 to 2004.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9(3), 432–456.
- Suarez, E., & T. M. Gadalla. (2010). Stop blaming the Victim: A Meta-analysis on rape myth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11), 2010–2035.
- Tajfel, H. (1979). Individuals and groups in social psychology.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2), 183–190.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 Psychology*, 33(1), 1-39.
- Thomas, D., & J. Gabarro. (1999). *Breaking through: The making of minority executives in corporate america*. Boston: Harvard Business Press.
- Thomas, W. I., & D. S. Thomas. (1928). *The child in America: Behavior problems and programs*. New York: A. A. Knopf.
- Thompson, Simon. (2006). *The Political theory of recognition: A critical introduction*. Cambridge: Polity Press.
- Turner, J. C. (1975). Social comparison and social identity: Some prospects for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1), 5-34.
- 師岡 康子 (モロオカ ヤスコ), “テレビ規制と青少年保護を考える 「放送と青少年に関する委員会」の見解によせて”, 法学セミナー, 日本評論社, 2001. 3.
- 右崎 正博 (ウサキ マサヒロ), 青少年保護条例の過去・現在・未来 (特集 青少年保護と表現の自由 青少年法案とその周辺) 東京都条例改正を中心に, 法律時報76巻9号, 日本評論社, 2004. 8.
- 경기도교육청 경기학생인권의광장 홈페이지(2016).  
[https://edup.goe.go.kr/views/cms/shr/g1\\_002/g2\\_010.jsp](https://edup.goe.go.kr/views/cms/shr/g1_002/g2_010.jsp)에서 2016년 10월 8일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2016).  
[http://www.humanrights.go.kr/01\\_sub/body01.jsp](http://www.humanrights.go.kr/01_sub/body01.jsp)에서 2016년 10월 5일 인출
- 국립국어원 (2016).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서 2016년 7월 7일 인출.
- 국민일보(2016.3.15.). “빌라 산다고 아이들이 무시 당해”... 엄마들 분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48302&code=61121111&cp=du>에서 2016년 9월 15일 인출.
- 네이버 국어사전(2016).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6583200>에서 2016년 10월 1일 인출.
- 네이버 지식백과(2016).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6407&cid=40942&categoryId=31433>에서 2016년 10월 2일 인출.

다음백과사전(2016).

<http://enc.daum.net/encyclopedia/view/v050ma731a2>에서 2016년 10월 5일  
인출.

매일신문(2015.10.23.). 형사책임 하한 연령 韓·日 14세...영국은 10세.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9216&yy=](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9216&yy=2015)  
2015에서 2016년 10월 5일 인출.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2016).

<http://www.ohrc.on.ca/ko/learning/%EC%9D%B8%EA%B6%8C%EB%B2%95%EC%97%90-%EB%8C%80%ED%95%98%EC%97%AC/%EC%B0%A8%EB%B3%84%EC%9D%B4%EB%9E%80-%EB%AC%B4%EC%97%87%EC%9D%B8%EA%B0%80>에서 2016년 10월 1일 인출.

중앙일보(2012.1.3.). 학교폭력 학생부에 기록 남기고 형사처벌 연령 14세→12세 추진.

<http://news.joins.com/article/7044398>에서 2016년 10월 5일 인출.

한국일보(2015.8.20.). 일상으로 파고든 차별... 너도나도 벌레가 되었다.

<http://www.hankookilbo.com/v/6865cd1fec084f81bdc22637e99749d1>에서  
2016년 9월 20일 인출.

헌재결(1993.5.13). 92헌마80, 판례집5-1, 365-385.

헌재결(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 병합, 판례집12-1, 456.

헌재결(1996.2.29). 94헌마13, 판례집8-1, 126.





# 부 록



# 부 록

1. 조사안내문 및 동의서(초등학생용, 보호자용, 중고등학생용)
2. 설문지(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3. FGI 참여 동의서(청소년용)

#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 조사 안내문

(초등학생)

연구과제명 : 청소년 차별 실태 조사

연구책임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안내문은 이번 조사가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실시되는지를 학생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고 학생이 조사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조사원이나 담임선생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 1. 이 조사를 왜 하나요?

- 이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차별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가 끝나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그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것입니다.

### 2. 누가 이 조사에 참여하나요?

- 이 조사에는 전국의 초등학생 3,000명, 중학생 3,000명, 고등학생 3,000명 등 총 9,000명이 참여합니다.

### 3. 어떻게 조사에 참여하나요?

- 학생이 이 안내문을 다 읽고 나서 조사에 참여하고 싶으면, 설문지 안에 있는 조사 동의서를 작성한 뒤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 설문지에 다 응답하였으면, 조사 동의서가 포함된 설문지를 조사원에게 제출하면 조사가 끝납니다.

#### 4. 조사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인데, 사람에 따라서 더 빨리 또는 늦게 끝날 수 있습니다.

#### 5.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 있나요?

- 학생이 이 조사를 하고 싶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조사에 참여한 뒤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를 하고 싶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두고 싶으면 조사원이나 담임선생님께 알려 주십시오.
-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두었다고 해서 선생님께 꾸중을 듣거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 6. 조사에 참여할 경우 위험한 내용은 없나요?

- 이 조사에는 학생에게 위험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또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 조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학생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7. 조사에 참여하면 제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 학생이 이 조사에 참여하면 간단한 선물을 받는 것 이외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 그렇지만 학생이 조사를 통해 알려준 정보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8. 제가 응답한 내용이 남에게 알려지지는 않나요?

- 조사에 참여한 학생이 설문지에 자기 이름을 적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 또한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명단과 학교명은 법률에 따라 연구진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9. 조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부탁하여 아래의 연락처로 질문하면 됩니다.

－ 연구책임자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44-415-○○○○

－ 조사담당자 :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02-3702-○○○○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조사 동의서**  
(초등학생)

---

연구과제명 : 청소년 차별 실태 조사

연구책임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나는 이 조사의 안내문을 모두 읽었습니다.
2. 이 조사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조사원이나 선생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3.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두어도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 명 : \_\_\_\_\_(서명)

서명일 : 2016년 \_\_\_\_\_월 \_\_\_\_\_일

\* '서명' 란에는 사인을 하거나 이름 끝 글자를 적어주세요

#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 조사 안내문

(보호자용)

연구과제명 : 청소년 차별 실태 조사

연구책임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안내문은 이번 조사가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실시되는지를 학생의 보호자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고 학생이 조사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 1. 이 조사를 왜 하나요?

- 이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가 끝나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그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 2. 누가 이 조사에 참여하나요?

- 이 조사에는 전국의 초등학교생 3,000명, 중학생 3,000명, 고등학교생 3,000명 등 총 9,000명이 참여합니다.

### 3. 어떻게 조사에 참여하나요?

- 먼저 이 안내문을 다 읽어보시고 학생이 조사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 학생이 조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조사 동의서를 작성 후, 학생을 통해 학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4. 조사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 조사는 학생이 조사동의서를 선생님께 제출한 뒤, 5월 초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인데, 사람에 따라서 더 빨리 또는 늦게 끝날 수 있습니다.

#### 5.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 있나요?

- 학생이 이 조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보호자님께서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조사에 참여한 뒤에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두었다고 해서 선생님께 꾸중을 듣거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 6. 조사에 참여할 경우 위험한 내용은 없나요?

- 이 조사에는 학생에게 위험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또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 조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학생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7. 조사에 참여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 학생이 이 조사에 참여하면 간단한 선물을 받는 것 이외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 그렇지만 학생이 조사를 통해 알려준 정보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8. 응답한 내용이 남에게 알려지지는 않나요?

- 조사에 참여한 학생이 설문지에 자기 이름을 적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 또한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명단과 학교명은 법률에 따라 연구진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9. 조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 연구책임자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44-415-○○○○

－ 조사담당자 :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02-3702-○○○○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조사 동의서**  
 (보호자용)

연구과제명 : 청소년 차별 실태 조사

연구책임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나는 이 조사의 안내문을 모두 읽었습니다.
2. 나 또는 학생이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두어도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학생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 명 : \_\_\_\_\_(서명)

학생과의 관계 : \_\_\_\_\_

서명일 : 2016년 \_\_\_\_월 \_\_\_\_일

\* '서명' 란에는 사인을 하거나 이름 끝 글자를 적어주세요

학생 학교명	
학생 학년/학급	( )학년 ( )반
학생 성명	

#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 조사 안내문

(중·고등학생)

연구과제명 : 청소년 차별 실태 조사

연구책임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안내문은 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이 이 조사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안내문의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선생님 또는 “9. 조사관련 문의”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 이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차별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사의 결과는 통계분석 과정을 거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로 발간되며,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학술 연구와 정책 개발의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2. 조사참여 대상

- 이 조사에는 전국의 초등학교 3,000명, 중학교 3,000명, 고등학교 3,000명 등 총 9,000명이 참여합니다.

### 3. 조사참여 방법

- 학생이 이 안내문을 다 읽고 나서 조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설문지 안에 있는 조사 동의서를 작성한 뒤 설문지에 응답해 주십시오.
- 설문지 작성을 마친 다음에 설문지와 함께 조사 동의서를 조사원에게 제출하면 조사가 완료됩니다.

#### 4. 조사 시간

-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인데, 사람에 따라서 더 빨리 또는 늦게 끝날 수 있습니다.

#### 5. 조사 불참 또는 중단 시의 불이익

- 학생은 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다음에도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중단하고 싶다면 조사원이나 담임선생님께 알려 주십시오.
-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두었다고 해서 선생님께 꾸중을 듣거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 6. 조사내용과 조사 참여에 따른 위험 요소

- 이 조사는 학생에게 특별한 위험이나 부작용이 발생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학생의 응답 내용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숫자와 부호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이 조사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7. 조사 참여에 따른 이득

- 학생이 이 조사에 참여할 경우, 간단한 선물 이외에는 어떠한 직접적 이득은 없습니다.
- 그러나 학생이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관련 학술 연구와 정책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8. 개인정보와 비밀의 보장

- 조사를 통해 수집된 학생의 개인정보는 이 조사의 연구진에 의해서 다음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관리될 것입니다.

- 
- 1) 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학생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 2) 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개인정보와 응답내용은 통계분석을 할 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숫자와 부호로 변환하여 처리됩니다.
  -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조사결과는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술적 연구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4) 이 조사의 연구진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RB 준비위원회 위원은, 조사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 과정과 절차,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5) 학생이 조사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 

## 9. 조사 관련 문의

- 이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사 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44-415-○○○○
  - 조사담당자 : ○○○ (한국개발조사연구소)  
02-3702-○○○○
- 만일 조사 참여자로서 학생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RB 준비위원회
  - 연락처: 044-415-○○○○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조사 동의서**  
(중·고등학생)

연구과제명 : 청소년 차별 실태 조사

연구책임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나는 이 조사의 안내문을 모두 읽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이 조사의 참여에 따른 위험과 이득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나는 언제라도 이 조사의 참여를 그만 둘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성 명 : \_\_\_\_\_(서명)

서명일 : 2016년 \_\_\_\_\_월 \_\_\_\_\_일

\* '서명' 란에는 사인을 하거나 이름 끝 글자를 적어주세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사 ID **61**

Gallup 2016-163-006

**청소년 차별 실태 조사(초등학생)**

--	--	--	--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차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아동,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원)이 기입합니다.

<b>학 교 코 드</b>						
<b>학 교 명</b>						
<b>학 교 소재지</b>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b>설 립 유 형</b>	1. 국립	2. 공립	3. 사립			
<b>학 년 / 반</b>	( )학년		( )반			
<b>반 내 학생 수</b>	<b>전 체</b>	전체 ( )명	남 ( )명	여 ( )명		
	<b>조사 완료</b>	전체 ( )명	남 ( )명	여 ( )명		

**발 주 기 관**



**조 사 기 관**



■ 조사 관련 문의처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000 차장 || ☎ 02-3702-0000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에게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심각하지 않다'면 ①에, '별로 심각하지 않다'면 ②에, '약간 심각하다'면 ③에, '매우 심각하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1>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성별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 나는 우리 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①'에 표시했습니다.

###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성별에 따른 차별	<del>①</del>	②	③	④

###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복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복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5. 학생은 다른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있다면 「문5-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없다면 「V. 차별에 대한 생각 및 개선방안」으로 가십시오**

☞ 다른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본 적이 있으므로 '①'에 표시한 후, **문5-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4>

문 5-1.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만) 그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을 요청 받은 사람이 보인 반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 다른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보고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만 응답합니다.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 차별이란 성별이나 종교, 나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히거나, 나쁘게 생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I. 차별에 대한 인식

문1. 학생은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문항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성별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2) 종교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3) 장애에 대한 차별	①	②	③	④
(4) 나이에 대한 차별(나이가 많은 것 또는 나이가 어린 것)	①	②	③	④
(5)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	①	②	③	④
거주유형/거주형태에 따른 차별				
(6) <b>☞</b> '거주유형'은 주택/아파트/별墅/건물/사설 등을 의미하며 '거주형태'는 자가/전세/반전세/월세 등을 의미합니다.	①	②	③	④
(7) 출신지역(고향)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가족 구성 형태로 인한 차별				
(8) <b>☞</b> '가족 구성 형태'란 이혼가정, 재혼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의미합니다.	①	②	③	④
(9) 가정형편(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10) 외모에 대한 차별	①	②	③	④
(11)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①	②	③	④
학력 또는 학벌에 대한 차별				
(12) <b>☞</b> '학력'이란 초등/중등/고등/대학교 등 어느 단계까지 공부했는지를 말하고, '학벌'은 출신학교의 사회적 지위나 등급을 말합니다.	①	②	③	④

문2.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별, 성적, 학력, 가정형편, 출신지역, 외모 등에 따라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2) 성별, 성적, 학력, 가정형편, 출신지역, 외모 등에 따라 차별 받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3) 모든 사람은 성별, 성적, 학력, 가정형편 등 개인의 특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거나 더 많이 주어야 한다				
(4) <b>☞</b>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아동·노약자·가정형편·출신지역·가족 형태·학력 등의 측면에서 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b>☞</b> '소수자'란 대부분의 사회구성원과 문화인종종교언어 삶의 방식 등에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①	②	③	④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시민단체)은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출신 사람들(예, 필리핀, 중국 등)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8) 친구를 사귀는 때 그 친구의 가정환경이나 성적, 종교, 장애 여부 등은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9) 차별을 받는 사람은 그럴만한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10) 차별을 받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11)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돕기 위해 단체나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12)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 II. 차별 가해 여부(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

문3. 학생은 다른 사람을 아래의 이유로 차별한 경험이 있습니까? 차별한 경험이 있다면 학생은 누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자주 차별하였습니까?

☞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수련시설 등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을 의뢰합니다.

나는 ~	차별을 한 경험		차별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있다	없다	가장 차별한 대상	가장 많이 한 차별 방법	차별 빈도
(1)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배앓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2) 종교에 따른 차별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배앓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나는 ~	차별을 한 경험		차별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있다	없다	가장 차별한 대상	가장 많이 한 차별 방법	차별 빈도
(3)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4)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5) 학업성적에 따라 차별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6) 거주유형/형태에 따라 차별을 한 적이 있다 <small>▶ '거주유형'은 주택/아파트/빌라/건물/사실 등을 의미하며 '거주형태'는 자가/전세/반전세/월세 등을 의미합니다.</small>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나는 ~	차별을 한 경험		차별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있다	없다	가장 차별한 대상	가장 많이 한 차별 방법	차별 빈도
(7) 출신지역(고향)에 따라 차별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배앓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8) 가족 구성 형태에 따라 차별을 한 적이 있다  <small>■ <b>슬</b> 가족 구성 형태란 이혼가정, 재혼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의미합니다.</small>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배앓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9) 가정형편(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배앓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10) 외모를 가지고 차별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배앓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나는 ~	차별을 한 경험		차별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있다	없다	가장 차별한 대상	가장 많이 한 차별 방법	차별 빈도
(11)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 문3-1과 문3-2는 문3의 11가지 중에서 차별을 한 경험이 '① 있다'가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에만 응답합니다. 문3의 11가지 모두 '② 없다'인 경우, 문3-1과 문3-2는 응답하지 않고, 문4로 가서 응답합니다.

문3-1. (차별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학생이 다른 사람을 차별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②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③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문3-2. (차별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학생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였을 때 느꼈던 감정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후련하고 통쾌했다      ② 미안했다      ③ 부끄러웠다  
 ④ 차별하는 나에 대해 회가 났다      ⑤ 기타(적을 것 : \_\_\_\_\_)

**III. 차별 피해 여부(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당한 경험)**

문4.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면 학생은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자주 차별을 받았습니까?

☞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수련시설 등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 (3)에서 '장애가 없는 경우, ⑨ 해당 없음. (11)에서 '다문화가족이 아닌 경우, ⑨ 해당 없음에 체크해 주세요.

나는 ~	차별을 받은 경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있다	없다	해당 없음	학생을 가장 차별한 대상	가장 많이 받은 차별 방법	차별받은 빈도
(1)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나는 ~	차별을 받은 경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있다	없다	해당 없음	학생을 가장 차별한 대상	가장 많이 받은 차별 방법	차별받은 빈도
(2) 종교에 따른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3)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input type="checkbox"/> 학생에게 장애가 없는 경우 '⑨ 해당 없음'에 체크해주세요.                 </div>	①	②	⑨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4)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5) 학업성적에 따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나는 ~	차별을 받은 경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있다	없다	해당없음	학생을 가장 차별한 대상	가장 많이 받은 차별 방법	차별받은 빈도
(6) 거주유형/형태에 따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 '거주유형은 주택/아파트/빌라/건물/시설 등을 의미하며 '거주형태는 자가/전세/반전세/월세 등을 의미합니다.	①	②	-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7) 출신지역(고향)에 따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8) 가족 구성 형태에 따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 '가족 구성 형태란 이혼가정, 재혼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의미합니다.	①	②	-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9) 가정형편(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나는 ~	차별을 받은 경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있다	없다	해당없음	학생을 가장 차별한 대상	가장 많이 받은 차별 방법	차별받은 빈도
(10)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11)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 학생의 가족이 다문화가족이 아닌 경우 '⑨ 해당 없음'에 체크해 주세요.             </div>	①	②	⑨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 문4-1~문4-4는 문4의 11가지 중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① 있다'가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에만 응답합니다. 문4의 11가지 모두 '② 없다'인 경우, 문4-1~문4-4는 응답하지 않고, 문5로 가서 응답합니다.

문4-1.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다른 사람이 학생을 차별한 행동에 대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②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③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문4-2.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차별을 당하였을 때 학생의 반응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② 화가 났지만 참았다                      ③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  
④ 부당하다고 따지거나 화를 내며 싸웠다                      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4-3.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받았을 때 학생이 느낀 감정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비참했다/주눅들었다                      ② 서러웠다/우울했다                      ③ 당황스러웠다/혼란스러웠다  
④ 불쾌했다/원망스러웠다                      ⑤ 화가 났다/짜증났다                      ⑥ 아무렇지도 않았다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4-4.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차별받았을 때 이 문제로 주변에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있다면 「문4-4-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없다면 「IV. 차별 목적 여부(문5)」로 가십시오



문5-4. (학생이 목격한 차별의 피해자를 떠올리며) 그 사람(차별받는 사람)은 주로 어떠한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2순위까지 없을 경우, 1순위만 선택하여도 됩니다.

1순위		2순위	
-----	--	-----	--

- ① 성별                                      ② 종교                                      ③ 장애                                      ④ 연령
- ⑤ 학업성적                                  ⑥ 거주유형/거주형태                      ⑦ 출신지역                                  ⑧ 가족구성 형태
- ⑨ 가정형편(경제적 수준)                  ⑩ 외모                                      ⑪ 학교유형/출신학교                      ⑫ 다문화가족
- ⑬ 기타(적을 것: \_\_\_\_\_)

문5-5. (학생이 목격한 차별의 피해자를 떠올리며) 그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차별을 받았습니까?

-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 ④ 집단으로부터의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_\_\_\_\_)

문5-6. (학생이 목격한 차별상황을 떠올리며) 그 사람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②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③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문5-7. (학생이 목격한 차별상황을 떠올리며) 그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보았을 때 학생이 보인 반응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② 화가 났지만 참았다                              ③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
- ④ 부당하다고 따지거나 회를 내며 싸웠다      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⑥ 기타(적을 것: \_\_\_\_\_)

문5-8. (학생이 목격한 차별상황을 떠올리며) 그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보았을 때 학생이 느낀 감정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후련하고 통쾌했다                              ② 미안했다                                      ③ 당황스러웠다/혼란스러웠다
- ④ 불쾌했다/원망스러웠다                      ⑤ 화가 났다/짜증났다                              ⑥ 부끄러웠다
- ⑦ 아무렇지도 않았다                              ⑧ 기타(적을 것: \_\_\_\_\_)

문5-9. (학생이 목격한 차별상황을 떠올리며) 그 사람이 차별받았을 때 학생이 이 문제로 주변에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있다면 「문5-9-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없다면 「문6」으로 가십시오

문5-9-1.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만) 그 사람이 차별을 받은 것에 대해 학생이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② 친척    ③ 이웃
-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선생님
- ⑦ 복사님, 산부님, 스님 등 종교지도자      ⑧ 청소년 관련 기관(상담복지센터, 수련관, 문화의집 등) 전문가
- ⑨ 경찰    ⑩ 기타(적을 것: \_\_\_\_\_)

문5-9-2.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만) 그 사람이 차별받은 것을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을 요청 받은 사람이 보인 반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 ② 심각한 일이라고 여기긴 하였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 ③ 그냥 참으라고 하였다
- ④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다
- ⑤ 더 이상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별 가해자(차별을 한 사람)에게 조치를 해 주었다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V. 차별에 대한 생각 및 개선방안**

문6. 학생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평등한 상태로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7. 학생은 학생이 다른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8. 학생은 학생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대우받고(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9. 우리 사회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차별 관련 법령(법률과 명령) 개정
- ②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나 교육을 통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 ③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역할
- ④ 차별시정단체(차별을 바로 잡기 위한 단체, 예.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⑤ 차별받는 사람 스스로의 개선 노력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10. 우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집단이 가장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정부
- ② 일반시민단체
- ③ 차별을 받는 사람
- ④ 언론기관(신문사, 방송사 등)
- ⑤ 교육기관
- ⑥ 국제기구(유엔, 유니세프 등)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사 ID	62
----------	----

Gallup 2016-163-006

## 청소년 차별 실태 조사(중/고등학생)

--	--	--	--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차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아동,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원)이 기입합니다.

<b>학 교 코 드</b>							
<b>학 교 명</b>							
<b>학 교 소재지</b>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b>학 교 구 분</b>	1. 중학교		2. 고등학교				
<b>설 립 유 형</b>	1. 국립		2. 공립		3. 사립		
<b>고등학교 구분</b> * <b>고등학교만 기입</b>	1. 일반		2. 자율		3. 특성화		
					4. 특수목적		
<b>학 교 유 형</b>	1. 남학교		2. 여학교		3. 남녀 공학		
<b>학 년 / 반</b>			(            )학년		(            )반		
<b>반 유 형</b>	1. 남학생 반		2. 여학생 반		3. 남녀 합반		
<b>반 내 학생 수</b>	<b>전 체</b>	전체 (            )명		남 (            )명		여 (            )명	
	<b>조사 완료</b>	전체 (            )명		남 (            )명		여 (            )명	

**발 주 기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 사 기 관**

**Gallup KOREA**

■ 조사 관련 문의처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000 차장 || ☎ 02-3702-0000

부 록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에게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심각하지 않다'면 ①에, '별로 심각하지 않다'면 ②에, '약간 심각하다'면 ③에, '매우 심각하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1>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성별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 나는 우리 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①'에 표시했습니다.

###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성별에 따른 차별	<del>①</del>	②	③	④

###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5. 학생은 다른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있다면 「문5-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없다면 「V. 차별에 대한 생각 및 개선방안」으로 가십시오**

☞ 다른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본 적이 있으므로 '①'에 표시한 후, **문5-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4>

문 5-1.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만) 그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을 요청 받은 사람이 보인 반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 다른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보고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만 응답합니다.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 차별이란 성별이나 종교, 나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히거나, 나쁘게 생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I. 차별에 대한 인식

문1. 학생은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문항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성별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2) 종교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3) 장애에 대한 차별	①	②	③	④
(4) 나이에 대한 차별(나이가 많은 것 또는 나이가 어린 것)	①	②	③	④
(5)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	①	②	③	④
(6) 거주유형/거주형태에 따른 차별 <small>☞ '거주유형'은 주택/아파트/빌라/건물/사설 등을 의미 하며, '거주형태'는 자가/전세/반전세/월세 등을 의미합니다.</small>	①	②	③	④
(7) 출신지역(고향)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8) 가족 구성 형태로 인한 차별 <small>☞ '가족 구성 형태'란 이혼가정, 재혼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의미합니다.</small>	①	②	③	④
(9) 가정형편(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10) 외모에 대한 차별	①	②	③	④
(11)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①	②	③	④
(12) 학력 또는 학벌에 대한 차별 <small>☞ '학력'이란 초등/중등/고등/대학교 등 어느 단계까지 공부했는지를 말하고, '학벌'은 출신학교의 사회적 지위나 등급을 말합니다.</small>	①	②	③	④

문2.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별, 성적, 학력, 가정형편, 출신지역, 외모 등에 따라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2) 성별, 성적, 학력, 가정형편, 출신지역, 외모 등에 따라 차별 받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3) 모든 사람은 성별, 성적, 학력, 가정형편 등 개인의 특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거나 더 많이 주어야 한다 <small>☞ '사회적 약자'란 성별/나이가 장애/가정형편/출신지역/가족 형태/학력 등의 측면에서 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소수자'란 대부분의 사회구성원과 문화인종/종교/언어살의 방식 등에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small>	①	②	③	④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시민단체)은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출신 사람들(예. 필리핀, 중국 등)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8) 친구를 사귀는 때 그 친구의 가정환경이나 성적, 종교, 장애 여부 등은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9) 차별을 받는 사람은 그럴만한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10) 차별을 받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11)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돕기 위해 단체나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12)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 II. 차별 가해 여부(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경험)

문3. 학생은 다른 사람을 아래의 이유로 차별한 경험이 있습니까? 차별한 경험이 있다면 학생은 누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자주 차별하였습니까?

☞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수련시설 등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나는 ~	차별을 한 경험		차별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있다	없다	가장 차별한 대상	가장 많이 한 차별 방법	차별 빈도
(1)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부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배앓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2) 종교에 따른 차별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부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배앓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나는 ~	차별을 한 경험		차별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있다	없다	가장 차별한 대상	가장 많이 한 차별 방법	차별 빈도
(3)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4)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5) 학업성적에 따라 차별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6) 거주유형/형태에 따라 차별을 한 적이 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 '거주유형'은 주택/아파트/빌라/건물/사실 등을 의미하며, '거주형태'는 자가/전세/반전세/월세 등을 의미합니다.                 </div>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나는 ~	차별을 한 경험		차별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있다	없다	가장 차별한 대상	가장 많이 한 차별 방법	차별 빈도
(7) 출신지역(고향)에 따라 차별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배앓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8) 가족 구성 형태에 따라 차별을 한 적이 있다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가족 구성 형태'란 이혼가정, 재혼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의미합니다.</span>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배앓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9) 가정형편(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배앓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10) 외모를 가지고 차별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배앓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나는 ~	차별을 한 경험		차별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있다	없다	가장 차별한 대상	가장 많이 한 차별 방법	차별 빈도
(11) 디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배앓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b>고등학생인 경우만 응답</b> 학교 유형에 따라 차별을 한 적이 있다 (12) <b>☞ 학교 유형이란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 등을 의미합니다.</b>	①	②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배앓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 문3-1과 문3-2는 문3의 12가지 중에서 차별을 한 경험이 '① 있다'가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에만 응답합니다. 문3의 12가지 모두 '② 없다'인 경우, 문3-1과 문3-2는 응답하지 않고, 문4로 가서 응답합니다.

문3-1. (차별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학생이 다른 사람을 차별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②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③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문3-2. (차별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학생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였을 때 느꼈던 감정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후련하고 통쾌했다      ② 미안했다      ③ 부끄러웠다  
 ④ 차별하는 나에 대해 화가 났다      ⑤ 기타(적을 것 : \_\_\_\_\_)

### III. 차별 피해 여부(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당한 경험)

문4.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면 학생은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자주 차별을 받았습니까?

- ☞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수련시설 등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 ☞ (3)에서 '장애가 없는 경우, ⑨ 해당 없음, (11)에서 '다문화가족'이 아닌 경우, ⑨ 해당 없음에 체크해주세요.

나는 ~	차별을 받은 경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있다	없다	해당 없음	학생을 가장 차별한 대상	가장 많이 받은 차별 방법	차별받은 빈도
(1)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2) 종교에 따른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3)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 학생에게 장애가 없는 경우 '⑨ 해당 없음'에 체크해주세요.	①	②	⑨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나는 ~	차별을 받은 경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있다	없다	해당없음	학생을 가장 차별한 대상	가장 많이 받은 차별 방법	차별받은 빈도
(4)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5) 학업성적에 따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6) 거주유형/형태에 따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small>▶ '거주유형'은 주택/아파트/빌라/건물/사설 등을 의미하며, '거주형태'는 자가/전세/반전세/월세 등을 의미합니다.</small>	①	②	-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7) 출신지역(고향)에 따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나는 ~	차별을 받은 경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있다	없다	해당없음	학생을 가장 차별한 대상	가장 많이 받은 차별 방법	차별받은 빈도
(8) 가족 구성 형태에 따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 '가족 구성 형태란 이혼가정, 재혼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의미합니다.	①	②	-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9) 가정형편(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10)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11)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 학생의 가족이 다문화가족이 아닌 경우 '⑨ 해당 없음'에 체크해주세요.	①	②	⑨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나는 ~	차별을 받은 경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있다	없다	해없음	학생을 가장 차별한 대상	가장 많이 받은 차별 방법	차별받은 빈도
(12) <b>고등학생인 경우만 응답</b> 학교 유형에 따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학교 유형'이란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 등을 의미합니다.	①	②	-	① 부모/형제자매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 선생님 ⑦ 학원 및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배앓음 ④ 집단에서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에 1회 이상

▶ 문4-1~문4-4는 문4의 12가지 중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① 있다'가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에만 응답합니다. 문4의 12가지 모두 '② 없다'인 경우, 문4-1~문4-4는 응답하지 않고, 문5로 가서 응답합니다.

문4-1.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다른 사람이 학생을 차별한 행동에 대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②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③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문4-2.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차별을 당하였을 때 학생의 반응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② 화가 났지만 참았다      ③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  
 ④ 부당하다고 따지거나 화를 내며 싸웠다      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4-3.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받았을 때 학생이 느낀 감정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비참했다/주눅들었다      ② 서러웠다/우울했다      ③ 당황스러웠다/혼란스러웠다  
 ④ 불쾌했다/원망스러웠다      ⑤ 화가 났다/짜증났다      ⑥ 아무렇지도 않았다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4-4.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만) 차별받았을 때 이 문제로 주변에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있다면 「문4-4-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없다면 「IV. 차별 목적 여부(문5)」로 가십시오

문4-4-1.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만) 차별을 받은 것에 대해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② 친척      ③ 이웃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선생님  
 ⑦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 종교 지도자      ⑧ 청소년 관련 기관(상담복지센터, 수련관, 문화의 집 등) 전문가  
 ⑨ 경찰      ⑩ 기타(적을 것 : \_\_\_\_\_)

문4-4-2.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을 요청 받은 사람이 보인 반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 ② 심각한 일이라고 여기긴 하였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 ③ 그냥 참으라고 하였다
- ④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다
- ⑤ 더 이상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별 가해자(차별을 한 사람)에게 조치를 해 주었다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IV. 차별 목적 여부(다른 사람이 차별을 받는 것을 본 경험)**

문5. 학생은 다른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있다면 **「문5-1.로** 가십시오
- ② 없다 → 없다면 **「V. 차별에 대한 생각 및 개선방안(문6),**으로 가십시오

문5-1. (학생이 목격한 차별상황을 떠올리며) **가장** 많이 목격한 차별의 피해자(차별을 받은 사람)는 누구였습니까?

- ①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② 친척    ③ 이웃
-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선생님
- ⑦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상담복지센터, 수련관, 문화의 집 등) 전문가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5-2. (학생이 목격한 차별상황을 떠올리며) 학생은 얼마나 자주 그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보았습니까?

- ① 1년에 1회 미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3~4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주일에 1회 이상

문5-3. (학생이 목격한 차별상황을 떠올리며) 그 사람을 주로 차별한 사람(차별의 가해자)은 누구였습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2순위까지 없을 경우, 1순위만 선택하여도 됩니다.

1순위	2순위
-----	-----

- ①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② 친척    ③ 이웃
-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선생님
- ⑦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                      ⑧ 청소년 관련 기관(상담복지센터, 수련관, 문화의 집 등) 전문가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5-4. (학생이 목격한 차별의 피해자를 떠올리며) 그 사람(차별받는 사람)은 주로 어떠한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2순위까지 없을 경우, 1순위만 선택하여도 됩니다.

1순위		2순위	
-----	--	-----	--

- ① 성별                                      ② 종교                                      ③ 장애                                      ④ 연령
- ⑤ 학업성적                                  ⑥ 거주유형/거주형태                      ⑦ 출신지역                                  ⑧ 가족구성 형태
- ⑨ 가정형편(경제적 수준)                  ⑩ 외모                                      ⑪ 학교유형/출신학교                      ⑫ 다문화가족
- ⑬ 기타(적을 것: \_\_\_\_\_)

문5-5. (학생이 목격한 차별의 피해자를 떠올리며) 그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차별을 받았습니까?

- ① 놀림이나 조롱                              ② 인간적 무시, 모욕                              ③ 기회를 주지 않거나 빼앗음
- ④ 집단으로부터의 따돌림, 회피              ⑤ 기타(적을 것: \_\_\_\_\_)

문5-6. (학생이 목격한 차별상황을 떠올리며) 그 사람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②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③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문5-7. (학생이 목격한 차별상황을 떠올리며) 그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보았을 때 학생이 보인 반응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② 화가 났지만 참았다                              ③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
- ④ 부당하다고 따지거나 화를 내서 싸웠다              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⑥ 기타(적을 것: \_\_\_\_\_)

문5-8. (학생이 목격한 차별상황을 떠올리며) 그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보았을 때 학생이 느낀 감정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후련하고 통쾌했다                              ② 미안했다                                      ③ 당황스러웠다/혼란스러웠다
- ④ 불쾌했다/원망스러웠다                      ⑤ 화가 났다/짜증났다                              ⑥ 부끄러웠다
- ⑦ 아무렇지도 않았다                              ⑧ 기타(적을 것: \_\_\_\_\_)

문5-9. (학생이 목격한 차별상황을 떠올리며) 그 사람이 차별받았을 때 학생이 이 문제로 주변에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있다면 **「문5-9-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없다면 **「문6」으로 가십시오**

문5-9-1.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만) 그 사람이 차별을 받은 것에 대해 학생이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② 친척    ③ 이웃
- ④ 친구나 선후배                                ⑤ 학교 선생님                                ⑥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선생님
- ⑦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 종교지도자      ⑧ 청소년 관련 기관(상담복지센터, 수련관, 문화의집 등) 전문가
- ⑨ 경찰    ⑩ 기타(적을 기 : \_\_\_\_\_)

문5-9-2.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만) 그 사람이 차별받은 것을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을 요청 받은 사람이 보인 반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 ② 심각한 일이라고 여기긴 하였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 ③ 그냥 참으라고 하였다
- ④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다
- ⑤ 더 이상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별 가해자(차별을 한 사람)에게 조치를 해 주었다
- ⑥ 기타(적을 기 : \_\_\_\_\_)

**V. 차별에 대한 생각 및 개선방안**

문6. 학생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평등한 상태로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7. 학생은 학생이 다른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8. 학생은 학생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대우받고(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9. 우리 사회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차별 관련 법령(법률과 명령) 개정
- ②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나 교육을 통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 ③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역할
- ④ 차별시정단체(차별을 바로 잡기 위한 단체, 예.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⑤ 차별받는 사람 스스로의 개선 노력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10. 우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집단이 **가장**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정부
- ② 일반시민단체
- ③ 차별을 받는 사람
- ④ 언론기관(신문사, 방송사 등)
- ⑤ 교육기관
- ⑥ 국제기구(유엔, 유니세프 등)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FGI 참여 동의서(청소년용)

연구명: 청소년 차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본 연구는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 차별실태를 파악하고 차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차별에 대한 생각 및 차별 가해/피해/목격과 관련한 여러분의 경험과 차별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인터뷰는 1회당 대략 1~2시간 정도 소요되며 필요할 경우 2~3회에 걸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는 녹음될 것이고, 본 인터뷰와 관련하여 녹음 및 기록된 모든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인터뷰를 통해 산출된 연구의 결과물은 보고서나 논문 등의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하여 익명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뷰와 관련하여 녹음 및 기록된 모든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보안이 가능한 파일로 안전하게 보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여러분이 보다 행복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여 희망자 이름 및 서명

---

날짜

## Abstract

For members of society to recognize discriminatory and unfair treatments and dual identities of minorities and to better understand and embrace different social entities and stratifications is important in order to ameliorate polarization and inequality in society. To this end, this research shed light on the discrimination faced by adolescents, exploring how they conceive and experience discrimination on a daily basis and suggesting countermeasure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ajority of adolescents believed that everyone, regardless of his or her pers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equally and unconditionally treat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particular, were more supportive of taking actions for the victims of discrimination than their middle and high school counterparts. Second, more perpetrators of discrimination were identified in high school than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ird, the main perpetrators of discrimination differed from case to case. For instance, academic performance based discrimination was committed mainly by school personnel such as teachers, welfare workers, and counselors. Age and gender based discrimination, on the other hand, came mainly from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Fourth, while the majority of victims believed that their experiences were unfair and irrational, only few, if any, confronted their perpetrators in one way or another. Fifth, victims were more likely to be perpetrators, implying that discrimination, if not properly counteracted, may lead to another, forming a vicious circle. It is, therefore, imperative for victims and their guardians to take both proactive and reactive countermeasures in a timely fashion.

Given the findings above, experts suggested that we make sense of adolescent discrimination, whether driven by age, gender, or academic performance and background, in the contexts of particular social settings of Korea such as Confucian heritage and growing competitions, and puberty in general. They also suggested that institutional, legal, or policy-oriented countermeasures may have their limits to the extent that discriminatory behaviors against adolescents are attributable not so much to the absence of legal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as to the lack of civic awareness. Nevertheless, in that the scar of discrimination in an early age may carry over to adulthood, it is crucial to help adolescents to foster an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good personality from an early age through varying institutional measures.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human-right guardians for adolescents as well as a special organization for adolescent rights which can assist adolescents in identifying discriminatory situations, claiming their righteous rights, and fostering a willingness to rectify discrimination. In addition, prior to enforcing a correctional justice upon the victim and perpetrator of discrimination, introducing a restorative justice is necessary where a set of restorative procedures serve to mediate conflicts and mend relations between the victim and perpetrator, breaking a vicious circle of discrimination.

*Key words:* Discrimination, Human Rights



##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 · 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 · 최용환 · 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 · 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 · 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 · 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 · 김한별 · 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유설희 · 이민희 · 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학교 인권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2016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II'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 · 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정아 · 김희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최홍일 · 신현옥
- 16-R13-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I / 강경균 · 이윤주 · 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 재중 · 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 · 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 · 성윤숙 · 유성렬 · 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 이종원 · 모상현 · 강현철 · 정윤미 · 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 · 이순래 · 정윤미

16-R17-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이장주·한지형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I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I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I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I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박인영·이호경·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 김한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6-R19)

## 연구개발적립금

-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최정원·강지명
-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최정원
-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중·정은진·정건희

## 수 시 과 제

-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정의철
-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강경균
-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김기현
-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정은진·조혜영
-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 정은진·김기현

## 수탁과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유한구·채창균·오승근·김유나·한영근
-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Ⅱ / 성윤숙·김경준·강경균
-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황여정·정윤미
-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모상현·정은주
-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6-R4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해정·김승경
-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백해정
-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지·오해섭·윤철경·김경준·최용환·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지·모상현·이윤주·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모상현·유성렬·김진석·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최창욱·좌동훈·문호영·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김지경·이윤주·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박선영·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성은모·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장근영·김지경·하형석
- 16-R59 2016년 동작혁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최용환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한지형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18)
-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보고 16-R20

---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4(학술·정보팀)

ISBN 979-11-5654-138-7 94330

979-11-5654-140-0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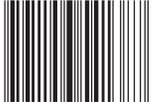


연구보고 16-R20

##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4330  
9 791156 541387  
ISBN 979-11-5654-138-7  
ISBN 979-11-5654-140-0 (세트)